

파주坡州 관련 기사

『조선왕조실록』

1

자성왕비의 내향인 원평부를 승격시켜 파주목으로 삼다 1459년(세조 5) 10월 2일
자성왕비慈聖王妃의 내향內鄉이라 하여 원평부原平府를 승격시켜서 파주목坡州牧으로 삼았다.

2

장순빈을 파주에 장사지내다 1462년(세조 8) 2월 25일
장순빈章順嬪을 파주坡州에 장사지냈다.

3

파주 동면의 산전을 면세하도록 하다 1462년(세조 8) 3월 9일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주楊州 동면북東面北, 양근楊根·지평砥平·영평永平·가평加平·포천抱川·연천連川·마전麻田·적성積城·삭녕朔寧·장단長湍·파주坡州 동면東面과 광주廣州 동면 등류等類는 모두가 산전山田이어서 백성이 해마다 경작하지 못하고 서로 진황陳荒하니, 청컨대 재상전災傷田의 예례에 의하여 해마다 답험踏驗하고, 분간하여 면세免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

서로 간통하고 남편을 공모 살해한 만중과 고미를 8도에 현상수배하다 1466년(세조 12) 7월 5일
파주坡州에 거주하는 별시위別侍衛 전치경全致敬의 아내 고미古未가 이웃 사람 만중萬中과 몰래 간통했는데, 전치경이 병든 것을 틈타 공모共謀하여 죽이고는 공공연히 같이 살다가 그후에 만중萬中을 따라 도망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8도道에 치서馳書하여서 널리 수색 체포하되 잡은 사람에게는 중한 상賞을 주고, 용접容接한 사람은 대죄大罪에 처하게 하였다.

5

화살을 맞고도 살아온 사람 1467년(세조 13) 7월 27일

또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과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안초安道에게 치서馳書하기를, “함길도咸吉道の 정벌征伐에 종군했던 금천衿川 사람 송계손宋繼孫·파주坡州 사람 승계손承繼孫·보성寶城 사람 문방계文方啓 등이 싸움에 나아가 화살[箭]을 맞고도 생환生還하니, 각각 1년 동안 복호復戶해 주고, 주육酒肉을 주어 존홀存恤하게 하라” 하였다.

6

공혜왕후의 장례를 치르다 1474년(성종 5) 6월 7일

신시申時에 공혜왕후恭惠王后的 재궁梓宮이 현궁玄宮에 내리니 입주전入主奠을 거행하고, 반우返虞 뒤에 안릉전安陵奠을 거행하였다. (중략) 전하께서 양좌良佐를 잃었음을 애통하시고 삼전께서도 슬퍼 목메시어 며칠 동안 음식을 폐하셨고, 궁액宮掖의 시어侍御와 중외中外의 모든 신료臣僚가 누구나 다 호곡號哭하였다. 상께서 못 신하에게 명하여 시호諡號를 의논하게 하여 시호를 내려 공혜恭惠라 하였고, 6월 7일 경신에 파주坡州 공릉恭陵의 동쪽 을산乙山の 묘좌 유향柳坐西向의 언덕에 장사하여 순릉順陵이라 하였다. 왕후께서는 덕성德性의 아름다움을 천부天賦로 받으셨으므로, 내치內治를 잘 주관하여 궁위宮闈가 엄숙하고 화목하였으며, 위로 자극慈極을 받들면 삼전께서 서로 기뻐하셨으며, 지존至尊을 내찬內贊하면 일국一國이 교화에 승순承順하였다. 예전부터 어진 후비后妃를 만나기 어려운데, 천명에 분수가 있어 수명을 오래 누리지 못하시니, 신민臣民으로서 슬퍼하고 유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7

수령 칠사를 지키지 않은 파주목사 1486년(성종 17) 1월 20일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 이창신李昌臣·교리校理 조지서趙之瑞가 명을 받고 여주驪州·파주坡州에 가서 수령守令의 불법한 것을 규적細摘하고 와서 아뢰었는데, 뽕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군기軍器가 잘 단련되지 못한 것 등의 일이었다. 승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수지李壽稚·판관判官 오치인吳致仁·파주목사坡州牧使 이윤李倫이 민간에 심은 뽕나무의 수가 관찰사 칠사계본七事啓本の 수와 같지 않고, 군기가 또한 잘 단련되지 못하였으니,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추문推問하라. 또 수령의 허위를 감사가 마땅

히 규획(緝畝)하여야 할 것인데, 칠사계본에 거짓으로 그 본수를 증가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감사도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8

파주의 공물과 조세를 경창으로 올리지 말고 주창에 바치게 하다 1502년(연산 8) 11월 3일

경기관찰사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京畿)의 각 고을은 모두 실농(失農)을 해서 봄에는 적지(赤地)에 종자를 뿌리지 못했고, 여름에는 홍수가 넘쳐 흘러 제방이 무너졌으니, 비단 기근(飢饉)이 겹쳐 이를 뿐 아니라, 명년에는 반드시 종자가 한 알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군량(軍糧)에 소요되는 것을 모두 피곡(皮穀)으로 거두어들여서 종자를 지급하도록 계청했는데, 윤택하시므로 신이 각 고을의 종자와 전결(田結)의 수효를 마련해 보니, 전결의 수효는 많고 곡식의 수량은 부족하여 비록 모두 지급하더라도 종자는 절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방이니, 도리상 마땅히 후한 은혜로 구제해야 하겠지만, 온 도(道)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만약 전량(全量)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음에 미안하므로, 다만 재해(災害)가 가장 심한 고을만 골라서 아뢰웁니다. 수원(水原)·안산(安山)·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과 같은 고을은 재해가 가장 심하고, 파주(坡州)·장단(長湍)은 그다지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두 고을은 네 갈래 길의 요충지(要衝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입거(入居)하는 백성들이 모두 이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백성들의 재력(財力)이 갑절이나 곤궁하게 된데다가, 명년에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더욱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적은 각 고을들은 금년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경창(京倉)으로 올리지 말고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고, 명년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9

금표 안에 들어간 고양군의 곡식을 파주로 옮기다 1504년(연산 10) 8월 29일

경기관찰사 안윤덕(安潤德)에게 전교하기를, “고양(高陽)이 금표 안에 들어 갔는데, 군 곡식(群穀)을 어느 곳으로 옮길 것인가?” 하니, 윤덕이 아뢰기를, “고양을 파주(坡州)와 교하(交河)로 나누어 부쳐야 하나, 파주로 옮겨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하였다.

10

금표의 서쪽을 파주 보곡현까지로 하다 1504년(연산 10) 11월 9일

우찬성 이계동(李季叟)이 동·서·북 금표의 지도를 가지고 아뢰기를, “동쪽은 한강 삼전도(三田渡)·광진(廣津)·묘적산(妙寂山)·추현(樞峴)·천마산(天磨山)·마산(馬山)·주엽산(注葉山)으로부터, 북쪽은 석점(石岾)·홍복산

洪福山·해유점蟹嶺까지와, 서쪽은 파주坡州 보곡현寶谷峴까지, 남쪽은 한강 노량진·용산 양화도陽花渡까지인데, 동쪽은 70리, 서쪽은 60리, 북쪽은 65리, 남쪽은 10리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강 망원정望遠亭 근처를 다시 살펴보아 표를 세우라” 하였다.

11

파주 금표 밖의 땅과 주민을 이웃 고을에 옮겨 붙이다 1505년(연산 11) 5월 29일

좌찬성左贊成 이제동李季全,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송질宋軼이 금표禁標의 경계를 물린 지도地圖를 바치니, 서로는 임진臨津 건너편 5리쯤에 이르고, 동으로는 용진龍津에 이르고, 북으로는 회암檜巖에 이르고, 남으로는 용인현龍仁縣 북쪽에 이르렀는데, 전교하기를, “반드시 백 리가 되도록 한계하여야 한다” 하며, 질軼이 아뢰기를, “기내畿內的 땅이 반이 넘게 금표 안에 들어갔사오니, 가까이 붙인 충청도의 고을을 갈라서 경기도에 붙이소서. 또 양주楊州·파주坡州의 금표 밖으로 남은 땅 및 이민吏民들을 이웃 고을에 옮겨 붙이고, 금표 안의 각역各驛을 금표 밖으로 설치하고, 양주진楊州鎭의 군정軍丁을 다른 고을로 옮김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12

파주 등지의 주민을 몰아내고 금표를 세워 길이 끊기다 1505년(연산 11) 7월 1일

왕이 승정원에 묻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누구나 연회를 베풀고 놀이하는 곳이 있었다. … 이제 장의 문藏義門 밖에 산 밭고 물 고와 참으로 한 조각 절경이므로, 금표禁標를 세워 이궁離宮 수십 칸을 지어 잠시 쉬는 곳으로 하고자 하니, 의정부와 의논하여 지형을 그려서 바치라” 하며, 영의정 유순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하였다.

이로부터 동북으로 광주廣州·양주楊州·포천抱川·영평永平에서, 서남으로는 파주坡州·고양高陽·양천陽川·금천衿川·과천果川·통진通津·김포金浦 등에 이르는 땅에서 주민 5백여 호를 모조리 내보내고, 내수사內需司의 노자奴子를 옮겨서 채우고, 네 모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기시棄市를 하니, 초부樵夫·목동牧童의 길이 끊겼다.

13

금표 안에 무덤이 있는 자는 2일을 한하여 제사지내러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다 1505년(연산 11) 7월 22일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속절俗節에는, 금표 안에 무덤이 있는 자에게 2일을 한하여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되, 마구 다니지는 못하게 하라” 하였다. 왕이 고양高陽·양주楊州·파주坡州·광주廣州·영평永平 등지의 인가를 철거하고 금표를 세우니, 축대밭만 멀리까지 바라보이고, 인가는 볼 수 없

었다. 사족士族·서인庶人이 비록 무덤에 가서 제사지내더라도 적의 지경에 몰래 들어가듯이 하여,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14

늙어서 부임하지 못한 파주목사 1510년(중종 5) 8월 14일

대간이 유담년·강증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파주坡州는 처음에는 폐조廢朝 때에 피폐하였고, 중간에는 목사牧使가 자주 바뀌는 데서 피폐하고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약균金若鈞은 나이가 70을 지났으니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대전大典』에 ‘65세가 지난 자를 외임外任에 제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조가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속히 개정改正해야 합니다…” 하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 김약균은 『대전大典』에 따라 체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5

파주의 아전을 상해한 의천위 남원섭 1510년(중종 5) 10월 12일

간원이 또 아뢰기를, “의천위宜川尉 남원섭南元燮이 함부로 파주坡州의 아전들을 상해하였으니, 용서하고 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6

사행길에 있는 파주 등지 고을의 인리가 부족하여 전수를 줄이다 1515년(중종 10) 10월 3일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이 아뢰기를, “... 반인의 일은 경기京畿의 조례皂隸·나장羅將의 수를 채울 수 없어 그 이웃 동리 사람들이 다 달아나기까지 하니, 3분의 2를 줄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미 내어준 사람을 덜더라도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이대로 한 뒤라야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천사天使가 왕래하는 길에 있는 장단長湍·파주坡州·고양高陽 등과 같이 인리人吏가 더욱 부족한 각 고을에서는 또한 전수全數를 줄여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17

경창의 황두로 구제하여 파주 백성들이 소를 기를 수 있도록 하다 1520년(중종 15) 3월 14일

이빈이 아뢰기를, “근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기아飢饉에 허덕이는데, 수령이 비록 진흙賑恤하려 해도 창고 곡식이 바닥이 나서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파주창坡州倉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겨우 2백 곡斛 뿐이어서, 백성에게 대여貸與할 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농우農牛를 기를 수가 없으니, 경창京倉 황두로 구제해 주소서. 경기지방도 혹 이러한데 하물며 보고 들을 수 없는 먼 외방이리까? 관찰사가 비록 규

검査한다 해도 수령 중에는 혹시 태만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시로 어사를 보내 살피게 한다면 태만한 자로 하여금 근면하게 할 수 있고, 백성 역시 조정에서 항상 염려한다는 뜻을 알게 될 듯합니다.”

18

제릉에 제사지낸 뒤 통제원에서 양로연을 베풀다 1535년(중종 30) 8월 7일

전교하였다. “제릉(濟陵)에 제사를 지낸 뒤에 경덕궁에서 양로연(養老宴)을 열어야 한다. 전에 영릉(英陵)에 행행하였을 적에는 과천(果川)과 용인(龍仁) 지방에 모두 양로연을 베풀었다. 이번에는 개성부와 풍덕(豊德) 지방의 노인은 경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장단(長湍)·파주(坡州)·고양(高陽) 지방의 노인은 통제원(通津院)에서 잔치를 베풀라고 예조에 이르라.”

19

여가가 지나간 파주 등지의 노인과 효자들에게 음식을 내리다 1535년(중종 30) 9월 19일

진시(辰時) 초에 여가가 출발하여 천수정(天壽亭)에 이르러 소주정(小盡亭)하고 … 오시 초에 대가가 친경(親耕)에 도착하여 대주정(大晝亭)하고, 미시 정각에 통제원 숙소(宿所)에 도착하여 양주(楊州)·파주(坡州)·장단(長湍)·고양(高陽)의 노인과 효자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20

파주에 경창의 곡식을 주도록 하다 1542년(중종 37) 5월 6일

경기관찰사 신거관(愼居寬)의 서장에 말하기를, “파주(坡州) 등 7~8고을은 지금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져 죽음이 아침저녁에 닥쳐 있는데도 차마 보면서도 구제하지 못하니 매우 가엾습니다. 경창(京倉)의 곡식 4천 섬을 더 제급(題給)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전일에 경기관찰사가 치계하여 경창의 곡식을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두 번 전교하였으나 호조가 방계(防啓)하였는데, 이제 또 치계하였으니, 짐작하여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호조에 말하라.”

21

경기감사의 보고에 따라 성수침과 조옥을 서용하다 1551년(명종 6) 12월 21일

경기감사 유진동(柳辰叟)이 파주(坡州)에 거주하는 성수침(成守琛)과 지평(砥平)에 거주하는 조옥(趙昱)의 학문과 조행이 훌륭하다는 것으로 장계를 올렸는데, 상이 벼슬에 서용할 것을 명하였다. [장계에 성수침은 효행이 뛰어나고 학문은 경전(經傳)과 사기(史記)를 널리 통달했으며 이록(利祿)에 마음을 두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스스로 도(道)를 즐기니 비록 옛날의 은일(隱逸)에 비교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조옥은

재주와 행실이 고결하였고 청빈淸貧을 편안히 여기고 분수를 지키면서 이록을 구하지 않고 항상 산수山水 사이를 소요한다고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유진동이 고을을 순방하여 이 두 사람을 얻어 조정에 진달했으나, 그 뜻이 또한 가상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신들이 상의 어진이를 구하는 아름다운 뜻을 미루어 넓혀서 이들을 발탁하여 배운 바를 펴보게 하지 못했으니, 어진이를 등용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22

겨울의 극심한 추위로 양맥이 얼어 죽어서 구황하는 일이 급함을 의논하다 1557년(명종 12) 4월 18일
경기감사 이윤경李潤慶이 아뢰기를, “파종은 거의 끝났습니다. 고양高陽·파주坡州는 종자가 부족한데 수원水原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므로 이를 옮겨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알아보니 숫자만 헛되이 기록해 놓았을 뿐 실제 곡식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간략한대로나마 고양·파주로 옮겨다 주었습니다. 신이 경내를 순시해 보니 가을보리가 얼어 죽었기 때문에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신에게 ‘봄보리는 익을 희망이 있으나 봄보리를 다 먹은 후면 민간에 양식이 떨어진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런 사실을 아뢰어 경창京倉에서 환자곡을 받으려 하였으나 봄보리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을 알았다. 경창에 대한 일은 봄보리가 성숙된 다음에 보아가면서 풀도록 하라” 하였다.

23

효행이 있는 윤희경에게 관직을 내리다 1560년(명종 15) 5월 24일
정원에 전교하였다. “신자臣子의 선행善行은 충효보다 큰 것이 없다. 참으로 충효하고 우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중한 상을 내려야 할 것이니, 비록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 윤희경尹希慶【충의위忠義衛이다. 평소 효행이 있는 사람이다. 조모祖母가 죽자 심상心喪 3년을 지냈고, 그 어머니가 죽어서는 파주坡州에서 묘를 지키면서 3년간을 한번도 여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새벽과 저녁으로 산소에 올라가 분향하고 슬피 울었고 조석으로 몸소 전을 올렸으며, 수질首絰과 요대腰帶를 풀지 않고 종일 무릎 꿇고 앉아서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만을 읽었고, 제사는 반드시 예문을 따랐다. 복을 마치자, 그가 나이 9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최복哀服을 입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3년간의 추복追服을 모친상 때와 똑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40여 세에 머리가 모두 백발이 되었다. 복을 마치고 재산을 분배할 적에는 그의 여동생에게 ‘나는 선대의 음덕陰德으로 빈궁하더라도 천역은 면할 수 있으나 너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었으니, 땀나무를 지고 물을 길어오는 천역을 면하기 어렵다’ 하고, 노비와 전답을 두 배로 주니 온고

을이 모두 탄복하였다.】에게 먼저 관직을 제수除授하라고 이조에 이르라.”

24

오랫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우물이 바짝 마른 파주 등지의 사정을 보고하다 1567년(명종 22) 4월 12일

경기감사 박계현朴啓賢【박충원朴忠元의 아들로 성격이 호방豪放하고 또 재화才華가 있었다. 다만 추루하여 명리名利를 가까이 하고, 박잡하여 실상이 없으므로 시론이 천하게 여기었다.】이 아뢰었다. “신이 고양高陽·파주坡州·교하交河·풍덕豐德·장단長湍·적성積城·마전麻田·삭녕朔寧·연천漣川·양주楊州·양근楊根·여주驪州를 두루 돌아 농사農事를 시찰하여 보니, 봄이 지나 여름이 되도록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내와 우물이 바짝 말랐으며, 비록 소나기가 오기는 하나 찬바람이 거세게 불면 즉시 말라 버려 토맥土脈이 굳어서 밭갈고 김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자를 심은 곳도 모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였고 보리와 밀은 농량農糧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삭만 나왔을 뿐 결실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대로 말라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 가까운 시일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추수를 기대할 수 없으니, 매우 걱정됩니다. 다만 지나는 촌락에는 식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없고, 도로道路에는 먹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박계현이 열 읍을 순찰한 뒤에 상경하여 숙배를 드릴 때 상께서 물었기 때문에 아뢴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민정을 살펴보는 것은 사신의 큰 임무이니 박계현이 응당 상의 염려를 체득하여 민간의 질고를 탐문했어야 하는데 상경하는 날에 다만 열 읍을 지날 때 들판에 보이던 것만으로 상의 물음에 답하여 식량이 떨어졌다는 보고나 먹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었다 하였으니, 그 백성을 어루만져 주는 임무에 어떻게 하겠는가. 수령을 엄밀히 가리지 않고 임명한 이후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 백성을 구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신에게 식량이 떨어졌다고 보고하거나 먹여주기를 바라는 백성이 있으면 그 죄책이 자신들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도리어 그 백성을 학대하여 마치 자기를 고발한 원수처럼 여기므로, 식량이 이미 떨어졌어도 감히 사정할 수 없고 배가 고파도 기대할 곳이 없다. 중국 사신이 나오면 온갖 조처가 거의 백성에게 나와야 하므로 민간의 공핍空乏함이 반드시 현재보다 갑절 더할 터인데, 과연 박계현의 보고와 같다면 백성들에게 남은 곡식이 있다는 말인데 그 실수가 어찌 크지 않은가.

25

빈궁한 백인걸에게 식물을 내리다 1578년(선조 11) 2월 29일

경기감사의 서장에, “파주坡州에 사는 동지同知 백인걸白仁傑이 빈궁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식물食物을 헤아려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도 백인걸에게 식물을 하사하

라고 명하려던 참이었다. 경의 장계가 내 뜻에 맞는다. 식물을 제급題給하여 내 뜻을 보이라” 하였다.

26

백인걸이 식료를 내려준 일을 감사하고 조광조의 문묘 종사를 청하다 1578년(선조 11) 4월 15일

파주坡州에 사는 동지同知 백인걸이 상소를 올려 내려준 식물植物에 대하여 사례하고 또 조광조趙光祖를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우연히 하찮은 물건을 내린 것이니 경은 사례하지 말라. 문묘에 배향配享하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하기 때문에 지금 경솔히 의논하기가 어렵다. 경은 그리 알고 있으라.”

27

파주에서 양녀 고금이 기형아를 낳았는데 곧 죽다 1583년(선조 16) 7월 29일

파주坡州의 양녀良女 고금古금이, 머리와 얼굴은 하나에 눈이 넷, 귀가 넷, 코가 둘, 입이 둘, 손이 넷, 발이 넷, 그리고 자지가 둘, 불알도 둘인 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죽은 일이 있었다.

28

의병들을 각 장수의 절제를 받도록 하다 1592년(선조 25) 9월 21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 이제 심대沈岱의 장계를 보건대, 장단長湍과 삭령朔寧의 의병은 이정암李廷赫의 절제節制를 받게 하고, 이천利川·여주驪州·음죽陰竹·죽산竹山의 의병은 성영成泳의 절제를 받게 하고, 통진通津·양천陽川의 의병은 김천일金千鎰의 절제를 받게 하고, 파주坡州·양주楊州·광주廣州의 의병은 심대의 절제를 받게 하여 동서東西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계획이 온편하고 유익하며 일의 계획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내용으로 제장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29

이덕형이 개성부와 경성 부근을 돌아보고 상황을 아뢰다 1593년(선조 26) 1월 28일

한성부 판윤 이덕형李德馨이 치계하였다. “신이 이달 21일에 개성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목청진穆淸殿은 이미 철거되었으며, 교목喬木은 모두 베어져 통곡痛哭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해公廨는 거의 모두 타버렸으며 여염의 집도 남아 있는 것이 18~19채였습니다. 신이 부교浮橋를 빨리 만들도록 독촉하느라고 땅거미가 질 때에 달려서 동과東坡에 도착하니, 적이 파주坡州의 이천원梨川院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명나라 군사의 파발아擺撥兒가 또 10여 급을 베자, 적이 모두 그들의 소굴을 태워버리고 경성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영李寧·장응충張應忠 등이 날랜 기병 6~7천을 거느리고 얇은 여울을 경

유하여 건너가서 파주에다 진을 치고 장차 경성을 공격하려 하고 있으며 제독提督은 부교가 다 만들어지기를 기다려 즉시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곧장 몰아 전진하려 합니다. 헤아려보니 경성의 적이 대부분 강을 건너 내려가면서 값을 많이 주고 말을 사며 사로잡은 여인들을 놓아주어 되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전라감사와 경기감사에게 복명伏兵을 설치하여 차단하고 살륙하는 것과 한강漢江의 부교浮橋 재료를 미리 준비하여 기다리도록 하는 일은 여러 차례 통문通文하였고, 식량은 지금 강화에서 배로 운반한 쌀로 겨우 지공支供한다고 합니다.”

30

이 제독이 파주에 진주했다가 벽제에서 왜적에게 대패하다 1593년(선조 26) 2월 5일

앞서 이 제독은 평양平壤을 탈환하고는 승승장구하여 정월 초엿흘날 밤에 개성부에 들어왔다. 본부의 사족士族과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은銀 1백 냥과 쌀 1백 석을 내어 장세작張世爵을 시켜 나누어주어 진흥하게 하고, 패牌로써 유정劉挺의 군대를 재촉하여 군대를 전진시킬 계책을 하였다. 26일 임진강臨津江 하류로부터 여울을 건너가서 파주坡州에 진주進駐하였다. 27일 이른 아침에 직접 경성京城의 도로 형세를 살피기 위해 단기單騎로 벽제를 향해 달려갔다.

31

파주에서 전사한 천총과 중국군사를 위해 제를 올린다 1593년(선조 26) 2월 7일

예조가 아뢰었다. “파주坡州에서 전사한 천총千總 및 중국군은 평양에서 전사한 군사의 예에 따라 경기감사 이정암李廷巖에게 하서하여 관림棺斂해서 호송하게 하고, 제문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며 주재하고 있는 각 고을에 보내어 전奠을 올리게 하소서.”

32

중국군이 전투에 패해 파주에 주둔하다 1593년(선조 26) 2월 10일

도체찰사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치계하였다. 26일 제독이 개성부를 경유, 임진의 얇은 나루를 건너 파주坡州에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27일 제독은 이 도독李都督과 같이 가정家丁 1백여 명을 거느리고 벽제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는 몸소 경성京城을 정탐하려는 것이고 모든 군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새벽 사총병查總兵이 방어사 고언백高彦伯과 말을 달려 창릉昌陵 근처에 이르렀는데 적이 산골짜기에 많이 매복해있고 먼저 수백여 명이 나와 유인하였습니다. 총병이 군사를 거느리고 엄습하자 적들은 당하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나다 거의 다 참획되었고, 고언백의 군대도 사살한 것이 많았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후퇴하려고 할 때에 적의 후군 대부대가 이어 이르렀습니다. 제독이 혜음령惠陰嶺에 이르렀을 때 적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말을 달려 돌진하다가 증로에 말이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왼쪽 뺨에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참 만에 일어나 적진으로 돌진하였는데 적의 무리는 중국군의 선봉보다 몇 배나 많고 중국군의 후속 부대는 미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이 적에 쫓기자 제독이 뒤를 막으며 후퇴했는데 대군이 점차로 후퇴하여 파주에 주둔했습니다. 중국군의 사상자는 수십 명이고 제독의 가정 중 아주 신임하는 자 1명도 죽었는데 제독이 말 위에서 통곡하였습니다.

33

말먹이 콩으로 굶주린 백성과 서울 유민을 진구하다 1593년(선조 26) 3월 4일

도체찰사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치계하였다. “왜적의 변란이 있는 두어 달이 지나자 성안의 백성이 차츰차츰 성 안에 들어간 자가 많았는데, 적이 평양에서 패배하여 도망친 뒤로 양심을 품고 독을 부려 정월 24일 밤 동시에 성안에서 분탕질하여,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도살되었습니다. 창칼을 요행히 도망쳐 중흥中興과 소천小川 등지에 흩어져 숨어 있는 자들도 매우 많은데, 굶주림과 헐벗음마저 겹쳐 죽는 자가 서로 쌓이니 참혹함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신의 군관軍官 곽호郭護가 강화江華로 구출해 진구한 것이 남녀 노약 아울러 9백여 명이고, 이빈李賓의 군관 우림위 성남成男이 전후로 구출해 낸 것이 2천여 명이며, 그밖에 여러 진영에서 구출해내는 것도 끊이지 않는데 혹 기진하여 쓰러져 죽는 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수 백리 안에는 다시 남은 비축이 없으니, 민생이 마치 길바닥의 고인 물에 모인 물고기 같아서 날을 세며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구제를 하자니 곡식이 없고 구제하지 않자니 차마 못할 일입니다. 각 고을에서 실어 온 황정조荒正租 2천여 석이 또한 배 위에 있는데 이를 말 먹이 콩 대신으로 주고자 하였으나 명장이 반으려 하지 않고 가버려서 달리 쓸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이 눈앞의 참혹한 광경을 차마 보지 못하여 형편에 따라 1천 석을 덜어 내어 파주坡州·개성부開城府·장단長湍·적성積城·마전麻田·고양高陽·삭녕朔寧·풍덕豐德 등지의 굶주린 백성 및 서울 유민으로서 온 자들을 골고루 진구賑救하였습니다.”

34

왜노에게 침탈당한 도와 침범당하지 않는 도에 대한 기록 1593년(선조 26) 6월 5일

경략이 이지移咨하였는데 대략에, “경기도 광주廣州·여주驪州·파주坡州·양주楊州·수원水原·부평富平·이천利川·인천仁川·장단長湍·남양南陽 등 부진과 양근楊根·풍덕豐德·가평加平·안산安山·삭녕朔寧·안성安城·마전麻田·고양高陽 등의 군, 그리고 용인龍仁·진위振威·영평永平·양천陽川·김포金浦·지평低平·포천抱川·적성積城·과천果川·금천衿川·통진通津·교하交河·연천漣川·음죽陰竹·양성陽城·

양지陽智·죽산竹山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화江華·교동喬桐 등의 부현은 아직 적이 지경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 하였다.

35

수령의 자리가 오래 비어 있는 파주 1593년(선조 26) 8월 23일

헌부가 아뢰기를, “… 파주坡州는 대로변大路邊에 위치하였고, 또 그 잔파殘破됨이 더욱 흑심한데다가 수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지가 3~4개월이 되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신 목사新牧使 심우정沈友正은 발에 종기가 나서 서울에 있는데 몇 달 안에는 부임赴任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감사監司는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경기감사를 추고推考하소서. 심우정을 개차改差하시고, 일찍이 대시臺侍를 지낸 명망名望있는 문관文官 중에서 신중히 골라서 소복蘇復의 임무를 맡기소서” 하니, 답하기를, “…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36

파주 파발아의 식량을 서울에서 지급하다 1594년(선조 27) 4월 9일

전교하였다. “… 또 장단長湍·파주坡州·고양高陽에 있는 파발아擺撥兒의 식량을 해사該司에서는 본 고을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는데 본 고을은 어디서 그 식량을 얻을 것인가? 극히 민망하고 절박하게 여긴다고 한다. 듣건대 양주楊州는 서울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그 예대로 모두 서울에서 주도록 아울러 비변사에 이르라.”

37

공략하기가 어려운 파주산성 1594년(선조 27) 11월 18일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11월 3일에 성첩하였다.】 “김해金海에 주둔한 왜적의 부장副將 나강계저모 차羅江戒底毋此라고 칭하는 자가 행장行長 등의 서신을 휴대하고 서로 만나볼 기일을 결정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우병사右兵使 김응서金應瑞가 역시 그를 집견하고 ” … 병사가 ‘당신들이 경성에 있을 때 대패한 곳이 있는데, 그때 왜인이 죽은 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왜사가 ‘과연 경성 서쪽 20리 밖에서 접전하여 승리하지 못하였는데, 전사자가 4백여 인이나 되었다’ 하기에, 병사가 ‘왜 4백 명이라 말하는가? 당신들이 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자를 주워 벤 것도 오히려 4~5백이 넘고 불에 탄 뼈도 산처럼 쌓였었는데 어찌 4백여 인일 뿐이겠느냐?’ 하자, 왜사가 웃으며 ‘전사자가 과연 많았고 부상자도 많았다. 그 당시 제장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각기 손가락을 찢러 피를 내며 서로 맹세하고 기필코 다시 싸워 보복하려고 근처에 있는 왜병 10여만 명을 불러 모아서 날을 택하여 거사하려고 하였는데, 그

때 조선 장수가 파주坡州로 진을 옮겨버렸다. 파주산성은 공략하기가 행주산성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행군하다가 중도에서 되돌아왔다' 하니, 병사가 '파주에 진치고 있는 군사도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10만 병력으로 무엇 때문에 중도에서 파하고 돌아갔느냐?' 하니, 왜사가 '행주는 진 밖에 암석이 간간히 있어 위에서 돌을 굴리면 바위 사이에 피신하여 혹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파주의 진은 돌을 피할 곳이 조금도 없어서 이것이 염려되어 결국 싸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선 장수가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치고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 놓는다면 우리 군사는 가까이 다가갈 리가 만무하다.' 하였답니다. ...”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38

파주목사 권순을 체차하다 1602년(선조 35) 1월 6일

헌부가 아뢰었다. “파주坡州는 도로변에 위치한 데다 매우 잔폐한 지방이므로 실지로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 권순權詢은 성품이 느슨한 데다 나이까지 많은 자이니, 잔폐한 것을 소생시키는 책임을 필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체차하소서.”

39

비변사가 강화와 파주 개성부의 군기를 강화할 것과 책임자를 추천하다 1603년(선조 36) 10월 23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 파주산성坡州山城에 대해서도 아울러 거행해야 된다는 점을 본사 역시 늘 유념하고 있었으나 바야흐로 죽주산성竹州山城의 일이 급하였으므로 한꺼번에 품처稟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도京鄣의 후면은 이 성이 제일 긴요하나, 염려되는 것은 본주本州가 그 중에서도 더욱 형편없이 결단이나 경기의 물력이 탕진蕩殘되었으므로 비록 방책을 세우고 기획하더라도 쉽게 성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일 산성의 사면 10리에 대해서 만이라도 세공稅貢과 모든 잡역을 면제하여 먼저 백성을 불러 모으는 데에 힘쓰자고 청한 것은, 먼저 이 기틀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땅한 수령을 얻어야 모든 일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인데 목사牧使 이원李瑗은 책임자가 못되니, 체차遞差하고, 그 후임자를 이조로 하여금 엄선하여 보내게 하소서. 파주의 본성本城을 이미 수리하였으나, 개성부開城府에서도 군졸을 조련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하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본부本府의 주민은 모두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괴로움을 견디고 행실을 익히며 하는 일에 근면하여 경성京城의 시정市井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들이 요즈음 그곳의 사세를 듣건대, 갑자기 부르더라도 말을 가진 장정 5백~6백 명 정도는 곧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실히 정精하게 뽑아서 적부籍簿를 만든 뒤 장사하는 여가에 관가에 소속시켜 재예를 조련케 하고 조정에서 때때로 관원을 보내 시재試才하여 논상論賞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용동(竊動)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수(留守) 허잠(許潛)은 전에 성주목사(星州牧使)였을 당시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중군(中軍)으로서 성심껏 군사를 조련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었으니, 만약 이 일을 책임지우면 반드시 마음을 다해 봉행할 것입니다. 본사(本司)에서도 이미 이런 의논이 있었는데, 상교(上敎)를 받드니 지극히 윤당합니다.”

40

경기감사가 숙위군의 부족을 산성의 수축으로 해결하자고 하다 1604년(선조 37) 10월 12일

경기감사 김수(金睟)가 아뢰었다. “... 수원(水原)·죽산(竹山)·파주(坡州) 등지의 산성을 점차 수축하자는 의견도 실은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죽주(竹州)는 동남간에 있고, 독성(禿城)은 서남간에 있고, 파주는 서북간에 있고, 강화(江華)는 서쪽의 큰 진관(鎭管)으로서 수로(水路)를 가로 막고 있으니, 공제(控制)하는 형세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본도(本道)의 경계 중 북로(北路)에는 막을 만한 보장(保障)이 없는데, 듣건대 철원(鐵原)에 산성을 수축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곳이 있어 이를 보장의 지역으로 만든다면 위급할 적에 믿을 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처하는 제반 일은 전부 본도에 책임지워도 충분히 마련해 낼 수 있습니다.”

41

경기감사가 파주 등지의 풍수해 실상을 보고하다 1605년(선조 38) 7월 24일

경기감사 이정구(李廷龜)가 치계하였다. “파주(坡州)·마전(麻田)·지평(砥平)·포천(抱川)·양천(陽川) 등은 시냇물이 범람해서 전답이 모두 침수되어 떨어져 나가거나 모래로 뒤덮여 이미 추수의 가망이 없는 데다 20일의 대풍으로 나무가 뽑히고 기왓장이 날아가고 벼가 쓰러지고 각종 곡식의 덩쿨과 줄기까지도 모두 건혀 소금에 절인 듯 시들어 버려 다시 호미질 할 곳이 없습니다. 풍수의 재해가 이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42

경기·강원의 군병을 파주산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다 1618년(광해 10) 6월 16일

전교하였다. “양남(兩南)의 군병은 강도(江都)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공홍도(公洪道)의 군병은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경기·강원의 군병은 삼각산성(三角山城)과 파주산성(坡州山城)에 들어가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오랑캐 군대가 어찌 이렇듯 각 읍에서 험준함을 의지하여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버려둔 채 그 속을 뚫고 지나오겠는가. 당상무신(堂上武臣)을 엄선하여 경계를 나눠서 각처의 산성을 굳게 지키도록 하는 일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케 하라.”

43

파주와 임진을 지키기 대책을 조치하게 하다 1618년(광해 10) 7월 5일

전교하였다. “경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모름지기 먼저 임진臨津·파주坡州 등의 곳을 방어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이같이 유유하고 범범하게 헛되이 시일을 보내니 나는 심히 근심된다. 파주·임진을 굳게 지켜 보호할 대책을 다시 더 착실히 조치하고, 무릇 양곡을 쌓아두는 것과 군사를 조련하는 것, 성을 쌓는 것, 성지城池를 수리하는 것, 군기를 수입하는 것 등의 일을 아울러 더욱 급급히 상의하여 확정하여 선처할 일을 비변사에 말하라.”

44

파주와 임진 등지의 방어책을 보고하다 1618년(광해 10) 7월 9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본사 계사에 답하시기를 ‘영변·송도를 어찌 전혀 버려둘 수만 있겠는가. 급급히 조치하여 굳게 지키게 하라. 파주와 임진도 굳게 지켜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영변은 나라의 큰 변방 고을이고 송도는 전조前朝의 옛 터전입니다. 신들도 전혀 버려둘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인력은 미약하고 성은 커서 지키기 어려워 애당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파주坡州는 이미 방어사를 보내서 지금 바야흐로 산성을 수축하여 보전하고 지키려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임진臨津은 파주 경내에 있어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않아서 영營을 설치하고 방책을 세우려 합니다. 용진龍津 같은 데는 온 고을이 텅 빈 나머지 민력民力을 나누기가 어려운 까닭에 의외의 사변이 생기면 수원부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임진에 진주하여 방수하게 할 일을 일찍이 이미 강구하여 아뢰었습니다. 사기가 만약 급하면 하도에서 들어와 방위하는 군사들도 마땅히 도하에 와서 모여야 하니 이 군사로 상하의 강灘江灘을 나눠 지켜서 구슬을 켜는 것과 같은 형세를 만들고, 만약 추운 겨울 얼음이 어는 때에 이르러 되면 성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 마땅히 파주에서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다시 더욱 잘 헤아려 살펴 처리하라 하였다.

45

파주 등의 쌀을 저축해 군량에 대비하라고 명하다 1625년(인조 3) 10월 4일

선혜청宣惠廳이 본청에 저축된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장단長湍·파주坡州·고양高陽 등 세 고을에서 거둔 쌀을 저축해 두었다가 군량에 대비하라고 한 명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상이 정월正月을 기한으로 우선 본 고을에 머물러 두라고 명하였다.

46

파주산성에서 수비할 것을 아뢰다 1627년(인조 5) 1월 17일

장만이 아뢰기를, “적이 만일 대로大路를 따라 곧장 나온다면 형세상 반드시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될 터인데 단지 군관만을 대동하고 간다면 형세가 매우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어영군御營軍 가운데서 정포精砲 1백 명을 선발하고 개성부開城府와 장단長湍의 군병을 모조리 조발하여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주산성坡州山城이 비록 보수가 완전하지는 못하나 그런대로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 수비할 수는 있습니다. 장단·교하交河·적성積城 등 관청의 올 봄 작미作米를 조속히 수봉하도록 하고 별장 한 사람을 정하여 파주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들어가 수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어영군은 아직 데리고 가지 말라” 하였다.

47

도망친 파주의 장관을 효시할 것을 청하다 1627년(인조 5) 7월 17일

총용사摠戎使 이서李曙가 치계하기를, “경기의 도망쳤던 장수와 사졸을 죄다 주벌할 수 없으므로 그 중 범죄가 중한 자는 당사자를 충군시키고 가벼운 자는 도삼년徒三年에 처할 것으로 이미 계하셨습니다. … 파주坡州의 장관將官 이순은李純溫·안신도安信道 등은 모두 유식한 양반으로서 무너져 도망칠 것을 맨 먼저 주창하였고 체포하려 하자 활을 당겨 사람에게 겨누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빼앗아 타고서 현재 도망 중에 있습니다. 효시하여 군정을 엄숙히 하소서” 하였다.

48

죄인이 처벌을 받기 전에 도망한 지방의 목사와 색리를 처벌하게 하다 1627년(인조 5) 11월 4일

병조가 아뢰기를, “파주坡州 초관哨官 안신도安信道는 호변胡變이 나자 흩어져 도망할 것을 앞장서 주창하고서 즉시 도주하였는데 다행히 붙잡았으나 선전관宣傳官이 표신標信을 가지고 내려가 참형斬刑에 처할 즈음에 임하여 본주에서 단단히 가두지 않아 온 집안이 도망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고 분통스럽습니다. 색리色吏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목사牧使는 우선 기한 내에 마음을 다해 추적하여 체포하게 한 후에 중죄수를 도망치게 한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기한 내에 잡지 못하면 목사를 나국拿鞠하여 정죄하라” 하였다.

49

파주산성의 병력을 줄이도록 하다 1628년(인조 6) 9월 29일

김류가 아뢰기를, “신이 각도 병력의 다과多寡와 거리의 원근, 방어의 긴급성 여부를 헤아려 신지信地

를 나누어 정해서 별단別單으로 서계드립시다. … 파주산성坡州山城은 임진臨津으로 통하는 길을 통제하고 있고 강도江都의 울타리가 되는 셈이니, 깊이 들어온 적을 차단하여 막는 곳으로는 이 성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본주와 장단長湍 등 6읍의 병력 및 경상도 1영營의 병력으로 나눠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주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의 감사와 상의하여 각자 본도의 병력을 나눠 파견해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 신이 병조판서 이귀李貴, 총융사總戎使 이서李曙, 찬획사贊畫使 이경직李景稷, 부원수 정충신鄭忠信 등과 회의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파주산성에 분정한 병력이 많은 듯하니, 적당량을 줄이라. 그리고 그곳에 경상도의 병력을 떨어내고 공청도의 병력을 나누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50

파주를 산릉으로 추천하다 1636년(인조 14) 2월 9일

영상 윤방, 우상 홍서봉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러 지관地官들과 산릉山陵으로 쓰기에 합당한 땅을 상의해 보니, 모두 파주坡州 지방의 산이 제일이라고 하여 그리로 정했습니다. 파주의 산은 바로 고 부윤이 유장李幼澄의 묘가 있는 산인데, 지관 이간李衍이 앞장 서서 의논하여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뒤에 이간에게 통정通政을 상가賞加하였다.

51

파주의 산릉에 혈을 정하다 1636년(인조 14) 2월 13일

총호사 홍서봉 등이 파주坡州 산릉에 가서 묘좌유향卯坐西向으로 혈穴을 정했다.

52

장단의 한 면을 파주에 소속시키다 1636년(인조 14) 3월 27일

장단長湍의 한 면을 파주坡州에 소속시켰다. 장릉長陵이 파주에 있는데, 경계가 서로 접해 있기 때문이었다.

53

부역으로 고통받는 파주 백성 1649년(효종 즉위년) 11월 16일

집의 송준길宋浚吉이 상소하기를, “신이 지난 날 재차 경연에서 모시면서 외람되이 소회를 진달하였는데, 성상의 말씀이 자상하여 장려하심이 깊었습니다. … 또 신은 듣건대, … 파주坡州는 작은 고을인데 대군大君이 농장農庄을 설치하여 부역을 피하려는 백성들이 다투어 달랠려고 있는데도 관가에서 감히 호령을 하지 못해 백성들의 부역이 이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며 궁노宮奴들이 교만 횡포하여 소란을 피워 나라 사람들의 말이 자자한데, 아, 이 역시 금지시킬 수 없겠습

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부자父子·형제兄弟가 죽히 법받은 후에야 백성들이 법받는다’ 라고 하였으니, 오직 성명께서는 마음을 쓰소서.…”

양호兩湖와 양서兩西 연해 일대의 어염魚鹽 이익을 모두 궁가와 세력가에서 빼앗아 점유하였고, 파주坡州에 대군大君이 전장田庄을 설치한 폐단은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니, 모두 마땅히 일체 금단하여 백성들의 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대군大君이 전장田庄을 설치한 것은 면세免稅한 일이 없으니 궁가公家에서 알 바가 아니고, 내수사를 설치한 것은 오늘날 새로 창설한 것이 아니니 변경하기 어렵다. 사노로서 투숙한 자는 소원訴冤에 따라서 아울러 즉시 공정하게 결단하라” 하였다.

54

파주에 은 광맥이 있으나 장릉의 손상을 이유로 채굴을 금지하게 하다 1651년(효종 2) 7월 10일

파주坡州에 사는 전 사평司評 이원李源이 파주에 은혈銀穴이 있다고 상소하여 시험 삼아 캐낼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 파주로 하여금 병졸을 보내 채굴하도록 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은혈이 장릉長陵의 산맥을 침범한다고 말하자, 상이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여이징呂爾徵을 보내어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여이징이 형상을 그려서 바치니, 상이 “파 들어가는 구멍이 점점 넓어지면 필시 능陵 뒤 산맥을 손상할 것이다” 하고, 그 공사를 그만두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파주로 하여금 흙을 메우고 나무를 심어서 영구히 금지하는 지역으로 하게 하였다.

55

파주와 장단 등지에 전염병이 크게 돌다 1653년(효종 4) 2월 20일

경기의 장단長湍·파주坡州·풍덕豐德 세 고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 예조가 근시近侍를 차견해서 제사를 설행하여 빌게 하고 또 의사醫司로 하여금 약물을 넉넉하게 보내게 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56

관학 유생 윤항 등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다 1659년(현종 즉위년) 12월 1일

관학館學 유생 윤항尹抗 등이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珣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선조先朝 때 허락하지 않았던 일을 경솔하게 처리할 수 없다” 하였다. 소를 다섯 차례 올리고, 파주坡州 및 황해도 유생들도 누차 소를 진달하여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57

강상의 변이 끊이지 않다 1664년(현종 5) 2월 12일

… 파주坡州에서는 역시 사노인 충헌忠獻이 사족士族집 처녀를 납치하여 자기 며느리를 삼으려다가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강물에 빠뜨려 죽였으며, …

58

가난하여 빌린 조맥을 갚지 못한 파주 백성이 스스로 목매어 죽다 1684년(숙종 10) 6월 15일

파주坡州의 백성 양근금梁斤金이 경신년 봄에 조맥糶麥 1곡斛을 받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관청의 독촉을 당하였으나 가난하여 갚지 못하니,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놀라고 참혹하게 여겨 구휼救恤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게 하였다.

59

파주 백성의 적곡을 감면해 주다 1694년(숙종 20) 10월 19일

당초에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열조列朝에서 뽑은 염근 청백리廉謹清白吏가 이름이 혼잡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실록實錄을 고찰해 보기를 청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다시 차자를 올려 거듭 말하고, 또한 파주坡州 백성은 공릉恭陵의 행행幸行을 치렀으므로 마땅히 측은하게 여기는 돌봄이 있어야 함을 진달하니, 답하기를, “청백과 염근은 두 가지 건의 일이 아니므로 실록을 고찰해 볼 것이 없다. 파주 백성에 관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고, 드디어 경오년과 임신년 두 해의 바치지 않은 적곡積穀을 감해 주었다.

60

박세채를 자운서원에 합향할 것을 윤허하다 1695년(숙종 21) 5월 20일

파주坡州 유학幼學 정수하鄭綏夏 등이 상소하여 박세채朴世采를 이이李珥의 자운서원紫雲書院에 합향合享할 것을 청하였는데, 해조該曹에서 복계覆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61

고 장준일의 첩과 적자 사이의 소송 1697년(숙종 23) 7월 12일

헌부憲府에서 논하기를, “파주坡州에 살고 있는 고故 주부主簿 장준일張俊一의 첩妻 유씨柳가 적자嫡子인 장위張緯와 서로 소송하여 억울함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며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장위가 재물을 다투어 아비를 속인 것이나 유씨가 적자를 고소告訴한 것은 모두 풍속과 교화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청컨대 끝까지 조사를 가하여 형률刑律에 의거해서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62

파주에 벌레가 곡식을 갇아 먹다 1701년(숙종 27) 7월 14일

경기의 파주坡州 등지에 벌레가 곡식을 갇아 먹었다.

63

이세화 등을 풍계사우에 병향하도록 하다 1701년(숙종 27) 11월 16일

파주坡州 유생儒生 안유安裕 등이 상소하여, 고故 판서判書 이세화李世華 · 고 판서 오두인吳斗寅 · 고 응교應教 박태보朴泰輔를 함께 풍계사우豊溪祠宇에 병향並享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64

파주의 유학 이증영 등이 채명윤과 임수간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다 1708년(숙종 34) 5월 26일

파주坡州의 유학幼學 이증영李重英 등 50여 인이 상소上疏하여, 채명윤蔡明胤과 임수간任守幹이 선현先賢을 모욕한 죄罪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으로 윤택하지 않았다.

65

이이의 자운서원에 합향했던 박세채의 배향에 대한 논의 1713년(숙종 39) 5월 28일

이에 앞서 파주坡州의 유생儒生 조의주曹翊周 등이 상소하여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을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珣의 자운서원紫雲書院【파주坡州에 있다.】에 배향配享하고,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합향合享을 폐지하여 배향配享으로 강등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는 대개 박세채가 일찍이 이미 자운서원에 합향되었는데, 김장생金長生이 이제 또 배식配食을 하게 되면 박세채의 합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우항金宇杭과 참판參判 민진원閔鎭遠이 복주覆奏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파주 유생儒生 문후창文後昌이 상소하기를, “당초에 박세채朴世采를 이이李珣에게 배향을 시켰다면 불가할 것이 없지만 병향並享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하루아침에 폄강貶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출향黜享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아울러 향사된 예례를 낱낱이 들어서 말하기를, “조의주曹翊周 등의 의도가 과연 김장생金長生을 높여서 향사하려는 데 있다면, 어째서 스승과 제자의 병향並享에는 예례를 버리고 이에 도리어 배열配列에 급급하여 박세채의 오랜된 신위를 변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본주本州의 남계南溪는 바로 박세채가 은거하며 거닐던 곳이니, 이곳에다 따로 사원祠院을 세워서 이리로 옮겨 봉안奉安을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소를 예조禮曹에 내리니, 김우항金宇杭과 민진원閔鎭遠이 연명聯名하여 사직소를 올려 말하기를, “자운서원紫雲書院은 이이李珣를 위하여 설립한 것인데, 문인門人인 김장생金長生 같은 이가 향사에 참여되지

못했다는 것은 끝내 흠전欠典이 되었습니다. 이미 추향追享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여 병열並列하는 것은 미안未安한 바가 있고, 박세체가 비록 이미 합향合享이 되었지만 이제 김장생을 위하여 배위配位를 옮기는 것이 위치位次로 보아도 적당하고, 정례情禮로 보아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제 문후창文後昌 등이 그 폄강貶降을 의심하여 이렇게 침범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미 복주覆奏를 잘하지 못하여 반박하는 의논이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찌 그 당초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어찌 감히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당초에 복주覆奏한 것은 진실로 의견意見이 있었으니, 다사多士의 상소를 어찌 반드시 불만족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뒤에 해조該曹에서 문후창의 상소에 대해 복주覆奏하기를, “따로 의견을 낸 것은 진실로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종전의 처리한 바에 따라 강배降配토록 하고, 사우祠가 건립되기를 기다려 위판位版을 옮겨 봉안奉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66

봉상시 땔나무를 파주와 금천에서 윤번으로 바치게 하다 1729년(영조 5) 7월 3일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파주坡州에서 베어다 바치는 봉상시奉常寺의 땔나무를 금천金川과 함께 윤번으로 베어 바치도록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67

본읍의 민폐를 진달하는 파주 유학 김여 등의 상소 1731년(영조 7) 10월 19일

파주坡州의 유학幼學 김여金礪 등이 상소하여 본읍本邑의 민폐民弊 두서너 가지를 진달하였다. 그 첫째는 태상시太常寺에서 시탄柴炭을 사들이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었고, 그 둘째는 경기京畿 백성의 세稅를 감해준 은전恩典이 유독 파주에만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그 셋째는 이제 막 천릉遷陵의 대례大禮를 겪었으니 마땅히 과거를 베풀어 위열慰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비답하기를, “소진疏陳한 것을 모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치稟處하게 하라. 설과設科는 온천의 거동을 예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68

윤지원이 교하·파주의 사이에 화적과 호환의 극성함을 말하다 1734년(영조 10) 11월 13일

사헌부[장령掌令 윤지원尹志遠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양빈鄭賜賓의 일에 대하여는 의윤依允하였다. 윤지원이 또 말하기를, “교하交河·파주坡州의 사이에 화적火賊이 횡행橫行하여 북을 치면 전진하고 징을 치면 퇴각하는 것이 마치 행군行軍하듯이 하면서 인민을 타상打傷하고 마을

을 볼 태웁니다. 그리고 또 호환虎患이 극성을 부려 사람과 가축을 물어 죽이고 있습니다. 마땅히 좌우 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도적을 각별히 염탐하여 체포하게 하고, 훈련도감訓練都監의 포수砲手를 보내어 특별히 호랑이를 사냥하여 잡도록 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훈국訓局의 포수는 능소陵所의 거동이나 동병動兵이 아니라면 징발할 수가 없다. 화적에 관한 일은 다만 토포영討捕營으로 하여금 뒤쫓아 잡게 하겠다” 하였다.

69

경기의 오래된 환곡과 군항을 받아들이는 것을 모두 정지하게 하다 1740년(영조 16) 9월 5일

경기의 오래된 환곡還穀과 군항軍餉을 받아들이는 것을 모두 정지하게 하였다. 거동할 때 지나온 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豐德·개성開城의 새 환곡과 군항의 모곡耗穀을 모두 감면시키고, 양주楊州·고양高陽에는 특별히 대동米大同米의 절반을 감면하게 하였다. 경기감사와 여러 고을의 수령들을 불러서 접견하고 말하기를, “행행을 겪은 곳의 백성들 또한 수고로웠을 것이니, 의당 어깨를 내리고 쉬게 할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하고, 이어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었다.

70

파주 유생들이 성수종을 성수침의 서원에 함께 배향할 것을 청하다 1740년(영조 16) 9월 26일

파주坡州의 유생 이익명李翼明 등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파산坡山의 명유名儒 성수종成守琮을 그의 형인 선정신 문정공文貞公 성수침成守琛의 서원에 함께 배향配享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의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71

총융사 홍봉한이 임진의 형편을 아뢰다 1754년(영조 30) 11월 18일

총융사 홍봉한洪鳳漢이 명을 받고 가서 임진臨津의 형편을 살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돌아와 아뢰기를, “임진부터 위로 3, 40리는 다 4, 5장丈의 적벽赤壁이고, 아래도 또한 사방이 막혀서 염려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내소정來蘇亭 근처에 얕은 여울이 있어 옛 장릉長陵으로 통하는 길에 막힌 데가 없으므로 이곳이 허술합니다. 내소정의 얕은 여울부터 장산長山까지 모두 7리가 되는 곳에 토성土城을 쌓아 막고, 인하여 방수 별장防戍別將을 두거나 파주坡州의 읍치邑治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임진 좌우의 석벽石壁 사이에 홍예 석문虹霓石門을 설치하는 것도 국위國威를 견고하게 하는 방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금위대장 구선행具善行에게 명하여 다시 가서 살피게 하였다.

금위대장 구선행이 임진의 형편을 아뢰다 1754년(영조 30) 11월 28일

금위대장 구선행具善行이 임진臨津에 가서 살피고 돌아와 형편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산성山城이라고 일컫기에는 작을 것이다” 하자, 구선행이 말하기를, “보堡를 만들어야 마땅한데, 임진의 좌우에 돈대墩臺를 설치하고 의병疑兵을 조금 설치하면 급할 때에 염려가 없겠습니다. 낙하洛河는 봄·여름·가을 세 철에 다 험준한 나무가 되지만, 얼음이 얼면 한 달 동안 건널 수 있는 것이 5일도 못됩니다. 동파東坡 근처는 더욱 저습低濕한 땅이어서 밭을 딛기 어려운데, 얇은 여울인 곳은 중류中流에 돌부리가 들쭉날쭉하므로, 여름에도 걷기가 어려우니, 밭은 더욱 건널 수 없습니다. 신이 물가를 따라 장산長山에 이르러 형편을 두루 살펴보았더니, 참으로 서로西路의 요충要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토성土城을 쌓고 별장別將을 두면 좋을 듯한데, 파주坡州 사람들은 다 이곳에 고을을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청석동靑石洞을 지나면 지킬 만한 곳이 이곳뿐이다” 하였다. 이어서 별장을 두고 돈대와 홍예석문虹霓石門을 설치하라고 명하고, 총용사 홍봉한洪鳳漢으로 하여금 경략經略하게 하였다. 홍봉한이 윤태연尹泰淵을 우선 별장으로 차출하여 장공將功으로 속죄贖罪할 수 있도록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장산에도 임진의 예에 따라 별장을 두라고 명하였다.

파주의 양전을 다시 하다 1757년(영조 33) 5월 23일

임금이 통명전通明殿의 여차廡次에 나아가 대신과 예조판서·경기감사를 인견하였다. 임금께 경기감사 정홍순鄭弘淳이 아뢰기를, “죽산竹山과 파주坡州 두 고을에서 타량打量하려고 하였으나, 신이 단지 진전陳田만 허락하였습니다. 양주楊州와 장단長湍 등 여섯 고을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개량改量한 뒤에 강속降續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재해를 입은 고을이기 때문에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도신이 완급緩急을 자세하게 살피서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개량해야 합니다. 파주坡州 두 고을에서도 모두 자원自願하였으면, 아울러 차례대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양전量田은 중대한 일이다. 요체는 적합한 사람을 수령으로 얻는 데 달려 있으나, 그 책임은 감사에게 있다” 하자, 정홍순이 인하여 말하기를, “바야흐로 인산因山의 역사役事를 당한데다 또 칙사勅使의 행차를 만나게 되었으니, 경기 내의 역驛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습니다. 본도에서 진휼하고 남은 곡식으로 도로 회록會錄해야 할 것 가운데 청진대 1천 석石을 획급하여 역졸驛卒들을 구휼救恤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특별히 허락하였다.

74

파주 열부 문씨를 정려하다 1763년(영조 39) 2월 29일

파주坡州의 열부烈婦 문씨文氏를 정려旌閭하였다. 열부는 천인賤人인데, 어떤 자에게 강제로 겁박을 당하여, 온몸이 난자亂刺되어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솟아나온 지경에 이르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죽었다. 대신大臣의 연주筵奏로 인해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해 보고하게 하고는 특별히 작설紳楔의 은전을 베풀었던 것이다.

75

파주의 주산 봉명산성 1764년(영조 40) 10월 13일

영의정 홍봉한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임진臨津과 장산長山에 성을 설치하게 된 것은 상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고 신이 실로 명을 받아 그 일을 주관하였습니다. 문루門樓와 여러 돈대墩臺의 공사가 이미 차례로 끝나고 백성들도 점차로 모여 살고 있으니, 다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수비의 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계책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단長湍에 있어서는 그곳으로 방어의 영축을 옮길 당시에 묘당廟堂의 의논이 어떠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석靑石의 험함과 여현礪峴의 험로를 관리하여 군사를 거느려 가로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들판저 멀리 있는 장단에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적에 대응하는 형세를 잃었고 또 지리地利의 험함을 잃었으니 긴 강을 끼고 있는 천연의 요새지를 마치 병자년·정축년처럼 사람이 전혀 없는 곳과 같이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송도松都에 영축을 설치하였으니, 장단은 경중을 논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파주坡州에 있어서는 강 연안 일대에 산이 두루 쌓여 있으므로 비록 성을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세가 믿을 만합니다. 그 고을 주산主山은 고려 때 봉명산성鳳鳴山城이었습니다. 지세가 깎아지른 듯이 험준하고 사방으로 엿볼 수 있는 산봉우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성을 고친 다음 서울 후면을 막을 수 있는 영을 만들자고 청하였고, 도원수 권율權擥과 순변사 이빈李養이 패잔병을 수습하여 홀로 외로운 성을 보존하여 저돌적인 왜적으로 하여금 감히 날뛰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또 과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구나 이 두 진을 이미 설치하였으니 대비가 시급한데 그 임무를 맡길 곳이 본주를 놔두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지금 별도로 조치할 것 없이 장단의 옛 영을 파주로 옮겨 설치한 다음 수성장守城將을 겸하게 하고 임진과 장산 두 진의 별장을 수성 양 별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상시에는 두 진관鎭管을 본주에 소속시키고 유사시에는 본 고을의 수령이 두 진으로 나가 지키면서 강의 동쪽 여러 고을들의 군사를 소집하여 빙 둘러 지키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헛점의 대비가 적절히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견고하게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영구히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오른쪽 여덟 고을을 둘로 나누어서 고양高陽·교하交河·적성穢城의 군사는 파주에 예속시키고, 삭녕朔寧·마전麻田 연천漣川의 군사는 장단에 예속시키며, 장단은 남양南陽의 예처럼 영장營將을 겸하게 하고, 파주는 수원의 규례처럼 이력을 높여주면 군사의 제도가 더욱 갖추어지고 방어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니, 그 나머지 설치할 것들은 편리에 따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대장 구선행具善行과 총용사 구선복具善復은 모두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계획이 신과 강론을 거치지 않고도 같았으니, 신의 이 말은 신 혼자만의 견해일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원하건대 하순下詢하시고 재량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신하들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비답하기를, “지금 경의 차자를 보니, 조목조목 열거한 사안들이 적절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논도 모두 일치하였으니 차자에 청한 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방어를 옮기는 것에 대한 절목을 자세히 제하啓下하였다. 이미 막을 수 있는 영을 설치하고 난 뒤에는 적임자를 얻는 데에 달려 있으니, 문관과 무관이 교차交差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되 대신에게 문의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76

옥사를 지연시킨 전 파주목사를 정배시키다 1781년(정조 5) 3월 7일

파주坡州의 전 목사 이장한李章漢을 잡아다 추문하여 공초供招를 받았는데, 하교하기를, “이와 같은 목사에 대해서 형추刑推하여 사정을 알아내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거조다. 그러나 우선 잠자코 참고 있었던 것은 또한 생각한 바가 있어서였다. 살인殺人을 목숨으로 보상하게 하는 삼척三尺이 지극히 엄중한 데도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온갖 방법으로 옥사獄事를 지연시켰으니,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그에게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가볍게 감죄劄罪하고 참작하여 석방하였으니, 관전寬典 가운데서도 관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의어사繡衣御史의 서계書啓에 계속 올라 진장眞贓이 또 이와 같이 낭자하였다. 대저 거동할 때 백성의 힘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경비經費로 회감會減하게 하는 것은 조가朝家에서 백성을 돌보아 구휼하는 뜻이니, 과연 어떠한가? 그가 아무리 무례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차마 승미升米·민전緡錢에 손을 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도리어 역가役價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것마저도 또 부족하여 곡포穀包를 더 보고하고 공물公物을 도둑질하여 먹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참으로 엄중히 처분해야 마땅한데 하물며 각 죄목罪目이 한꺼번에 탄로난 데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 봄가을의 능알陵闕에 경기 백성들이 지응支應하느라 그 고통이 적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선조先朝 때부터 특별히 민폐民弊를 진념軫念하여 저치곡儲置穀을 지급

하도록 허락하여 비용을 보상하는 밀천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에게도 또한 사람의 마음이 있을텐데, 탐욕貪慾이 비록 가슴속에 꼭 차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까지 욕심을 낼 수가 있겠는가? 어찌 그리도 불량함이 극심하던 말인가? 만약 특별히 무겁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른 수령들을 금급懲罰하고 우리 경기 백성들에게 사죄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죄수는 우선 먼 땅에 연한을 정하지 말고 정배定配하라. 자목字牧의 망설이는데는 탕척蕩擻하라는 특교特敎가 없으면, 비록 수서收斂한 뒤라도 우선 조의照擬하지 말라. 이는 바로 한 사람을 징계하여 백 사람을 면려하는 뜻이니, 해청該廳에서는 이 판부判付를 날날이 들어 본도本道에 행회行會하여 특별히 엄하게 계칙하라. 가을에는 응당 심탐審探하는 방도를 행하게 될 것인데,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감사監司까지도 함께 무겁게 감죄勘罪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77

파주의 방어를 전처럼 장단에다 설치하다 1781년(정조 5) 12월 9일

경기관찰사 이형규李亨逵가 상소하기를, “도내道內에 한두 개의 변통시켜야 할 관방關防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고동森洞에 전처럼 그대로 수사水使를 두는 데 관한 일입니다. … 그 하나는 곧 파주坡州의 방어防禦를 전처럼 도로 장단長湍에다 설치하는 일입니다. 서북西北 여러 곳의 방영防營은 오로지 서북을 방비하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인데, 장단은 곧 기서畿西의 제일의 요충지로 동으로는 신경神京을 호위하고 있고 서로는 송도松都를 견제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심도沁都의 문호門戶가 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우보右輔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의 지세地勢를 말하면 서북西北의 대로大路 이외에 또 사잇길 두 가닥이 있습니다. 강변江邊에서부터 은밀히 양덕陽德·맹산孟山을 넘어서 곡산谷山·수안遂安을 지나 이른바 본부本府의 고랑포高浪浦에 닿는 데는 4백여 리에 불과합니다. 또 북쪽의 육진六鎭에서부터 곧바로 삼방곡三防谷·추가령楸柯嶺으로 달려 평강平康·이천伊川 사이로 나와서 고랑포에 도달하는 것도 또 3백여 리에 불과합니다.

병민兵民에 대해서 말하여 본다면 지방地方이 매우 넓고 또 사람의 총수總數가 상당히 많아서 무기武技를 정예롭게 단련하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이 없고 군졸은 액수額數를 충당시키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치措置해 놓은 연륜이 오래되고 제도制度가 이미 이루어져 있으므로, 만일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아침에 징발하여 저녁에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신년의 변란 때에도 신속하게 사기師期 안에 달려가 죽산竹山에서 엄히 진을 치고 있었으니, 이것이 그 증험입니다. 아! 저 파주坡州에서 의지하여 믿고 있는 것은 곧 한 가닥 허리띠 같은 강물과 하나의 탄환만한 작은 성城뿐입니다. 강江가의 얇은 여울은 옷을 걷거나 벗고서 건널 수 있는 곳이 많으니, 파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성京城으로 달려간다면

방진方鎭에서 수비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목本牧은 지역이 좁고 사람이 적어서 영營을 설치한 이후 각 읍各邑의 군보軍保를 거개 모두 이속移屬시켰어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여 구차스럽게 첨액籤額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주에서 영을 옮기고서부터 상진곡常賑穀 5백 석石을 해마다 획급劃給하여 교졸校卒에게 급대給代하는 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18년 동안 없어져버린 진곡賑穀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위에서 진달한 바 관방關防의 지세地勢와 병민兵民의 편부便否는 슬기로운 사람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변별卞別할 수 있으며, 현재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여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장단長湍에다 전처럼 도로 방어防禦를 설치하여 지리地理를 잃지 않고 군제軍制가 믿을 수 있고 공곡公穀이 모축耗縮되지 않게 한다면, 그 득실得失이 또한 분명히 드러나는 정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제일 먼저 유지有旨에 응하여 소장을 올렸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진달한 두 건의 일은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재처裁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78

파주·장단 등지의 한재가 심하다 1783년(정조 7) 7월 1일

사관史官 김건수金健修를 보내어 경기京畿 고을들의 농사 형편을 살펴보게 하였다. 임금이 김건수에게 이르기를, “올해의 한재旱災는 기내畿內가 심하였다. 허둥지둥 다급해하는 민간의 실정을 눈앞에 보는 듯 한데, 경기 고을 중에도 장단長湍·파주坡州·풍덕豐德이 특히 더 참혹하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오두막에서 수심하고 있을 것이 염려스러워 구중 궁궐九重宮闕이 편안하지 않다. 그대가 논밭들을 두루 다니며 농사 형편을 살펴보되, 그 중에 더욱 심한 곳에 대해서는 대파代播하게 하여 혹시라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라. 또한 민인民人들에게 각기 그대로 머물러 살도록 효유曉諭하여 비록 흉년이 든다 하더라도 조가朝家에서 진구賑救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혹시라도 유리流離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는데, 이런 뜻을 면전面前에서 거듭 거듭 신칙하였다.

79

파주·고양의 묵은 환곡과 군항을 정지하고 교하의 환곡을 물려주다 1784년(정조 8) 8월 19일

파주坡州와 고양高陽의 묵은 환곡還穀과 창고의 군항軍餉, 산성의 군항軍餉을 정지시키고, 교하交河의 임인년의 묵은 환곡도 또한 기일을 물려주도록 하였다.

80

파주 죄인 이규명 등을 신문하고 형을 집행하다 1784년(정조 8) 10월 24일

추국청推鞠廳을 설치하여 파주坡州의 죄인 이규명李揆明·정달원鄭達源·이동빈李東彬·이지형李之衡 등

을 신문하였는데, 이동빈은 사형을 감하여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이규명과 이지형은 물고物故되었으며, 정달원은 석방하였다.

81

성수종을 파산서원에 배향하다 1785년(정조 9) 2월 25일

파주坡州의 유학幼學 조중길趙重吉 등이 상소하여 증 직제학 성수종成守琮을 파산서원坡山書院에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였다. 성수종은 문정공文貞公 성수침成守琛의 아우인데 기묘 명현己卯名賢이었다. 영조 경신년에 많은 선비들이 글을 올려 호소하여, 이 서원에 배향하도록 하였는데, 신유년에 갑오년 후에 사적으로 배향한 것을 모두 철폐하라는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예조의 당상관이 잘못 알고 아울러 철폐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중길 등이 다시 배향할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복주覆奏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82

효자와 열녀에게 정문을 하사하다 1786년(정조 10) 11월 11일

효자들에게 정문을 하사하였는데, … 파주坡州 사인土人 홍우주洪宇周의 처 이씨 … 모두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었다.

83

파주의 유생 정재간이 백인걸·이이·성흔 등의 사당 문제를 상소하다 1790년(정조 14) 2월 13일

파주坡州의 유생 정재간鄭在簡 등이 상소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충숙공忠肅公 백인걸白仁傑과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흔成渾 이 세 선현先賢은, 같은 세상에 함께 태어났고 이미 죽은 뒤에는 각기 두어 칸 되는 사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충숙공을 제사하는 곳은 월룡산月籠山 휴암休巖 아래에 있습니다. 문성공은 여러 선대先代의 묘소가 자운산紫雲山 자락에 있고, 문간공은 일생 동안 은거隱居하던 곳이 곧 파산촌坡山村 안이었습니다. 이에 각기 그들이 살았던 곳마다가 높여 제사하는 도리를 다하고 있었는데 사당의 기둥이 세워진 후에 일부 선비들이 중간에 새로운 의견을 제기하면서 ‘청송聽松·휴암休菴·울곡粟谷·우계牛溪 네 선생이 훌륭한 덕망을 지니고 같은 고을에서 함께 태어난 것은 우연치 아니한 일이다. 한 사당에 합사合祀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다.’고 하여, 마침내 본주本州에 있는 호계虎溪의 한 구역을 잡아 사당을 세우고 차례대로 모실 계획으로, 월룡산에 벌였던 역사役事를 중지하고 서원을 호계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그때 문성공과 충숙공은 호계서원에 합사合祀하기로 하였으나, 문정공文貞公 부자父子의 사판祠版에 대해서는 자손들이 의논하기를, ‘파산坡山은 바로 생전에 살던 곳이므로 옮겨 모실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함께 제향祭享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호계서원이 무너지게 되자 사론士論이 또 ‘네 선현을

이미 함께 제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각기 옛터에 짓는 것이 낫다'고 하여, 문성공의 위판位板은 자운산에 있는 사당으로 옮겨가고, 충숙공은 예법상 월룡산의 옛터로 옮겨가야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우선 임시로 파산서원 안에 봉안奉安하였습니다. 이에 청송聽松과 동서東西로 마주앉아 빈주賓主의 위치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바로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정한 예법입니다.

충숙공을 처음에 호계에서 제사하다가 나중에 파산으로 옮긴 것이, 비록 한 고을의 선현을 함께 제사하는 의리에 해롭지는 않지만, 옛날에 살던 자운산과 파산 두 서원에다 따로따로 모시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을사년에 성 문정공成文貞公의 아우인 절효공節孝公 성수종成守琮을 파산서원에 추배追配할 때에, 그 새로 제사하는 서열序列로 보자면 응당 청송의 다음 자리에 있어야 하긴 하였으나, 그 위판位版을 배정排定할 때에 가서는 이내 충숙공의 옛자리에다 올리어, 빈주賓主와 사우師友의 좌차座次를 거꾸로 두어 문정공文正公이 정한 예법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니다. 신들이 소를 올려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물을 대략 모아 월봉月峰 아래의 옛 터에다 두어 칸의 집을 짓고 선생의 사관祠板을 옮겨 모시고자 춘조春曹에 글을 올렸더니, 춘조에서도 아주 합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명聯名으로 호소하는 바이니, 부디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어 특별히 두 글자의 현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증건重建하는 것은, 처음 창건創建하는 것과는 다른 법이다. 합사合祀하던 것을 어찌서 갑자기 갈라서 설치하였으며, 위치位次 또한 어찌 지레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는 이미 반시頒示한 수교受敎를 어긴 셈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미 정해진 정론正論이 아니다. 원우院宇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두 서원 유생들의 일은, 모두 분수에 지나친 죄과罪科를 범한 것이다. 해당 수창首昌 유생은 모두 정거停擧하고, 충숙공 백인걸은 이전대로 합사合祀하되, 위치는 종전처럼 하라" 하였다.

84

파주 서민 김사목을 용서해 주다 1790년(정조 14) 9월 29일

특별히 김사목金思穆을 용서해 주고, 하교하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이번 대사령에서 각도에 귀양 보낸 죄인들을 이미 다 용서하여 놓아주었다. 저지른 범행이 비록 놓아주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만 유독 논의하지 않는 과에 내버려둘 수 없다. 파주坡州의 서민 김사목을 특별히 용서한다. 수군水軍으로 초시에 합격한 자도 군역을 면제해 주는데, 서민의 아우로서 어찌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없겠는가. 초시에 입격한 김사식金思植과 피혐으로 인해 추후에 붙여준 다른 유생들도 다 같이 회시에 참가하도록 허락한다" 하였다.

85

영릉으로 가는 도중 파주목에서 목사 이민복에게 백성의 병폐를 듣다 1792년(정조 16) 2월 24일

상이 영릉永陵에 가는 도중 파주목坡州牧에서 대가大駕를 멈추고 목사 이민보李敏輔를 불러 보고는 백성의 병폐를 물어 보았다. 민보가 답하기를, “본 고을의 전결田結 중에는 옛날부터 애초 조세의 명목이 붙어 있지 않은 전결이 있어 해마다 계속되어 온 것이 거의 50결에 가깝습니다. 수령된 자가 차마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당장 지목할 만한 재앙이 없어도 이 명색을 만들어 지금까지 인습해 왔으니, 영영 감면해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승지에게 명하여 본주本州의 목사와 더불어 장용영壯勇營의 우사右司 후초군後哨軍과 파주목의 장수와 군졸에게 활과 포 쏘는 시험을 보인 뒤에 차등 있게 상을 주도록 하였다.

86

파주의 장교들은 한 번만 평가하여 승진시키라 명하다 1792년(정조 16) 2월 28일

파주坡州의 장교將校들은 한 번의 도목정都目政을 넘기고 승진시키라고 명하였다.

87

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파주목사를 처벌하다 1794년(정조 18) 3월 28일

경기도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장계하기를, “일전에 마마해권관馬海權管 정이유鄭履綏가 부임하던 길에 임진에 당도하여 파주坡州의 아객衙客과 군교·하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붙잡아서 길거리를 아래위로 끌고다니기까지 하였으며 행장에 들어 있던 물건도 많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는 변괴에 속하는 사건이므로 우선 공문을 보내어 당해 목사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파주목사 신대곤申大坤이 첩보牒報한 내용에 ‘혐의되는 것이 있어서 조사하는 일을 거행하지 못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공문을 보내어 따져 물은 뒤에 끌어낼 수 없는 혐의를 억지로 끌어대어 부당하게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기강과 크게 관계되는 만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파주목사 신대곤을 파면시키고 그의 죄상에 대해서는 당해 관청을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아객과 군교·하례들은 신의 감영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죄의 경중을 구분하고 해당되는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장鎭將의 벼슬이 낮기는 하지만 역시 왕명으로 임명한 관원으로 어가御駕를 따르던 신분이 자별한데 어찌 외직에 보임된 것을 따지겠는가. 아객과 지방의 아전들이 왕명을 받고 어가를 따르던 관원을 침범하고 심지어 붙잡아서 끌고다니는 것도 부족하여 행장의 물건까지 빼앗았다고 하니 예전에 들어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근래 나라의 기강이 깡그리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장기 근무하는 변장邊將이 연도의 고을에 머리를 내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미 들었고 보면 대체를 따져 처리해야 될 문제이다. 어찌 예사로운 일로 처리하겠는가.

당해 권관이 내려간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 아니 무슨 생각으로 마음을 다해 덮어두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억지로 장문狀冊하는가. 감사의 놀라운 행위는 파직시키고 잡아다가 다스리는 것으로도 별이 가볍지만, 다만 현재 주관하는 일이 있기에 이를 충분히 참작해 준다. 당해 감사 서용보를 함사緘辭하여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라. 사헌부 대간들을 폐초하여 성문을 닫기 전에 추궁하는 편지를 발송하여 공초를 받게 하라.

이른바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기백箕伯을 시켜 잡아다가 엄중하게 죄를 다스린 다음 마마해馬馬海에 하례와 군졸로 채워 보낼 것이며 함께 말을 타고 간 여러 사람들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당해 목사는 애당초 두려워하거나 자수하지 않았고 감영의 관문關門을 받은 처지에 감히 인형을 일컬은 것은 구구절절 방자한 노릇이다. 신대곤이 휴대한 밀부密符는 선전관을 보내어 빼앗아 오고 역시 기백을 시켜 대동강가에 크게 위엄스런 자리를 펼쳐 놓고 잡아다가 엄하게 곤장을 친 다음 장계를 올리도록 하라. 그리하여 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조정 관원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조정을 존중하는 것이 됨을 알게 하라” 하였다.

88

암행어사가 파주목사의 파출을 요청하다 1794년(정조 18) 11월 16일

경기 각 읍의 암행어사와 적간 사관摘奸史官에게 별도로 유시하기를, 【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豐德의 어사는 홍낙유洪樂游이다.】… 고양·파주·장단·풍덕 4개 읍의 어사 홍낙유가 서계하기를, “파주목사 조택진趙宅鎭은 호를 뽑는데 누락한 것이 많아서 고을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하며, 수미需米를 퇴짜를 놓아 거리에서 소리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견책하여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장단부사 이진익李鎭翼은 호를 뽑는 것을 전적으로 아전과 향임에게 맡겨서 조세를 견감해 주면서 빼앗는 것이 많았으니, 재해를 입은 흉년의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요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고 … 상이 시·원임대신, 각신, 이조·병조판서, 비국의 유사당상, 경기감사 및 어사 등을 소견하였다. … 이조판서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파주목사 조택진과 장단부사 이진익은 어사의 서계 중에서 이미 논열하였으니, 아울러 파출하고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로 다시 물을 만한 일이 없으니 잡아다 처리하는 것은 논하지 말고 조택진에게는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기관찰사가 황희의 묘역이 허술하다고 장계를 올린다 1799년(정조 23) 9월 17일

경기관찰사 서정수徐鼎修가 장계하기를,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의 무덤을 쓴 산이 파주坡州 오리곶면烏里串面에 있는데 지금 그 후손이 매우 가난하여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허술하고 무덤을 지키는 종 하나로는 나무를 잘라가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연석에서 중신重臣이 아뢰는 말로 인하여 호소한 것이 매우 외람되고 일을 담당하는 자가 직계손이 아닌 줄은 알았으나 묘역에서 나무를 베고 소를 방목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아 소나무와 오동나무들이 다 없어짐으로써 익성공의 무덤을 쓴 산의 체모가 지금 이처럼 묵었다는 말을 듣고 보니 조정에서도 오히려 괴롭고 한탄스러운데,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익성공의 모든 자손들은 자책하는 마음이 더욱 어떻겠는가. 그들로 하여금 즉시 조정에 들어와 하직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찾아가서 성묘한 뒤에 우거진 잡초를 제거하고 나무가 드문 곳은 옮겨 심어 보충함으로써 봉분의 주위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누구에게 물어 보지 않아도 익성공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 앞을 지나가는 자는 반드시 숙연해질 것이고 그 주변에 사는 자는 반드시 보호해 주어 이전처럼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이다. 경은 이 판부를 가지고 그 집안의 문장門長을 불러 일러주고 아울러 지방관을 엄중히 신칙하여 옛날의 어진이를 추모하는 생각을 잊지 말도록 하라는 뜻으로 감사에게 회답하라” 하였다.

90

사인 김한규의 처 조씨에게 열녀 정려질을 내리다 1812년(순조 12) 3월 13일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의 경외京外의 충·효·열의 문서’를 정부政府에 보고했는데, 등급을 나누어 초계抄啓하였다. … 열녀 정려질烈女旌閭秩【… 파주坡州 고 사인 김한규金漢奎의 처 조씨趙氏】

91

학생 이연희의 아내 최씨를 열행으로 복호하다 1816년(순조 16) 6월 8일

예조에서 여러 도의 유생들이 올린 글로 인하여 도의 조사를 거친 뒤에, … 파주坡州 학생 이연희李演羲의 아내 최씨崔氏 …는 열행烈行으로 모두 복호復戶해줄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92

파주군수 이몽태의 충절에 대해 증직하다 1816년(순조 16) 8월 26일

이조와 예조에서 임금이 거동할 때에 올린 글에 대해 회계回啓하였는데, … 파주坡州 고 군수 이몽태李夢臺의 충절에 대해 모두 증직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재결을 마음대로 처리한 파주 등 12읍 수령의 처벌을 요청하다 1826년(순조 26) 1월 25일

호조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 을유년 조 연분年分 성책成冊을 가져다 상고하건대, 파주坡州 등 12읍에 재결災結을 분표分俵한 수효가 실제의 논畚 원총수元總數보다 더함이 자그마치 9백 50결結에 이르렀습니다. 각 궁방宮房의 면세답免稅畓은 도로 출세出稅하는 것으로 기록하여 모두 재탈災頽로 돌려 놓았으며, 호조戶曹의 출세전出稅田은 새로 면세免稅하는 것으로 기록하여 마음대로 실제의 총수를 감하였으니, 일이 몹시의 흑됩니다.海道該道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물으니, 말하기를, ‘면세전의 재상災傷은 급재給災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획급劃給할 수 있는 논이 없으니, 그 형편이 밭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대개 급재의 법은 스스로 한계가 있으므로, 각양各樣의 무세無稅와 면세는 모두 제외시키고, 다만 그 세금을 내는 실답實畓을 전제한 가운데 거론擧論해야 합니다. 만약 12읍의 재상災傷이 참으로 출세할 실답보다 지나치고 각 궁방의 면세로 과연 수납收納할 방도가 없다면, 마땅히 해읍該邑에서 순영巡營에 논보論報하여 급대給代하기를 장청狀請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곧 별도의 명색名色을 만들어 마음대로 스스로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혹은 도로 출세를 한다느니, 혹은 새로이 면세를 한다느니 하면서, 심지어는 면세하는 논을 출세하는 것으로 옮겨 만들면서 아무 까닭 없이 급재하였고, 출세하는 밭을 면세하는 것으로 옮겨 만들어 어려움 없이 총수를 감하였으니, 법례法例로써 헤아려 보건대 절대로 부당합니다. 그리고海道該道에서 비록 각 궁방의 무토 면세無土免稅를 충납充納할 곳이 없다고 핑계대어 무토 면세의 밖에 또 다시 급재하고 급대給代한 것이 있으며, 파주坡州·장단長湍·지평砥平 3읍邑에는 궁방과 균역청均役廳의 유토 면세有土免稅도 혼동混同하여 급재給災한 것이 있었고, 적성積城은 면세한 본래의 전결에 수효를 더하여 함부로 기록하였으며, 장단은 면세한 것이 없는 것을 허위로 침입添入하여 만들어서 구차하게 그 9백 50결結의 수효를 채웠으니, 이는 그 급제한 것이 어느 곳에 돌아갔으며, 그 급대給代한 것은 어느 땅에 소속하였는지, 거행한 바가 착란錯亂됨이 이와 같이 낭자하였으니, 청진대 파주·장단·통진通津·부평富平·안산安山·교하交河·양근楊根·마전麻田·적성·연천漣川·지평·포천抱川 등 읍의 수령을 잡아다 문초하여 정죄定罪하고, 그 착란하도록 맡겨두어 능히 살펴서 단속하지 못한 해당 도신道臣은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며, 재결災結에 가표加俵한 것은 모두 낱낱이 실지대로 환원시키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그리고 하교하기를, “이로 인하여 생각하건대, 재결에 대한 정사는 본래 스스로 엄격히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도신道臣과 수재守宰가 마음대로 편리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를 주어야 하나, 이미 분표한 재결을 다시 실제로 환원하게 한다면 도리어 백성을 소요하게 할 염려가 있으니, 차라리 실수된 의리에 부칠지언

정 실제로 환원하는 한 조항은 특별히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94

능역에 백성을 사역시킨 파주의 환곡과 전세 등을 감하다 1835년(헌종 1) 1월 3일

파주坡州의 옛 환곡還穀 및 계사년·갑오년의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을 감할 것을 명했다. 능역陵役に 백성을 사역使役시켰기 때문이다.

95

굶주린 기민을 진휼하다 1839년(헌종 5) 6월 4일

경기도京畿道에서 진휼賑恤을 마치고 장계하기를 “파주坡州 등 관청에서 진휼한 16개 고을은 기민飢民이 24만 4천 9백 6구口이었고, 인천仁川 등 위급함을 구제한 15개의 읍·진鎭은 기민이 5만 4천 8백 42구였는데, 진자賑資에 든 각종 곡물은 2만 3천 4백 93석石 9두斗 5승升 영馨이었습니다” 하였다.

96

파주·교하 등 4읍의 성향을 제감하다 1842년(헌종 8) 3월 11일

하교하하기를, “선침仙寢을 삼가 알현하고 친히 몹시 사모하는 마음을 뺐으나, 연로沿路에 있는 백성과 고을의 폐弊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주楊州·고양高陽·파주坡州·교하交河 4읍의 금년도 성향城餉을 특별히 제감除減하도록 하라” 하였다.

97

인릉의 천봉에 수고한 파주 등지의 환곡을 탕감하다 1856년(철종 7) 10월 12일

하교下敎하기를, “인릉仁陵을 옮겨 장사지내어 아주 편안하게 하였으니 처창悽愴한 마음과 다행스러운 생각이 번갈아 간절하다. 해마다의 큰 역사役事에 기민畿民들이 힘을 다하여 분주奔走하였으니 이미 가엾은 생각이 극도에 달했는데, 하물며 이 교하交河·광주廣州의 두 지경에서는 그 피곤한 바가 다시 어떠한 겠는가? 금년의 환모還耗는 절반折半을 탕감蕩減하고, 인로靑路가 지나간 파주坡州·고양高陽·양주楊州·시흥始興·과천果川의 다섯 고을은 5분의 2를 탕감하며,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3분의 1을 탕감하여 조가朝家에서 민휼憫恤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98

파주목에 흉전을 내리다 1863년(철종 14) 7월 7일

파주목坡州牧의 표퇴한 가호에 흉전을 베풀었다

99

웅진 수영에서 새로 떼준 삼세 가운데 일부를 파주에 획급하도록 하다 1866년(고종 3) 11월 10일

또 아뢰기를, “파주坡州는 비단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の 요충지일 뿐 아니라 연해의 포구들에서 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때에 계엄戒嚴을 타음他邑보다 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쇠잔한 지대여서 군제軍制가 매우 허술합니다. 웅진 수영釜津水營에 새로 떼준 삼세參稅 중 300근斤을 본 목牧에 이획移劃하여 방어를 위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곡防禦穀은 절대로 다른 데 유용하여 쓰지 말 것을 경기京畿의 감영監營에 분부하여 정식定式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0

파주목의 전세를 대납하도록 하다 1867년(고종 4) 1월 25일

파주목坡州牧의 전세田稅를 상정기詳定價로 대납代納하도록 하고, 대동미大同米는 저장하여 두었다가 전량을 획부劃付하여 이전대로 이식을 취하고, 포함난 향곡餉穀은 다시 5년간 특별히 뒤로 물려주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본 파주가 바야흐로 군직을 설치하고 무예를 시험 보일 경우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줄 지방支放을 형세상 배비排比하기가 어렵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101

경기감사가 파주 방영의 군제가 소략하다고 보고하다 1867년(고종 4) 3월 2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京畿監司 이의익李宜翼이 올린 장계狀啓에, ‘파주坡州 방영防營의 군제軍制가 극히 소략하니 따로 군관 자리 50개를 설치하고 과거를 실시하여 권장하며 활쏘기와 총 쏘기 두 가지 기예에 대해 별도로 절목을 만들어서 매년 파주목에서 거수居首한 사람을 각각 1명씩 뽑아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하게 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허락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실행하여 무예를 시험 보는 것은 실로 격려하고 권장하는 정사에 부합되는 만큼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2

파주, 장단 등의 별효사 도시를 선천과 부천된 한량에게도 응시하도록 하다 1868년(고종 5) 7월 6일

총융청總戎廳에서 아뢰기를, “본청에 속한 남양南陽·파주坡州·장단長湍의 별효사別効士 도시都試는 오로지 부장으로 천거(部薦)한 한량閑良에게만 응시시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바람에 선천宣薦된 한량들이 울분을 품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마침내 해당 고을이 논보論報하는 일까지

도 있게 되었으니 조정에서 강무講武하는 본의와 매우 어긋납니다. 이제부터 세 진영의 별효사 도시를 선천과 부천된 한량에게 보이도록 구례舊例를 회복시켜 통용해서 응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만약 혹 불법으로 응시하는 폐단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의당 과거장에서 작간을 부린 율로 시행할 것이며 마땅히 해당 수령守令도 계파畧한다는 내용으로 정식定式을 삼아서 시행하소서” 하니, 윤택하였다.

103

재해를 당한 파주의 3개 면을 재해면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다 1872년(고종 9) 3월 8일

파주坡州에서 출발하여 고양군高陽郡 주정소畫停所에 이르렀다.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각각의 임무를 맡은 차시원差使員을 거느리고 입시入侍하였다. 박영보가 아뢰기를, “경기의 서쪽에 있는 여러 고을들이 거듭 흉년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두터운 은택을 입었고, 이번에 특별히 5천 냥을 내려주신 것은 더욱더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음하던 백성들이 곧 안착하게 되었으므로 감격의 칭송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주坡州의 마면馬面과 정면井面 두 면과 장단長湍 상류의 한 개 면은 임진강臨津江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날에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재결災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도합 수백 결結이나 됩니다. 이것을 재결로 잡아주지 않으면 세 개의 면은 텅 비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해당 수령에게 명하여 직접 나가 실상을 조사하고 확인하게 하여 재결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하니, 하교하기를, “응당 그대로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는 하속下屬들이 연줄을 놓아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게 마련이니, 충분히 잘 살핀 다음 묘당에 논보論報하여 사실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104

파주 마정과 신속 두 면의 땅은 경작하는 대로 조세를 받게 하다 1872년(고종 9) 7월 10일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의 보고를 보니, 파주坡州의 마정馬井과 신속新屬 두 면에서 허결虛結이 86결 1부 5속이며, 장단長湍 상도면上道面의 강물에 휩쓸려 나간 전지에 대해 백지징세白地徵稅한 것이 면적이 79결 45부 6속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든 160여 결에 대해서는 10년을 기한으로 특별히 조세를 중지시켰다가 강천江川의 형세가 바뀌어 경작할 만한 땅이 생기게 되면 기경起耕하는 대로 조세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였다.

105

파주와 장단의 허결을 조처하다 1882년(고종 19) 9월 10일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경기감사(京畿監司) 홍우창(洪祐昌) 또 보고하기를, ‘장단(長湍)과 파주(坡州)의 허결(虛結)을 특별히 10년 동안 조세를 중지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기한이 왔으나 환기(還起)한 곳은 없고 몇 해째 홍수가 나서 도리어 사태(沙汰)가 나 백지(白地)가 더 많아졌기에 차마 책징(責徵)할 수 없습니다. 장단부(長湍府)에서 그전에 사태가 난 답결(答結) 79결(結) 45부(負) 6속(束)과 새로 사태가 난 답결 9결 65부 6속, 파주목(坡州牧)의 답결 86결 1부 5속에 대해서 모두 10년 동안 더 기한을 늘려 조세를 바치는 것을 중지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이 두 고을의 진결(陳結)에서 생판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기한하여 조세를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은 이미 다 왔지만 아직 개흙(改糶)이 생긴 곳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요청하는 것이니, 이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백성들의 숨은 고통과 관계되므로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狀啓)의 요청대로 다시 5년 동안 더 연기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6

파주의 잠삼 죄인을 체포하다 1886년(고종 23) 12월 28일

좌변포도청에서 아뢰기를, “잠삼(潛參) 문제는 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일입니다. 기찰 포교 장수명(張壽命)이 파주(坡州) 방곳리(方串里) 주막에서 잠삼 죄인 서인석(徐仁石)을 증거를 잡아 체포하였는데, 그의 외삼촌인 정홍운(鄭弘允)이 본읍에 사는 전 수봉관(前守奉官) 김교성(金敎成)을 부추겨 동민(洞民)들을 대거 동원해서 자기 집으로 잡아들여 결박해 놓고 사정없이 때리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통부(通符)를 빼앗고 홍사(紅絲)를 끊었습니다. 서인석과 정홍운은 그 길로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며칠 뒤에 빼앗았던 통부를 사람을 시켜 전달해 보냈으니 일이 아주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

107

파주, 장단 등의 조세를 돌봐주도록 아뢰다 1887년(고종 24) 9월 18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김명진(金明鎭)이 보고한 것을 보니, ‘파주(坡州), 장단(長湍), 고양(高陽) 세 고을의 허결(虛結)에 정세(停稅)하는 것을 연기해준 기한이 이미 다 끝났는데 눈발이 홍수에 씻겨져 나가 개간할 가망이 없는 만큼 파주의 토지 86결(結) 1부(負) 남짓, 장단의 토지 89결(結) 11부(負) 남짓, 고양(高陽)의 토지 85부(負)에 대해 모두 다 다시 10년을 한정해서 조세를 바치는 것을 연기하여 주소서’ 라

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시종 극진하게 돌봐주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5년을 한정해서 감면해 주고 살살이 조사하여 결총結總을 회복시키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8

결소읍 파주에 신묘년 분의 전세와 대동미를 3분의 1로 견제하도록 하다 1891년(고종 28) 5월 1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결소읍結所邑 파주坡州는 신묘년 분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의 3분의 1로 견제躉除하고, 두 고을에서는 그 밖의 잡역雜役도 도신道臣에게 적당히 덜어주게 하여 전례 없는 조정의 고마운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9

파주목에 진영을 설치하고 목사가 토포사를 겸하도록 하다 1891년(고종 28) 8월 30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조병식趙秉式의 장계狀啓를 보니, ‘파주목坡州牧 혜음령惠蔭嶺은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도적 무리들의 출몰이 다른 곳보다 심하여 백성들이 안착할 수 없으니, 특별히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규찰하고 단속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영嶺의 좁은 목은 평탄한 육지와는 달라서 도적의 무리들이 숨기 쉬운데 약탈이 더욱 심한 것은 종종 이 때문입니다. 듣고 나니 놀랍습니다. 관제官制의 증설增設은 비록 신중히 해야 할 일이지만, 만일 찾아내어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방도가 있다면 굳이 윤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신道臣의 장계狀啓에서 요청한 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히 생각하고 한 것이니, 해당 목사牧使가 토포사討捕使를 겸하는 것으로 하비下批하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0

교하를 파주에 소속시키다 1895년(고종 32) 1월 14일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교하交河를 파주坡州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11

파주군에 있는 흥원의 경계를 사정하다 1914년 5월 6일
인원을 파주군坡州郡에 파견하여 흥원興園 경계를 사정査定하였다.

이왕직에 소속된 관리를 파주군과 고양군에 보내어 각 능원의 묘소에 부속된 국유임야를 구입하도록 하다 1917년 2월 19일

이왕직李王職에 소속된 관리를 고양군高陽郡과 파주군坡州郡에 파견하여 각 능원陵園의 묘소에 부속된 국유 임야를 구입하도록 명하였다.

『일성록日省錄』*

1

파주의 지세를 간심하다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23일

○ 내가 김기량 등에게 묻기를, “가서 여러 곳을 간심해 보니 어떻던가?” 하니, 김기량이 아뢰기를, “계좌癸坐와 축좌丑坐는 모두 흙이 없었지만 연운年運이 이롭지 못하며, 을좌乙坐는 수세水勢가 홍릉弘陵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홍릉은 어떻던가?” 하니, 김기량이 아뢰기를, “별다른 흙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만, 수뇌首腦가 바르지 않은 듯하고 또 뒤가 벗어나 있습니다” 하였다. … 내가 이르기를, “지난번에는 어찌 아뢰지 않고서 재차 간심한 뒤에 이제 와서 비로소 아뢰는가?” 하니, 이형윤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황송해서 감히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서쪽에 가서 간심한 곳 중에서는 몇 곳이나 있던가?” 하니, 홍봉한이 아뢰기를, “파주坡州는 좋지 않고, 장단長湍은 좋았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일 여러 지사地師를 모아 놓고 상세하게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2

파주와 장단의 가을철 조련을 잠시 중단하게 하다 1777년(정조 원년) 7월 11일

○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수어사 홍낙성洪樂性의 장계에서는, ‘본청 소속의 속오東伍와 아병牙兵 등이 올 가을에 함께 조련하는 것에 대해 품지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올해 경기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

* 『일성록日省錄』: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조정과 내외의 신하에 관련된 일기로 국보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다.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현재 2,329책 모두가 전하는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을 수 없었습니다. 총융사 이한응李漢膺의 장계에서는, ‘본청 소속의 네 진鎭 가운데 파주坡州와 장단長湍이 올 가을에 돌아가면서 조련하는 일에 대해 품지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올해 경기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강화유수 이복원李福源의 장계에서는, ‘본영 및 소속 네 영의 군병이 올 가을에 함께 조련하는 것을 실행하는 데 대해 품지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가을걷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때에 경기 백성뿐만 아니라 해서海西의 군병들이 바다를 건너 조련에 참가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통제사 이창운李昌運의 장계에서는, 올 가을 삼남三南의 수상 조련은 각기 그 영의 앞바다에서 하는 것과 본영의 주사舟師는 한산閑山의 앞바다에서 실행하는 일에 대해 청하였고, 경기수사 이방일李邦一의 장계에서는, 경기와 해서의 주사舟師가 올 가을 수상에서 조련을 실행하는 일에 대해 청하였고, 영종 첨사永宗僉使 오재희吳載熙의 장계에서는, 올 가을 수록 조련을 실행하는 일에 대해 청하였습니다. 영남과 호남은 이미 지난해에 수상 조련을 실시하였고, 호서와 경기 및 해서는 가을걷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 걱정스러우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아울러 하교하기를, “우선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3

소령원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내다 1778년(정조 2) 8월 20일

○ 내가 이르기를, “파주坡州의 일은 지극히 놀랍다. 어제 선전관에게 파주의 군기軍器를 적간擘好하도록 하였는데, 군기고軍器庫의 열쇠를 처음에는 내어 주려고 하였다가 갑자기 또 가지고 가서 창고를 열지 않았다. 또 마패馬牌를 가짜 마패라고 하였다 하니, 어찌 기강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참으로 대단히 놀랍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파주목사 박종익朴宗益을 우선 개차하고, 그 대임을 구전으로 가려 차임하라” 하였다.

4

남한산성의 묵은 쌀을 파주와 장단에 나누어주도록 하다 1779년(정조 3) 2월 14일

남한산성南漢山城의 묵은 쌀을 부근의 고을에 나누어줄 일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제주 송덕상이 아뢰기를, “이러한 춘궁기를 맞아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가만히 듣건대, 남한산성의 묵은 저지미儲置米를 부근의 여주驪州, 이천利川, 음죽陰竹, 용인龍仁, 지평砥平, 양근楊根 등의 고을에 자원하는 대로 나누어주고 가을 추수 후에 모곡耗穀을 제외한 수량을 다 받아들인다면 아마 백성들은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관습에도 역시 이익이 있을 것이라 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장단長湍이나 파주坡州와 같이 수로水路가 있는 고을은 비록 부근의 고을이 아니라 할지라도 쌀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여러 고을들과 마찬가지로 나누어주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5

파주와 장단에 굶이 남한산성의 쌀을 나누어주지 않도록 하다 1779년(정조 3) 2월 25일

○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죄주 송덕상宋德相이 아뢴 말에 ‘남한산성의 묵은 쌀을 여러 고을에 나누어주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유현儒賢이 진달한 말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서 나누어주었다가 가을이 되어 거두어들인다면 백성들로서는 위급함을 구제해 주는 혜택을 입게 되고 곡식도 새것으로 바꾸어 놓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백성과 고을의 사정을 탐문하고 향곡餉穀을 참작하게 해서 장계로 보고한 뒤에 거행하게 하소서. 장단長湍은 이미 송도 유영松都留營의 관할이어서 원래부터 대흥산성大興山城의 향곡이 있고, 파주坡州도 역시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관할에 속해 있다. 더구나 장산長山에 두 고을의 원환곡元還穀을 비축하고 있으니, 장단과 파주가 혹시 양식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라면 도신으로 하여금 송도 유영 및 충용사와 의논하게 하여 편리한 쪽으로 구호하도록 하면 되지 구태여 멀리 남한산성의 곡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향곡을 더 나누어주지 않아서는 안 될 곳이 있다면 장계로 보고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6

죄인 조윤걸 등의 사형을 감하여 의처하라고 명하다 1780년(정조 4) 1월 16일

○ 형조가 아뢰기를, “경기감사의 계본啓本에, 파주坡州의 죄인 조윤걸 등의 살육殺獄 사건입니다. 세 형제가 서로 원범元犯이라고 다투니 가볍게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조本曹에 이송移送하여 품처稟處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실로 불쌍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본조에서는 멀리서 헤아려 결정할 수 없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더 자세히 조사하게 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세 형제의 목숨을 끊는 것은 법에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안詞案을 참고하고 그 실정을 따져 보면 용서해줄 만한 단서가 있을 것이다. 조윤걸, 조윤열曹允烈, 조윤숙曹允熟에 대해 특별히 모두 사형을 감하고, 이어 본조에서 의처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7

화재를 당한 파주목의 민가에 각별히 조치하여 속히 안주하게 하다 1787년(정조 11) 2월 24일

파주목坡州牧의 화재를 당한 민가에 각별히 고루 나누어주어 속히 안주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이 파주목의 민가 11호가 화재를 당하였다고 치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한 것이다.

8

선전관을 보내 파주 등지의 농사 형편을 살피게 하다 1787년(정조 11) 6월 17일

○ 선전관 이신경이 장계하기를, “고양의 농사 형편은, 본군本郡의 8개 면面 중 산에 의지하고 있는 3개 면의 각 곡식은 풍작의 조짐이 있었으나 강에 연접해 있는 5개 면은 드문드문 침수된 환난이 있었습니다. 모택은, 수확한 것이 썩어서 상하기도 하였고 밭에 있던 것이 떠내려가기도 하였으며, 받지 못한 모환은 70석이었습니다. 교하 역시 입지가 산을 의지하거나 물에 연접해 있어서 농사 형편이 고양과 차이가 없었으며, 받지 못한 모환은 절반이었습니다. 파주는, 논밭이 모래에 덮이거나 포락浦落된 곳 이외에는 전답의 각 곡식이 바야흐로 대풍大豐의 가망이 있었고, 모택은 비가 내리기 전에 거의 다 수확하였으며, 받지 못한 모환은 200여 석이었습니다. 장단의 농사 형편은 파주 등과 차이가 없었으며, 받지 못한 모환은 100여 석이었습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

파주목 향교 수리시 고유제 등에 쓸 향축을 내려보낼 것을 청하다 1864년(고종 1) 7월 28일

○ 예조가 아뢰기를, “조금 전에 경기감사 조재응趙在應의 공문公文을 보니, ‘파주목坡州牧 향교성전聖殿의 가운데 칸이 서까래가 썩고 흠이 무너졌으며 비가 새는 곳이 많아 보기에 아주 민망스럽다. 이에 이번 가을의 석채釋菜 때 사유를 고하고 개수하고자 하니, 고유제告由祭와 이안제移安祭, 환안제還安祭에 쓸 향축香祝을 예조에서 계품하여 내려보내 달라’ 고 하였습니다. 파주목 향교의 성전을 개수하는 것을 이번 가을의 석채 때 사유를 고하고 거행하여야 하겠으니, 고유제, 이안제, 환안제에 쓸 향축을 즉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되, 축문祝文에다 그런 내용을 넣어 지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왕명을 담당하던 기관인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취급하였던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책으로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3,243책 모두가 전하는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2

파주목의 향곡을 전세 등의 잉여분으로 취하는 일을 정묘년으로 1년을 특별히 물려줄 것을 청하는 의정부의 계 1864년(고종 1) 11월 17일

○ 유만원이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금방 경기감사 조재응趙在應의 보고를 보건대, 파주목사坡州牧使 유협柳夾의 첩정牒를 낱낱이 열거하여 ‘본목의 향곡餉穀이 다 포탈되어 기미년부터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 중 잉여분으로써 7년까지 충당하기로 배정하였으나, 기미년 치인즉 잉여분을 미처 취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상납하였으므로 저절로 1년 치의 축이 났고, 또 병인년 치는 이미 군전軍錢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썼으니, 다시 정묘년으로 1년을 물려 정하여 기한에 맞추어 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 목이 잔패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형국은 연전에 구제를 하여 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나, 중간에 또 폐단이 생겨서 전년의 그 효과마저 다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와 대동미 중에서 잉여분을 취하도록 한 것은 조정에서 이미 허가한 일인 만큼, 정묘년으로 1년을 특별히 물려주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3

파주의 방어곡을 다른 곳에 옮겨 쓰지 못하게 하다 1866년(고종 3) 11월 10일

○ 의정부가 아뢰기를, “파주坡州는 양서兩西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강 연안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러한 때에 다른 고을보다 더욱 방비를 엄하게 해야 할 것인데, 본래 가난한 고을이라 군사 제도가 매우 허술합니다. 그러니 웅진瓮津의 수영水營에 새로 붙여준 삼세蔘稅 중 300근을 파주로 옮겨주어 방어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어곡防禦穀은 절대 다른 곳에 옮겨 쓰지 못하게 하라는 뜻을 기영坵營에 분부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4

파주의 포흠난 향곡을 대동미로 채우는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다 1867년(고종 4) 1월 25일

○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이의익이 보고한 바를 보니, 파주목사坡州牧使 유환柳院의 첩정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말하기를, ‘파주의 포흠난 향곡餉穀을 채워 넣을 기약이 없는데, 현재 별도로 군식을 설치하고 날마다 재주를 시험 보일 경우, 장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형세상 나누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세田稅는 상정詳定한 데에 따라서 돈으로 대신 납부하고, 대동미는 저장하여 두었다가 전부를 떼어 주어 이식을 취하게 하는 일을 무진년부터 10년간 뒤로 물려주어 종시토록 보살펴 주는 은택을 받게 해달라’ 고 하였습니다. 기한이 왔는데 갑자기 늘려주는 것은 정상적인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고을의

사세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5년간 특별히 기한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5

파주목 향교의 성전을 개수할 때 고유제 등에 쓸 향축을 내려보낼 것을 청하다 1867년(고종 4) 8월 2일

○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이의익李宜翼의 공문公文을 보니, ‘파주목坡州牧의 향교鄉校 성전聖殿이 정간正間에 비가 새고 도리목道里木이 부러지고 서까래 나무가 썩어 내려앉았다. 이번 가을 석채釋菜 때 고유告由를 겸하고 개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니, 고유제告由祭·이안제移安祭·환안제還安祭에 쓸 향과 축문을 본조에서 계품하여 내려보내 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주목 향교 성전의 개수를 이번 가을 석채 때 고유를 겸하고 거행해야 하겠으니, 고유제·이안제·환안제를 지내는 데 쓸 향과 축문을 해사로 하여금 즉시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고, 축문의 내용을 짓는 일도 함께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6

파주목 사직단의 신실을 수리할 때 쓸 향축과 폐백을 마련하여 내려보낼 것을 청하다 1869년(고종 6) 5월 22일

○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이의익의 공문을 보니, ‘파주목 사직단의 신실神室이 세월이 오래되어 기울어서 언제나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지금 수리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신주를 옮겼다가 되돌려 봉안하는 제사의 향축과 폐백을 본조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파주목 사직단의 신실을 수리할 때 먼저 그 사유를 고하고 신주를 옮겼다가 되돌려 봉안하는 제사의 향축과 폐백을 즉시 해사로 하여금 사례를 살펴서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고, 편리한 대로 날짜를 잡아 설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7

파주목 향교를 수리할 때 쓸 향축을 내려보낼 것 등을 청하다 1871년(고종 8) 3월 24일

○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박영보朴永輔의 공문을 보니, ‘파주목坡州牧 향교의 성전聖殿, 동서무東西廡 이하 각 곳이 퇴락하여 지금 수리하려고 하니, 고유제告由祭, 이안제移安祭, 환안제還安祭의 향축을 본조에서 계품하여 내려보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파주목 향교의 성전을 수리할 때 고유제, 이안제, 환안제로 쓸 향축을 해사로 하여금 전례대로 마련해 내려보내도록 하고, 편리한 대로 날을 잡아 설행하도록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8

파주의 별호사 도시에서 수석을 한 사람들을 별단에 써서 들이다 1883년(고종 20) 11월 21일

○ 총융청이 아뢰기를, “파주坡州의 별호사別號士 도시都試에서 거수居首를 차지한 사람들의 별단을 써서 들이며, 그 나머지 입격한 무리들에게 상을 주도록 각기 해당 고을에 분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南陽의 별포군別砲軍 도시인都試人을 별단으로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9

파주 등의 별호사 도시를 전례대로 설행하다 1886년(고종 23) 10월 3일

○ 또 친군해방영親軍海防營의 말로 아뢰기를, “전 총융청 소속 경기 10개 읍의 속오군束伍軍을 병부兵符를 내어 본영에 이속시키고, 그 가운데 파주坡州, 장단長湍, 남양南陽 세 진영의 별호사別號士 도시都試를 전례에 의거하여 설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10

파주목의 사직 신실을 수리할 때 쓸 향축을 규례대로 내려 보내줄 것을 청하다 1887년(고종 24) 3월 11일

○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김명진金明鎭의 이문移文을 받아 보니, ‘파주목坡州牧의 사직社稷 신실神室이 오래 되어 무너져 지금 중수하고 있는데,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에 쓸 향축을 본조에서 계품하여 내려보내 주소서’ 하였습니다. 파주목의 사직 신실을 수리할 때 고유제告由祭, 이안제, 환안제에 쓸 향축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규례에 비취 마련하여 내려보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11

파주 등 세 고을의 조세를 5년 동안 감면해줄 것을 청하다 1887년(고종 24) 9월 18일

○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김명진金明鎭이 보고한 것을 보니, 파주坡州·장단長湍·고양高陽 세 고을의 첩정을 낱밭이 들어 말하기를, ‘허결虛結에서 조세를 거두는 것을 정지해준 기한이 이미 다 되었는데, 논밭이 유실되어 개간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주목坡州牧의 유실된 논 86결 1부負 5속束, 장단부長湍府의 예전에 유실된 논과 근래에 유실된 논 89결 11부 2속, 고양군高陽郡의 물이 흘러와서 하천을 이룬 논밭 57결 85부 9속에 대하여 모두 10년 동안 더 조세를 바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또 이번에 기한을 늘려주는 일은 중요한 나라의 조세로 볼 때 실로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시종 극진하게 돌보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5년 동안 조세를 감면해 주고 철저히 결총結總을 회복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12

파주 신묘조의 전세와 대동미를 감면해줄 것을 청하다 1891년(고종 28) 5월 11일

○ 권응선이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행행 때 백성들을 동원시킨 데 대해서는 매번 돌보아주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 더욱 다르니, 본목本牧과 결소結所였던 고을의 전세田稅와 대동米大同米, 그리고 잡역雜役을 적당히 감면하도록 묘당에서 경기 감영에 분부하도록 하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의 노고를 깊이 염려하여 특별히 성의를 다하고 측은히 여기는 은혜로운 비지를 내리셨으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어찌 찬양하고 칭송하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주楊州의 전세와 대동미는 영원히 본목에 때주어 일정한 액수를 정해 고을의 비용으로 삼도록 하였으니, 세를 감면하는 한 가지 조항은 의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년분의 호포戶布와 환자곡의 이자에 대해서만 아울러 전부 탕감해 주고, 결소였던 고을인 파주坡州는 신묘조辛卯條의 전세와 대동미 3분의 1을 감면해 주고, 전세와 대동미 이외 다른 잡역 또한 도신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견감해 주도록 하여 조정에서 드물게 베푸는 후덕한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13

파주 등의 군무를 좌우 영장이 시행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1893년(고종 30) 2월 27일

○ 또 내무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친군경리청의 초기를 보니, ‘본청 소속 전영장 남양 부사前營將南陽府使 및 그 관하인 대부도大阜島의 진鎮이 혁파되어 총제영總制營에 소속되었으니, 대임을 차출하는 일을 내무부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관하 읍진邑鎭을 지금 다른 군영에 옮겨 붙였으니 꺾원이 나는 대로 대임을 차출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경기 내의 각 고을은 모두 원래 소속된 관할이 있으니, 저곳을 혁파하여 이곳으로 옮기면 반드시 불편한 점이 많아질 것입니다. 군제軍制는 중요한 것이니,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또한 때에 따라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청該廳의 관할인 파주坡州와 장단長湍의 군무軍務는 좌우 영장이 시행하게 하되 전영장·중영장·후영장을 우선 감하하고, 전에 남양부南陽府에서 관할했던 양천陽川을 지금부터는 파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14

파주와 장단의 경리청 중영장과 후영장을 좌영장과 우영장으로 고치다 1893년(고종 30) 3월 10일

○ 또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내무부의 초기로 인하여 경리청 관할인 파주坡州와 장단長湍은 좌영장左

營將과 우영장右營將을 두도록 하고 전영장前營將, 중영장中營將, 후영장後營將은 우선 감하하고, 종전에 남양南陽 관하管下였던 양천陽川을 지금부터 파주에 이속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파주와 장단의 경리청 중영장과 후영장을 좌영장과 우영장으로 고치고, 남양의 진관鎭管인 양천을 파주의 진관으로 고쳐서 모두 하비하겠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15

교하군수 강건련이 파출되었으므로 교하읍을 파주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다 1895년(고종 32) 1월 14일

○ 총리대신과 내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교하군수交河郡守 강건련姜健連이 삼중三中을 맞아 파출되었으니, 해읍을 파주坡州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16

재판을 위해 파주군수 이종호를 잡아 대기시키다 1897년(고종 34) 5월 11일

○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한규설韓圭謨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고등재판소 검사 이휘선李徽善의 보고를 보니, ‘음력 병신년 3월 파주군坡州郡 부속 교하交河 지역의 백성들이 적당賊黨을 포획하여 관청에 바쳤다가 도로 꺼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파주 군수 이종호李宗鎬가 이를 막지 못하고 해당 적당들을 마침내 도로 꺼내주어 저들로 하여금 멋대로 죽이게 하였다고 하기에 이를 심판審辦하기 위해 이미 잡아다 놓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원이 주임관인 관계로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8조에 따라 삼가 아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臚錄』*

1

농량종자가 부족한 파주 1624년(인조 2) 3월 11일

아뢰기를, “경기감사 한여직韓汝澁의 문보文報를 보니 ‘비[雨]가 흡족하여 풍년들 기미는 있으나 파주坡州·부평富平·양천陽川·김포金浦·과천果川·안산安山·금천衿川 등 읍은 공사公私에 축적蓄積이 없어 비

* 『비변사등록備邊司臚錄』: 조선 중기 이후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처리한 사건을 날마다 기록한 책으로, 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276년간의 등록 273책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단 농량農糧이 어려울 뿐 아니라 종자種子에 있어서도 떨어졌습니다. … 지금 비는 때맞추어 내렸으나 민사民事는 그대로 급박합니다. 중요한 기보畿輿(경기京畿)에 종자가 없는 이유로 진황陳荒(전지田地)를 묵힘 될 형편에 놓여 있으니 자못 염려되옵니다. 이 정조正租를 전량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각관各官에 나누어주도록 하되 환자還上(정부대여곡)로 치부置簿하는 것이 의당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2

파주와 양주의 향화자녀를 심양으로 보내게 하다 1644년(인조 22) 2월 3일

아뢰기를 “심양의 성책成冊에 들어 있는 향화자녀向化子女들 가운데 나이가 차지 않은 어린 아이는 형편상 먼 길을 떠나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내년 봄 날씨가 따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기로 결정하여 그들을 남겨두었으나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 오고 저들의 독촉도 날로 급박하므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광주廣州 향화자녀 7명과 파주坡州·양주楊州의 향화자녀 도합 13명을 두 페로 나누어 보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3

병사를 거느린 파주 등지의 수령 동태를 살피도록 하다 1646년(인조 24) 4월 2일

아뢰기를 “오늘 등대登待할 때에, 동서의 양로에도 걱정스러운 기미가 없지 않으니 헤아려 단속하라는 일에 대해 성상의 전교를 이미 받았습시다. 근처의 관關과 나루에는 각 아문의 군관을 벌써 나누어 보냈습시다. 그러나 동로의 양주楊州 적성積城과 서로의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개성부開城府 등의 지역은 골짜기가 연이어져 있기도 하고 혹 관과 나루가 있기도 하여, 그 형세로 말한다면 보통으로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주와 파주 두 고을의 수령은 모두 관직의 품질品秩이 높은 무변武弁이며 장단 부사長湍府使도 방어사를 겸임하고 있어서, 각기 그들의 수하에는 거느린 친병親兵이 없지 않습니다. 이들을 모든 의심스러운 곳에 나누어 보내어서 유념하여 살피도록 경기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알려져 단단히 타이르도록 하고 개성유수開城留守에게도 마찬가지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4

개시 때에 팔 소 80마리를 파주로 모아들이다 1647년(인조 25) 7월 13일

아뢰기를 “앞으로 있을 개시開市 때에 팔 암수 소 80마리는 경기에서 분양한 것으로서, 이달 15일 파주坡州에 모두 모아 들여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덥고 비가 와 길이 험한 이때에 채찍질하며 몰아갈

적에 조심하여 먹이지 않으면 죽어 넘어지는 근심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도三道(경기·황해·평안도)로 하여금 각기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조용히 단속시켜 이끌고 가서, 각 도의 경계에서 넘겨주도록 하되 폐단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자주 바르게 보고하여 소가 죽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뜻을 각처 감사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5

파주의 전세를 특별히 감해 주도록 요청하다 1649년(효종 즉위년) 9월 15일

아뢰기를 “선혜청의 설치는 비록 산릉山陵·조사詔使와는 관계가 없으나, 근래 기민의 부역이 지나치게 무거워 남녀노소가 도로에서 분주히 내달는 일이 많습니다. 농소의 정역定役은 비록 가법도록 힘쓴다 하나, 자그마한 나무와 한 포기의 풀까지도 모두 민간에서 나옵니다. 백성들도 그 직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알아 감히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또한 매우 가엾습니다. 파주坡州는 산릉이 있는 곳으로써 모든 수요를 본 읍에서 조달하니, 기읍畿邑 가운데 가장 편중된 고통을 받습니다. 신들이 그윽히 헤아려보건대 선혜청이 경기에서 오는 가을 징수할 조세에서 1말을 감하고, 파주 한 읍에는 특별히 금년의 전세田稅를 감하여 성상께서 진출하시는 뜻을 보이면, 민간에서는 모두 기뻐하여 닭 등의 물건을 수납하지 않는 것보다 배나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분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았다.

6

조강 앞바다에 침몰한 배에서 건진 미곡을 파주에서 사용하도록 요청하다 1682년(숙종 8) 11월 29일

아뢰기를 “얼마 전에 경기감사 오두인吳斗寅이 파주목坡州牧에서 강화의 이전미移轉米를 싣고 가던 배 한 척이 통진현通津縣 조강祖江 앞바다에서 침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해야 할 미곡 3백 11석과 선역가미船役價米 16석 및 조租 1백 35석을 모두 건져서, 파주·통진 두 고을과 감색·사공 등에게 사목대로 참작하여 나누어주어 새 곡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변사에서는 이를 복계하고 즉시 새 곡물로 바꾸어 수송하라는 뜻을 분부하였습니다. 잇달아 본도의 보고서를 보니 파주 백성들이 흉년의 곡식이며 침몰한 배에서 건진 미조米租이므로, 모두 나누어 먹은 뒤에 본래의 곡식으로 마련하여 수납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의 곡식은 곧바로 건져서 여름철에 썩은 것과는 다르고 이미 민원에 따라 나누어준 것이라면 그 축난 것과 아울러 수량대로 새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고을은 이전된 곡물과 각종 환곡으로 받아들일 수량이 많아, 만약 연말 이전에 새 곡물로 바꿀 수 없다면 내년 봄에 마련하여 납부하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7

파주와 장단의 군영 중 가까운 고을의 군병을 강도에 분속시키다 1684년(숙종 10) 6월 24일

이달 2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강도江都 본부本府의 군병 원수元數는 매우 적어 방수防守의 소용이 되지 못하니 반드시 다른 곳의 군병을 미리 분속分屬시켜야만 위급할 때 낭패狼狽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도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어 유수 이민서李敏鉉의 상소에서 이 일을 아뢰어 비국에 계하하셨으나 익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려고 아직까지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비변사에 있는 문서를 상고해 보니 정축년 인조 15년(1637) 이후에 본사에서 강도江都和 남한南漢에 분속할 군병을 별단別單으로 올려 재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해서·호서의 군병 역시 분속된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한은 이에 의하여 분속시켜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으나 강도는 그후에 분속한 일이 없었는데 그 까닭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분속하는 것을 반드시 그때에 결정한 규례를 따를 필요는 없겠으나 군병의 총계가 1만 5천여 명은 되어야 모자랄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경기의 군을 중 수원水原의 군병은 숙위군宿衛軍과 같은 의미가 있으니 다른 곳에 분속할 수 없으나 남양南陽·통진通津에 소속된 군병과 장단長湍·파주坡州 두 군영 중에서 가까운 고을의 군병은 모두 강도에 분속시키고, 황해도의 연안延安·백천白川 두 고을은 강도에서 아주 가깝고 충청도의 해미영海美營에 소속된 각 고을은 해로海路로 왕래하면 역시 매우 가깝고 편리하니 이런 곳의 군병을 모두 분속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렇게 마련하여 별단에 써 들어 재가하여 분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우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기왕 다른 도와 다른 고을의 군병을 아울러 통솔하려면 명칭도 있어야 하고 병부兵符도 있어야 하니 종전에 불렀던 진무사鎭撫使의 칭호와 견대하는 병부가 있어야만 절제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8

왕릉 천장에 동원된 파주 등지의 수미를 감해준다 1685년(숙종 11) 10월 15일

아뢰기를 “이번 10월 14일 약방도제조 김수흥과 영의정 김수항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금년에 장단長湍·풍덕豐德 등의 고을이 가장 재해가 심한데 후릉厚陵(정종능)·순릉順陵(성종비 한씨韓氏능)의 사초莎草와 공릉恭陵(예종비 한씨능)의 정자각丁字閣을 중건하는 일과 궁가의 예장을 천장遷葬하는 일들이 일시에 답지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고을의 주민들이 아직도 추수를 못하고 있다 하니 백성의 일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상계서도 이미 이러한 폐단을 하념下念하고 계시지만

대체로 근래에 풍수설이 크게 유행하여 세가 있는 집안은 선뜻 이장을 께함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니 이는 실로 경기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예장을 했던 묘소라도 천장할 때에는 모든 일을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였고, 약방도제조 김수흥이 아뢰기를 '이번 여러 능침의 역사와 예장의 일은 비단 장단과 풍덕 백성들의 고역만이 아니라, 입역立役한 3참 站도 다름이 없으니 민역의 견디기 어려움이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금년의 대동수미大同收米를 특별히 참작하여 감해주어 진흙하는 뜻을 보이시면 아마 조금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니, 상께서 이르시기를 '천장의 번거로움이 요사이처럼 심할 때는 없었다. 이 뒤로는 천장할 때에는 모든 일을 참작하여야 하겠으나 3참과 풍덕 백성의 고역을 견디기 어려움을 나도 생각하고 특별히 진흙을 베풀려고 하였다. 풍덕의 수미收米를 감해주는 일은 모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셨습니다.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 3참과 풍덕의 수미를 감해주는 일을 수조안收租案이 마감된 뒤에 참작해서 의논하여 결정하려 하였는데 수조안이 지금 겨우 올라왔으니 내 고을 봄철 수미는 응당 내야할 매결每結 6 두 내에서 각각 2두씩을 감해준다는 뜻을 선혜청과 본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 다고 답하였다.

9

직로 3참 백성들의 수미를 감해주다 1686년(숙종 12) 1월 3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을축년乙丑年 10월 14일에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 김수흥金壽興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올해 장단長湍·풍덕豐德 고을의 재해가 가장 심한 데 후릉厚陵과 순릉順陵의 풀을 뜯고, 공릉恭陵의 정자각丁字閣을 중건重建하는 역사 및 궁가宮家의 예장禮葬·천장遷葬하는 일이 한꺼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곳 가까운 고을에 사는 백성들이 아직껏 추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 백성들의 일이 참으로 염려되는데 상께서도 이미 이런 폐단에 대해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대개 근래에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여 권세가 있는 집이면 문득 이장移葬을 하는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있어 이것이 경기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입니다. 이후에는 비록 예장해야 할 상喪이 있거나 이장할 때 모든 일을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고, 약방도제조 김수흥은 아뢰기를, '지금 여러 능陵의 역사 및 예장하는 일은 비단 장단과 풍덕이 민역民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로直路의 3참 站 역시 다름이 없어 그곳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올해 받아들일 쌀을 특별히 헤아려 말과 수를 감해주어 진흙하는 뜻을 보인다면 거의 약간의 혜택이라도 될 것입니다' 하니, 상께서 '묘소이장의 번거로움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다. 이후에는 이장할 때 모

든 일을 참작해서 해야 마땅하며, 3참站 및 풍덕의 민역民役이 지행하기 어려움을 나 역시 생각하고 있어 장차 위로하여 진흥하고자 하였는데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3참 및 풍덕의 수미收米를 헤아려 감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일로 분부하셨습니다.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 3참 및 풍덕의 거두어들이는 쌀의 말수를 헤아려 감하는 일은 수조안收租案을 마감하기를 기다린 후 참작해 의논하여 정하고자 하였었는데, 수조안이 이제 막 올라 왔습니다. 4고을의 봄철분 쌀 징수는 응당 바쳐야 할 6두斗 가운데서 각기 2두를 감하라는 뜻으로 해당 청廳 및 본도本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10

도둑들을 방치한 파주목사를 치죄하다 1691년(숙종 17) 1월 6일

비변사 낭청이 영·좌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방금 장단토포사長湍討捕使의 보고를 보면 서울로 상납할 포물布物를 싣고 오는 사람들을 파주坡州 읍내에 맞아들였는데 적도들이 혹은 말을 타고 혹은 도보로 와서 밤을 타 돌입하여 압령하여 온 두목노頭白奴를 칼로 찌르고 공목貢木을 탈취해 갔다 합니다. 요즘 경기의 적환賊患은 곳곳에 있으나 읍내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이 도둑들이 관아의 가까운 곳에서 이와 같이 자행하고 있음에도 수령인 자가 심상하게 보아 태연히 앉아 곧 추포追捕하지 않은 정상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파주목사 황성귀黃聖龜의 직무포기를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황성귀를 중벌에 따라 치죄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잡아들여 추문推問하여 치죄하고 이어 토포사로 하여금 여러 모로 염탐하여 반드시 적도들을 체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11

파주 등지의 도둑을 추적, 체포하도록 하다 1700년(숙종 26) 9월 21일

이달 2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할 때에 좌의정 이세백이 아뢰기를 “금년 농사는 전에 비하여 약간 풍년이니 실은 기근이 든 때와 같지는 않으나 도둑의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력 재자관皇曆齋查官의 복물卜物이 중간에서 도둑을 맞은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관부官府 근처 및 도성 안에서까지 아직도 도둑의 근심이 있다 하니 서울과 지방에 신칙하여 추적, 체포하는 일을 착실히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일찍이 범 잡는 일에 사목을 만들어 지방에 분부하였으나 마침내 그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살곶이[箭串]목장 말까지도 물려 죽은 일이 있고, 서울 가까운 곳에 이러한 일이 많이 있다 하니 도둑 체포하는 일과 함께 신칙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호조참

판 이인엽李寅燁이 아뢰기를 “절도竊盜를 추적, 체포하는 일은 항상 신칙하고 있으나 거듭 기근이 든 나머지 민심이 크게 변하였고, 구습을 고치지 않으므로 약탈하는 일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비단 행려行旅가 통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가公家에서 상납하는 물건도 많이 약탈되니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대체로 동도東道는 양주楊州와 포천抱川, 서도西道는 장단長湍·파주坡州, 남도南道는 광주廣州와 이천利川·수원水原 등의 지역이 더욱 심합니다. 그러나 한갓 번거롭게 신칙만 할 뿐 실은 그 효과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관부 및 여러 곳의 주점酒店에 특별히 문관門關을 설치하여 울타리를 공고히 하여 착실히 막고 지키라고 다시 절목을 만들어서 지방에 반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이세백이 아뢰기를 “이미 과거에 반포한 사목이 있으나 착실히 거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군이 따로 새 절목을 만들 것은 없고 이전의 사목 가운데 미진한 조건들을 참작, 추가하여 외방外方은 각 도 토포사에게, 안은 포도청에 각별히 신칙하여 그 근태勤怠를 상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 “이전의 사목에 추가하여 표를 붙여서 재가하고 분부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2

봉심과 관련된 파주의 폐단을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1702년(숙종 28) 8월 7일

이번 8월 5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할 때에 좌의정 이세백이 아뢰기를 “... 이동언李東彦의 상소 가운데 또한 봉상시奉常寺의 시장柴場에 대한 폐단을 진달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봉심奉審하느라 왕래할 때에 이미 자세히 들었는데 파주坡州의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여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한다면 그 민폐가 되는 것은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소 가운데서 비록 삭녕朔寧 등 몇 개 고을로 나누어 정하기를 청하였으나 이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그 폐단을 듣건대 본시本寺의 관원이 나무를 베기 위해 내려갈 때에 비단 접대하는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이 이를 빙자해서 폐단을 일으킵니다. 그 단서가 한둘이 아니어서 한 마리[駟]를 바쳐야 할 것이 거의 두세 바리에 이르니 백성들이 감당해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대략 변통하여 본읍本邑의 수령이 본시本寺의 관원과 입회立會하여 받아들이므로부터 전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이겠습니까? 본시의 관원을 내려 보낼 필요가 없이 다만 본관으로 하여금 기일에 맞추어 받아서 납부하게 하고, 만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조정에서 논죄論罪하는 것이 혹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봉상시제조奉常寺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방금 입시하였으니 그 편리 여부를 물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민진후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파주 땅을 왕래했었고, 또 지금 봉상시제조로 봉직하고 있어 이 일에 대한 전말顛末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국초國初에 제향祭享을 중히 여겨서 특별히 통진通津의 문수산文殊山 시장柴場을 본시에 주었는데 대개 이

산이 시장으로 가장 적합해서였습니다. 얼마 후 문수산에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파주의 파평산(坡平山)으로 옮겼는데, 비단 시장이 문수산만 못할 뿐더러 파주 백성들이 갑자기 종전에 없던 역할을 당해 원망과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때에 감사의 계문으로 인해 금천(金川)으로 옮겨 정하자는 의논까지 있었으나 금천은 길이 조금 더 멀어서 그 폐단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시목(柴木) 1천 동(同) 안에서 4백 동을 감해 지금 배어 오는 것은 6백 동뿐입니다. 이른바 관원의 폐단을 빛는 것은 이미 혁파하였으나 제향(祭享)에 쓰는 것은 항상 부족할 것을 염려하고 파주 사람들의 감당하기 어려움이 또 이와 같으니 실로 좋게 변동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경기의 강가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면 혹 조금이나마 파주 백성들의 폐단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였고, 이세백이 아뢰기를 “만약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힘을 합치게 하면 마땅할 듯하나 각 고을에 납부하는 것의 많고 적음을 물론하고 그 상납하는 때를 당해서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한 고을의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여 도리어 허다한 고을이 그 폐단을 함께 받으니 혹 편리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였으며, 민진후(閔鎭厚)는 아뢰기를 “본시의 관원이 내려가 베풀는 것은 본래 구례(舊例)이기 때문에 막 이미 내려보냈는데, 지난번 병조판서 이유(李濡)의 아뢰므로 인해 각기 본사(本司)에서 양식과 찬饌을 주어 보내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사에서 양식과 반찬을 마련해 보냈고 또 속히 돌아와 고을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관관(管官)이 내려가는 것이 폐단이 있다고 말한다면 1년을 한정해서 시험삼아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관장해서 배 보내도록 해서 그 편리 여부를 보는 것도 역시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하니, 이세백이 아뢰기를 “다만 해시(該寺)로 하여금 본도에 갔다 와서 마땅히 그 편리 여부를 안 연후에 다시 품정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본도에 물어서 아뢰어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13

환자곡을 받지 못한 파주 수령에게 형장을 칠 것을 논죄하다 1703년(숙종 29) 5월 25일

여러 도의 환자곡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을 등급을 나누어 논죄한 별단

경기

삭녕(朔寧) : 하등급임으로 형장을 칩.

양근(陽根) : 지차(之次)임.

연천(漣川) · 포천(抱川) · 적성(積城) · 부평(富平) · 양천(陽川) · 인천(仁川) · 영평(永平) · 죽산(竹山) · 양주(楊州) · 풍덕(豊德) · 파주(坡州) · 안산(安山) · 통진(通津) · 마전(麻田) · 지평(砥平) · 용인(龍仁) : 이상 16고을은 새 환자곡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음. 해당 수령은 본도로 하여금 지명하여 추고할 것임.

개성부開城府·파주坡州 : 하등급임으로 형장을 칩.

장단長湍·평산平山 : 이상 지차之次인 두 고을 수령은 본도로 하여금 지명하여 추고함.

수어청

여주驪州 : 하등급임으로 형장을 칩.

수원水原·죽산竹山 : 이상 지차인 두 고을 수령은 본도로 하여금 지명하여 추고함.

양천陽川·장단長湍·마전麻田·연천漣川·고양高陽 : 이상 5고을은 선혜청의 획급미를 전연 수납하지 않았고 받아 두지도 않았음. 환자곡의 지차인 고을과 마찬가지로 추고해야 됨.

14

파주 고을의 연소된 인가 구호 문제를 논의하다 1712년(숙종 38) 5월 7일

판윤 송상기宋相琦가 아뢰기를 “경기감사의 장계에, ‘파주坡州 고을의 연소延燒된 인가人家의 구호 문제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저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으나, 미처 복계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이 일로 인하여 말하려고 한다. 공사公事로서 묘당에 내린 것은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음을 막론하고 마땅히 곧 회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경기감사의 장계는 2월에 계하하였으나 아직도 복계치 않았다. 그러므로 방금 하교하여 곧바로 호조로 하여금 각별히 구제하도록 하였으니, 지금 복계할 일은 없다. 앞으로 공사는 반드시 제때에 회계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15

북한산성의 향미를 파주 등지로 방출하게 하다 1713년(숙종 39) 9월 3일

지난 초2일 지사知事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향미餉米를 일찍이 4~5만 석으로 한정하여 실어 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이미 실어다 둔 것은 2만 6천여 석에 달하며 창고가 좁아 지금 비로소 실어 들이는 일을 정지하고, 내년 봄에 더 짓기를 기다려서 실어 들이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에 있는 곡물도 환자還里로 출납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앞서 아뢴 바에 의하여 양주楊州·파주坡州·고양高陽 등 3읍에 내년 봄부터 마땅히 참작하여 방출放出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수를 합계하면 5만 석이 되는데 1년에 방출할 바는 1만 석이어야 합니다. 다만 3읍에 방출한다면 백성은 적고 곡물은 많은 폐단이 없지 않을 듯 싶습니다. 교하交河도 역시 부근 고을이니 다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16

식년개군안을 제때 시행하지 못한 파주 등지의 수령을 추고하게 하다 1717년(숙종 43) 9월 4일

지난달 3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어영대장 김석연金錫衍이 계달하기를 “식년 개군안式年改軍案은 아무리 흉년을 만나다 하더라도 당년의 세전歲前에 거행하는 것이 준례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도는 정유 식년 개군안을 금년 가을로 물러서 행하도록 하였으나 경기 군읍은 조정에서 본래 물러서 행하도록 결정한 일이 없는데 이천利川·남양南陽·안산安山·진위振威·파주坡州·부평富平 등 6읍은 작년 10월 이내에 거행해야 할 일을 해가 지나도록 천연하고 아직껏 거행하지 않았으니 군정軍政에 있어 지극히 해괴한 일입니다. 모두를 추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 도 각 읍 중에서 앞으로 개군안을 할 때에 더욱 심하게 기한을 넘기고 거행하지 않은 수령은 한결같이 논책하라는 뜻으로 각 도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17

봉상시의 시장을 파주 파평산에서 금천으로 옮기다 1725년(영조 1) 4월 2일

지난 달 26일 주장에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그 일곱째는 황해감사의 보장鞫狀으로서 봉상시에서 시장柴場으로 절수한 곳인 금천金川 땅의 등경登景·고갈산古葛山을 취소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봉상시의 제향祭享에 쓰일 시장柴場은 본래 파주坡州의 파평산坡平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래 파평산이 민동산이 되어 나무가 없으므로 금천으로 옮겨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해시該寺로 하여금 헤아려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18

장릉의 화재 연유와 용의자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1725년(영조 1) 10월 28일

이 달 26일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입시하여 아뢰기를 “능침陵寢에 나아가 불이 난 곡절을 상세히 물어 보니 3경更쯤 큰 바람이 부는 가운데 신문神門 밖에서 까닭 없이 불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흥인興仁이 변을 일으키려고 한 짓일 터이니 통탄함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의심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기에 능관能官에게 자세히 물어 보니 능졸能卒輩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작년에 본릉의 화소火巢 밖에 사는 세 놈이 연목椽木 100여 개를 베다가 능졸에게 붙들려 능관이 예조에 보고하여 그 중 1인은 정배定配되고 2인은 석방되었는데, 그뒤에 이들이 이를 갈며 반드시 능졸에게 보복하려 하여 매양 공갈하는 말을 하므로 능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파주목坡州牧에 소장을 올리니 파주목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후일에 능소에 무슨 변이 생기면 그들 책임이라는 뜻으로 다짐을 받고 놓아주었는데, 그후에 그들 상전 上典이 능관을 보고 크게 노발대발하였다 합니다. 비록 꼭 그들의 소행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들밖에는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신이 포도청으로 하여금 그들의 동태를 잘 살피게 하자는 뜻으로 아뢰고 분부도 하였습니다마는 그들이 흑 겁을 먹고 도망칠 염려도 없지 않으니 포도청으로 하여금 우선 잡아다가 가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그렇다면 한 번의 신문은 그만둘 수 없겠다. 능졸은 낮에는 능관의 심부름으로 겨를도 없이 뛰어다니다가 밤이면 곤히 잠들었을 터이니 3경쯤에 신문 밖에서 까닭 없이 일어난 불을 그들이 어떻게 명확히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능졸은 으레 정자각 丁字閣 동쪽의 수복방 守僕房에서 숙직 宿直하는데 사초 莎草가 탈 즈음 불타는 소리가 크지 않고 불빛도 휘황 輝煌하지 않아 창에 비친 뒤에야 알았다 한 것은 믿을 수 없거니와 이미 안 뒤에는 의당 다른 사람이라도 붙잡아다 빨리 불을 켜야 하는데 불을 켜다는 움직임도 없었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분명코 불은 신문 밖에서 일어났다던가?"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신문 밖에 불이 난 곳은 탄 자리가 아주 작았으나 올라갈수록 탄 자리가 점점 넓고 커졌습니다. 이로 보면 불이 신문 밖에서 난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3경쯤에 불빛이 창에 비친 뒤에야 수복들이 비로소 알았다 하였는데 만일 먼저 능침 위를 미리 예방하였다면 능 위는 불이 연소 延燒할 염려가 없었을 터인데 저들이 어둔 소치로 다만 옷만 벗어서 불을 끄다보니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수직한 자는 수복과 능졸 각 1인이고 참봉의 직소는 약간 멀었기 때문에 일의 형편이 급히 사람을 부르지 못한 듯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 능졸이 본 고을에 소장을 올려 공초를 받았으니 능졸이 선수를 써서 사람을 압제하려는 계책이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사람 마음이란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혹 그랬는지도 알 수 없으나 능졸이 기왕 본관에게 소장을 올린 일이 있으므로 불가불 잡아다가 조사해볼 일입니다. 형조에서 능졸을 조사할 즈음 필시 그놈의 이름이 드러날 것인즉 포도청에서 미리 붙잡아들여 그놈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다려 형조로 이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왕 근저할 만한 단서가 있으니 한결같이 경사 京司로 잡아들여 엄히 심문할 일이나 이른바 용의자 容疑者는 포도청에서 잡아오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전부터 능 위에서 변고를 저지른 자가 있으면 국청 鞠廳을 열어 엄히 문초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형조에서 단서를 캐물은 뒤에 국청을 열어 치죄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였던가?" 하였다. 예조판서 심택현 沈宅賢이 아뢰기를 "중전에는 경기감영에서 조사하여 장계한 뒤에 국청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고를 일으킨 자로

비록 의심스러운 자는 있으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형조에서 문초하여 그 단서를 포착한 뒤에 국청을 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민진원이 아뢰기를 “장릉(인조의 능침)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경기감영에서 단서를 조사한 뒤에 장계하여 즉시 국청을 열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피차의 원정(피의자의 자기 변명)을 듣고 공초를 받은 뒤에라야 처리할 수 있겠다”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형조의 행공 당상(行公堂)으로는 다만 참의 한 사람 뿐이라고 합니다. 이번의 지극히 중대한 옥사(獄事)를 참의 한 사람으로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판서 김흥경(金興慶)은 연일 패초를 어기고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다시 패초하여 일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형판의 일은 나도 말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다. 지난번 대사헌의 말은 비록 깊은 뜻은 없었으나 당한 사람은 기어코 사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국외로 나간다면 응당 자연히 교체하게 되는데 줄곧 패초(牌招)만 어기고 있는 것은 한갓 일의 체모만 손상하는 일이다. 이제 우선 그를 교체하고 정관(政官)을 즉시 패초하여 정사를 열고 후임을 차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9

장릉 화재의 용의자를 잡기 위해 파발마를 줄 것을 청하다 1725년(영조 1) 11월 5일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에서 아뢰기를 “신은 지난 달 23일 판부(判付)하신 명을 받들고 파주(坡州) 장릉(長陵) (인조의 능침)에서 변고를 일으킨 자를 기포(讎捕)하는 일로 군관을 떠나보낸 뒤에 24일 조이준(趙二俊) 등의 의심스러운 사단을 듣고 군관을 특별히 임명하여 급히 파주로 보내서 26일 비로소 조이준을 포착하였고, 이내 조이준의 고소한 바로 인하여 비로소 최석산(崔石山)이 풍천(豐川)의 적소(讞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이준을 압령(押領)하고 풍천의 최석산 적소로 가야 하겠는데 서울에서 풍천까지는 옛새 길입니다. 군관 등의 사유마(私有馬)로는 비록 주야로 달려간다 해도 오늘내일 안으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병조로 하여금 파발마를 특별히 정급(定給)하게 하여 군관을 다시 보내서 재촉하여 잡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20

북한산성의 군향미를 경기 각 고을에 골고루 나눠주게 하다 1725년(영조 1) 11월 10일

이 달 9일 좌의정 민진원(閔鎭遠)과 예조참판 이기익(李箕翊)·관상감 제조 정형익(鄭亨益)을 유대시키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민진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파주(坡州)와 교하(交河) 두 고을 수령이 상소하여 북한산성의 군향미를 본읍에 봉류(捧留)하기를 청하여 임금께서 특별히 시행을 허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르기는 합나다마는 이 두 고을에만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경기 고을에도 일체로 봉류하라고 허가하셨습니까? 일을 다시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경기의 금년 농사는 삼남에 비하여 다소 풍작이기에 신의 생각으로는 봉류를 허락하지 않고 싶으나 임금께서 경기 백성을 진념하셔 기왕 특별히 허가하신다는 명이 계셨는데, 이 두 고을에만 허가하시고 다른 고을에는 허가하지 않는다면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있을 듯합니다. 허가하시려면 똑같이 허가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봉류하면 언제 상납하게 되는가?”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명년 봄에 나누어주었다가 명년 가을에는 산성에 도로 바쳐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왕 두 고을에 허가한다면 다른 고을에도 똑같이 허가해야 하는데 경기 전도에 봉류하라고 할까? 우심읍에만 허가한다고 할까?”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우심읍은 몇 고을에 지나지 않고 모두 북한산성과는 동떨어져 있어 당초에 균향을 받아간 일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이미 그러했는데 대신의 뜻도 이러하니 경기의 각 고을은 똑같이 봉류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21

능역에 동원된 파주 등지의 쌀을 본 고을에 봉납·유치하길 요청하다 1726년(영조 2) 12월 24일

이 달 22일의 삼복三覆에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뢰기를 “이는 곧 경상감사 유척기俞拓基가 재실災實을 분등分等한 장계입니다. 초실稍實·지차之次·우심尤甚의 3등으로 나누었는데 초실이 54읍·지차 8읍·우심이 9읍이며, 지차·우심읍 가운데 또 지차면·우심면으로 구분하여서 재실의 구분이 가장 세밀한 듯 싶습니다. 초실읍의 경우 묵은 환자로서 가장 많은 해의 1년 것 및 균형軍餉으로서 작년 것과 새 환자 또는 각종 신포身布로서 작년 것은 아울러 수대로 수봉하며, 우심·지차읍의 우심면은 묵은 환자는 수봉을 정지하고 새 환자와 이전된 균형은 수대로 수봉하며, 신포는 3분의 1을 감하고, 우심·지차읍의 지차면의 경우 묵은 환자는 수봉을 정지하고 새 환자와 이전된 균형은 수대로 수봉하며, 신포는 금년 것은 수대로 수봉하고 묵은 미수는 논하지 말 것을 청하였습니다. 모두 장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 경기감사의 장계를 보니 교하交河·파주坡州는 지차읍으로서 막 두 대신의 천장遷葬을 치름으로 인하여 민력이 다하여 북한산성에서 이전된 쌀을 실어다 바칠 수 없으니 수봉하여 본읍에 유치하고 다른 여러 고을의 경우도 역시 다 같이 수봉하여 유치하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우심읍은 절반을, 지차읍은 3분의 2를 실어다 바치게 할 것을 결정하였은즉 다시 변통이 있어서는 부당하나 파주와 교하는 다른 고을에 없

는 역을 막 치렀으므로 절반을 실어다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판부사 이관명李觀命이 아뢰기를 “들으니 절반을 상납하도록 허용함은 비록 조정에서 백성을 돌보는 뜻에서 나왔으나 민폐는 도리어 전액을 실어다 바치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대체로 1말 받아먹은 자가 5되[卨]는 북한산성에 바치고 5되는 관가에 바치게 되면 두 곳에 나누어 내는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하와 파주는 이미 두 대신의 천장 및 예장禮葬을 치렀고, 능행 때의 역은 고양高陽의 경우와 다름이 없어 10리에 거화炬火를 꽃이놓되 거화 하나를 바치는 데에 있어 두 사람이 와서 대기해야 하니, 이리므로 백성들이 실 겨를이 없어 이미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산성의 쌀을 실어다 바칠 수 없어 모두 본 고을에 봉납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길에서 들었던 바를 경연 자리에서 진달하였고 감사도 역시 장제한 것입니다” 하였다. 홍치중이 아뢰기를 “이는 두 고을에 불과하고 원임대신이 이미 목격하고 와서 이와 같이 누누히 진달하니 수봉하여 유지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 이르기를 “지난번 원임대신을 인견할 때에 이러한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이 어디에는 없겠는가? 그 균일하게 시행하는 도리에 있어 다만 두 고을에만 시행해서는 옳지 않으나 원임대신이 또 이와 같이 누누히 진달하니 이는 시종侍從의 신하가 연로에서 들은 것을 양달한 경우와 다르다. 두 고을은 특별히 수봉하여 본 고을에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22

파주 등지의 군병을 모두 내려보내 농사를 짓게 하다 1728년(영조 4) 3월 28일

여영청에서 아뢰기를 “호남·경기의 소추小寇들이 차례로 죽었으니 이제는 농사를 권장하는 정사를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또 해마다 거둬 기근을 만난 나머지 징소徵召한 지 여러 날이 되어 노천露天 아래에서 살면서 병으로 상하는 것을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형제가 함께 군중에 있는 자 및 솔정率丁이 없고 단신인 자, 병들고 노약한 자를 구별하여 먼저 파하여 보내도록 하라”라고 답전에서 하교하셨 습니다. … 지금 양성陽城 등 고을의 군병 181명을 모두 내려보내고 9초哨 군병 가운데 부자·형제가 함께 군중에 있는 자와 솔정率丁이 없고 단신인 자와 노약자 따위 308명을 추려내어 우선 파하여 보내고,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 등 고을의 치중복마군輜重下馬軍(말에 군수품을 싣고 운반하는 군대) 149명을 재결에 따라 모두 내려보내 농사를 짓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23

파주 등과 같이 목면을 심는 고을에 금년의 구환상을 특별히 보내 진휼하게 하다 1728년(영조 4) 12월 11일
금일 영의정 이광좌를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은 중요한 보장保障의 땅이다.

금년에 이미 성을 지키는 노고가 있었는데 이제 또 승군僧軍을 징발하게 되었으니 별도로 진념軫念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 본청의 체가전帖價錢으로 참작하여 양식을 주는 일과 파주坡州·고양高陽·양주楊州·교하交河·장단長湍·개성부開城府·적성積城 및 해서 연로의 힘써 일하며 목면을 심는 고을은 금년의 구환자를 특별히 정봉停捧하여 진흥하는 뜻을 보이라”라고 탐전에서 하교하였다.

24

봉상시의 시장인 파평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간년으로 돌려가며 책임하게 하도록 요청하다 1729년 (영조 5) 2월 15일

이 달 13일에 대가大駕가 순릉順陵의 재실齋室에 들어 경기감사를 인견, 입시하였을 때에 파주목사坡州牧使 정혁선鄭赫先이 아뢰기를 “본주本州의 파평산坡平山은 봉상시奉常寺의 시장柴場(나무를 기르고 가꾸는 곳)입니다. 매년 봄 가을로 각각 5백 동同씩을 베어서 본시本寺에 바쳐왔으나 지금은 이 산이 발가벗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본주와 인근의 5읍에서 매년 돌려가면서 돈을 거두어 나무를 사서 바치고 있으니 민폐가 됨이 말할 수 없으나 본시本寺는 제약이 있는 아문衙門인만큼 변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정하여 간년間年으로 돌려가면서 책임責應하게 한다면 제폐除弊하는 길이 있을 것 같기에 황공하으나 감히 진달합니다” 하고, 경기감사 이정제李廷濟가 아뢰기를 “이 일은 신도 그 폐단됨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파평산에서 감독하에 베고 있다 하나 실은 나무를 베는 일이 없고 부근의 여섯 고을에서 돈을 거두어 나무를 사서 해마다 바치고 있으니 그 폐단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본시本寺는 제약이 있는 아문이기 때문에 혁파할 수도 없고 폐단을 없앨 방도도 없어서 양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찍이 들으니 본시의 시장을 금천金川 땅에 정하였으나 뱃길이 불편하여 파평산으로 옮겨서 지정하였다 합니다. 만일 지방관이 진달한 바와 같이 혹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하고 간년間年으로 돌려가면서 책임責應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으나 조정에서 한결같이 대하는 도리에서 줄연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하기도 어려울 터이니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제함이 있는 아문은 관계된 바가 비록 중하나 기왕 그 폐단됨을 알았으니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파주목사가 진달한 바를 거조擧條에 내고 묘당으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고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교하交河 관련 기사

『조선왕조실록』

1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교하를 좌도에 소속시키다 1394년(태조 3) 6월 23일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左右道로 고치자고 청하니, 장단長湍·파평坡平·현주見州·사천沙川·포주抱州·풍양豐壤·서원瑞原·행주幸州·심악深岳·한양漢陽·부원富原·과주果州·철원鐵原·영평永平·승령僧嶺·삭녕朔寧·적성赤城·임강臨江·마전麻田·송림松林·연주漣州·고봉高峯·교하交河…를 좌도에, 개성開城·강음江陰…을 우도에 소속시키고서,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로, 강릉 교주도江陵交州道를 강원도로 고치고, 서해도西海道를 풍해도豐海道로 고치었다.

2

교하감무를 두다 1394년(태조 3) 9월 28일

심악深岳·교하交河·석천石泉의 3향鄉을 합하여 교하감무交河監務라 칭하였다.

3

교하에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다 1397년(태조 6) 8월 9일

교하交河 이서以西에서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4

교하현의 오얏나무가 벼락 맞다 1412년(태종 12) 4월 20일

크게 비가 오고 우뢰와 번개가 쳤다. 교하현交河縣 청라암靑羅巖의 오얏나무가 벼락 맞았다.

5

교하를 원평에 붙이다 1414년(태종 14) 8월 21일

명하여 각품各品の 과전科田을 옛날 그대로 하고 경외京外의 용관冗官을 도태淘汰하였다.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 등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이에 자문紫門에 모여서 정부에서 상량 의논하여 아뢰었다. 교하交河를 원평原平에 붙이고, … 장단長湍·임강臨江을 병합하여 장림長臨으로 하고,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6

교하 사람 김문영의 요언을 지어낸 죄를 한 등 감하다 1415년(태종 15) 7월 7일

교하交河 사람 김문영金文永이 요언妖言을 지어낸 죄를 한 등 감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김문영은 율에 처참에 해당하고, 그 들고서도 고하지 않은 고을 사람 조방식趙方朔·호장戶長 김석건金石堅은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각각 감등하여 시행하였다.

7

교하로 가는 상왕의 행행을 정지하도록 청하다 1415년(태종 15) 9월 24일

의정부 찬성 유정현柳廷顯과 육조판서 박은朴溫 등이 상왕上王의 행행行幸을 정지하도록 청하니, 윤희하지 않았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대가大駕는 강원도江原道에 순행巡幸하는데 상왕上王은 교하交河에 나아갑니다. 교하 등지에 흉년이 더욱 심하여 비록 소채의 공급도 판비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신 등은 청컨대, 상왕전에 나가서 면전에서 진달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러지 말라. 상왕이 연로年老하니 출행出幸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하고, 인하여 병조에 명하여 마필을 갖추어 제공하게 하였다.

8

상왕이 교하에 행차하다 1415년(태종 15) 9월 25일

상왕上王이 교하交河 등지에 유행遊幸하였는데, 이날 밤에 비오고 바람 불고 우뢰하고 번개하고 우박이 오고, 3경三更에 이르러 유성流星이 북하北河 동쪽에서 나와 상대上臺 서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뒷박[뼀]과 같고 빛이 붉었다.

9

방간과 내통한 심종을 교하에 안치하다 1416년(태종 16) 11월 9일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을 교하交河에 안치安置하였다.

10

조운선 세 척이 교하의 오도성에서 침몰하다 1417년(태종 17) 윤5월 26일

전라도全羅道 조선漕船 3척이 교하交河의 오도성吾道城 밑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침몰하니, 사람들은 모두 익사溺死하고, 쌀·콩 2천 6백 80여 석도 물에 잠겼다.

11

교하의 벼가 여물지 않다 1419년(세종 1) 7월 23일

한평군 趙연이 계하기를, “고양高陽·교하交河 등지에는 벼가 여물지 않았습니다”고 하니, 상왕이 환관

최한과 신이희申以希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12

교하현 서원 정을방의 고소 1425년(세종 7) 2월 2일

좌사간左司諫 유계문柳季聞 등이 상소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수령을 선택함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니, 수령으로 그 참된 사람을 얻으면, 백성이 그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화禍를 받을 것이니, 어찌 청렴한 사람을 택하여 쓰지 않으오리까. … 대개 백성을 억압하고 재물을 굶어모으는 자들이 군현郡縣에 늘어 있어, 고혈膏血을 짜내고 골수骨髓를 깎아내어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복을 채운다면, 백성이 부지하고 살 길이 없어, 바로 근심과 원성이 있을 것이요, 입으로 그 탐오貪汚를 말하고자 하여도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면, 드디어 장리로 하여금 편안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욕심을 마음껏 부리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피화被禍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근래의 일이 너무나 명백하고 족히 거울이 될 것입니다. … 지금 경기京畿 교하현交河縣의 서원書員 정을방鄭乙方이 죄에 걸림을 두려워하여, 사노私奴 두을언豆乙彦으로 이름을 고쳐 그 수령 조만안趙萬安의 범한 바를 고하여 말하기를, ‘기민飢民을 구제할 미곡 30석을 사사로이 매각하여 남용濫用하였고, 국고 의창義倉의 환상곡還上穀의 수납을 과중하게 하고는, 이를 다시 두량斗量하여 따로 저장하였다’ 하였사오니, 그 고소한 바와 같다면, 이도 또한 장리인데, 고한 자만이 홀로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외의 관리로서 만약 관민官民의 재물을 착복着服한 자가 있으면, 모두 고소를 허용하여 탐오를 징계하고 민생을 위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급한 일이 아니다. 내가 후일에 친히 너희들을 보고 말하리라” 하였다.

13

전 도총제 노필의 즐기 1427년(세종 9) 6월 25일

전 도총제 노필盧弼이 즐하였다. 필弼은 교하현交河縣 사람으로서, 고려 공민왕 21년(1372)별장別將에 임용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삼사우윤三司右尹을 거쳐 판전농사제사사判典農司宰寺事를 역임歷任하고, 상호군으로 가선대부 공조전서에 제수되었고, 우리 태조 7년(1398)에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와 공조·예조의 전서典書가 되었다가, 해주목사와 우군총제로 나가서 우군 도총제로 승진하였는데, 세종 4년(1492)에 비로소 병이 들어 벼슬을 사절하고 요양하기 6년만에 이날 세상을 떠나니, 나이 73세이었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사흘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제사와 부의를 내리었다. 시호를 양간良簡이라 하였으니, 온량하여 악을 좋아함이 양良이요, 평이하여 잔말 없음을 간簡이라 한다. 아들은 넷이니, 신의信義·신례信禮·신제信

梯·신충(信忠)이었다.

14

교하현의 효자 황염에게 포상을 청하다 1431년(세종 13) 10월 28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 경기도의 교하현(交河縣)에 사는 황염(黃堧)은 부모가 죽으매, 6년을 연달아 무덤을 지키면서 채식(菜食)하고 죽을 먹으며, 거적자리에 자고 흙덩이를 베고 울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 원평(原平)에 사는 급제(及第) 이맹준(李孟駿)의 아내 문씨는 나이 21세에 남편이 죽었는데, 절개를 지킨 지가 30년이나 되었으며, 전라도 전주의 기관(伊正)은 나이 12세에 어머니가 죽으매 시체를 안고 밤낮으로 슬피 울었으며, 빈소 곁에 있으면서 몸소 밥을 지어 조석으로 받들고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으며, ... 위의 항목(項目)의 효자(孝子)·절부(節婦) 가운데서 포상(褒賞)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예에 의거하여 복호(復戶)하고, 효자로 재주가 벼슬할 만한 사람은 재주를 헤아려 서용(敍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5

교하현 등 도태시킬 주현에 대해 의정부와 각 조가 의논하도록 하다 1435년(세종 17) 7월 22일

경기감사(京畿監司) 성개(成概)가 아뢰기를, “지금 이조에서, 교명(敎命) 받은 바에 의하여, 공문을 보내어서 도태(淘汰)시킬 만한 주현(州縣)을 조사(訪問)하여 갖추 기록합니다.

1. 임진현(臨津縣)은 땅이 좁고 길어서 남면(南面)은 해풍(海豐)으로 깊이 들어갔으니, 마땅히 합쳐서 한 군으로 만들고, 읍은 중앙에 둘 것이며,
1. 임강(臨江)과 장단(長湍)은 서로 떨어지기가 일식경(一息頃)의 거리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합쳐서 한 군으로 만들고 읍은 중앙에 두되, 사신을 접대하고 군사를 내는 등류의 일은 원평(原平)과 고양(高陽)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며,
 1. 마전현(麻田縣)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어서 연천(漣川)과 적성(積城)의 사이에 끼여 있으며, 연천은 곧 무예(武藝)를 연습하고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이니, 마땅히 마전을 연천에 합쳐야 될 것이며,
 1. 교하현(交河縣)은 고양(高陽)과 원평(原平)에 끼어 있어 형세가 굽은살(贅肉)과 같으며, 남쪽으로 고양과의 거리가 일식경(一息頃)이요, 동쪽으로 원평과의 거리가 일식경이니, 마땅히 교하현을 혁파하여 고양과 원평에 나누어 소속시킬 것이며,
...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려서 의정부와 각 조(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16

교하를 원평부에 소속시키다 1435년(세종 17) 12월 17일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철원鐵原은 강원도에 옮겨 소속시키고, 그 관할 내의 영평永平·연천漣川·삭녕朔寧은 양주楊州에 옮겨 소속시키고, 임강臨江·마전麻田·장단長湍과 양주楊州 관할 내의 교하交河·임진臨津·고양高陽 등 고을은 원평부原平府에 옮겨 소속시키고, 충청도의 죽산현竹山縣은 경기의 수원부水原府에 옮겨 소속 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7

유행병이 성한 원평·교하 등지를 구료할 것을 청하다 1448년(세종 30) 10월 16일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이제 듣자오니 원평原平·교하交河 등지에서 황해도도의 악병惡病과 유사한 병이 흥행興行하여, 이웃과 마을에 전염되어 거의 다 죽는다고 하오니, 청하옵건대, 황해도도의 예례에 의하여 의원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하게 하소서” 하니, 의원 임보중任寶重 등 두 사람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18

교하를 원평부 도회에 소속시켜 염초를 급게 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9월 19일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硝를 구워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各道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常所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都會의 읍邑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郡縣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雜物을 수송 운반하는 즘음에는 온 경내境內가 소요騷擾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端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都會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가을에 1도道의 1도회都會에서 염초焰硝를 구워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가면서 휴식休息하도록 하소서.

경기京畿는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교동喬桐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이便易하고, 과천川·금천衿川·인천仁川·고양高陽·부평富平·안산安山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포국司豹局에 흙을 운반하게 하고, 수원부水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양南陽·진위振威·양성陽城·죽산竹山·용인龍仁·양지陽智·음죽陰竹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광주廣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여흥驪興·양근楊根·가평加平·천녕川寧·지평砥平·이천利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주부楊州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포천抱川·영평永平·연천漣川·삭녕朔寧·임강臨江과 강원도江原道の 철원鐵原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평부原平府

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교하交河·임진臨津·장단長湍·적성積城·마전麻田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개성부開城府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염초焰硝를 구워내게 하고, 부근에 있는 풍덕군豊德郡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 하니, 그대로 따랐다.

19

석회 굽는 일로 교하 백성이 시달리는 것을 상서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10월 10일

전 현령縣令 김승비金承庇가 상서上書하기를, “옛날에는 석회石灰를 구워 만드는 데는 돌이 좋고 나무가 무성한 곳을 골랐기 때문에 들어가는 힘은 적으나 이루어지는 공효는 많았습니다. 요즈음에는 나무가 부족하고 그 돌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교하交河에서 백성들을 독촉하여 그 시목柴木을 운수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봄철 농사일이 바쁜 때에 파리하고 피곤한 소가 쉽게 밧을 갈지 못합니다. 그 가격으로 말한다면 1마리馱의 가격이 쌀 2, 30두斗에 이르니, 부자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은 불쌍합니다.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도읍都邑을 옮긴 이래로 석회를 구워 만들 곳이 양주楊州와 강화江華의 두 고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양 읍兩邑에서 구워 만들 때에 관官에서 일을 폐하는 탄식이 없었고 백성들이 나무를 운수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신臣은 다시 그 옛 곳으로 환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능실陵室을 보수補修한다면 모름지기 품질이 좋은 석회石灰를 써야 합니다. 만약 보통 때 나라에서 쓰는 것이라면 양주·강화의 석회를 도로 쓰도록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20

교하현에서 굽는 석회는 나라에 쓸 일이 있을 때 만들게 하다 1451년(문종 1) 3월 17일

전지傳旨하기를, “교하현交河縣의 석회石灰를 매년 구워 만드는데, 별도로 나라에 쓸 일이 있거든 임시하여 계달啓達하여 만들게 하라” 하였다.

21

악질이 성행하는 교하에 의원과 약재를 보내다 1451년(문종 1) 4월 1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원평原平·교하交河 등지는 도성都城에서 멀지 않은데, 지금 악질惡疾이 성행盛行하여 이리저리 옮겨 가면서 점차로 전염되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좋은 의원을 보내어 약제藥劑를 많이 준비하여 증세에 따라 치료하여 고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2

활민원을 수리하여 교하의 악질을 치료하게 하다 1451년(문종 1) 7월 20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보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원평原平·교하交河·개성부開城府 같은

곳에 악질惡疾이 바야흐로 치성熾盛한데, 다만 약제藥劑와 침구針灸로 고쳐서는 효험을 보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개성부의 활민원活民院을 수리하여 병자를 모아 놓고서 자원自願에 따라 목욕 찜질의 방법을 아올리 써서 치료하되, 땀 것과 약초藥草 따위 물건 및 병자의 양식은 개성부로 하여금 곡진曲盡하게 포치布置하게 하고, 간사승幹事僧을 정하여 주관主管하게 하며, 각 소재관所在官이 병자에게 두루 일러서 활민원活民院에 가도록 하되, 만약 이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수령守令을 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3

교하 등지에서 수록재를 베풀 것을 청하다 1451년(문종 1) 9월 15일

경기감사京畿監司가 아뢰기를, “도내道內 원평原平·교하交河 등지에 모든 잡된 질병이 전전해 전염되어 인근 군읍까지 침투되고 있는데, 비록 의약醫藥으로 치료하여도 즉시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주야로 생각하여도 구료救療의 방책을 얻지 못하여 향촌鄉村을 순회하면서 부로父老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지난 번에 황해도黃海道 황주黃州 등지에 악질惡疾이 한창 치성熾盛하여 사람들이 이르기 를, ‘제사 없는 원혼冤魂들의 빌미’라 하여 수록재水陸齋를 베풀고 기도를 드린 연후에야 여기風氣가 점차 그치게 되었으니, 이제 원컨대 수록재를 황주에서 베풀 것과 같이 실시하고 지성으로 기도하면, 병 기운이 조금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로父老들의 말이 비록 탄망誕妄하나 그 습속習俗이 이미 오래되어 이같이 하고자 하는 것도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원평 등지에 어느 산수 좋은 곳을 택하여 지계승持戒僧으로 하여금 수록재를 주관主管하여 행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희망에 좇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24

황해도·개성부·경기 등지의 악병이 전염된 곳에서 치제하게 하다 1451년(문종 1) 9월 20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문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黃州·봉산鳳山 등 각 고을과 개성부開城府, 그리고 경기京畿의 풍덕豐德·원평原平·교하交河·통진通津 등지에 각종 악병이 전전하여 서로 전염되어 목숨을 잃는 자가 자못 많아서 장래가 염려됩니다. 옛사람들의 재앙이 급박하면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예에 의하여 위의 항목의 각처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전횡드릴 물품을 정결히 갖추도록 하고 조정 신하 중에서 근후謹厚 한 자를 택하여 황해도에 1인, 개성부와 풍덕에 1인, 원평·교하·통진에 1인을 나누어 보내고, 큰 고을에는 2·3개소, 작은 고을에는 1개소로 하되 각 마을 환자의 다소에 따라 임시臨時하여 날을 가려서 치제致祭하게 하고,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그 제문祭文을 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25

악질 병에 걸린 사람들을 토담집에 모아 놓고 치료할 것을 명하다 1451년(문종 1) 11월 5일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참판參判 정척鄭陟이 경감사京畿監司 박중림朴仲林과 회의會議하고, 풍덕豊德·교하交河·원평原平 등지의 여러 가지 악질 병에 걸린 사람을 각각 근처에 맡겨서 토담집土室을 쌓고 모아서 치료할 일을 가지고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박중림을 인견引見하고, 직접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과 제때에 씨를 뿌리는 일도 유시諭示하였다.

26

교하를 경기 양주도의 우익에 속하게 하다 1455년(세조 1) 9월 11일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연해沿海의 요해지要害地에는 진鎮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近方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1. 경기京畿의 광주道廣州道는 그 중익中翼을 광주廣州·이천利川·양근楊根·양지陽智로 하고, 좌익左翼은 여흥驪興·천녕川寧·지평砥平·음죽陰竹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안성安城·진위振威·양성陽城·용인龍仁·죽산竹山으로 합니다. 다음 양주도楊州道는 그 중익을 양주楊州·원평原平·포천抱川·적성積城·가평加平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朔寧·마전麻田·영평永平·연천漣川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豊德·장단長湍·임진臨津·임강臨江으로 합니다. 다음 부평도富平道는 그 중익을 부평富平·인천仁川·양천陽川·금천衿川·고양高陽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과천果川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金浦·교하交河·통진독진通津獨鎭·교동喬桐·강화江華·개성부開城府로 합니다. …” 하니, 그대로 따랐다.

27

강맹경·황수신 등을 교하·고양 등지에 보내 상지하게 하다 1457년(세조 3) 10월 13일

강맹경姜孟卿·황수신黃守身·한명회韓明澮·박강朴莖·이순지李純之·정식鄭式·임원준任元濬에게 명하여, 풍수학 風水學 노목魯穆·안효례安孝禮를 거느리고, 교하交河·고양高陽 등지를 상지相地하게 하였다.

각 도에 진을 설치하고 교하를 양주진에 속하게 하다 1457년(세조 3) 10월 20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の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開합니다.”

“... 경기京畿의 수원진水原鎭에는 부평富平·인천仁川·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진위振威·안성安城·양성陽城을 속하게 하고, 광주진廣州鎭에는 양근陽根·지평砥平·천녕川寧·여흥驪興·음죽陰竹·죽산竹山·이천利川·양지陽智·용인龍仁을 속하게 하며, 양주진楊州鎭에는 연천漣川·마전麻田·적성積城·원평原平·교하交河·고양高陽·수평水平·포천抱川·가평加平을 속하게 하며, 강화진江華鎭에는 김포金浦·양천陽川·통진通津·교동喬桐을 속하게 하며, 개성진開城鎭에는 삭녕朔寧·임진臨津·풍덕豐德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 하니, 그대로 따랐다.

29

교하 사람 철동이 원통함을 하소연하다 1467년(세조 13) 11월 26일

처음에 교하交河 사람 철동哲同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병들어서, 어린 아우 네 사람을 데리고, 혹은 장작을 지기도 하고 혹은 양식을 구걸하여서, 이를 양육養育하였다. 본 고을에서 철동의 나이가 16세에 차다고 하여 익금부義禁府 조례貞隸로 정하니, 철동이 임금의 사냥 나가는 틈을 타서 어가御駕 앞에서 원통함을 하소연하였다. 형조刑曹에 명하여 현감縣監 최이남崔李男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30

이의무를 교하에 보내어 수령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다 1488년(성종 19) 1월 23일

홍문관 교리校理 이의무李宜茂를 교하交河에 보내어 칠사七事의 상황을 적간摘奸하게 하였다.

31

간통죄를 범한 정원필과 정한의 아내의 처벌을 요청하다 1516년(중종 11) 1월 19일

대간臺諫이 이장생李長生을 파직할 것을 청하고, 헌부獻府가 아뢰기를, “교하交河 사는 정한鄭漢은 평안도의 권관權管으로 부임赴任하였고 그 집은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는데, 그 형 정원필鄭元弼이 그 아우 한의 아내를 간통하되 몰래 간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하로 데리고 가서도 마음대로 간통하므로, 감사監司로 하여금 덮쳐 잡게 하였습니다. 정한의 아내는 사족士族의 부녀자이니, 조옥詔獄에서 추고推考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금부禁府에 명하여 정원필을 추고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윤택하지 않았다.

32

음란한 짓을 한 교하 사람 이씨를 추문하다 1519년(중종 14) 2월 29일

헌부가 독계獨啓하기를, “교하交河에 사는 고故 곽종郭宗의 처 이씨李氏가 지난 해에 양자養子와 음란한 짓을 하여 자식까지 낳았으므로, 행이行移하여 추고하매 사간事干이 거의 자복하였습니다. 이는 인륜의 큰 변고이니 잡아다가 추문하소서” 하니, 따랐다.

33

교하에 곡식을 먹는 벌레가 나타난다 1524년(중종 19) 5월 16일

경기 광주廣州·양근楊根·용인龍仁·교하交河 등 고을에 곡식을 해치는 벌레가 있는데 그 빛은 누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였다. 양근에서는 산과 들의 풀잎도 죄다 먹었다.

34

교하에 충해가 발생하다 1526년(중종 21) 5월 9일

경기의 광주廣州·고양高陽·금천衿川·교하交河·과천果川·통진通津 등 고을에 충재蟲災가 있었다.

35

교하에 황충이 발생하다 1526년(중종 21) 7월 17일

경기 장단長湍·고양高陽·양천陽川·부평富平·광주廣州·김포金浦·금천衿川·교하交河 등 고을에 황충이 발생하였다.

36

교하의 관노 내은동이 사족 허종원의 아내 이씨와 간통하다 1529년(중종 24) 5월 12일

경기관찰사 이수동李壽童의 계본啓本을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공사公事를 보니, 교하交河 고을의 관노官奴 내은동內隱同이 허종원許宗元의 아내 이씨李氏와 간통했다 한다. 차사원差使員은 감옥에서 간통한 것이라 하여 추문推問하였다. 【내은동은 곧 쇠장鑛匠이다.】 내은동 등은 벌써 전에 이씨와 혼인하기로 상의했다며 발명發明한다고 했다. 대저 사족士族의 부녀는, 스스로 저지른 것이 큰 사건이라면 감옥에 가두고 추문할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의 사간事干인 것을 【이씨는 사노私奴 종손從孫이 허씨許氏와 간통한 사건 때문에 사간事干으로 옥에 갇혔었다.】 옥에 가두거나 보수保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통이 있게 되었다. 이는 수령守令들이 잘못된 일이니, 그때의 수령도 아울러 추고하게 하라.”

37

교하의 고을에 충해가 있다 1538년(중종 33) 5월 20일

경기도 강화江華·교하交河·통진通津 등의 고을에 충해蟲害가 있었다.

38

교하에 여역이 퍼져 55명이 죽다 1544년(중종 39) 3월 18일

경기관찰사의 서장[교하交河에 여역이 퍼져 죽은 사람이 55명이고 앓고 있는 사람이 56명이었다.]을 정월에 내리면서 일렀다. “교하에 여역이 이리하여 매우 놀라우니 시급히 의원을 보내 구료하라. 지난 번에 강화에 보냈던 의원은 이미 잡아오도록 명하였으니 시급히 다른 의원 보낼 것을 아울러 예조에 이르라.”

39

효성이 지극한 교하의 홍씨를 포상하다 1566년(명종 21) 1월 19일

… 교하交河 거주 유학幼學 홍백령洪百齡의 딸 홍씨洪氏[천성이 본시 지효로와, 그 어머니가 현훈증眩暈症을 얻어 의식을 잃어버리므로, 홍씨가 손가락을 잘라 약에 넣어 드려, 마침내 효험을 보았다.]는 복호하였다.

40

경기감사가 교하 등지의 농사상황을 보고하다 1567년(명종 22) 4월 12일

경기감사 박계현林啓賢[박충원朴忠元의 아들로 성격이 호방豪放하고 또 재화才華가 있었다. 다만 추루하여 명리名利를 가까이 하고, 박잡하여 실상이 없으므로 시론이 천하게 여기었다.]이 아뢰었다. “신이 고양高陽·파주坡州·교하交河·풍덕豐德·장단長湍·적성積城·마전麻田·삭녕朔寧·연천漣川·양주楊州·양근楊根·여주驪州를 두루 돌아 농사農事를 시찰하여 보니, 봄이 지나 여름이 되도록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내와 우물이 바짝 말랐으며, 비록 소나기가 오기는 하나 찬바람이 거세게 불면 즉시 말라 버려 토맥土脈이 굳어서 밭갈고 김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자를 심은 곳도 모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였고 보리와 밀은 농량農糧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삭만 나왔을 뿐 결실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대로 말라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 가까운 시일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추수를 기대할 수 없으니, 매우 걱정됩니다. 다만 지나는 촌락에는 식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없고, 도로道路에는 먹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계현이 열읍을 순찰한 뒤에 상경하여 숙배를 드릴 때 상께서 물었기 때문에 아뢴 것이다.]

41

교하를 길지라고 한 이의신의 상소를 승정원에서 아뢰다 1612년(광해 4) 9월 14일

승정원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인의^{引儀} 이의신^{李懿信}이 상소 한 장을 올리어 괴탄스러운 말을 마구 늘어놓았는데, 국도^{國都}는 기운이 쇠하였고 교하^{交河}가 길지^{吉地}라고 한 것은 더욱 놀라운 말입니다. 이러한 괴이한 말은 덕스러운 말만 듣는 성상께 아뢰어서는 안 되므로 신들이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겨우 수습 일이 지난 뒤에 또 와서 바쳤는데, 그의 뜻과 태도를 보니 백일하에 요망스러운 설을 퍼뜨리면서 거리낌 없이 방자하였는바 반드시 그의 술책을 성공시킨 뒤에야 그만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거 없는 말들이 자자하여 인심이 흉흉합니다. 만약 본원에서 정지시키고 말면 통렬하게 끊어서 그의 속셈을 징계시킬 수가 없을 것이기에 감히 받아들여 안으로 들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읽어 보신 뒤 그의 죄를 엄하게 배척하여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42

예조판서가 도성을 교하현으로 옮기자는 이의신의 상소를 반박하다 1612년(광해 4) 11월 15일

술관 이의신^{李懿信}이 상소하여, 도성의 왕기^{旺氣}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도성을 교하현^{交河縣}에 세워 순행^{巡幸}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니, 왕이 예조에 내려 의논토록 하였다. 예조판서 이정귀^{李廷龜}가 회계하기를, “삼가 이의신의 상소를 보건대,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들이 사람을 현혹시킬 뿐 무슨 뜻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풍수^{風水}의 설은 경전^{經傳}에 나타나지 않은 말로 괴상하고 아득하여 본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위^{讖緯}와 여러 방술^{方術}의 근거 없는 말들을 주워 모아 까닭도 없이 나라의 도성을 옮기자 하니 역시 괴이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한양의 도읍은 화악^{華岳}을 의거하여 한강에 임하였으며 지세는 평탄하고 도로의 거리는 균일하여 주거^{舟車}가 모두 모이는 중심지로서 천연적인 비옥한 토지와 굳건한 성곽 등 형세상의 우수함은 나라에서 제일이니 이야말로 전후의 중국 사신들도 모두 칭찬한 바였습니다. 우리 성조^{聖祖}께서 나라를 세우려고 터를 마련하면서 여러 곳을 살펴보고 여러 해를 경영하였으나 끝내는 이곳에 정하였으니, 깊고 먼 계략을 어찌 미미한 일개 술관과 비교해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2백년이 되도록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였으며 다스림은 융성하고 풍속은 아름다웠으니 실로 만세토록 흔들리지 않을 터입니다. 복지^{福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신은 임진년의 병란과 역변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과 조정의 관리들이 분당하는 것과 사망의 산들이 별거벗은 것이 국도의 탓이라고 합니다. 아, 수길^{秀吉}의 하늘까지 닿은 재앙은 실로 천하

에 관계된 것이며 역적의 변괴가 일어난 것은 국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여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산의 나무는 저절로 무성할 것이며 편협되고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왕도를 바로 세우면 조정의 의논은 저절로 화협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인군과 신하, 위와 아래 모두가 힘써야 할 바입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를 이유로 국도를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설사 풍수의 설을 받들어 믿을 만하고 가능치도 않은 일들이 날날이 맞는다 하더라도 도성을 옮기는 일은 막중 막대한 일이니, 비록 곽박(郭璞)이 건의하고 이순풍(李淳風)이 계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솔히 의논하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의신의 방술에 대한 수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듣건대, 그 사람은 상당히 구변(口辯)이 있고 문자도 제법 알기 때문에 방서(方書)에 의거하여 큰소리 치고 있으나 실상은 그들의 동류들도 비웃는 자가 많다 하며 여염과 사대부의 사이에 뒷자리와 집터를 지정해준 것도 대부분 효험이 없다고 하니, 그가 곽박, 순풍과 같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그가 이른바 교하는 복지이고 한양은 흥하다는 말에 대해 세상에 알 만한 자가 없으니 누가 능히 가리겠습니까만, 당당한 국가가 어찌 일개 필부의 허망한 말을 선뜻 믿어 2백 년의 굳건한 터전과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갑자기 일거에 떠돌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소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서로 뜯소문에 동요되어 더러는 '성상께서 이 말을 믿는다' 하고, 더러는 '새 궁궐에 나가지 않는 것은 이 말 때문이다' 하여, 원근이 모두 놀래고 현혹되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단(異端)이 국가에 해독을 끼치는 일이 예로부터 그러했으니, 고려 말엽에는 요승(妖僧) 묘청(妙淸)이 음양의 설로 임금을 현혹하기를 '송경(松京)은 왕업이 이미 쇠퇴하였고 서경(西京)에 왕기가 있으므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 고 하여 드디어 새 궁궐을 서경 임원역(林原驛)에 지었으나 끝내는 유참(柳黶) 등의 변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전의 고사도 이와 같은데,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나라의 터전을 장대하게 하고 영원한 명을 비는 도리는 다만 형정(刑政)을 밝히고 취사(取捨)를 살피는 것, 백성을 사랑하고 풍속을 도탑게 하는 것, 내정을 잘 닦고 외적을 물리치는 일뿐입니다. 참으로 이 도리를 반대로 하면 비록 해마다 도읍을 옮긴다 하더라도 다만 위란만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말하기를 '인사가 가지런히 되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기수(氣數)에 있다' 하였는데,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인사를 닦지 않고 다만 기수에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망국(亡國)의 말인 것입니다. 신들이 예관이 되어 예에 벗어난 말들을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으니, 성명께서는 요망한 말들을 물리치고 멀리하여 성상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속히 법궁(法宮)에 나아가 못사람들의 의심이 풀리도록 하소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예로부터 새로 도성을 세운 제왕이 많았으니 본디 세웠던 도성을 아주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의신의 방술이 정미하다고 내가 지나치게 믿는지의 여부를 예관이 어떻게 아는가. 새 궁궐로 곧 옮기려고 했으나 내전이 상喪을 당하였고 역옥逆獄이 계속 일어나므로 나라에 일이 많아 여기까지 미칠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터무니없고 근거도 없는 말로서 이 말을 믿는다고 임금을 지척하고, 또 '법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이 말 때문이다' 하니, 너무 놀랍다. 앞으로는 이러한 등의 말을 경솔하게 내지 말도록 하라. 소장의 끝에 있는 회계의 일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상의하여 의계議啓토록 하라" 하였다.

43

교하로 도읍을 옮기는 일을 논의하게 하다 1612년(광해 4) 윤11월 5일

교하交河로 도읍을 옮기는 일을 가지고 2품 이상에게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였다. 대신大臣 이하는 모두 불가한 일이라 하였으나 찬성 박홍구朴弘壽만은 꽤 찬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홍구가 더욱 사랑을 받았는데, 시의時議가 비루하게 여겼다.

44

비변사에 비밀로 전교하여 교하 지역을 살피고 형세를 그려오게 하다 1613년(광해 5) 1월 3일

왕이 비밀로 일을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자고로 제왕들은 반드시 성읍을 따로 건설하여 예기치 않은 일을 대비하였으니, 도읍 옮기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교하交河는 강화江華를 앞에 마주하고 있고 형세가 심히 기이하다. 독성 산성秀城山城의 예에 따라 성을 쌓고 궁을 짓고는 때때로 순행하고 싶다. 대신과 해조 당상은 현관獻官·언관言官·지관地官과 같이 날을 택해 가서 살피고 형세를 그려 오라.”

45

교하의 명을 거두도록 청하다 1613년(광해 5) 2월 5일

양사가 합계하여 교하交河의 명을 그만두도록 청하였다.

46

이의신을 벌주고 교하의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1613년(광해 5) 2월 23일

양사가 합계하기를, “이의신은 하찮은 일개 술관衛官일 뿐이므로 그 소장의 요망하고 허탄함은 변론할 것도 없지마는, 그 중에서도 이른바 왕기王氣가 이미 다하였다는 말은 과연 신하로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왕자王者가 있는 곳에는 기氣가 반드시 따르는 것인데, 이미 다하였다고 말한다면 이는 의신이 임금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종사宗社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조정이 나라를 세운 지 지금 2백 년이 되었습니다. 태평한 정치가 고금에 뛰어났는데, 중간에 비색한 운수를 만나서

다시금 왕령王靈을 떨쳤으니 아름다운 기운이 여전히 왕성하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괴이한 의견으로 감히 요사스러운 설을 일으켜 위로는 임금의 귀를 기만하고 아래로는 못사람의 마음을 당혹시킨 바람에 나라 안팎이 놀라 기상이 참혹하여 하루도 보존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의신의 살을 만 갈래로 찢어도 그 악함을 징계하기에 부족한데 성상께서는 죄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설을 믿으시고 심지어 가 살피라는 명까지 내리셨습니다. 대저 교하交河는 일개 작은 현縣인데다 포구에 치우쳐 있어 성을 쌓고 부서를 만들기에는 결코 적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신의 죄를 왕법으로 용납하기 어려우니, 법률에 따라 정죄하시고 가 살피라는 명을 빨리 취소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의신은 자기의 술術로 충성스러운 말을 다 하였으니 무슨 죄줄 만한 일이 있는가. 무릇 일이 지나치면 잘못되는 법이다.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이의신에게 교하의 일을 상소하도록 은밀히 명하였다. 심지어는 관상감 정 정사 鄭思倫에게 상소할 날을 가려 부치게 하였기 때문에, 비록 온 조정이 다투어 탄핵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은 것이다.】

47

이의신을 정죄하고 교하에 대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1613년(광해 5) 3월 13일

양사가 전계前啓인 이의신李懿信을 법대로 정죄하고 교하交河에 가 살피라고 한 명을 거두라는 일을 합계하니, 윤택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48

이의신과 교하의 일을 연계하다 1613년(광해 5) 4월 3일

양사兩司가 이의신李懿信과 교하交河의 일을 연계連啓하니, 따르지 않았다.

49

이의신과 교하의 일을 합계하다 1613년(광해 5) 4월 8일

양사가 이의신李懿信과 교하交河의 일을 합계하니, 이미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50

이의신에 대한 양사의 합계를 윤택하지 않다 1613년(광해 5) 4월 13일

양사가 이의신李懿信과 교하交河의 일을 합계하니, 윤택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헌부의 계사齎辭에 답하기를, “파방하는 일은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토록 하라. 감시관과 시관은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51

이의신을 정죄할 것과 교하의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다 1613년(광해 5) 4월 20일

양사가 합계하여 이의신을 올에 따라 정죄定罪할 것과 교하交河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는 일을 속히 중지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지리상 형세가 좋으면 보장保障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안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지관地官이 자기 방술方術에 입각하여 진언한 것 역시 그다지 죄줄 일이 못 된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52

교하 대신 인왕산 아래에 새 궁궐터를 잡게 하다 1616년(광해 8) 3월 24일

【왕이 성지性智와 시문룡施文龍 등에게 인왕산 아래에다 새 궁궐의 터를 잡게 하였다. 왕이 이의신李懿信의 말을 받아들여서 장차 교하交河에 새 도읍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중론衆論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성지와 시문용 등이 왕에게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 몰래 인왕산 아래가 궁궐을 지을 만하다고 아뢰자, 왕이 크게 기뻐해서 즉시 터를 잡으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이첨이 비밀히 아뢰기를, “교하에 대한 의논을 정지하고 이곳에다 궁궐을 지으면 백성들이 반드시 앞 다투어 달려올 것이다” 고 하였다. 이 당시에 여러 신하들이 교하의 일에 대해 앞 다투어 간쟁하였었는데 인왕산 아래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시 간쟁하지 못하였다.】

53

계운궁의 묘소지로 교하, 김포, 고양을 살피다 1626년(인조 4) 2월 9일

예장 도감禮葬都監이 아뢰기를, “도감의 당상인 이정구李廷龜· 정광적鄭光績· 김신국金愼國· 구굉具宏이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김류金瑬· 서성徐渚과 회동會同하여 전후 간산看山한 곳의 산론山論과 도형圖形을 가지고 다시 술관衛官들에게 각기 소견을 쓰게 하여 그곳의 교하에 대한 등제를 매겼는데 모두들 고양高陽· 김포金浦· 교하交河를 일등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희주鄭熙周는 ‘교하 객사客舍의 뒷산이 귀격貴格은 있으나 주산主山이 파손된 데가 있는 것이 큰 흠이다. 고양 고군古郡의 뒷산은 형세가 매우 아름답지만 수파水破가 곧게 나간 것이 흠이다. 그러나 독을 조금 쌓아 오방午方으로 흐르게 하면 매우 길하여 교하보다 낫다. 김포 객사의 뒷산은 별로 흠될 곳이 없다’ 하였고, 송건宋健은 ‘고양 고군의 뒷산이 제일이고 다음은 김포이고 또 그 다음은 교하 객사의 뒷산이다’ 하였고, 이갑생李甲生은 ‘김포 객사의 뒷산은 제일이고 그 다음이 고양 고군의 뒷산이고 또 그 다음이 교하 객사의 뒷산이다’ 하였고, 최남崔楠은 ‘교하는 길격吉格에 합치되지만 혈도穴道가 부서졌으니 보토補土한 뒤에야 쓸 수 있다. 고양의 옛고을은 형격形格

이 매우 길하지만 수파水破가 정지丁地로 나 있으니 독을 조금 쌓으면 매우 강하다. 김포는 형세形勢가 모두 순하여 달리 논할 것이 없다' 하였고 오세준吳世俊은 '교하가 제일이고 김포가 제이이고 고양이 제삼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모두 풍수風水에는 어두워 그 우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자들이 논한 것을 가지고 되풀이하여 상의해 보건대 고양이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말이 각기 같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이가 좋다고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다시 간심看審하게 하여 고양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다시 외방의 지관들을 대동하고 간심하니 고양은 흠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김포에 가서 간심하라고 명하였는데 군의群議가 모두 길하다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그곳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54

사헌부가 교하현감의 파직을 청하다 1659년(현종 즉위년) 10월 14일

선왕조 때 사헌부가,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의 시장柴場·어전漁箭이 혹은 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문서작성이 되었다 하고, 혹은 왕으로부터 직접 떼어 받았다 하면서 법규 이외의 짓을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일체 혁파할 것을 아뢰어 청하여 윤희까지 받았다. 그런데, 각도 각 읍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아뢰지 않아 아직도 넓은 땅을 점유하고 남의 것까지 침범하는 폐단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도 인평위寅平尉 집에서 교하交河 지방에다 시장을 정하고 떼어 받은 것이라 하면서 넓혀가는 짓이 너무 심하였고, 사대부 분묘가 있는 산도 가리지 않고 나무를 모조리 베어갔다. 사헌부가 아뢰어 그 시장을 혁파할 것을 청했었는데, 현감 안정옥安廷燾이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아 난잡한 폐단이 있게 하였으므로, 그를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담당자로 하여금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55

인평위의 교하 시장을 혁파할 것을 청하다 1659년(현종 즉위년) 10월 14일

이에 앞서 헌부가, 제궁가諸宮家와 각 아문의 시장柴場과 어전漁箭 가운데 입안立案되었다고도 하고 절수折受받았다고도 하면서 규정 외의 외람되고 난잡한 행위를 자행하는 곳이 많다는 이유로 일체 혁파하도록 계청하여 윤희를 받았었는데, 각도와 각 읍이 법에 의거하여 조사해 아뢰지 않은 탓으로 아직도 넓은 지역을 점유하면서 제멋대로 침해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인평위寅平尉의 궁가가 교하交河 지역에 시장柴場을 점유하고는 절수 받았다고 일컬으면서 말할 수 없이 농락을 하는가 하면 사부士夫의 분산墳山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나무를 베어 가져갔다. 헌부가 계청하기를, "그 시장은 혁파하고, 현감 안정옥安廷燾은 덮어둔 채 보고하지 않아 외람되고 난잡한 폐단을 초래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유

사로 하여금 분명히 조사해 처리토록 하였다.

56

교하의 황충 피해를 보고하다 1670년(현종 11) 5월 12일

경기 마전麻田에 이달 9일 우박이 내렸으며, 교하交河 등 아홉 고을에 황충이 극성을 부린다고 감사가 보고하였다.

57

유학 유완이 교하에 축성하여 불우에 대비할 것을 청하다 1675년(숙종 1) 11월 16일

유학幼學 유완柳完이 상소하여 교하交河에 성城을 쌓아, 불우不虞에 대비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교하交河에 설령 험준險峻한 형세가 있더라도 지금 대흥大興·중흥中興의 보축補築하는 것도 오히려 재력財力이 미치지 못함을 근심하고 있는데, 만약 하늘에서 나오고 땅에서 솟거나 귀신이 만들어 주지 아니하면 세 곳의 축성을 무엇으로 능히 하겠는가?” 하였다.

58

강화에 속해 있는 교하의 군사를 장단에 소속시켜 총융청의 군사로 삼도록 명하다 1687년(숙종 13) 2월 13일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했다. 여러 신하들이 총융청總戎廳의 군제軍制를 바꾸는 일을 품주稟奏하니, 임금에 강화江華에 속해 있는 고양高陽과 교하交河의 군사를 도로 장단長湍에 소속시켜 총융청의 군사로 삼도록 명하였다.

59

정언 임원구가 정중휘의 파직과 형조 당상의 추고를 논계하다 1694년(숙종 20) 8월 9일

정언 임원구任元壽가 논계論啓하기를, “고양高陽 사람 이옥李沃이 곤궁坤宮께서 사제私第에 물러가 계실 적에 감히 한 장의 소를 지어 모해謀害하려는 흉계를 부리려 하다가, 사람들이 제지하자 마침내 울리지 못했습니다. 본군本郡의 유생儒生 김정로金井老 등이 일제히 모여 벌을 주자, 이옥이 도리어 도신道臣에게 호소하여 자신을 변명하였습니다. 도신道臣 정중휘鄭重徽가 고양高陽·교하交河 두 고을로 하여금 사실을 밝히게 했는데, 유생들이 변핵辨駁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므로, 이로 인해 인혐引嫌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양현兩賢을 승배陞配하는 예식禮式을 못하게 되어 태학太學에 통문通文하자, 정중휘가 그 일을 형조刑曹로 옮겼고, 형조에서는 이옥과 김정로를 둘 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정로는 통문한 일에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정배定配하게 하였습니다. 정중휘가 드디어 잡아다가 형신刑訊하였으며

로, 여러 선비들이 오랫동안 수치스럽게 여기고 분개하였습니다. 청컨대 정중휘는 파직하고 형조 당상刑曹堂上을 추고推考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재차 아뢰자 그대로 따라 정중휘를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도록 명하였다.

60

교하 유생 박태문이 정원을 배척하여 상소하다 1717년(숙종 43) 4월 14일

경기 교하交河의 유생儒生 박태문朴泰文이, 이상채李相采 등이 선현先賢을 근거 없이 욕한 말을 변명한다고 핑계하여, 윤선거尹宣舉의 시호諡號를 삭제하고 원우院宇를 현 일을 덧붙여 논하고,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을 헐뜯어 욕하였다. 또 정원政院에서 그 소를 봉입捧入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상소하여 정원을 한없이 배척하였다. 그래서 김창집과 승지承旨들이 다 물러가서 상소하여 사직하였는데, 임금이 박태문의 음험한 말은 입에 담을 것도 못된다 하여 여러 번 특교特教를 내려 김창집에게 위유慰諭하니, 김창집이 드디어 도로 약원藥院에 입직入直하고, 승지들도 비답批答을 받은 뒤에 직무를 보러 나아갔다.

61

교하에 우박이 내리다 1723년(경종 3) 3월 28일

경기京畿의 삭녕朔寧·교하交河 등지에 우박雨雹이 섞여 내렸는데, 모양이 새알과 같았다고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로 알려왔다.

62

교하에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다 1723년(경종 3) 4월 15일

경기의 광주廣州·지평砥平·양성陽城·안산安山·양천陽川·교하交河·가평加平 등 7읍縣에 큰 바람이 불었고, 비와 우박이 뒤섞여 내렸는데, 우박은 새알만 하였다.

63

총호사 홍치중 등이 여러 능의 방혈과 교하의 읍치를 간심하고 돌아오다 1731년(영조 7) 5월 8일

총호사總護使 홍치중洪致中 등이 여러 능陵의 방혈旁穴과 교하交河의 읍치邑治를 간심看審하고, 돌아와 복명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지관地官들이 모두 말하기를, “교하交河는 산세山勢의 배포排布가 국장國葬의 자리에 합당합니다” 하고, 도감 당상都監堂上 조원명趙遠命과 윤유尹游 등 역시 극구 칭찬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공조판서 권이진權以鎭·수원 부사水原府使 이형좌李衡佐가 함께 가서 다시 살피라” 하였는데, 권이진과 이형좌가 범안凡眼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다.

64

교하를 간심하고 돌아온 총호사 홍치중 등을 임금이 부르다 1731년(영조 7) 5월 13일

임금이 소대召對에 나아갔다. 총호사總護使 홍치중洪致中 등이 교하交河를 간심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권이진權以鎭·이형좌李衡佐 등이 모두 말하기를, “객사客舍 뒤가 정혈正穴인 듯합니다” 하고, 당상 윤유尹游는 말하기를, “지사地師들은 혹 향교鄉校 뒤가 정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곳 가운데 어느 곳이 진혈眞穴인지 알 수 없으니, 이것이 결정하기 어렵다” 하였다. 이어 명하기를, “영부사領府事 이광좌李光佐가 가서 살피라” 하였다.

65

교하 백성들에게 천릉으로 인한 역사의 어려움을 위로하다 1731년(영조 7) 5월 17일

도승지 송성명宋成明에게 명하여 함께 입시하게 하고 윤음綸音을 송성명에게 전하여 경기 백성 및 교하交河 백성들에게 가서 선유宣諭하기를, “이번 원릉園陵을 옮겨 모시는 것은 사람의 아들 된 자의 통박痛迫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새 능을 오랫동안 자리 잡지 못해 더욱 민망스러웠다. 이제 좋은 곳을 이미 정했으니 슬픔과 다행한 마음이 교차된다. 삼공三公이 간심看審케 한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겨서였다. 옛날 영릉寧陵을 봉심奉審하면서 이미 육경六卿과 지신사知申事가 함께 간 일도 있었기에 대신大臣이 갈 때 역시 함께 가게 하였었다. 다만 근년 이래에 기읍畿邑 백성들이 연달아 나라의 역역을 만나 조잔凋殘함이 특히 심하였고, 이제 또 고을을 옮기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민망히 여긴다. 아! 왕자王者의 효孝는 계술繼述하는 것이 큰 것인데 교하의 백성인들 어찌 우리 성조聖祖의 적자赤子가 아니겠는가? 이제 은자銀子 2천 1백 50냥을 내리노니, 1천 냥은 교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옮기는 비용을 돕고, 1천 냥은 기영畿營에 주어 천봉遷奉하는 역역을 도우며, 1백 50냥은 교하현에 주어 관사官舍를 뜯어다 옮기는 비용으로 쓰고, 어사御史에게 적발된 관동關東의 재목 역시 모당으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 나누어주어 관해官廢 짓는 것을 돕게 하여 성조聖祖께서 평일에 백성 돌보는 덕의德意를 체득하도록 의당 가서 유지하여 모두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66

교하에 천릉하는 것을 반대하다 1731년(영조 7) 5월 18일

판부사 민진원閔鎭遠이 현도縣道를 거쳐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난번 신이 명을 받들고 여러 능에 갔었는데 후릉厚陵의 방혈傍穴을 간심한즉 여러 지사地師들이 모두 기뻐 뛰면서 길지吉地라고 칭찬했습니다. 신은 비록 평소 지술地術에 어둡지만, 범안凡眼으로 보건대, 혈의 뒤에서 내려온 산맥山脈

이 비등沸騰하고 융결融結하는 형세가 있고, 면전面前의 여러 사격砂格은 뒤섞어 어지럽게 배립背立한 형상이 없었으며, 국내局內가 넓고 평탄하며 수구水口의 관쇄關鎖가 긴밀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간 여러 신하들의 소견이 같았으므로 드디어 뒷산으로 걸어 올라가 제5절節에 이르러 여러 지사地師로 하여금 절節마다 쇠를 놓아 보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내려온 맥脈이 모두 격格에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관소館所로 돌아오니 신과 지면知面이 있는 개풍開豐의 선비들이 모두 와서 하례하기를, '후릉의 방혈傍穴인 사자항獅子項의 언덕은 예로부터 서로 전해오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께서 뜻이 있어 남겨두었는데 유객遊客으로 출입하는 자들이 그 기이함을 칭탄해 왔다. 이제 국가에서 쓰게 되었으니, 일이 마치 기다린 듯하다'고 하므로 신이 스스로 기쁘고 다행스러워 국가의 대계大計가 이로부터 정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은 즉 재심再審의 행역行役에 지사 몇 사람을 더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방기方技의 무리는 학문하는 선비와 달라 한갓 상인上人의 마음으로써 그 사육만 채울 계책을 하는 것이 도도히 다 그렇습니다. 여덟 사람이 같이 찬양한 곳을 또 다른 사람을 첨가하면 세 번 생각하다 미혹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구구한 사심私心으로 이미 염려했는데, 그후 과연 들으니, 새로 간 자가 감히 계축계축의 설을 발문하였다고 합니다. 대저 계축의 맥이 들어오는 것은 술가術家에서 꺼리는 바인데 처음에 여덟 사람이 쇠를 놓아 보고 계축이 아니라고 말하였는데 나중에 가서 두세 사람이 어찌 계축으로 단정을 짓겠습니까? 더군다나 맥이 혹 계로 들어오거나 축으로 들어오는 것은 현묘玄妙하고 미오微奧한 일이 아니요, 한 걸음마다 쇠를 놓아 보면서 자세히 간심했으니, 다른 지사를 빌어 허실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 지사가 놓은 쇠의 완급緩急이 한결같지 않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 근래 듣건대 허원許遠이란 자가 새로 지남철指南鐵을 만들었는데 단지 해의 그림자를 취하여 남북南北을 정하니 그 법이 아주 정밀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으로 먼저 남북을 정한 연후에 줄을 띄워 재보면 계축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허실을 물론하고 '계축'이란 두 글자가 지사의 입에서 이미 나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다시 쓰기를 의논하겠는가?' 하였는데, 신의 어리석음으로는 아마도 통하지 않는 의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만약 도량稻梁과 회자膾炙가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라고 한다 해서 신하된 자가 그 감히 군부君父에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삼가 듣건대, 지사 마익룡馬翼龍이란 자가 감히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탐전榻前에서 진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계축' 두 글자 역시 그의 시기하고 꺼리는 마음을 이루기에 죽는데 또 어찌 감히 이러한 흉언으로서 천청天聽을 놀라게 한단 말입니까? 옛날 주자朱子の 산릉의장山陵讞狀에 '대사臺史 형대성荊大聲을 척거斥去하여 법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역시 마익룡을 법으로 다스리고 후릉厚陵의 방혈傍穴에 대해 다

시 의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제 삼가 들건대 신혈神穴을 이미 교하交河 읍치邑治 뒤에다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땅의 길흉은 신이 비록 알지 못하나 여러 사람이 이미 많은 칭찬을 하니 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신이 일찍이 들건대 기해년 효묘孝廟의 대상大喪 때에 새 능을 수원水原 읍치邑治에다 정하고 공역工役을 이미 시작하였는데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아들이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양지養志하는 것이 큰 것이니 참으로 양지하는 것을 큰 것으로 여긴다면 어찌 살아 있을 때와 죽었을 때가 다르겠습니까?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지극한 인仁이 널리 퍼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물이 없었으니, 수원의 7천 갑병甲兵도 사랑을 받는 데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읍리邑里를 철거하고 그들의 전려田廬를 파괴해 한숨짓고 탄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대행 대왕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길지를 가리어 선왕先王의 장례를 모심에 있어 바로 근심하고 원망하는 지역에 장례를 모시고 선왕의 체백體魄이 편안하기를 바라니, 이는 바로 선왕의 뜻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현종顯宗께서 감오感悟하시어 즉시 역사를 거두셨습니다. 선정신의 충애忠愛하는 정성과 현종의 전환轉環하는 도량을 지금 까지도 칭도稱道하는 것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하는 작은 현이어서 이미 7천 명의 갑병이 없으니 수원에 비교하면 경중은 다르나 읍리를 철거撤去하고 그 전산田産을 파괴하여 한숨짓고 한탄하는 자가 반드시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니 또한 어찌 선왕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던 뜻을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정신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반드시 현종顯宗의 효성을 전하게 바랐을 것이며, 전하게서도 어찌 현종의 일로 스스로 면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시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후릉의 방혈을 끝내 쓸 수가 없다면 오늘날 새 능 자리는 옛 영릉寧陵보다 나은 곳이 없을 듯합니다. 대개 귀천貴賤간에 장사를 지내는 예는 단지 술사의 말만 의거해 땅속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효자孝子 사손慈孫이 종신토록 의심을 품고도 풀지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옛 영릉은 계축년 파릉破陵할 때에 따뜻한 기운이 증기와 같았고 토색土色이 윤택하여 그때 여러 신하들이 모두 차탄하였습니다. 광중壙中에 흠이 없는 상황은 모두 장계狀啓 가운데 갖추어져 있고 등록에 실려 있으니 상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땅속에 흠이 없음을 알고, 또 이는 선릉先陵의 방혈이니 지사의 術을 빌릴 필요도 없이 길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다 장릉長陵을 봉천奉遷하면 어찌 신神의 이치와 사람의 정情에 맞지 않겠으며, 전하의 효사孝思에 있어서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신은 들건대, 전하께서 일찍이 옛 영릉에 메꾸어 쌓는 것이 단단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계축년 등록을 보니 천릉遷陵한 후에 별도로 당상과 낭청을 정하여 메꾸어 쌓는 것을 감독했고 역부役夫를 쓴 것이 수백 명이 되도록 많았습니다. 그때 일을 처리한 것이 이처럼 정밀했으니 반드시 단단하게 쌓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신은 아마도 성상의 염려

가 지나친 듯합니다. 또 삼가 듣건대 조정에서 권이진權以鎭이 지술地術에 밝다고 하여 특별히 산릉 당상으로 차임해 산을 보도록 했는데 혹 전하기로는 권이진이 영남嶺南 방백方伯으로 있을 때 친히 산 하나를 지점指點하여 정희량鄭希亮으로 하여금 그의 할아버지 무덤을 옮기게 했는데 오래지 않아 무신년 일이 일어났으므로 지금까지도 영남 사람들이 모두 그의 지술을 비웃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원릉園陵을 의논해 정하는 날에 참여시키지 말았어야 온당했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신의 이 소疏를 내려 다시 더 확실하게 상의하여 큰 일에 유감이 없게 하고 나라의 운회運會가 오래 이어지게 한다면 실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무궁한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천봉遷奉은 막중 막대한 일이니 신하된 자가 어찌 이에 마음을 쓰지 않겠는가? 무릇 산릉을 정하면서 재차 간심할 때 다른 지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옛 예가 그러한 것이니, 경 역시 전례를 잘 모르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잡기雜技들은 대개 이기기를 먼저 힘쓰고 한 사람이 창도唱導하면 여러 사람이 다 뇌동하니, 내가 취하지 않는 바이다. 지극히 중대한 일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지금 마익룡을 죄주면 후일 지사地師들이 어찌 구차히 부동符同하는 염려가 없겠는가? 옛 영릉이 비록 흠이 없다고는 하지만 백년에 가까운 원침園寢을 이미 천봉한 땅에 옮기면 신자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건원릉健元陵 안에 비록 남아 있는 산동성이 있으나 단지 지사의 말만 믿고 억지로 정할 수 있겠는가? 기해년 선정先正의 올린 차자를 성조聖祖께서 따른 것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다. 지금은 여러 산을 거의 다 써서 새로 교하交河에다 정한 것은 부득이해서이다. 권이진의 일을 소장 가운데에 견주어 논한 것은 또한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대저 경의 이런 점을 내가 항상 경을 위해 예석하게 여긴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는 공부이니 어찌 끌어대어 탈만 잡겠는가?” 하였다.

67

총호사 홍치중 등이 교하 새 능의 혈을 재고 돌아오다 1731년(영조 7) 5월 28일

총호사總護使 홍치중洪致中 등이 교하交河의 새 능의 혈穴을 재고 돌아오니, 임금에 불러 보았다. 우참찬右參贊 윤순尹淳이 말하기를, “뒤의 용절龍節이 웅위雄偉하고, 뒤의 내맥來脈이 또 '왕主' 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렇던가?”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또 이기異氣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왕자王者를 장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하고, 홍치중이 말하기를, “장릉長陵의 정자각丁字閣은 구제舊制에 따르고, 재궁梓宮은 마땅히 정자각에 봉안奉安하며 영악청靈樞廳은 개조改造하지 말아 민폐民弊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아울러 허락하였다.

68

새 능을 정한 교하현을 군으로 승격시킬 것을 명하다 1731년(영조 7) 8월 4일

임금이 도감 당상都監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새 능陵을 교하交河에 정했다 하여 본현本縣을 승격시켜 군郡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69

관서에서 목면과 돈을 가져와 교하 백성의 전답값 등을 지급하다 1731년(영조 7) 11월 22일

임금이 홍치중洪致中의 말을 따라 관서關西에서 가져와 삼남三南의 진지賑資를 보충하도록 명한 것이, 목면木綿이 1천 4백 동同, 은銀이 1만 냥, 돈이 5만 꿩미가 되는데, 1만 꿩미의 돈은 교하交河 백성들 중 전답田畠 값을 받지 못한 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70

장릉을 교하로 옮긴 후 구곡수를 옛 수로로 돌려 낼 것을 청하다 1734년(영조 10) 9월 6일

부호군副護軍 허양許樾이 상소하여 결역結役과 군정軍丁의 폐단을 진달하고, 말단에 장릉長陵을 교하交河로 옮긴 후에 구포舊浦의 구곡수九曲水는 도로 옛 수로水路로 돌려 낼 것을 말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고, 수로에 관한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라” 하였다.

71

경기 암행어사가 교하 등지의 수령들을 논죄할 것을 아뢰다 1748년(영조 24) 7월 20일

경기 암행어사 권승權崇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통진通津·교하交河·양성陽城 세 고을에서는 군보軍保를 어린아이로 충정充定시켰는가 하면 도망한 사람에 대한 기한이 넘었는데도 보충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찼는데도 아직도 노제老除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이 법 밖에 관계되는 것이니, 전후 수령들을 아울러 논죄해야 합니다” 하였다.

72

종매를 무함한 교하군 성우흠의 치죄를 청하다 1764년(영조 40) 3월 28일

… 정언 이계李淮가 또 아뢰기를, “상의원尙衣院 직장 홍기한洪綺漢은 성질이 본래 거칠고 사나우며 행실 또한 극히 쾌락스러워 그가 거친 여러 관사官司마다 모두 더러운 비방을 들었으니 의관衣冠의 반열에 들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태거汰去하소서.

교하군交河郡의 성우흠成禹欽이란 자는 사족士族으로 향리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갑자기 더러운 말을 지어내어 갓 시집간 종매從妹를 무함誣陷하였는 바 말이 어찌나 흉패하였던지 무함당한 종매가 식음을 전폐

하고 피를 토하여 마침내 자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원기冤氣는 천화天和를 범하고도 남음이 있건만, 성우흠에게는 정상만 겨우 추궁하고 치죄治罪를 엄히 하지 않아 도망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해당 군수 홍정유洪鼎猷를 파직하고 성우흠을 기포謝罪하여 그 죄를 바꾸소서” 하니, 임금의 듣고 측은히 여겨 모두 허락하고 포도청으로 하여금 정한 날짜에 체포하게 하였다.

73

교하 사람 성우흠을 잡아 관문 밖에서 주살하다 1764년(영조 40) 4월 22일

당초에 대신臺臣 이계李滄의 논계로 인하여 교하交河의 성우흠成禹欽을 기포謝罪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제야 잡혔으므로, 안핵어사按察御史 이휘중李徽中을 보내어 안핵하여 보니, 과연 사실이었다. 임금이 지친至親의 처지에서 이렇듯 망측한 일을 꾸몄고 그의 글은 더욱 흥측·교홀하여 차마 볼 수 없으니, 이런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풍교風敎를 바를 수 없다 하고 관문 밖에 백성을 많이 모이라고 명하여 마침내 주살하였다.

74

교하 유생 민희천 등의 상소로 인하여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하다 1774년(영조 50) 4월 17일

임금이 교하交河의 유생儒生 민희천閔喜天 등의 상소로 인하여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下詢하였다.

75

교하 유생들이 윤선거의 서원 편액을 다시 내려 달라고 상소하다 1789년(정조 13) 2월 19일

부응교 성덕우成德雨가 상소하기를, “교하交河 유생들이 선정신 문경공文敬公 윤선거尹宣舉의 서원 편액을 다시 내려 달라는 일로 행차 앞에서 노장露章을 했다가 끝내 거절당하고 말았는데, 바라건대 다시 서원 편액을 내리시어 성상의 덕을 빛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애당초 조정 명령이 없었던 일이니 이 일은 위에 알릴 일이 아니다” 하였다.

76

경기관찰사가 교하의 통진 경계에서 침몰한 조운선의 쌀 문제로 장계하다 1793년(정조 17) 4월 20일

경기관찰사 박우원朴祐源이 장계하기를, “법성포法聖浦의 조운선 2척이 쌀 2천 70여 석을 싣고 교하交河의 통진通津 경계에 이르러 침몰하였습니다. 건져낸 쌀 1천 3백 29석과 황두黃豆 1백 26석은 법전에 따라 민간에 나누어주겠습니다” 하였다.

77

예조에서 교하 등지의 효자와 열녀에게 정려하고 급복할 것을 청하다 1808년(순조 8) 5월 3일

예조에서 전후의 도신·수령이 사계査啓한 것으로 인하여 … “효자인 고 교하交河의 통덕랑 이극대李克大와 효녀인 죽산竹山の 유학幼學 박사김사검林師儉의 처 김씨는 다시 식년式年을 기다려 특별히 포전褒典을 시행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이극대는 증직贈職하고, 김씨는 정려하게 하였다.

78

교하 학생 윤제건의 처 김씨에게 정려를 내리다 1817년(순조 17) 3월 14일

예조에서 행행行幸 때의 상언上言에 대하여 회계回啓하였는데, … 교하交河의 학생 윤제건尹濟健의 처 김씨金氏는 열행烈行이 있었다 하여 정려旌闡하기를 청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9

산릉 역사로 교하군의 결전과 군전을 탕감하다 1835년(헌종 1) 3월 25일

대왕대비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산릉山陵을 다시 장릉長陵 국내局內로 정하였으니, 기한은 급박한데 공역工役은 크고 번다하여 백성의 힘을 응당 감절이나 더해야 할 것이다. 파주坡州에서 이미 베푼 일이 지금 와서 어찌 이동異同이 있겠느냐? 교하군交河郡에서 당년當年에 바칠 결전結錢과 임진년·계사년 두 해에 정지해 물린 군전軍錢을 한결같이 모두 탕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80

교하와 인천의 성향미를 대전으로 해서로 이송할 것을 청하다 1850년(철종 1) 2월 13일

산릉山陵에 나아가 경릉景陵에 친히 제사지내고, 이어 건원릉健元陵과 원릉元陵에 나아가 전알한 뒤에 경기감사 김기만金箕晩을 불러 보았다. 김기만이 아뢰기를, “북한산성北漢山城 평창平倉의 성향미城餉米로 경기의 14고을에 방출하였다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모비耗費는 배사倍徙로 늘고 수운輸運은 극난極難하여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는데, 어느 고을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고을은 피폐하고 백성은 적어서 육로陸路로 운반하기 먼 곳은 유달리 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하交河는 두 능침을 수호하느라 백성들의 부역이 자연 많고, 인천仁川은 백 리 길에 육로로 운반하는데 가장 멀어서 두 고을 백성의 실정이 지탱하기 어려우므로, 모두가 절반을 다른 고을에 이전하기를 원하나 다른 고을도 마찬가지로 이 전하는 데 따른 괴로움을 모면하지 못하니, 이 또한 천단擘斷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비변사에 보고하여 조치를 청했었지만, 삼가 생각해 보니, 지난 기해년에 양주목楊州牧에서 포흠逋欠한 성향미 1천 석을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대전代錢으로써 해서海西에 이송하도록 장청狀請하여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교하와 인천의 성향미 1천 9백 석 가운데 1천 석을 한정하여 기왕의 전례대로 해서에 이송케 해주시면, 두 고을은 힘을 펼 수 있을 것이고 성향미도 변동이 될 터이나,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니만치 모당으로 하여금 품처粟處케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모당으로 하여금 품처케 하라” 하였다.

81

교하군의 노인에게 쌀과 고기를 지급하다 1850년(철종 1) 3월 12일

교하군交河郡 사민土民 남녀 61세 되는 사람에게는 본도에서 쌀과 고기를 지급하라 명하고, 교하·파주·고양 세 고을의 성향미城餉米의 모비耗費는 임인년의 예대로 제감해 주라 하였다.

82

교하에 홀전을 내리다 1851년(철종 2) 8월 15일

안산安山·교하交河·덕적德積·영종永宗 등 읍진邑鎭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과 익사溺死한 사람에게 홀전을 내렸다.

83

교하의 포흠을 탕감하게 하다 1854년(철종 5) 3월 11일

하교하기를, “들은 즉 교하交河의 옛날에 있었던 포흠逋欠을 나누어 받아 폐해가 소민小民에게 미친다고 하니, 특별히 탕감蕩減하여 조정의 우휼優恤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84

교하 등 경기지방의 환모를 실질적으로 탕감하게 하다 1856년(철종 7) 10월 30일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어저께 주사籌司의 초기草記를 보니, 경기지방의 적곡糶穀에서 환모還耗를 탕감하라는 일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고 이를 만하다. 이것이 어찌 특별히 감해준다는 본의本意이겠으며, 경기 지방 백성들의 실망失望은 마땅히 어떻겠는가? 광주廣州의 한 부府는 간혹 아래에 미치게 한 혜택이 있었으니 종전대로 거행舉行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모두 감해준 환모還耗의 분수分數에 따라 세稅 내는 대동米大同米로써 비준比準 결정하여 견감蠲減토록 하라. 교하交河는 광주의 절반折半의 예例에 의거되 역시 세稅 내는 대동米로써 감봉減捧케 하라” 하였다.

85

교하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1883년(고종 20) 4월 12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보고를 보니, 진위振威, 교하交河, 연

천澗川 등 세 고을의 민력民力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위현에서 균역청均役廳과 선혜청宣惠廳에 바칠 4년 조條의 쌀과 콩, 교하군에서 균역청에 바칠 2년 조의 쌀과 콩, 연천현에서 호조戶曹와 선혜청에 바칠 3년 조의 쌀과 콩을 각각 해당 연도에 바친 값으로 특별히 편리한 대로 돈으로 대납代納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흉년에 백성들의 실정이 어려운데, 하물며 궁핍한 여름을 당하였으니 만일 여러 해를 두고 바치지 못한 것을 본색으로 봉입桴入하게 한다면 쇠잔한 힘으로 끌어다 보충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매우 많지는 않으니 보고한 대로 모두 대납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86

교하 등 여섯 고을의 세곡을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1884년(고종 21) 12월 15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 또한 ‘교하交河에서 바치는 쌀과 콩은 한결같이 임오년과 계미년에 바치던 전례대로 특별히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도신이 보고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볼 때 모두 이미 허락한 연한 안에 대동미의 절반으로 상정가를 정하되 삭녕은 가장 변방이므로 논하지 마시고, 교하의 쌀과 콩은 특별히 돈으로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는 뜻으로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7

교하를 파주에 소속시키다 1895년(고종 32) 1월 14일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교하交河를 파주坡州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8

교하군 경선궁의 토지 지적 분쟁을 해결하게 하다 1914년 2월 2일

【음력 갑인년甲寅年 1월 8일】이강필李康泌을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교하군交河郡에 보내어 경선궁慶善宮의 토지 지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하였다.

『일성록日省錄』

1

마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하군수를 엄히 신척하다 1777년(정조 원년) 12월 25일

○ 하교하기를, “마정馬政은 나라의 크나큰 정사이다. 이 때문에 조종조祖宗朝의 성헌成憲이 지극히 엄중한데도 근래에는 사면령이 적용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도와 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음을 쓰지 않고 있다. 어느 도나 읍에도 죽거나 병든 말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었다. 자금을 강등하여 처벌하는 것을 진실로 마땅히 법을 살피 거행해야 한다. 다만 사면령을 믿지 않게 할 수는 없으니, 비록 법대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어찌 전혀 경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모두 자금을 강등시킬 죄를 범했으나 역시 모두 사면령을 적용시켜 우선 함사緘辭를 받아 엄하게 추고하라. 그 나머지 교하 군수交河郡守 이민보李敏輔 등 87인은 규례대로 엄하게 추고하고, 내년 이후의 수령 논죄에서는 결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사에서 특별히 더 엄히 신척하여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2

환곡 부정을 저지른 교하군수를 붙잡아 신문하다 1778년(정조 2) 8월 6일

○ 의금부가 아뢰기를, “… 교하 군수交河郡守 이민보李敏輔 등이 환곡을 가분加分한 일은 경기감사의 장계를 인하여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구초口招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선전관을 나누어 보내 교하 등지의 농사 형편을 살피게 하다 1787년(정조 11) 6월 17일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 기전畿甸, 해서海西, 관동關東의 농사 형편을 살피게 하였다. … ○ 선전관이 신경이 장계하기를, “… 교하 역시 입지가 산을 의지하거나 물에 연접해 있어서 농사 형편이 고양과 차이가 없었으며, 받지 못한 모환은 절반이었습니다. 파주는, 논밭이 모래에 덮이거나 포락浦落된 곳 이외에는 전답의 각 곡식이 바야흐로 대풍大豐의 가망이 있었고, 모택은 비가 내리기 전에 거의 다 수확하였으며, 받지 못한 모환은 200여 석이었습니다. 장단의 농사 형편은 파주 등과 차이가 없었으며, 받지 못한 모환은 100여 석이었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

교하군 사직단 신실을 개수할 때 고유제 등에 쓸 향축을 내려보내다 1867년(고종 4) 7월 23일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이의익李宜翼의 공문公文을 보니, ‘교하군交河郡 사직단 신실神室이 오래되어 썩고 있던 중 이번 장맛비에 그대로 내려앉고 말았다. 보기에 송구하고 민망스러우므로 이제 막 개수를 할 계획인데,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에 쓸 향, 축문, 폐백을 본조에서 계품하여 내려보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하군 사직단 신실을 개수하는 때에 고유제告由祭·이안제·환안제를 지내는 데 쓸 향, 축문, 폐백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고, 편리한 대로 날을 정하여 거행하게 할 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2

교하의 대동미 중 절반을 본색으로 당해 창고에 수납하게 할 것을 청하다 1867년(고종 4) 9월 25일

또 아뢰기를, “경기 고을 가운데 인천仁川·부평富平·안산安山·시흥始興·양천陽川·교하交河·용인龍仁·과천果川 등 8개 고을의 대동세는 육지로 운송하여 탕춘창蕩春倉에 바치는데, 당해 수령이 백성들을 영솔하여 와서 바치게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른바 창고 주인이라는 명색이 있어서 당해 고을에서 돈을 거두어서 원미原米을 사서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을 백성의 입장에서는 수송하는 괴로움을 면할 수는 있지만, 요구하는 값이 턱없이 비싸므로 백성과 고을에 말로 다 못할 폐를 끼치곤 합니다. 정공正供의 체모는 실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위에 열거한 각 고을의 대동미 중 절반을 본색으로 당해 창고에 수납하게 하되, 고을 수령이 백성들을 영솔해 와서 바치는 옛 규례를 다시 밝히고, 만약 여기는 경우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도록 하소서. 그밖에는 평산平山의 예대로 별도로 상정詳定하여 돈으로 대신 상납하는 것으로 영구히 규정을 삼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

교하인 심송이 비변사에 글을 올리다 1641년(인조 19) 7월 20일

아뢰기를 “교하交河에 사는 심송沈松이 본사에 글을 올리기를 ‘제 아버지는 사인士人 심지담沈之澐으로 병자란이 일어났을 때에 노모老母와 집안 식구를 데리고 강화도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함몰되어 절개를 지키다 죽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 심양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그도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가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 어미와 동생은 지금 심양의 북문北門 밖에 있습니다. 속환기擧還價를 어렵게 마련해 놓았으니 직접 심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고 하였습니다. 그 정리가 가련합니다. 다른 규례에 따라 종 1명과 말 1필을 가지고 삭선인마朔膳人馬와 동시에 들여보내도록 평안감사에게 공문을 작성해 줘서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2

교하의 기근이 심하다 1646년(인조 24) 3월 18일

아뢰기를 “금년의 기근은 경기의 연해 고을이 가장 참혹하였습니다. 전일에 강도江都의 회록會錄 이외의 저장곡 8백석을 16고을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富平·양천陽川의 기민飢民 수백여 명이 본사에 호소하기를 ‘수백 석의 쌀을 주어 죽음을 구제하고 경작할 밭천을 삼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기근에 허덕이는 모양이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외의 관공官叢은 벌써 남김없이 탕진되어 다시 변통하여 구제할 길이 없으니 염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나누어 준 8백 석 외에 회부미會付米(회록되어 있는 쌀) 2, 3백석을 더 변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두 고을 뿐만 아닙니다.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은 김포金浦·통진通津·교하交河·인천仁川·교동喬桐 등지도 마찬가지로 하니 강화부로 하여금 인구의 다소에 따라 균일하게 분급하도록 하는 일을 그만 둘 수 없을 듯하여 감히 아뢰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교동은 본창本倉에 저축된 곡식이 있을 것이니 이 곡식이 아니더라도 진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3

살기가 어려운 교하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1650년(효종 1) 4월 9일

아뢰기를 “경기는 곧 근본이 되는 곳이므로 마땅히 돌보아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는 토지가 척박하고 인민이 가난하여, 비록 일이 없는 평상시일지라도 그 사정은 진정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

다. 더구나 지금의 사정은 전에 비하여 만 배나 더합니다. 해마다 칙사 행차가 봄·가을에 있는 것이 예였으나 왕래가 일정하지 않고 금번의 경우는 여섯 칙사가 한꺼번에 와서 관소에 머무른 지 오래이니, 이는 곧 정축년 이후 없었던 일입니다. 각 참의 공궤(供饋)와 관소의 접대는 일일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그 별도의 필요와 요구도 굳이 논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꿩·닭·소·돼지·생선 등 물건만을 들어 대략 말하자면, 그 가운데 생선 한 마리의 값이 자그마치 쌀 7, 8두에 달하고 꿩 한 마리의 값이 무명 3필이며 닭 한 마리의 값이 무명 2필이니, 그 수를 통계하면 쌀이 5, 6천 석에 달하고 무명도 5백여 동 이상입니다. 이는 곧 모두 백성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으로써 살을 깎고 뼈를 추리듯 하는 일이 매우 급박하니, 백성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경기 경내의 백성이 잇대어 사망으로 흠어짐은 곳곳이 모두 그러합니다. 교하(交河) 한 읍을 들어 말씀드리면, 사망으로 흠어지고 도망친 가호가 백여 호에 달하는 바, 이로 미루어 보면 오래잖아 모두 공허할 것입니다. 앞으로 칙사 행차는 다시 나오게 될 것이며 공주의 행차는 농사 일이 바쁜 때에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칙사가 함께 돌아가게 되어 일행의 인원수가 많아 그 공급의 어려움이 몇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농기구를 내던지고 길에서 분주하니 눈코 뜰 겨를도 없이 애쓰는 상황을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만약 크게 변통하여 조금이라도 백성의 힘을 꺾지 않으면, 뭉그러질 우려가 조석으로 박두해 있습니다. 조정에서 출연한 4, 600석의 쌀로 그 위급을 구제함은 성대한 혜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꿩과 생선의 값도 채울 수 없으니, 마치 한 잔의 물로서 한 수레 쉼의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신 등은 생각이 이에 미치면 가슴이 에이는 듯합니다. ... 어쩔 수 없이 이 하책을 생각하였으나, 만약 상께서 이 계책을 받아들으시면 이에 대한 계획과 조치 방법 등은 마땅히 상의하여 여쭙어 거행하겠습니다. 신 등의 그지없는 여러 고민들을 감히 이에 여쭙니다”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4

교하 등 여러 고을에 창고를 설치하다 1650년(효종 1) 11월 23일

아뢰기를 “18일의 주장 때 특진관 좌윤 신준(申埈)이 아뢰기를 ‘근래 천재가 이와 같으니, 국가에서 믿는 곳은 강화(江華)와 연해 여러 고을입니다. 풍덕(豊德)·교하(交河)·김포(金浦)·통진(通津)·인천(仁川)·부평(富平) 등 고을은 모두 성지(城池)가 없어, 변란이 있는 경우 각 고을의 수령들은 그 고을에서 책응(策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풍덕은 승천부(昇天府)·철곶(鐵串) 근처에, 교하 등 5읍은 연미정(燕尾亭)에서 죽진(竹津)까지 창고를 설치할 곳을 선정하여 각각 그 고을에서 창고를 건축하고 평상시 운송한 곡물을 강화부에서 각 고을에 나누어주어 그 본 고을로 하여금 방축·수납을 주관하게 하면, 백성들에게 방출할 때 줄어드는 일이 없

고 또 수납할 때 폐단이 없어 편리하고 좋을 듯싶습니다. 창고터로서 빈 곳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민전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목장의 빈곳과 바꾸어 주고 창고의 설치를 각각 그 고을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민을 만한 곳으로 삼게 하면, 위급이 있을 때에 가져다 쓰기가 편리합니다. 이로써 나라에 유익하고 백성들에게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씀하기를 '경의 말이 좋은 듯하다. 묘당에 말하여 논의 처리하게 하라' 고 전교하셨습니다. 연해 여러 고을이 강화에 창고를 설치하는 일은 실로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이는 일찍이 임신년 간에 추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으니, 마땅히 곧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흉년이 든 해에 건축을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시기가 아닙니다. 약간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천천히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5

통영의 곡물을 교하 등지에 나누어 보내다 1654년(효종 5) 12월 23일

아뢰기를 “이번 12월 15일 인견 때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통영統營의 곡물이 이제 마땅히 올라 올 것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나누어 보낼 곳을 지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께서 ‘묘당으로 하여금 짐작해 나누어 두는 일을 속히 거행하게 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통영의 벼 3만 석을 경기·충청 두 도의 연해 각 읍에 나누어 둘 숫자를 별단에 써 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당하였다.

비변사의 통영 벼 3만 석을 각처에 나누어 둘 별단別單

경기京畿

수원水原 벼 2천 석

남양南陽 벼 1천 5백 석

부평富平 벼 1천 석

안산安山 벼 5백 석

풍덕豐德 벼 5백 석

김포金浦 벼 5백 석

통진通津 벼 1천 5백 석

교하交河 벼 5백 석

영종永宗 벼 2천석. 힘을 합쳐 개색改色을 담당함.

이상 1만 석임.

6

기근이 심한 교하 등 여러 고을의 곡물을 감하여 받다 1661년(현종 2) 11월 23일

아뢰기를 “이달 19일 옥당에서 뵈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 부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경기京畿는 나라의 근본이니 너그럽게 보살피야 마땅합니다. 금년에 연해음沿海邑의 기황飢荒은 삼남三南과 다를 바가 없는데 환자곡還上穀의 상납을 독촉하여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많다 합니다. 군항軍餉이 매우 중요하나 백성의 이산離散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이제 다시 독촉한다 해도 헐벗은 처지에 결코 상납할 힘이 없으니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께서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처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얼마 전 경기감사 정지화鄭知和의 장계로 말미암아 본사에서는 연해의 피해는 더욱 심하고 민력民力은 강도江都의 이전米移轉를 실어다 바치느라 이미 탕진蕩盡하여 상평청常平廳이나 호조의 회록會錄에 붙여질 각종 곡물은 원 수량대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 피해가 더 심한 김포金浦, 통진通津, 교하交河, 양천陽川, 부평富平, 인천仁川, 교동喬桐 등 7읍은 3분의 1로, 기타 수원水原, 남양南陽, 고양高陽, 풍덕豐德 등은 피해가 더욱 심한 면면만 3분의 2로 감하여 받기로 이미 복제覆啓하여 윤허를 받들어 감사에게 분부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7

재해가 심한 교하의 역을 감하고 구휼하다 1678년(숙종 4) 11월 25일

대사간 권대재權大載, 정언 신학申潯이 아뢰기를 “금년 경기의 가뭄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해안의 소금기가 있는 곳과 샘이 없는 넓은 들의 재해는 더욱 참혹합니다. 그리고 한 고을 가운데에도 재실災實이 일정하지 않아 비단 재해가 그 다음인 읍에도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은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약간 실하다는 곳에 있어서도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은 곳이 없지 않습니다. 신 권대재가 외람되어 기일畿臬(경기감영)에 있으며 초가을 재실을 조사할 때에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은 각 고을의 면면을 직접 조사, 뽑아 아뢰어 고르게 혜택을 입게끔 묘당에 여쭙어 결정하려고 전야田野를 출입하며 재실을 조사하였고 재해가 그 다음인 읍 및 약간 나은 읍의 더욱 심한 면도 사실대로 뽑아 아뢰었습니다. 묘당에서 역역을 감면할 때에 광주廣州·양성陽城 두 읍의 경우에는 더욱 심한 면의 요역徭役이나 환곡의 징수 문제 등을 모두 재해가 더욱 심한 읍의 경우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나 그 나머지 각 읍의 더욱 심한 면에 있어서는 모두 시행하지 않았으니 당초 여쭙어 결정하려고 뽑아 보고한 뜻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으며, 각 고을 백성들이 고르지 못함을 억울하게 여겨 시끄럽게 호소함은 진실로 당연한 일입니다. 광주·양성의 더욱

심한 면은 바닷가 지역으로서 특별히 혜택을 입었으나 진위(振威)·통진(通津)·교하(交河)의 더욱 심한 면은 모두 바닷가임에도 유독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고르지 못함이 이보다 심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밖에 각 읍의 더욱 심한 면은 모두 수원이 없는 넓은 들로서 재해의 참혹함은 바닷가와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조가(朝家)에서 똑같이 여겨야 하는 입장에서 모두 그 역을 경감하여 혜택을 고르게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의 재해가 그 다음인 읍 및 약간 나은 읍의 재해가 더욱 심한 면에 경감 및 구휼 등의 문제를 광주·양성의 경우와 같이 모두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역을 경감하고 구휼하는 문제 등을 묘당으로 하여금 논의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8

교하의 역을 감하고 세금을 면하게 하다 1678년(숙종 4) 12월 4일

이달 초3일 대신·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경기의 재해가 그 다음으로 심한 읍 및 약간 나은 읍 가운데 재해가 더욱 심한 면에 대한 역 감면문제에 관한 간원의 계사에, 묘당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하교가 계셨습니다. 간원의 뜻은 경기 각 읍의 심하게 재해를 입은 면도 모두 역을 감면시키는 데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이는 함께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진위(振威)는 수원(水原)·양성(陽城)에 끼여 있어 재해 입은 곳이 매우 많고, 교하(交河)와 통진(通津)은 바닷가 읍으로서 역시 재해를 입은 곳이 많으나 역을 감면하는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하 3면, 통진 3면, 진위 5면을 광주와 양성의 예에 의하여 다같이 역을 감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조판서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묵은 눈에 메밀을 심은 경우 면세(免稅)하도록 하면, 기장을 묵은 눈에 심은 경우도 다같이 밭 곡물이니 마땅히 메밀의 예에 의하여 모두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장의 경우는 사목(事目)에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경차관·도사 등이 사목만을 지켜 재해로 인정치 않으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가뭄으로 논이 묵은 경우는 헛되어 버려야 할 형편이나, 메밀은 곧 늦게 심어 일찍 거두는 곡물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그 성숙을 바라고 심은 것도 있으나 본래 재상사목(災傷事目)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 등이 뒤따라 곧 아뢰어서 재해로 인정하여 주도록 할 때에 눈에 서속(黍粟)을 심은 경우는 비록 미처 아울러 논하지 못하였으나 밭 곡물을 묵은 눈에 심기는 매한가지이니 마땅히 메밀과 더불어 다 같이 면세해야 할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9

교하 삼군문의 구증곡은 가을에 상납하게 할 것을 청하다 1728년(영조 4) 4월 27일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감사 이정제의 장계 내에 ‘교하현交河縣 삼군문三軍門에 전에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곡식에 대하여 지금 궁하窮夏를 당하여 결코 강제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가을 결실을 기다려 상납을 독촉하여 받는 것으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토록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청에 따라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적성積城 관련 기사

『조선왕조실록』

1

적성 광실원 동쪽 산을 계족산이라 하다 1394년(태조 3) 8월 13일

임금이 여러 사람의 말로써 한양漢陽을 도읍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전 전서 양원식楊元植이 나와서 말하였다. “신이 가지고 있던 비결은 앞서 이미 명령을 받아서 올렸거니와, 적성積城 광실원廣實院 동쪽에 산이 있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계족산雞足山이라 하는데, 그 곳을 보니 비결에 쓰여 있는 것과 근사합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조운할 배가 통할 수 없는데, 어찌 도읍 터가 되겠는가?” 원식元植이 대답하였다. “임진강에서 장단까지는 물이 깊어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만 연輦을 타고 종묘 지을 터를 보고서 노원역盧原驛 들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2

감악산 신당의 남쪽 봉우리 둘이 무너지다 1409년(태종 9) 5월 22일

적성현積城縣 감악산紺岳山의 신당神堂 남쪽 봉우리의 둘이 무너졌는데, 길이가 87척이고, 너비가 38척이었다.

3

적성 사람 절제사 홍상직의 아내 문씨에게 정려를 내리다 1428년(세종 10) 10월 28일

예조에서 경외京外의 효자孝子·순손順孫·절부節婦를 찾아내어 제하기를, … 경기도 적성積城 사람 절

제사節制使 홍상직洪尙直의 아내 문씨는 남편이 죽으매, 분묘 곁에 여막을 세우고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면서 대상大祥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분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상제喪制를 마치고서도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여 가까운 동리에 살면서 매양 삭망朔望과 속절俗節에는 반드시 제사하였다 하옵니다. … 하니, 이를 명하여 이조에 내리게 하였다.

4

적성에 황충이 발생하다 1446년(세종 28) 7월 21일

강원도의 춘천春川과 낭천狼川·양구楊口·인제麟蹄·정선旌善·평창平昌·원주原州·울진蔚珍과 경기도의 양주楊州·양근楊根·지평砥平·가평加平·포천抱川·연천漣川·마전麻田·적성積城에 황충蝗蟲이 발생하였다.

5

적성 등지의 죄수들에 대한 형을 상신하다 1448년(세종 30) 8월 26일

형조刑曹에서 상신하기를, “적성積城 죄수인 최룡崔龍과 개성開城 죄수인 막동莫同은 절도竊을 하고서도 잡는 데에 항거하였고, 삼등三登 죄수인 어두이於豆伊와 칠원漆原 죄수인 이동李同은 세 번 절도를 범하였으니, 율에 의하여 교형絞刑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6

적성 등의 소금을 화매할 것을 건의하다 1465년(세조 11) 2월 8일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가 장단군사長湍郡事의 첩정牒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군本郡의 소금 1백 석石과 적성積城의 소금 1백 석은 계미년부터 궤櫃에 담아 염창鹽倉에 두었다가 매양 곡식이 쌀 때를 만나면 민원民願을 좇아 화매和賣하는데, 다만 값이 높음으로 인하여 쌀을 팔기를 원하는 자가 없고, 또 억지로 팔 수도 없으니, 이로 인하여 쓸모없이 쌓여서 날이 갈수록 소용消融 합니다. 청컨대 제음諸邑에 나누어 주어 구황救荒의 비축으로 삼게 하시고, 금년 봄에 구운 소금은 시세에 따라 곡식과 무역하여서 의창義倉에 저장하소서” 하므로, 계본을 호조戶曹에 내렸더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장단長湍과 적성積城의 소금은 이미 창고에 수송하여 회계會計에 기록하였고, 또한 소금은 조석朝夕으로 긴요하게 쓰는 물건이니, 무역하는 자가 없다고 이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백성의 편의에 따라 화매和賣하되 값을 경輕하게 하며, 제용감濟用監의 미곡米穀을 들여서 소재邑所在邑의 군사軍資에 보충하게 하소서. 구황에 부족한 소금은, 청컨대 제포諸浦의 소금 1백 석으로 하되, 준절準節히 구황을 진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7

적성현의 정병 원순이 호랑이를 잡아 바치다 1468년(예종 즉위년) 12월 8일

적성현積城縣의 정병正兵 원순元淳이 호랑이를 쏘아서 바치니, 임금의 명하여 술을 먹이게 하고, 유의櫛衣 1령額을 내려주었다.

8

적성 등지에 떠도는 민호들의 복호를 청하다 1469년(예종 1) 8월 13일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경기京畿의 광주廣州·지평砥平·양근楊根·가평加平·포천抱川·영평永平·양주楊州·적성積城·마전麻田·삭녕朔寧·장단長湍 등 여러 고을에서 유이流移한 민호民戶를 본 고을로 돌려보낸 뒤에 복호復戶하되, 포천현抱川縣의 백성은 광릉光陵의 수호군守護軍으로 이속移屬시키고 경작耕作하는 땅에 대한 공부貢賦를 감해줄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청컨대, 제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쇄환刷還하고 계문啓開하게 한 뒤에 3년 동안 복호하고, 그 전지田地는 연한年限에 구애하지 말고 도로 주어서 생업에 안정되게 하소서. 포천 백성으로서 지금 광릉의 수호군으로 소속된 자 28인에게는, 청컨대 경작하는 땅의 공부貢賦를 감해주소서. 양주 백성으로서 수호군으로 소속된 자 42인의 공부도 포천의 예례에 따라 건감蠲減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9

탈옥한 적성의 죄수들을 벌하다 1470년(성종 1) 4월 23일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적성積城의 죄수 두언豆彦이 씌운 칼[枷]을 스스로 풀어 버리고, 또 함께 갇힌 영생永生·중이衆伊·득경得敬 등을 풀어주고 조력하여 옥졸獄卒을 겁박하여 반옥反獄한 죄와, 영생·중이·득경 등이 두언과 공모하여 반옥한 죄와, 양인良人 조생趙生·김화金禾 등이 몽둥이를 가지고 조력하여 옥을 겁박한 죄는 모두 율에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10

적성의 죄수인 중 적산의 사형을 감해준다 1477년(성종 8) 3월 4일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적성積城의 죄수인 중[奴] 적산狄山이 이원李元을 찢러 죽인 것은 증거가 명백한데, 곤장을 참고 승복을 하지 않으니, 청컨대 그 도道の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끝까지 추궁하여 실정을 얻어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사형死刑은 감해주게 하였다.

11

적성 사람 검교 공조참의 이계기에게 의복·쌀·콩을 하사하다 1489년(성종 20) 10월 12일

적성현積城縣사람 검교檢校 공조참의工曹參義 이계기李啓基가 길가에 엎드려 배알拜謁하고 가시歌詩를 올리니, 임금이 그가 노인인 것을 가엾게 여겨 의복 1령領과 쌀과 콩을 아울러 10석碩을 내리었다.

12

적성 등과 같은 작은 고을의 부역을 큰 고을에 나누어 정하다 1510년(중종 5) 2월 10일

영사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 그런데 고양高陽·적성積城과 같은 잔폐殘弊한 고을의 부역이 큰 고을과 같아 거의 지탱할 수가 없으니, 작은 고을의 부역을 큰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부역을 고르게 하여야 합니다. ... 평안도에 입거入居할 사람을 초정抄定한 지 오래데, 아직도 들여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민정民丁 중에 가멸하여 실한 자는 평안도로 들여보내고, 잔약하여 부실한 자는 적성積城·장단長湍 등지로 옮기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리한 민중이 지금껏 안집하지 못하였으니, 불쌍하고 민망한 일이다. 조정에서 일찍이 그 소복蘇復 절목節目을 상정詳定하여 각도에 유시하였는데 수령守令들이 거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금 더욱 밝혀서 각도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13

잔폐한 고을의 수령을 체차할 때 사람을 가려서 보내게 하다 1516년(중종 11) 7월 26일

이조吏曹에 하교下敎하였다. “각도의 잔읍殘邑의 수령은, 인물을 가리지 않고 오래 직질職秩이 상당한 자로 채워서 차임差任하므로 거의 마땅한 사람이 아니니, 고을이 더욱 잔폐殘弊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경기의 마전麻田·적성積城·과천果川·연천漣川·양지陽智, 충청도의 연풍延豊·해미海美, 경상도의 예안禮安, 전라도의 진원珍原·대정大靜, 황해도의 봉산鳳山·재령載寧·문화文化, 강원도의 인제麟蹄·낭천狼川·금화金化, 함경도의 삼수三水·고원高原, 평안도의 영원寧遠·상원祥原·개천价川·자산慈山·순안順安 등 고을은 따로 부록簿錄을 두어, 체차遞差할 때에 혹 문신文臣·무신武臣이나 이임吏任·음관陰官 중에서 정하게 가려서 차임해 보내라.”

14

적성을 마전에 합병할 것을 아뢰다 1518년(중종 13) 5월 28일

정광필 등이 일곱 가지 일에 관하여 의논을 드렸다. ... 여섯째 의논은 각도 군현郡縣의 연혁沿革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광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군郡과 현縣을 합병하는 일은 매우 중하고도 어려운 것이라 경솔하게 의논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잔폐殘弊해서 거의 지탱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또한 대

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경기京畿의 적성積城은 마전麻田에 합하고, 충청도 해미海美는 감사로 하여금 그 근방 합질 만한 곳을 살피서 합하게 하고, 평안도 영원寧遠은 잔폐가 심할 뿐만 아니라 도로道路가 험절險絶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갈아먹을 만한 땅이 없으니 본군을 혁파하여 역驛으로 만드소서. 또 황해도의 문화文化·봉산鳳山·재령載寧은 여역癘疫이 돌아서 백성들이 많이 요절하였으므로 읍민邑民이 거의 없어져 버렸으니, 역시 땅을 골라 이배移排하되, 각도 감사로 하여금 합병과 이배에 대한 편부便否 및 인민人民의 형편을 잘 살피서 상세히 기록해서 치계馳啓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15

적성을 마전에 합병하는 것을 논하다 1519년(중종 14) 3월 24일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신용개·우의정 안당·예조판서 이계맹·좌참찬 이장곤·호조판서 고흥산·공조판서 김극필·우참찬 김안국·이조판서 신상·예조참판 권벌·참의 박호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주청사奏請使를 다시 보내는 일 및 관리를 임명할 때의 선제宣制, 문화文化·봉산鳳山·재령載寧 등의 고을의 읍을 이배移排하는 일, 평안 병사平安兵使가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일, 영흥 판관永興判官을 혁파하는 일, 마전麻田·적성積城을 합병合併하는 일에 대한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 ... 이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마전麻田·적성積城 두 읍을 합병하여 이배移排하면 소복蘇復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단 연혁沿革에 관한 일이 중대하니 가볍게 의논할 것이 아닙니다. 적성은 지역이 넓고도 비옥하므로 역역力役을 늦추어 주면 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마전은 잔폐가 매우 극심하여 거의 지탱할 수 없으니, 우선 화진리禾津里의 50여 호戶가 사는 지역과 민호民戶를 할급割給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단 옮겨 예측시킨 백성이 소읍小邑의 역사役事를 꺼려 몰래 다른 지경地境으로 옮겨가는 자가 혹 있을까 염려되니, 관찰사로 하여금 엄하게 금단禁斷하게 하는 한편 존휼存恤하여 편안히 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모두 따랐다.

16

적성현감 최환이 복물로 인해 소요를 일으키다 1529년(중종 24) 12월 16일

간원은 아뢰기를, “전 우봉현령牛峯縣令 오황吳滉이 파직되어 올라올 적에 매[鷹]를 가지고 적성積城에서 묵었습니다. 그때 적성현감 최환崔暉이 밤중에 사람을 시켜 이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동료 간에 흔히 있는 회사戲事인데도 오황은 분심을 품고 포도부장捕盜部將 나만세羅萬世에게 ‘명화적명火賤이 내 행장行裝의 복물卜物과 매를 빼앗았다’고 선동하여 무계誣啓하게 하고 말을 내어 추포追捕하였으므로, 온 고을에 소동이 일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흥년으로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어 도산逃散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마당에 오황은 대단찮은 일로 분을 품고 은밀히 사주하여 이런 소요를 유발시켰으니, 통렬히 치죄하소서. 최환의 일은 비록 희롱에서 빚어진 것이긴 하지만 역시 관인官人의 체통을 잃은 처사입니다.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17

적성의 감악산, 장단의 오관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1531년(중종 26) 5월 22일

전교하기를, “근래의 날씨가 구름이 짙 끼기도 하고 비가 뿌리기도 하더니 지금은 도로 맑게 됐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곳에는 모두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비를 빌게 하고 싶다. 그러나 번거로울 것 같아 전국 각지에 모두 빌게 할 수는 없으니, 경기 근처에서 가장 드러나게 영검靈驗한 곳에 예조로 하여금 서계書啓하게 하라. 금중禁中에서 비를 비는 것은 고사古史에도 실려 있으므로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예조에 이르러” 하니, 예조가 경기 근방에서 비를 빌어 가장 영검이 있었던 곳【개성부開城府의 송악산松岳山, 장단長湍의 오관산五冠山과 덕진德津, 양주楊州의 양진楊津, 적성積城의 감악산紺岳山】을 서계하였다. 상이 직접 현관獻官의 이름을 써서 내리고 일렀다. “재변이 이미 급박하여 날을 가릴 겨를이 없으니 내일 모두 보내도록 하라. 즉시 패초牌招하여 내가 안타까워하는 뜻을 말해 주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서 기어코 비를 내리게 하라.”

18

적성·장단 두 고을의 수령을 추고토록 하다 1551년(명종 6) 2월 18일

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기강紀綱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백성들이 모두 도둑이 되어 날마다 노략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단長湍·적성積城 등 고을에는 도둑들이 대낮에 마을에 출입하면서 공궤供饋를 강요하고 사족士族의 처녀處女들을 공공연하게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밖의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등의 일들은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도대장捕盜大將은 관례대로만 잡아서 그저 책임만을 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날로 많아져 더욱 극성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京畿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곳이어서 더욱더 끝까지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도둑을 구경만 하고 직무를 유기함이 극심합니다.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장단·적성 두 고을 수령도 아울러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9

군자창에 저축된 양곡을 적성 등의 고을에 나누어줄 것을 청하다 1551년(명종 6) 4월 29일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송세형宋世珩이 아뢰었다. “전자前者에는 군자창軍資倉의 저축된 양

곡이 1백만여 석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50만 석인데다가 일찍이 백성에게 흠어준 곡식이 거의 2만 5천 석이나 되고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다 진부陳腐한 것이어서 국용國用に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것을 사용하고 새 것을 저축하는 것이 국가의 본의本意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어줄 때 쌀이 혹 조금만 묵었으면 백성들이 받아가려 하지 않아서 3~4곳의 창고를 연 뒤에야 받아갔기 때문에 신이 친히 품질을 살펴보면서 나누어주었는데, 다른 고을의 백성들은 받아갔으나 적성積城·연천漣川·양지陽智·통진通津·김포金浦 등 다섯 고을 백성들은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기근에 허덕인다면 어찌 쌀의 좋고 나쁜 것을 가릴 겨를이 있겠습니까. 또 그곳 백성들이 불공不恭한 말을 많이 하면서 관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느리고 온 수령을 이미 추고하였습니다.

20

적성·장단 등지에 수령을 무신으로 보내 도둑을 잡게 하다 1551년(명종 6) 12월 3일

현부가 아뢰기를, “근래 도둑이 들끓지 않는 곳이 없으나 장단長湍에 집결集結하고 있는 도적들이 더욱 포악해서 대낮에 무리를 지어 공공연히 재물을 약탈하며 아리따운 처녀는 집안까지 쫓아와서 색출해 가는데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데 마전麻田·적성積城·우봉牛峰 등지의 백성들이 모두 그 침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할 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데, 시임時任 수령들은 모두 음관蔭官이라서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이 무리들이 관사官舍에서 유숙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사기事機가 매우 중대하니, 수령의 교체交遞에 따르는 영송迎送의 폐단은 생각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 4읍의 수령은 재능과 지혜가 있고 일에 숙달한 무신을 보내어 기필코 모조리 잡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21

적성·장단 등지의 도둑 잡는 일을 논의하다 1551년(명종 6) 12월 20일

병조가 아뢰기를, “장단長湍·적성積城에 도둑이 횡행하여 대낮에 재물을 약탈하므로 무신武臣으로 수령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이 수령들이 도둑들의 노략질을 심히 두려워하여 만약 승차承差하여 출타出他할 경우에는 백성을 동원하여 관아官衙를 지키게 하므로 민폐가 적지 않아서 도리어 무신을 파견한 뜻이 없다 합니다. 도둑이 지식될 때까지는 처지를 데리고 가지 말게 함으로써 가사家事를 돌아보는 일이 없이 도둑을 잡는 데에만 전념하게 하소서. 그리고 양계兩界의 사례에 의하여 군직軍職에 붙여 녹봉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들으니, 이런 고을에서는 아전들이 도둑과 내통하여 수령이 고립되어 있으므로 비밀히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군관 1~2인을 대동帶同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입니다.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22

적성·장단 등의 도적을 섬멸하다 1552년(명종 7) 9월 30일

이때 장단長湍·적성積城에 도적 한중漢宗의 무리들이 치성하였는데 관군官軍이 제압하지 못하여 백주에 공공연하게 살인과 약탈을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걱정하여 특별히 무신武臣에게 군관軍官을 대동시켜 보내 방략方略을 쓰게 해서 마침내 섬멸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비로소 베개를 편히 베고 잘 수 있게 되었다.

23

간원이 적성을 파수하던 중영장 황덕영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1624년(인조 2) 3월 4일

간원이 아뢰기를, “적성積城을 파수把守하던 중영장中營將 황덕영黃德諫은 적이 성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는 군중軍中에서 위를 범하는 불측한 말을 소리 높여 말하고 곧 군사를 놓아서 적에게 투항하여 이충길李忠吉과 함께 역적 이제의 집을 호위하였으니, 국청鞠廳에 보내어 전형典刑을 명백히 바루소서. 역적 이팔의 사촌 이준李遵 부자가 적에게 붙은 정상은 명백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이준은 역적 이팔이 성에 들어왔을 때에 사인士人 윤흥과尹興坡에게 글을 보내어 와서 벼슬하기를 권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백관百官이다’ 라고까지 하였는데, 그의 흉패한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잡아다 국문하여 전형을 바루소서.

전 군수 김민직金敏直은 수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역적 이팔에게 붙잖아 그의 흉역兇逆을 도왔는데 적이 패한 뒤에는 도망쳐 돌아와서 목숨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붙은 무리를 죄다 다스릴 수는 없으나, 이처럼 조관朝官 중에서 뚜렷이 흉역을 같이한 자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잡아다 국문하여 전형을 바루소서” 하니, 모두 따랐다.

24

적성·장단 등지의 수령은 무변을 골라 차입하여 보내다 1627년(인조 5) 1월 21일

비국이, 대간의 계사에 따라 마진麻田·적성積城·연천漣川 세 고을의 수령은 무변武弁을 골라 차입하고 이천伊川·안협安峽도 이와 마찬가지로 차입하여 보낼 것을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25

적성·장단 등지 사대부들이 곡식과 소 등을 군영에 바치다 1627년(인조 5) 9월 4일

이에 앞서 장단長湍 사람 성복흥成復興이 큰 소 2마리, 술 1백 동이, 간장 1항아리, 콩 몇 섬을 군영에 바쳤으며, 장단과 적성積城 등에 사는 사대부 10여 명이 곡식과 소 등으로 군졸들을 먹였다. 이때에 이르

러 승지 윤지경尹知敬이 포상의 명이 너무 지연되었다고 아뢰자, 병조가 복계覆啓하기를, “가설직加設職에 대한 하비下批는 벌써 진중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성복흥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속 당상納粟堂上의 체문帖文을 받은 적이 있으니 다시 당상관의 실직實職을 주면 과중하게 될 것 같고 당하관의 직을 주면 사체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이 주어야 한다면 갑자년에 호종 공신에게 내렸던 관례에 따라 당상관의 실직을 주도록 하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성복흥은 당상관 실직에 제수하라. 미처 포상하지 못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도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26

적성·장단 등지의 가뭄과 폭우의 피해가 심하다 1660년(현종 1) 7월 18일

당시 가뭄이 갈수록 심하여 바닷가 땅은 짠내가 물씬하였고, 산군山郡의 수원이 있는 곳도 모두 말라 붙어 벼들이 누렇게 시들고 이삭이 나올 가망이 없었다. 장단長湍·삭녕朔寧·마전麻田·적성積城 등지는 또 6월에 폭우가 쏟아져 강가의 전답은 곡식들이 많이 썩고 게다가 황충까지 일어, 경기감사가 알려 왔다.

27

적성·장단 등지의 가뭄이 극심하고 황충이 계속하여 발생하다 1660년(현종 1) 7월 18일

이때 한재旱災가 더욱 극심하여 연해沿海 지역에는 짠 기운이 두루 생겼고 산군山郡의 수원이 있는 곳도 모두 말라 붙었으므로 곡식이 누렇게 시들어 이삭이 패기를 바랄 수 없게 되었다. 장단長湍·삭녕朔寧·마전麻田·적성積城 등지에는 6월에 폭우가 내려 강가의 전지田地가 썩어 손상되는 피해를 혹독하게 받은 데다가 황충蝗虫이 계속 발생하였다.

28

적성현에서 무뢰배가 중죄수를 탈취하여 달아나다 1670년(현종 11) 11월 15일

경기 적성현積城縣에서 무뢰배 십여 명이 밤에 떼를 지어 옥문을 부수고 살인한 중죄수를 탈취하여 달아났다. 도신이 아뢰었다.

29

적성의 홍구서가 딸을 종실과 혼인시키려 하다 1684년(숙종 10) 10월 27일

처음에 경안군慶安君의 부인夫人 허씨許氏가 언서諺書로 중부시宗簿寺에 정단單單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차자次子 이엽李楫이 나이 장성하였는데도 장가들지 못한 것을 진념軫念하셔서 특별히 혼취婚娶의 하교를 내리셨는데, 적성積城에 사는 홍구서洪九紱의 집에 딸이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구혼求婚하였으나,

연고를 핑계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릇 종실宗室의 혼인은 으레 스스로 희망하여 정단보軍하되, 만약 모피謀避하면 사헌부에 이문移文하여 논계論啓하는 법이 있으니, 빨리 입계立啓하여 치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종부시에서 일을 갖추어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묘조仁廟朝 때 인성군仁城君의 자녀를 혼취할 때에 구혼求婚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니, 관에 고하여 치치하라는 하교가 있었다. 당초의 처분은 죄가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전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서, 특별히 혼취를 명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닌데, 나이가 어리고 병이 많다고 핑계대어 시종 허락하지 아니하니, 더욱 해이駭異하다. 홍구서洪九敘를 종종 추고從重推考하여 즉시 혼인을 행하게 하라. 또 연고를 핑계대는 바가 있으면 다시 본시本寺에 정단보軍하여 종종 처치從重處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이르러 종부시에서, 또 홍가洪家에서 혼인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써 다시 아뢰니, 홍구서를 나추拿推하도록 명하였다.

30

적성현 관아에 도둑이 들다 1703년(숙종 29) 4월 4일

도둑이 적성현積城縣 관아에 들어가서 관청 담장을 파괴하였는데, 관인官人이 방비하여 겨우 면하게 되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근래에 도적의 근심이 날마다 더하여 바로 관가官家를 침범하게 되었으니, 장리長吏를 죽이는 근심이 없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뒤져내 잡도록 신칙하라” 하였다.

31

임금이 북한산성에 행행하여 적성을 양주에 소속시킬 것을 논하다 1712년(숙종 38) 4월 10일

임금이 북한산성에 행행行幸하였다. 아침 일찍 떠나 서교西郊를 경유하여 북한산성에 이르렀다. …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형편을 논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이 성을 보니 과연 천험天險이다. 비록 조그만 흠이 있다 하나 세상에 어찌 십분 꼭 좋은 땅이 있겠는가. 양향粮餉 등 일은 반드시 차례로 조치措置하면 된다. 이전에 성 밖에 창고를 설치하지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는 꼭 성 안에 들여다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김우항金宇杭은 말하기를, “… 양주楊州는 능침陵寢이 있어 형세로 보아 옮겨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적성積城을 혁파하여 양주에 소속시키고, 양주楊州 부근 4, 5면面과 고양高陽의 1, 2면을 이 성城에 떼어 소속시켜 한 고을을 건치建置하되, 이름은 혹 북한부사北漢府使나 중흥부사中興府使로 일컬으며, 또 남한수어사南漢守禦使의 예例에 의해 따로 수비사守備使 등의 명호名號를 정하여 통찰統察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유는 말하기를, “이곳은 곧 도성都城 안이니 따로 한 고을을 설치함은 사체事體에 있어 부당합니다. 만일 완급緩急이 있다면 삼군문三軍門에서 마땅히 호가扈駕해야 할 것이니, 그대로 삼군문에 소속시켜 시임대신時任大臣이 거느리게 하고 병란兵亂에 임하면 그대로 체찰사體察使

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군향軍餉은 조지서에 증성을 쌓아 5, 6만 석의 쌀을 조치措置하여 해마다 10만석씩 돌려가며 개색改色하되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 및 각 군문의 새로 거둔 쌀로 바꾸어 들인다면 5, 6년 안에 모두 개색하고 저축이 저절로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이명은 말하기를, “이미 삼군문으로 하여금 나누어 관장管掌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그대로 위임하여 각각 신지信地를 주관하게 하고, 또 북한北漢 모사某司란 명호名號를 설정하여 대신大臣을 도제조都提調로 삼으며, 삼군문 대장三軍門大將은 당상堂上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즉각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량商量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32

적성·연천 등 고을의 부세 총당의 어려움을 아뢰다 1724년(영조 즉위년) 10월 29일

정언正言 김호金浩가 전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京畿는 곧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토질이 메마르고 백성의 노역이 가중되는 것이 다른 도道에 비해 갑절이나 심합니다. 연천漣川·마전麻田·적성積城·삭녕朔寧 등의 네 고을은 그 토질이 더욱 메마른데 결역結役은 치우치게 많아서 열 가족家族의 집일 경우 1년 동안 힘들여 농사를 지어도 그 부세賦稅를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와 말, 재산까지 팔아서 바치고 있으니,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기가 이곳보다 더 심한 데가 없습니다. 제도諸道에서 모두 기경起耕하는 데 따라 수세收稅하는 법규가 있으니, 이러한 고을에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탄식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부地部로 하여금 일일이 상고해내어 아울러 기경하는 대로 수세하는 규례에 의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한결같이 대하는 혜택을 받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33

적성의 효자에게 급복하다 1807년(순조 7) 10월 8일

예조에서 도道の 조사로 인해 효자인 적성積城의 고 사인士人 유수곤柳壽坤과 그의 처 효부 곽씨에게 급복給復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34

적성의 이후손을 효자 정려하다 1814년(순조 14) 9월 5일

예조에서 각각 식년마다 경외에서 의정부에 장보狀報한 충신·효자·열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등分等하여 초계抄牒하였다. 효자 정려질孝子旌閔秩… 적성積城의 서인 이후손李厚孫…

35

적성현의 전 사과 김광호를 표창하다 1884년(고종 21) 2월 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장계狀啓를 보니, ‘적성현積城縣에 사는 전 사과司果 김광호金光壕가 의재義財를 출연出捐하여 조총鳥銃 20자루를 새로 장만하고 포군砲軍 20명을 새로 두었는데, 포군의 요리는 앞으로 1천여 냥을 가지고 제방을 쌓아 몇 섬지기의 옥토를 만들어 충당하고, 의복은 5백 냥을 부유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이자를 불리어 가져다 쓰겠다고 하니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마땅히 장려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 묘당廟堂에서 품치稟處하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사재를 내어 군수軍需 물자를 돕고자 하여 성의가 있으므로 권장하는 정사를 베풀어야 할 것이니, 전 사과 김광호를 지방관직에 조용調用하라고 병조兵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6

적성을 마전에 소속시키다 1895년(고종 32) 1월 11일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영효가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적성積城을 마전麻田에, 음죽陰竹을 이천利川에, 풍덕豐德을 개성開城에 소속시키고, 영남嶺南의 함양咸陽을 안의安義에, 현풍玄風을 창녕昌寧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일성록日省錄』

1

적성 수령이 교량을 만들고 남은 민간의 목재를 착복하다 1778년(정조 2) 3월 15일

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 홍국영을 소견하였다. ○ 내가 이르기를, “혹시 수령이 민간에 폐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어제 선전관을 보내서 탐문하게 했더니, … 적성積城의 경우는 교량橋梁을 만들고 남은 목재를 민간에 돌려주지 않고 모두 제 집으로 실어갔다고 한다. 관장의 신분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 “가평과 적성의 백성들만 유독 징수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조정에서 회감會減하는 의도가 아니니, 진실로 개탄스럽습니다” 하였다.

2

적성현의 향곡을 장산으로 바치도록 하다 1780년(정조 4) 6월 14일

적성현積城縣의 향곡餉穀을 장산長山으로 바치도록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환곡은 바로 경기 백성이 받아서 먹는 것인데, 거리가 조금 먼 마전麻田과 연천漣川 두 고을의 경우는 조정에서 일찍이 장산으로 옮겨 바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적성 한 고을은 연천이나 마전에 비해서 거리가 비록 수십 리 더 가깝기는 하지만 북한산성으로부터 백 리 밖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기백이 일체 장산으로 옮겨 바치게 해달라는 뜻으로 비국에 보고하기도 하고 총융청에 이문移文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청本廳의 향곡은 어디에 있건 차이가 없고 적성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질적인 폐단을 완화시킬 수 있기에 총사總使가 시행하기를 허락하고자 하지만, 그 일이 군향軍餉에 관계되어 있으니 묘당이 품정稟定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우러러 아뢰니다” 하여, 내가 좌상과 우상에게 하문하니, 좌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적성이 장산에다 바치는 것이 편리하고 가까운 점에 있어서는 연천이나 마전과 별 차이가 없으니, 일체로 시행을 허락하면 적성의 백성들로서는 크게 힘을 덜게 될 것이고 총융청으로서도 똑같은 향곡이니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이휘지李徽之가 아뢰기를, “적성은 연천·마전과 그리 차이가 없는데 유독 장산을 놔두고 멀리 북한산성으로 운반하니 고질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체로 장산으로 바치도록 허락한다면 적성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

적성현감 김조연을 엄중 처벌하다 1864년(고종 1) 4월 9일

○ 경기감사 조재응趙在應이 장계를 올려 “적성현감赤城縣監 김조연金肇演이 빈민을 구제한답시고 부유한 집에 강제로 대여하면서 갖은 공갈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먼저 파출하고 그 죄상을 해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에 대하여 신정희에게 전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평상의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구전으로 가려 차임하여 속히 내려보내도록 하라. 이토록 잔폐한 고을에서 백성을 침학하는 악습을 자행하였으니, 그 은혜롭지 못함이 심하다.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게 하라” 하였다.

2

적성현 사직단을 수리할 때 고유제 등에 쓸 향축 등을 내려보내다 1864년(고종 1) 7월 29일

○ 예조가 아뢰기를, “조금 전에 경기감사 조재응趙在應이 올린 공문을 보니, ‘적성현積城縣 사직단社稷壇의 신실神室이 해가 오래 되어 무너져 보기에 민망스럽기에 이번 가을 제사 때 사유를 고하고 수리할 계획이다. 그러니 고유제와 이안제, 환안제를 지낼 때 쓸 향축과 폐백을 예조에서 계품하여 내려보내 달라’ 고 하였습니다. 적성현 사직단의 신실을 수리할 때 고유제와 이안제, 환안제를 지낼 향축과 폐백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 다고 전교하였다.

3

적성현 향교를 개수할 때 고유제 등에 쓸 향축을 내려보내다 1868년(고종 5) 7월 21일

○ 예조가 아뢰기를, “조금 전에 경기감사 이의익李宜翼이 보낸 이문移文을 보니 ‘적성현積城縣 향교學校의 성전聖殿을 개수하는 일을 이번 가을 석채釋菜에 사유를 겸해서 고하고 거행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고유제告由祭와 이안제移安祭, 환안제還安祭에 쓸 향축香祝을 즉시 해당 사로 하여금 전례를 비추어 마련해서 내려보내게 하고, 축문 가운데 넣을 말을 지어내는 일도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 다고 전교하였다.

4

100세 된 아버가 가자를 받지 못함을 하소연하는 적성 유학 백낙성의 소장 1869년(고종 6) 11월 9일

○ 이조가 아뢰기를, “경기 적성積城에 사는 유학 백낙성白樂成이 올린 소장에 ‘저의 아버 유학 백흥수白興洙가 금년에 100세이다’ 하였고, … 그들은 모두 본도의 응자 노인초계 속에 누락되어 가자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찾아와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적을 조사해 보니, 그들의 나이가 정말 확실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추후에 계품하여 은혜를 입은 전례가 많이 있었으니, 오늘 정사에서 가자하도록 비답을 내리소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5

적성을 마전에 소속시키다 1895년(고종 32) 1월 11일

○ 총리대신과 내무아문 대신이 아뢰기를, “삼가 지난해 12월 16일 칙령의 뜻에 따라, 수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 주현州縣 중에 경기의 적성積城은 마전麻田에 소속시키고, 음죽陰竹은 이천利川에 소속시키고, 풍덕豐德은 개성開城에 소속시키고, 영남의 함양咸陽은 안의安義에 소속시키고, 현풍玄風은 창녕昌寧에 소

속시키도록 해도의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윤택한다는 직지를 받들었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

적성·여주 등 각 고을의 재해 상황을 자세히 살펴 경중을 가려 진휼하도록 하다 1679년(숙종 5) 10월 22일

아뢰기를 “각 도의 재실분등災實分等 장계를 상고해 보니 경기의 아주 심한 13읍중에서 고양高陽과 양성陽城 2읍은 한쪽의 해변 지대는 재해를 입었으나, 여타 각 면은 비교적 충실한 곳도 없지 않는데 모두 아주 심한 고을이라 하였고, 그 다음으로 재해 입은 14개 읍중에서 여주驪州·이천利川·죽산竹山·양근楊根·영평永平·적성積城 등 6읍은 농사가 가장 잘 되었는데도 모두 이에 해당시켰으니 고양과 양성은 우심한 것 다음으로 올리고 여주 등 6읍은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이미 ‘몸소 살펴서 보고합니다’ 하였으니 신 등이 소문만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으므로 고양 등 두 읍은 해변의 피해를 입은 면만 본도에 다시 물어서 아주 심한 예대로 감면해 주고 기타 각 면은 그 다음으로 재해 입은 곳과 똑같이 시행하며, 여주 등 6읍은 감면을 논하지 말고 감사도 자세히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무겁게 추고하여야 합니다. 충청도의 아주 심한 읍 중 1, 2읍은 신 등이 들은 바와는 조금 다르나 먼 곳에서 들은 소문이어서 자신할 수 없으므로 본도의 구분에 따르되 아주 심한 18읍 중 서산瑞山·태안泰安은 전 지역이 적지赤地임을 모두가 다 아는 바이고 아산牙山·평택平澤이 3년을 연달아 받은 피해는 다른 읍에 비해 가장 참혹하며 그 외 은진恩津 등 14읍은 우심한 고을 속에 들기는 했어도 서산·태안·아산·평택 등 4읍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역緡役 절목을 경중을 구분하여 참작 작성하여 별단으로 써서 올립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2

적성 등지의 전미를 대미로 바꾸어 균형에 상환하게 하다 1683년(숙종 9) 1월 25일

… 또 아뢰기를 “본부에 균형으로서 전미田米 8백여 석이 있는데 만약 여러 해 묵는다면 부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체로 전미는 대미大米에 비하여 더욱 쉽게 부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전麻田·연천漣川·적성積城 등 읍에서 대미로 받아야 할 것을 전미로 대신 수납한 것이니 이를 금년 봄에 각각 그

읍에 도로 지급하였다가 가을에 가서 본래의 대미로 바꾸어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일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나 진흙청에서도 각 읍에 나누어 지급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 전미를 가져다 사용하고 가을에 가서 대미로 바꾸어 군항(軍餉)에 상환하는 것도 편의할 듯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대로 하라. 진흙청에서도 다같이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3

적성·파주 등 경기 각 읍의 민결의 다소를 가려 환수의 수량을 조정하다 1683년(숙종 9) 10월 2일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기 각 읍 중 환상(還上)의 수가 많아 모두 거두기 어려운 곳을 추려 내어서 아뢰라고 관찰사에게 분부한 바 있습니다. 초겨울이라 환수(還收)가 현재 급한데도 오래도록 아뢰는 일이 없으니 지연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감사 김우석(金禹錫)을 중한 데에 따라 추고하소서. 본사에서, 각 고을에서 환수할 시기를 어김으로써 민간에서 낭패스러워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각 아문의 문서를 상고하여 신·구의 환상을 산출하고, 또 각 읍 민결(民結)의 다소를 가지고 거두어야 할 수량을 조정하니 양주·여주·이천·장단·죽산·교동·안성·풍덕·양근·가평·삭녕·통진·용인·양지·포천·음죽·영평·연천·지평·적성 등 20읍은 숫자대로 거두어야 하고, 파주·남양·진위·양성 등 4읍은 3분의 2를, 수원·고양 2읍은 5분의 4를 거두어야 하고, 부평·인천·김포·마전·안산·양천·과천·교하·금천 등 9읍은 절반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찰사에게 통보하여 이에 의하여 거행하게 할 것이나 각 읍의 사정을 일례로 헤아리기도 어렵고, 거둬 기근이 들었던 뒤라 백성의 힘이 다하여 경감하여 결정한 양에 따라 거두기 어려운 곳도 있을 것이며, 백성들의 마음에 오랜 포흠(逋欠)을 내지 않으려고 수량대로 바치겠다고 요청하는 곳도 있을 것이며, 또 서로 마주치는 사정이 있어 특별한 변통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관찰사로 하여금 수집, 아뢰도록 할 것이며, 여러 아문의 환상은 비록 예에 따라 독촉한다 하더라도 이미 묘당에서 규례를 정한 뒤에는 역시 각자 명령을 내어서는 부당한 일입니다. 계속 독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보고하여 반드시 묘당의 회보를 받은 뒤에 시행 하라고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4

적성 등 수해가 심한 지역에 상평청의 구호용 비축분으로 구휼하기를 청하다 1688년(숙종 14) 1월 29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작년에 흉년이 든 것은 오로지 수재(水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산골 읍 및 강 가까운 지역은 쓸다시피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초봄을 맞아 굶주림이 특히 심하여 굶어죽은 시체가 길에 널릴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하니 별도로 구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의 아주 심한 곳 중에

서도 극심한 곳인 부평·양천·금천·지평·적성·영평·삭령·가평 등 8개 읍과, 강양도의 아주 심한 곳 중에서도 극심한 지역인 원성·안협·평강·강릉 등 4개 읍은 금년 봄 대동미大同米 및 전세田稅를 모두 거두어 본 고을에 유치留置하도록 하여 구호의 밑천으로 삼도록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니 이러한 뜻을 곧 양도 및 해조와 해청에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봄 공홍도 이북지역 기근에 대한 우려는 과거 흉년이 든 해와 다름이 없으나 나라에 비축된 것이 고갈되어 곡물을 방출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굶주림을 앓아 보고도 구호에 손 쓸 방법이 없으니 사실 매우 걱정입니다. 상평청의 구호용 비축분은 비록 매우 사소하나 전혀 주선하여 구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당해 청으로 하여금 서둘러 강구하여 가장 급박한 곳부터 구호토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5

적성의 둔전을 파하도록 요청하다 1695년(숙종 21) 2월 10일

이번 2월 초9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에 참찬관 박세준朴世燾이 아뢰기를 “조정 신하로 사명을 받들고 밖에 나간 사람이 연도에서 들은 바가 있으면 으레 진달하는 준례가 있습니다. 신이 파주坡州에 나갔을 때에 대충 들은 바가 있어서 감히 이렇게 양달하옵니다. 적성積城은 기내畿內에서 가장 조잔한 고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겨우 4개 면뿐인데 한 면은 훈련도감에서 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관역官役을 회피하려는 자는 모두 둔屯에 투숙하여 관가를 멀리하고 있으나 관가에서는 감히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민屯民의 자식은 나이 겨우 4, 5세만 되면 아병牙兵에 편입되기 때문에 본 고을에서는 세초歲抄 때에 장정을 뽑아 꺾액의 충당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겨우 두 면의 백성만 거느리니 모양을 이룰 수 없고 온갖 책응은 번다하기가 다른 고을의 열 갑절이나 되니 실로 지행하기 어렵습니다. 훈련도감과 총융청은 이 둔이 없다 하더라도 잃는 것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을 것이니 지금 만일 이 양국兩局의 둔전을 파한다면 본현의 민력은 퍼질 수 있고 관가에서도 모양을 이룰 가망이 있을테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 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6

적성의 둔전과 둔민 관리방안을 살피다 1695년(숙종 21) 2월 11일

이번 2월 초10일 대신과 비극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 “박세준朴世燾이 연도에서 들은 적성積城의 둔전 일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 처리하게 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훈련도감의 둔전은 양향청糧餉廳에서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호조판서 이세화李世華가 지금

입시하였으니 하문하셔서 처리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세화가 아뢰기를 “신이 지금 양향청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곡절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양민과 천민을 가리지 않고 둔민屯民을 모집해 들이는데 한번 들어간 뒤에는 본 읍의 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준례입니다. 적성은 지극히 쇠잔한 고을로 참으로 지탱하기 어려우니 매우 걱정입니다. 이 일을 변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뒤로는 둔민을 본 관에게 부속시키고 본관이 주관하여 세를 거두어 본청에 납부하고 둔민은 본 고을에 응역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유상운이 아뢰기를 “총융청의 둔전도 그곳에 있는데 군문의 일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으니 똑같이 변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똑같이 변통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7

환자곡 납부가 적은 적성 등의 고을 수령을 벌하다 1699년(숙종 25) 6월 23일

아뢰기를 “모든 도에서 작년의 환자곡을 우심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수령들을 이미 뽑아내어 논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량으로 이전된 것은 다른 창곡倉穀에 비해 긴요할 듯합니다. 그런데도 강화의 이전곡을 여주驪州·양근楊根·수원水原의 세 고을에서 전년 납부하지 않았고, 남한산성의 이전곡은 죽산竹山이 말등末等인데 납부한 것이 겨우 10분의 1을 넘겼으며, 대흥산성大興山城의 이전곡은 적성積城이 말등인데 납부한 것이 우심하게 적었으니 매우 한심스런 일입니다. 모든 고을 수령을 마땅히 별도로 논죄해야 할 것이오나 이런 때에 교체시키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참작해서 처리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전 죽산부사 김석명金錫命과 적성현감 노사성盧思聖 등은 환자곡의 말등 규례에 의거하여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연 미납된 세 고을에 대하여 여주는 앞전 수령들이 다 받아들였으나 새 목사 임홍량任弘亮이 상납하지 않았고, 또 양근은 전 현감 윤우명尹遇明에 해당된 것이며, 수원 원문서기 마감된 뒤에도 연장하여 받아들여 겨우 10분의 1을 채웠는데 그래도 여러 고을 중에 말등입니다. 그러나 수원부사 이익수李益壽가 검입한 방어사는 2품에 관계되므로 곤장 치는 벌을 시행할 수가 없으니 탐전의 결정대로 파직시켜야 하겠습니다. 윤우명은 창곡을 받아들인 것이 말등이었기에 이미 곤장을 쳤으니 벌을 거듭 받을 수는 없으므로, 우선은 덮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임홍량의 죄상은 다만 상납하지 않은 데에 있을 뿐이므로 받아들인 곡물의 말등과는 조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교체시킴에는 폐단이 있고 추고하는 것은 너무 가벼우니 역시 곤장 치는 것으로 벌 주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이로써 의금부와 호조 및 모든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8

환자곡 수봉을 최하위로 한 적성 전 현감 노사성을 장형에 처하다 1700년(숙종 26) 5월 11일

아뢰기를 “지난 해 환자를 우심하게 수봉하지 못하여 최하위로 판정된 수령을 조사하여 계문할 것을 결정하여 분부한 바 있습니다. 여러 도의 계본簿本이 지금 겨우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그 추려낸 형식은 각자 다르나 그 명목名目을 구분, 치죄해야 합니다. 작년의 예에 의하여 최하위인 자는 장형杖刑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인 부류는 모두 추고해야 합니다. 각 인의 성명을 별단에 기록하여 들입니다.”

각 도의 환자를 우심하게 수봉하지 못하여 최하위가 되거나 그 다음인 자를 논죄한 별단.

경기 : 적성 전현감 노사성盧思聖은 최하위로 장형을 집행하고, 여주목사 이세황李世璜·마전군수 이백겸李白謙 이상은 지차之次로 모두 추고한다. …

9

환자 수봉에서 끝찌를 기록한 적성현감의 처벌을 청하다 1702년(숙종 28) 윤6월 27일

이번 윤6월 25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할 때에 좌의정 이세백이 아뢰기를 “이는 개성유수開城留守 신양申愼의 장계입니다. 대흥산성의 군량軍糧 환자還上가 끝찌에 드는 수령의 일인데 근년 이래로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음이 더욱 심하여 끝찌에 드는 자는 곤장棍杖을 치고, 그 다음은 추고하는 일을 일찍이 정식定式하였습니다. 적성현감積城縣監 송규현宋奎炫은 본읍에서 받아가지고 간 군량을 받아들인 숫자가 적어서 끝찌로 계문했는데 곡식 숫자의 다소를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 아뢰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장계를 보건대 적성은 받아들인 것이 적어서 끝찌를 면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조정에서 규식으로 정한 바 응당 받아들여야 할 숫자는 이미 맞춰 받아들였고, 받아들이지 못한 숫자를 약간 받아들이는 중이었는데 후에 그만 받아들이라는 영수으로 인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현의 향곡餉穀의 원래 숫자가 다른 고을 곡물에 비교해 비록 숫자가 적은 듯하나 이미 조정의 명에 의해 숫자를 채워 받아들였는데 후에 끝찌를 한 것으로써 논죄論罪하는 것은 억울한 듯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한 곡식을 제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반드시 받아들이지 말라는 명을 기다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는 아주 잘못입니다. 끝찌에 대해 결정決裁하는 벌을 우선 분간하고 추고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고, 우의정 신완이 아뢰기를 “송규현의 끝찌는 다른 고을과는 다른 데 결정하는 벌은 과중過重한 듯하나 이미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지레 수봉收捧을 정지한 잘못은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결정하는 것은 억울할 듯하니 추고해야 한다” 하였다. 형조판서 민진후가 아뢰기를 “송규현의 결정은 마땅히 분간하여야 하나 대저 환자를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이 풀찌이면 으레 결장하고, 그 다음은 으레 추고하였습니다. 지난번 수어사^{守禦使} 김진귀^{金鎭龜}의 품정^{稟定}으로 인해서 군량은 다른 환자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풀찌는 먼저 파직하여 추고하고 그 다음은 결장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규식을 정하였습니다. 송도^{松都}·강도^{江都}는 모두 군량이므로 마땅히 남한산성^{南韓山城}과 일체로 해야 할 듯하며, 만일 군량도 다른 환자와 이동^{異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기면 이번에 비록 김진귀의 아뢰에 의해 특별히 중하게 논책^{論責}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전례로 인해 군량과 다른 환자를 물론하고 풀찌는 결장하며 그 다음은 추고한다면 고르지 못한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고, 이세백이 아뢰기를 “산성의 군량 포흠^{逋欠} 쌓인 것이 가장 많고 매년 바치지 않는 폐단이 다른 것에 비해 더욱 심하기 때문에 수어사가 이렇게 품정한 것이며, 당초 결장으로 정식한 것은 대개 수령^{守令}을 바꾸는 폐단을 염려해서였습니다. 산성이 비록 중요한 곳이기도 하나 유독 파직하여 추고하는 율을 써서는 안 되며, 또 군량이 있는 곳도 한 곳이 아닙니다. 강도^{江都} 등지 역시 마땅히 일체로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풀찌를 한 수령은 모두 결장하는 것으로 한결같이 규식을 정하고, 그 가운데 더욱 심해 나쁜 곳은 정식한 외에 별도로 아뢰어 논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른 곳의 군량이 풀찌인 자도 한결같이 파직하고 추고하면 수령을 바꾸는 폐단이 참으로 염려된다” 하였다. 신완이 아뢰기를 “결장의 벌은 수령들이 더욱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 이로써 말하자면 결장이 파직보다 낫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남한산성에만 유독 파직하여 추고하는 법을 씀은 공평하지 못한 듯하니, 전례에 의해서 풀찌를 한 수령은 결장하고 그 다음은 추고하며, 그 가운데서 더욱 심한 자는 별도로 계문^{啓聞}하여 논책^{論責}해야 한다” 하였다.

10

적성을 양주에 소속시키기를 청하다 1712년(숙종 38) 4월 13일

…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양주 고을에 능침^{陵寢}이 있어 옮겨 들어가는 어려운 형편이요, 양주 접경 적성^{積城}은 다만 4개 면^面 뿐인 가난한 고을이니, 차라리 적성 한 고을을 폐지하여 양주에 소속시키되, 북한산성 부근의 양주 4~5면 및 고양^{高陽}의 1~2면을 이 성에 베어 소속시켜서 한 고을을 설치하고, 명호^{名號}는 약간 높이지 않을 수 없으니 북한부사^{北漢府使}라 칭하거나 중흥부사^{重興府使}로 칭하거나 또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수어사의 예에 의하여 수비사^{守備使} 등 명호를 설치하여 한 성을 통찰^{統察}하게 하면 보장^{保障}에 관한 일 들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요, 앞으로의 급박한 사태에 믿는 바가 있을 듯 싶습니다. …

적성 등 척박한 고을은 기경에 따라 수세할 것을 청하다 1724년(영조 즉위년) 10월 30일

정언 김호金浩가 아뢰기를 “경기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토질의 척박함과 민역의 고됨은 다른 도에 비하여 갑절 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백성은 살 수가 없어 한번만 흉년을 겪으면 거의 유산流散하게 되는데 전부터 조정에서 특별히 진휼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천漣川·마전麻田·적성積城·삭녕朔寧 등 네 고을은 토질이 더욱 박하고 결역結役은 유난히 많아 십부十夫의 집에서 1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도 그 부세賦稅를 채우지 못하여 심지어 소와 말 및 가산家産을 다 팔아서 내기까지 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곤궁함이 이 땅보다 심한 데가 없습니다. 더구나 몇 십 년을 묵혔던 땅이나 산골짜기 분묘만 있는 곳까지 한결같이 전안田案을 기준으로 하여 모조리 세를 거두니 이 고을 백성은 전토가 많으면서도 파산한 자가 곳곳에 있는데 이는 대체로 땅은 경작하지 않는 데도 부세는 한결같이 때문입니다. 아! 저들 전토가 없어 빌어먹은 사람들은 마땅히 애처로울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전토를 가지고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사람은 더군다나 애통이 심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각도마다 모두 기경起耕에 따라 세를 거두는 법규가 있으나 이 땅만이 고르지 못한 폐단을 면하지 못하니 설사 오래도록 개량改量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한 도내에는 마땅히 이곳 저곳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이 네 고을의 세규稅規만이 다른 고을과 판이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은 사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세입이 줄어들까 걱정하여서라면 몇 고을 진전陳田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세수의 요건이 없는 데도 수세하는 정사로 논한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영세민의 원성은 죽히 감상을 자아낼 만합니다. 어떻게 당당한 성명聖明의 조정에서 이토록 구구한 작은 비용만을 위하고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일은 생각지도 않사옵니까? 이 네 고을만은 신이 목격하고 자세히 알았던 바이나 이 밖에도 이러한 고을이 없지는 않을 터이니 청컨대 호조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해내서 즉시 변통하여 모두를 기경에 따라 수세하는 규례에 의준하게 하여 조정에서 똑같이 대하는 덕의德意을 입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규정을 무시하고 역을 부과한 적성수령 1726년(영조 2) 12월 21일

이 달 20일 초복初復에 입시하였을 때에 정언 한덕후韓德厚가 아뢰기를 “근래 여러 고을에서 혹 명목을 교묘히 만들어 과외로 침범하여 거두어들여 가난한 백성이 살아갈 수 없으니 통탄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는 본래 규모가 있어 사객使客 접대 등에 수요 되는 잡물을 모두 대동미大同米에서 획급하고 공사

公私 수용에 정해진 규정이 있으나 적성積城 등 두어 고을의 경우 조정에서 정한 규례 외에 전에 없는 규례를 창출하여 이름을 제역除役이라 하고, 기름·꿀·종이 등의 물품을 자원에 따라 바치게 하여 사사로이 사용하고 인하여 다른 역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백성은 좀 수월한 것을 이롭게 여겨 앞다투어 투입하고 허다하게 거행해야 할 잡물에 있어서는 가난한 백성에게 치우치게 책임지웁니다. 그 역은 전에 견주어 배나 되며 옛날 1년에 한 번 응하던 부역夫役이 혹 3~4차에 이르는데 인근 여러 고을에서도 서로 본받으니 폐단은 점점 심하여 백성들이 유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초 창출해 낸 수령을 찾아내어 무겁게 죄를 주고 이어 본도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 혁파하도록 하되 조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규례를 그대로 따르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드러나는 대로 엄중 문책하여 경기 백성의 조금의 폐단이라도 덜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의 아뢰는 대로 하라 하였다.

장단長湍 관련 기사

『조선왕조실록』

1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장단을 좌도에 소속시키다 1394년(태조 3) 6월 23일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左右道로 고치자고 청하니 장단長湍 등을 좌도에 소속시켰다.

2

장단에 많은 비가 내리다 1404년(태종 4) 5월 15일

송림松林·장단長湍·우봉牛峰 등지에 큰 비가 내렸다.

3

강무를 위해 장단의 산림을 불태우다 1412년(태종 12) 2월 25일

호군護軍 이자화李自和를 보내서 임강臨江·장단長湍·우봉牛峰·토산兔山에 가서 산림山林을 불태워 강무講武를 준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행하니, 세자가 따라갔다. 대간臺諫 두 사람이 뒤따라가 행궁行宮에 이르러 호가扈駕하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근신近臣이 아뢰지 않았다.

4

배의 수명을 늘이고자 장단 등지의 석회 사용을 아뢰다 1412년(태종 12) 5월 21일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이 배를 간수하는 법을 올렸다. 계문啓開은 이러하였다. “우리나라가 변방을 방어하는 데는 전함戰艦에 힘입는데, 반드시 큰 재목材木을 써야 하나 재목이 자라는 것이 수십 년을 기다려야 쓸 만하니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배는 항상 바다에 떠 있으므로 벌레가 먹어서 몇 해가 못 되어 썩어빠집니다. 신이 듣건대, 중국에서는 석회石灰로 배 밑을 발라서 벌레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충청도·경상도·전라도 3도에 참나무櫟木가 많으니 석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나, 석회石灰의 용도가 넓다. 궁실宮室을 꾸미는 것은 다만 미관美觀을 위하는 것이니, 비록 쓰지 않더라도 가하지마는, 분묘墳墓를 만드는 데는 긴절하다. 유후사留後河·장단長湍·강화江華 등지에 석회가 있다니, 장인匠人을 보내어 사실인가 아닌가를 증험하도록 하라.”

5

장단과 임강을 병합하여 장림으로 하다 1414년(태종 14) 8월 21일

“... 장단長湍·임강臨江을 병합하여 장림長臨으로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6

임강을 장단에 옮겨 붙이다 1414년(태종 14) 9월 8일

경기도관찰사가 도내의 병합併合한 현읍縣邑의 사의事宜를 보고하였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 장림長臨은 임강臨江을 장단長湍에 옮겨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의 조건의 현읍縣邑을 옮겨 배속할 곳을 청컨대, 의정議政하여 주소서”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7

장단현과 임진현을 임단현으로 통합하다 1414년(태종 14) 12월 3일

경기 장단현長湍縣과 임진현臨津縣 두 현縣을 임단현臨湍縣으로 하고 다시 임강현臨江縣을 두었다.

8

장단을 강무할 장소로 정하다 1415년(태종 15) 2월 3일

강무할 장소를 정하였다. 병조에 전지를 내렸다.

“충청도의 순제곶이[尊堤串] 내와 전라도의 임실任實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하지 말고, 백성들이 전답을 개간하도록 하게 하라. 강원도의 평강平康·횡천橫川·이천伊川·평창平昌·강릉江陵의 진보珍寶·방림芳林·대화大和·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실미원實美院 등지와 풍해도豐海道의 우봉牛峯·대둔산大菴山

과 경기京畿의 임강臨江·수회水回·마성馬城·장단長湍·칠장七牆과 유후사留後司의 태정곳이[答井申]·덕련동구德連洞口·안협安峽·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지하여 강무講武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9

장단현을 다시 두다 1418년(세종 즉위년) 9월 26일

장단현長湍縣을 다시 두었다. 장단현은 매우 작아 임진현臨津縣에 합하여 임단현臨湍縣이라 부르다가, 이에 이르러 다시 장단현으로 회복하였다.

10

임단으로 바뀐 장단현을 고을사람들이 싫어하다 1418년(세종 즉위년) 12월 29일

“장단현長湍縣의 현리縣吏가 그 고을이 합하여 임단臨湍이 된 것을 싫어하여 모두 도망하여 숨었으니, 만약 진실로 이를 싫어한다면, 다시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니, 허지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합쳐서 한 현縣으로 만든 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른 것이오는데, 변함을 보고 도망하는 것은, 신이 이를 심히 미워하오니,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11

다시 장단현을 설치하다 1419년(세종 1) 3월 5일

다시 장단현長湍縣을 설치하였다.

12

예조에서 장단 효자 배홍식을 찾아내어 아뢰다 1428년(세종 10) 10월 28일

예조에서 경외京外의 효자孝子·순손順孫·절부節婦를 찾아내어 계하기를, “... 경기京畿의 장단長湍 사람 유학幼學 배홍식裴弘湜은 그 모친이 죽으니 3일간을 먹지 않다가 대렴大斂을 하고 나서야 죽을 먹었으며, 3년간 여묘墓祭를 사는 동안 거적자리에서 토막을 베고 지냈고, 춥고 더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도 무덤 곁에서 모시기를 날이 마치도록 하여, 그 동네 어귀에 정문旌門을 세워 효행을 표시하였는데, 그 부친이 죽어서는 애통해하고 파리한 모습이 전의 모친상 때보다 더하였다 하옵니다.”

13

윤경동의 아내를 가로챈 장단의 윤계동·유흥준·신자수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1434년(세종 16) 3월 15일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첨지사역원사僉知司諫院事 유흥준俞興俊·전 녹사錄事 신자수申自守 등을 의금

부에 가두었다. 이는 윤계동의 친형 윤경동尹敬童이 일찍이 감영귀甘英貴의 딸과 결혼하여 장단長湍에 살고 있었는데, 유흥준이 종들을 인솔하고 가서 몰래 경동을 빼내어 그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한 까닭이었다.

14

장단 등 도태시킬 만한 주현에 대해 의정부와 각 조가 의논하다 1435년(세종 17) 7월 22일

경기감사京畿監司 성개成概가 아뢰기를, “지금 이조에서, 교명敎命 받은 바에 의하여, 공문을 보내어서 도태淘汰시킬 만한 주현州縣을 조사訪問하여 갖추 기록합니다.”

1. 임강臨江과 장단長湍은 서로 떨어지기가 일식경一息頃의 거리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합쳐서 한 군으로 만들고 읍은 중앙에 두되, 사신을 접대하고 군사를 내는 등류의 일은 원평原平과 고양高陽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며,
1. 마전현麻田縣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어서 연천漣川과 적성積城의 사이에 끼여 있으며, 연천은 곧 무예武藝를 연습하고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이니, 마땅히 마전을 연천에 합쳐야 될 것이며,
1. 교하현交河縣은 고양高陽과 원평原平에 끼어 있어 형세가 굽은살贅肉과 같으며, 남쪽으로 고양과의 거리가 일식경一息頃이요, 동쪽으로 원평과의 거리가 일식경이니, 마땅히 교하현을 혁파하여 고양과 원평에 나누어 소속시킬 것이며, …

15

장단 사람 이길이가 묵은 소맥으로 새 종자에 대신하다 1439년(세종 21) 7월 16일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농서집요農書輯要』의 수곡종조收穀種條에 ‘묵은 대·소맥大小麥’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들으니 장단長湍 사람 이길李吉이 묵은 소맥小麥을 심었는데 결실結實하는 것이 새 종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각 도의 농민으로서 만일 소맥 종자가 떨어진 자는 각 고을에 저축한 묵은 소맥을 꾸어 주어서 파종播種하게 하소서. 대맥大麥은 비록 농서農書에 보이나, 경험한 사람이 말하기를, ‘다만 싹만 설 뿐이고 결실結實하지는 못한다’고 하오니, 노농老農에게 물어 보게 하여,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소맥의 예에 의하여 나누어주어 심게 하고, 만일 경험한 자가 없으면 적전籍田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6

세 쌍둥이를 낳은 여자에게 쌀 5석을 하사하다 1447년(세종 29) 7월 17일

경기도 장단현長湍縣에 삼월三月이란 여자가 한 번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쌀 5석을 하사하였다.

산릉 조성을 위해 장단현과 마전현의 산세를 살피게 하다 1452년(단종 즉위년) 6월 6일

세조가 이용李瑒·황보인皇甫仁·남지南智·김종서金宗瑞·정분鄭本·이양李穰·허후許謙·풍수학 제조 정인지鄭麟趾·이사순李師純·중추원 부사 박연朴堧 등과 더불어 조계청朝啓廳에 모이었다. 세조가 황보인에게 이르기를, “이번 산릉은 조정 대신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살펴 정하였는데, 어찌 경솔히 한 소인의 공을 요구하는 간사한 말을 듣고 이 박정駁正하는 의논이 있겠소?”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대군의 말이 옳소. 그러나 이러한 의논은 철저히 분변하지 않을 수 없소” 하니, 드디어 윤통尹統·이현로李賢老·김경손金敬孫·노목魯穆·문맹검文孟儉 등 10여인으로 하여금 목효지睦孝智와 더불어 편간片簡을 들어 조목조목 질문하고 지리에 관한 여러 서적의 설을 널리 이끌어서 그 망령됨을 변명하고 인하여 목효지에게 묻기를, “지금 네가 새 능을 불가하다 하니, 네가 말하는 길지吉地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목효지가 말하기를, “마전현麻田縣 북쪽의 계좌 정향혈癸坐丁向穴과 장단현長湍縣 북쪽의 임좌 정향혈壬坐丁向穴은 산수의 형세가 건원릉健元陵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이에 가서 보는 여부를 의논하니, 이사순·박연·허후·정인지·이양 등이 말하기를, “풍수학 제조 한 사람과 낭청郎廳 등으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세조·이용李瑒·황보인·남지·김종서·정분 등이 말하기를, “지금 새 능이 혹시 쓸 수 없다면 마땅히 가서 살펴야 하지마는, 만일 목효지의 말이 근거 없다 하여 새 능을 길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번거롭게 가서 살펴볼 것이 있는가? 현릉獻陵·영릉英陵은 서울에서 멀지 않으나 오히려 큰 강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두 현縣은 서울에서 멀고 중간에 있는 큰 내가 하나가 아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수릉壽陵은 모름지기 현릉獻陵 옆에 잡아야 하고, 만일 되지 않는다면 장차 능을 새로 잡아서 쓰겠다.’ 하시었으니, 선왕의 뜻은 선릉先陵에 모시어 장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또 지금의 대행 대왕이 또한 일찍이 영릉英陵 서쪽 산등성이에 말을 멈추고 풍수학 관원에게 묻기를, ‘이것이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혈穴이나?’ 하고 한참 동안 두루 보았으니, 비록 현저히 말씀은 하지 않았으나 그 뜻은 또한 선릉에 모시어 장사하고자 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혼령이 어찌 멀리 이곳을 떠나려고 하시겠는가? 비록 대신의 말이라도 만일 의리에 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닌데, 하물며 목효지는 한 눈이 멀었으니 지리가地理家에서 꺼리는 자이다. 세종께서 이미 내치시었는데 목효지는 가만히 가서 보았으니, 국가를 위하여 길한 조역兆域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훼방하고 자기를 팔아서 만일의 쓰임을 바라고, 따라서 공을 자랑하여 천인을 면할 것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먼저 이심利心を 품고 일이 바르게 되겠는가? 감히 작은 편지로써 인연하여 계달啓達하였으니 불경함이

더 클 수 없으므로 마땅히 국문하여 치죄하여야 한다” 하고, 드디어 아뢰어 형조에 내리니, 형조에서 아뢰기를, “목효지가 세계世系가 천하고 눈이 멀었으므로 풍수학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쓰이기를 피하여 사사로움을 끼고 글을 올렸으니, 죄가 응당 장 1백 대에 해당하고 영구히 황해도 잔폐한 참로站路의 전운노轉運奴에 예속시켜야 합니다” 하니, 영속하는 것은 제하고 해를 한정하여 안성첨安城站 아전에 예속하라고 명하였다.

18

임진, 임강, 장단을 병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1456년(세조 2) 5월 23일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주州·군郡을 병합併呑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내가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군과 현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에 따라 거주민들의 이해가 같지 않으니, 내 그 중에서 우선 한두 고을을 병합하여 그 편리한지 여부를 시험해 보고자 한다. 그 일을 마련하여서 아뢰어라. 의논하여 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방해되는 것을 싫어해서이다” 하니,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먼저 임진臨津·임강臨江·장단長湍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임진을 치소治所로 삼고, 과천果川과 금천衿川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금천을 치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전지하기를, “이조吏曹에서 병조판서申叔舟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19

임진·장단·임강을 한 현으로 합하다 1456년(세조 2) 7월 4일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을 합하여 한 현縣으로 만들고, 임진臨津과 장단長湍·임강臨江을 합하여 한 현으로 만들어 금천과 임진으로 치소治所를 삼게 하라” 하였다.

20

장단에 교관을 두다 1456년(세조 2) 12월 23일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경기京畿의 금천衿川·과천果川을 합하여 한 고을縣으로 만들고, 임진臨津·장단長湍·임강臨江을 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었는데, 지금 금천의 현재 호수가 6백 32호이고, 장단의 현재 호수가 1천 22호이니, 청컨대 『속전續典』에 의하여 교관敎官을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1

임강·장단·임진을 통합한 고을의 치소를 도원역으로 옮기다 1457년(세조 3) 2월 6일

이조吏曹에서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승손李承孫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 병자년에 임강臨江·장단長湍·임진臨津을 합하여 한 고을로 삼고, 임진으로써 치소治所를 삼았는데, 임강·장단의 관노

비官奴婢와 인리人吏가 천사遷徙하여 객지客地에 우거寓居하고 있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또 두 현縣의 인리人吏가 식량을 싸가지고 내왕하는 폐단도 또한 작지 않습니다. 옛 도원역桃源驛의 기지基地가 세고을의 중앙에 있어 도리道里가 알맞게 균평均平하니, 청컨대 치소治所를 이곳으로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2

임진에 속한 장단을 회복하고 현령을 임명하도록 하다 1458년(세조 4) 6월 25일

이보다 앞서 장단長湍·임진臨津·임강臨江의 3현縣을 합하여 하나의 현縣으로 하여 ‘임진臨津’이라 불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장단長湍은 중궁中宮의 조부祖父 이상 5대조代祖의 장지葬地이니, 청컨대 ‘장단長湍’이라 부르고 현령縣令을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3

장단현에 합쳐진 임진현의 병부를 장단이란 칭호로 바꾸다 1459년(세조 5) 4월 21일

병조兵曹에서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임진현臨津縣은 일찍이 장단현長湍縣에 합하였으니, 그 병부兵符를 발發할 적에는, 청컨대 장단長湍이란 칭호로 개조改造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4

장단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1459년(세조 5) 8월 18일

이조吏曹에서 장단長湍 인민人民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주·부·군·현州府郡縣은 민호民戶의 많고 적은 것으로서 차등 있게 칭호稱號하게 되는데, 지금 장단현長湍縣은 임진현臨津縣과 임강현臨江縣의 두 현縣을 합쳐서 민호民戶가 많아 1천 22호戶에 이르게 되었으니, 현縣이라고 칭호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승격시켜 군郡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5

장단군의 치소를 도원역으로 옮기고 그 역을 온신리로 옮기다 1460년(세조 6) 2월 20일

병조兵曹에서 황해 평안도 도체찰사黃海平安道都體察使 한명회韓明滄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장단군長湍郡의 치소治所를 도원역桃源驛으로 옮기고, 그 역驛을 군郡의 남쪽 5리쯤에 있는 온신리溫申里에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6

호조에서 장단 등지의 구휼을 청하다 1460년(세조 6) 3월 14일

호조戶曹에서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년의 구황救荒이 가장 어려운 데, 일찍이 군자창軍資倉의 미곡米穀을 주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이미 다하였으니, 청컨대 전라도에서 쌀 4천 석石과 황두黃豆 1천 5백 석石을 황주黃州에, 쌀 3천 석石과 황두黃豆 1천 5백 석石을 옛 장단長湍에, 쌀 3천 석石과 황두黃豆 2천 석石을 양천陽川에 조운漕運하여 나누어주어서 구휼救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7

사복시 제조가 경기도 장단의 목장에 대해 아뢰다 1461년(세조 7) 11월 18일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경기京畿 장단長湍 호곶이[壺串] 목장牧場에는 본래 목마군牧馬軍이 없어서 본시本寺의 양마養馬 6명으로 서 자주 바꾸어 가면서 살펴보고 길렀기 때문에 둔명屯名과 자호字號 및 털빛과 나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청컨대, 다른 목장의 예례에 의하여 목마군牧馬軍을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8

장단의 얼음 갈무리 상태를 검찰하게 하다 1461년(세조 7) 12월 26일

선전관宣傳官 김효조金孝祖에게 명하여 장단長湍에 가서 얼음이 두터운지 얇은지를 살피게 하고, 사복판관司僕判官 유권柳眷이 광주廣州에 가서 얼음을 갈무리하는 일과 군인軍人의 많고 적음을 검찰檢察하게 하였다.

29

호조에서 장단현 백성의 사역에 대해 아뢰다 1464년(세조 10) 8월 1일

“... 장단현長湍縣·개성부開城府에 거주하는 백성 가운데 서적전西籍田에 구실(役)이 있는 자들은 다른 일에 사역使役시키지 말라” 하였다.

30

명나라의 군사 징발요청에 대비하여 장단 사람 등으로 무사를 징발하다 1469년(예종 1) 1월 6일

장단長湍 사람 어득회魚得淮 등 한산閑散한 무사武士를 징발하여 군장軍裝을 갖추고 말을 타고 오게 하였으니, 명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때문이었다.

31

개성부에 소속하였던 강화·풍덕 등을 장단에 이속하여 승격시키다 1469년(예종 1) 7월 1일

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지금 개성부開城府를 경관京官으로 하였으니, 그전에 소속하였던 강화江華·풍덕豐德·삭녕朔寧·마전麻田·연천漣川·교동喬桐을 장단長湍에 이속移屬하여 승격시켜서 도호부都護府로 삼아 거진巨鎭을 만들고,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는 구례에 의하여 절도사節度使를 겸하게 하여 부내府內의 병마兵馬만 관리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32

사복시 제조가 장단 등지에서 기르는 마소의 원래 숫자와 현재 잃어버린 숫자를 아뢰다 1470년(성종 1) 1월 4일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지금 여러 도道の 점마 별감點馬別監의 우마적牛馬籍을 상고해 보니, 경기京畿 양성陽城의 괴태길곳이[槐台吉串]에는 본래 방목放牧한 소가 1백 1두頭였는데 고실故失이 23두이고, 장단長湍의 호곳이[壺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40두였는데 고실故失이 30두, 유실遺失이 8두이며, … 대체로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인데도 겸감목관兼監牧官이 점검點檢하는 일에 태만하여 많은 망실亡失을 초래하였으니, 위임委任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담당 관서로 하여금 이를 추국推鞠하게 하여 그 망실이 많은 사람은 파출罷黜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3

김보의 장단 본가를 복호하다 1470년(성종 1) 4월 1일

호조戶曹에 전지하여 태감太監 김흥金興의 조카 김담金淡·김효문金孝文·김징金澄 등에게 쌀·콩 아울러 10석碩을 주고, 강옥姜玉의 질자姪子 강계숙姜繼叔에게 경기京畿 근처의 전지1결結을 주고, 또 강계숙의 공주公州 농장農庄과 김보金輔의 장단長湍 본가本家を 복호復戶하였다.

34

개성부 유수에게 장단에 출몰하는 도적을 잡도록 명하다 1470년(성종 1) 4월 16일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김종순金從舜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관찰사觀察使의 아뢰는 것을 보니, 4월 초5일에 도둑 30여 명이 풍덕豐德 지방의 진사進士 박송조朴崇祖의 집에 이르러 불을 지르고 박송조의 여종[婢] 1명을 쓰아 맞힌 뒤에 개성으로 향하였고, 또 3월 15일에 도적 15여 명이 장단長湍 지방의 사노私奴 자고者古·김복중金卜中의 집에 이르러 불을 지르고 도둑질을 한 뒤에 개성으로 향하였고, 본월 25일에 도둑 30여 명이 사노私奴 김질동金叱洞 등의 집에 이르러 불을 지르고 잡다한 물건을 검탈한 뒤에 개성으로 향하였

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도적들이 개성부 지경에 모여들어 종횡縱橫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 잡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심히 불가하다. 속히 군사를 발하여 쫓아 잡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35

장단의 죄수 김금이동, 내은동, 복간을 참하다 1473년(성종 4) 4월 7일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장단長湍의 죄수 양인良人 김금이동金伊同이 동금同金을 때려 죽인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하고, 장례원掌隸院의 종[奴] 내은동內隱同의 살인 강도죄殺人強盜罪와 전옥典獄의 죄수 사노私奴 복간北間이 사람을 죽이고 의복을 빼앗은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36

장단의 죄수 송금동을 참하다 1473년(성종 4) 9월 16일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계달하기를, “장단長湍의 죄수 양인良人 송금동宋金同·종[奴] 백동삼白同삼이 도망중에 있는 이석李石·어리동於里同과 더불어 박이성林移成의 집을 협박해 강도질한 죄와 예천禮泉의 죄수 백정 이금李金이 도망중인 어리금於里金·이문계伊文季와 더불어 지자수池自守 등의 집을 협박하여 강도질한 죄는, 모두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이석·어리동과 어리금·이문계는 찾아 잡아서 참斬하고, 수교受教에 의하여 그 처자妻子는 사는 고을의 노비로 영속永屬시키소서. 또 경원慶源의 죄수 엄후룡嚴厚龍·강몽고지姜蒙古가 저쪽 땅에 넘어 들어가서 말을 도둑질한 죄는, 율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37

경창에서 빌려간 곡식을 해당 고을의 창고에 바치게 하다 1475년(성종 6) 2월 18일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 김영견金永堅이 아뢰기를, “신이 근일에 장단長湍에 가서 보니, 민간에서 지난 해에 풍년이 들어 곡식을 빌려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봄에 경기의 백성이 경창京倉의 곡식을 많이 빌려 먹고 이제 농삿달을 당하여 경창까지 운반하여 바치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하니, 청컨대 그 고을의 창고에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에 의논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38

장단과 개성부의 백성들이 서적전을 경작할 수 있게 하다 1477년(성종 8) 7월 15일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대전大典』에, ‘적전籓田은 부근의 거민

居民으로 경작 수확한다' 하였는데, 이제 서적전西籍田만 홀로 풍덕豐德의 거민으로 다스리게 하여,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개성부開城府·장단長湍은 모두 가까운 지방이니,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한가지로 다스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입법立法한 본의本意를 상고하고서 처리하라" 하였다.

39

장단부의 읍거를 옮기지 않도록 하다 1481년(성종 12) 3월 4일

순찰사巡察使 서거정徐居正이 아뢰기를, "신臣이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와 함께 장단부長湍府를 살피건대, 그 읍거邑居는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인리人吏·노비奴婢는 잔폐殘弊가 막심하니, 부성卓盛하게 할 조건條件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의商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0

장단과 개성과 풍덕의 백성들이 적전을 돌아가며 경작하게 하다 1482년(성종 13) 1월 14일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 헌납獻納 김대金臺가 아뢰기를, "신臣이 일찍이 서적전西籍田의 관원官員으로 있었습니다. 적전籍田은 장단長湍의 서쪽인 개성開城과 풍덕豐德의 중간에 있는데, 풍덕의 백성만 농군農軍을 담당했습니다. 농군은 1결結11886 마다 농부 한 사람을 차출시키는데, 만약 10결을 농사지으려면 농군 10명을 차출해야 하니, 그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때에 그 집을 비워 놓고 역사役事に 나아가야 하며, 심한 경우는 사람을 고용하여 충당합니다. 그 부근에 사는 백성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 곳에 사는 자는 식량을 싸가지고 와서 여러 날을 자야 하니, 그 괴로움이 만 배나 되므로 풍덕의 백성들은 말하기를, '저 장단과 개성 사람은 그 역사를 면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만 그 폐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조석문曹錫文이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을 때 장단長湍에다 자기의 농사農畝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고 합니다. 『대전大典』에 이르기를, '부근에 사는 백성으로서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 곳에 역사시키면, 백성에게는 폐단이 있고 법에는 어긋남이 있다' 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금년에는 장단의 백성을 역사시키고 명년에는 개성의 백성을 역사시키고 또 명년에는 풍덕의 백성을 역사시켜 돌려가며 하게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할 경우 그 부근에 사는 장단의 서쪽과 개성의 동쪽, 그리고 풍덕의 동북쪽의 백성을 차출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폐단을 말하는 자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거행하지 못함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 동부승지同副承旨 오순吳純에게 이르기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41

장단 백성이 사초 사건의 연루자 한훈을 잡다 1498년(연산 4) 8월 7일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김응기金應箕가 치계馳啓하기를, “장단長湍 백성이 한훈韓訓을 잡았기로 고하옵니 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잡아오게 하였다.

42

나뭇갓을 사유하는 장단의 한계미를 견책하다 1501년(연산 7) 12월 21일

한치형·성준·이극균이 아뢰기를, “세조世祖 때에 한계미韓繼美가 장단長湍에서 나뭇갓柴場을 점유占有하니, 세조께서 크게 견책譴責을 가하고 이내 나뭇갓을 사사로 점유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양근군陽根郡·용진龍津 등지에 왕자군王子君들이 각각 나뭇갓을 차지하여, 백성들이 땀나뭇하고 풀을 베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 폐단이 매우 큼니다. 성종成宗께서 비록 왕자군들에게 나뭇갓을 내려주었지만 어찌 그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될 줄을 짐작했겠습니까? 금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43

금표의 서편을 장단까지 물리게 하다 1505년(연산 11) 5월 9일

전교하기를, “동·서·북의 금표禁標는 대개 다 경성京城에서 1백 리를 한하여 그 표를 물려 내되, 서편은 장단長湍까지 물리라. 한강漢江·마포麻浦·광진廣津·두모포豆毛浦 등의 수로水路는 이미 통행하게 하였지만, 위의 강들 건너편도 백 리를 한하여 물리라” 하였다.

44

전동이 장단에 가서 부모 제사를 참배할 수 있도록 하다 1506년(연산 12) 6월 1일

경기감사京畿監司에게 유諭하기를, “전동田同이 지금 장단長湍에 가서 그 아버지 묘를 참배하게 되었으니, 차려놓을 것을 갖추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전동은 곧 전비田非의 모제母弟로 중외中外에 교횡驕橫하며, 위세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겁략劫掠하고 심지어 사대부 집의 전답과 노비를 빼앗되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장단에 갔을 때는 수령들이 오직 견책 받을까 두려워하여, 다투어 맞아 위로하고 자기 집에 머무르며 마시게 하였다. 강음현감江陰縣監 이의영李宜榮은 전동에게 잘 보이고자 하여 노래하며 춤추는 등 추태를 다하였는데, 전동이 크게 기뻐하여 따라서 춤추며 손을 잡고 즐겼다.

45

장단과 수원에 시관 파방을 간하다 1512년(중종 7) 10월 14일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장단長湍·수원水原의 시관試官은, 이미 추고推考하여 사실이 적실하니, 속히 파방罷榜해야 합니다. 외방外方의 과거科擧 보이는 법이 엄격하지 못하여 자주 이런 폐단을 내니, 어사御使를 보내어 시취試取하면 반드시 공정할 것입니다. 또 무과武科를 획수畫數로 뽑음은 불가하니, 바라건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액수額數대로 뽑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파방罷榜하는 일은 마땅히 상량商量하여 다시 말하겠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46

장단 시관의 일로 금부 당상을 추고하게 하다 1512년(중종 7) 10월 16일

전교하였다. “장단長湍 시관試官의 일은, 당초에 의금부義禁府가 형추刑推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버려두고 싶었는데, 다른 도道의 시관들도 추고를 받게 되니, 반드시 추고하여 사실을 안 뒤에야 파방罷榜을 의논할 수 있겠으므로 윤허했던 것이다. 오늘 의금부 당상이 경연經筵에서 그 애매함을 말했는데, 형관刑官이 만일 애매함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취품取稟하지 않고서, 위로 하여금 형벌을 실수하게 하는가? 금부 당상을 추고하라.”

47

피해가 큰 장단 등 네 고을의 구휼미 지급을 논하다 1521년(중종 16) 2월 18일

경기관찰사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경기의 각 고을이 대개는 모두 폐농廢農되었으므로 모든 공물貢物을 이미 견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천陽川·광주廣州·장단長湍·고양高陽은 다른 고을에 비해 그 피해가 배나 됩니다. 네 고을은 모두 수로水路가 닿는 곳입니다.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경창京倉에 와서 곡식을 받아다가 배로 운반하여 나누어주게 하고, 추수秋收한 뒤에 환납還納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문제를 삼공과 호조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48

헌부에서 장단 등지의 목장 쌓는 일을 아뢰다 1524년(중종 19) 2월 20일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가 장단長湍·호관壺串의 말을 많이 잃었으므로 이미 관원을 따로 정해 목장牧場을 고쳐 쌓았는데, 근년 이래로 해마다 흉년이 들고 경기가 더욱 심하므로 장단의 민물民物이 더욱 조잔凋殘해져서, 50여 인이 헌부에 와서 호소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였으므로 부역하는 것이 매우 괴롭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지는 하나 사세가 이리하

니, 풍년이 되거든 고쳐 쌓고 우선 올해에는 무너진 것만을 보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용검柳用儉이 전에 잘못된 것은 과연 크나, 한번 죄받은 사람이라 해서 아주 버릴 수 없다. 목장을 쌓는 일은 다시 해사該司에 맡겼다. 나머지는 운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49

장단에 우박이 내리다 1524년(중종 19) 4월 4일

경기 장단長湍 땅에 새알만한 우박이 내렸다.

50

장단에 곡식을 먹는 벌레가 있다 1524년(중종 19) 5월 22일

경기 수원水原에 화곡禾穀을 해치는 벌레가 있고, 장단長湍에 봄보리와 화곡을 해치는 작은 벌레가 있고, 강화江華에 검은 바탕에 붉은 주둥이를 한 삼잎과 밀보리를 먹는 벌레가 있는데 비가 내리면 없어지고, 부평富平에도 조잎을 먹는 벌레가 있었다.

51

장단에 곡식 종자가 없음을 아리다 1526년(중종 21) 2월 22일

조강에 나아갔다. 지사 허평許平이 아뢰기를, “신이 장단長湍에 갔다오는 길에서 들건대, 지난해의 흉년으로 민간에 곡식 종자가 없는데 관이 저장한 것도 모두 부실하여 비록 종사를 심어도 싹이 났다 즉시 말라버리니 지극히 염려스럽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곡식 종자가 없다면 비록 상농上農이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 있겠는가? 호조가 갖가지로 조치해야 한다” 하였다.

52

장단에 우박이 내리다 1528년(중종 23) 3월 19일

황해도 신천信川·안악安岳·장단長湍에 우박이 내렸고, 송화松花·문화文化·수안逢安에도 우박이 내렸다. 충청도 직산稷山·평택平澤·예산禮山·보령保寧에도 우박이 내렸다.

53

장단 오관산 등지의 영검이 있던 곳을 골라 기우제를 지내다 1531년(중종 26) 5월 22일

전교하기를, “근래의 날씨가 구름이 짙 끼기도 하고 비가 뿌리기도 하더니 지금은 도로 맑게 갰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곳에는 모두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비를 빌게 하고 싶다. 그러나 번거로울 것 같아 전국 각지에 모두 빌게 할 수는 없으니, 경기 근처에서 가장 드러나게 영검靈驗한 곳에

예조로 하여금 서계書啓하게 하라. 금중禁中에서 비를 비는 것은 고사古史에도 실려 있으므로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예조에 이르라” 하니, 예조가 경기 근방에서 비를 빌어 가장 영감이 있었던 곳【개성부開城府의 송악산松岳山, 장단長湍의 오관산五冠山과 덕진德津, 양주楊州의 양진楊津, 적성積城의 감악산紺岳山.】을 서계하였다. 상이 직접 헌관獻官의 이름을 써서 내리고 일렀다. “재변이 이미 급박하여 날을 가릴 겨를이 없으니 내일 모두 보내도록 하라. 즉시 패초牌招하여 내가 안타까와하는 뜻을 말해주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서 기어코 비를 내리게 하라.”

54

제릉에 제사지낸 뒤 장단 등지에서 양로연을 베풀게 하다 1535년(중종 30) 8월 7일

전교하였다. “제릉齊陵에 제사를 지낸 뒤에 경덕궁에서 양로연養老宴을 열어야 한다. 전에 영릉英陵에 행행하였을 적에는 과천果川과 용인龍仁 지방에 모두 양로연을 베풀었다. 이번에는 개성부와 풍덕豐德 지방의 노인은 경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장단長湍·파주坡州·고양高陽 지방의 노인은 통제원通濟院에서 잔치를 베풀라는 것을 예조에 이르라.”

55

변괴가 있는 장단에 내관과 사관을 보내다 1536년(중종 31) 9월 17일

전교하였다. “지금 경기감사의 계본을 보니, 장단長湍에 어떤 백성의 말이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변괴이다. 성종조 때 지화地火가 있자 승지와 사관을 시켜 가서 보게 하였다. 지금은 승지는 보내지 못하더라도 내관과 사관을 보내 살펴보고 오게 하라.”

56

구황을 잘 하지 못한 장단의 수령을 추고하게 하다 1541년(중종 36) 11월 22일

어사御史 이세장李世璋의 구황 적간 단자救荒摘奸單子를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두 읍邑【장단長湍·이천利川】의 수령은 구황을 잘하지 못했으니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57

장단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다 1543년(중종 38) 1월 26일

햇무리가 졌다. 양이兩珥·관冠·이履가 있었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다. 지진이 발생했다. 황해도 해주海州·연안延安·백천白川 등지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고 또 동남쪽에 흰 운기가 서로 연하여 해를 꿰었는데 모양은 둥근 무지개와 같았다. 양 곁에 둥근 고리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태양만 했으며 홍자색紅紫色 빛깔이었다.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 또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흔들렸고 창문이 모두 울렸다. 충청도

평택현平澤縣 및 경기 양주楊州·양천陽川·부평富平·남양南陽·진위振威·장단長湍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했다.

58

장단부 이의남의 아들이 계모와 간통하다 1543년(중종 38) 6월 7일

경기관찰사 이청李清의 서장에, “장단부長湍府에 사는 응사應師 이의남李義南의 아들 인형仁亨이 그 계모 막비莫非와 간통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강상綱常의 큰 변고입니다.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속히 경관을 차출하여 1~2일 내에 파견하라.”

59

장단의 도둑을 잡은 군인들을 구타한 성군관 유생들을 처벌하게 하다 1546년(명종 1) 6월 20일

포도대장捕盜大將 지세방池世芳이 아뢰기를, “요즈음 들으니 장단長湍의 도적 잔당殘黨이 성중城中으로 들어왔다가에 특별히 군인을 잠복시켰습니다. 지난밤 성군관 뒤편에 잠복했던 군사가 쇠가죽을 가져가는 자를 생포하였는데 관인館人이 떴지어 겁을 주고 구타하면서 쇠가죽을 빼앗고 군인을 결박하여 관하管下에 잡아두었으니 몹시 놀랍고 괴이한 일이라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법國法이 해이解弛한 것이 오늘날의 폐단이다. 도적 잡는 군인을 구타하고 결박하기까지 하였으니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하옥하고 추문推問하여 처벌治罪하라” 하였다.

60

수해로 장단부의 가옥이 유실되고 사람들이 다치다 1550년(명종 5) 윤6월 20일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경기京畿·청홍도淸洪道·황해도黃海道 감사의 장계狀啓를 보니, 각도에 수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각도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물길이 바뀌거나 농토가 유실되거나 모래가 뒤덮인 곳 및 사람이 표류漂流했거나 산사태로 죽거나 다친 일 등을 도시都事로 하여금 다시 직접 살피고 조사하여 치계馳啓하고 각각 진흥賑恤, 구호하게 하라.” 【경기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 “이번 윤6월 초이렛날 큰비로 물이 넘쳐 … 장단부長湍府의 산 밑에 사는 인가9호戶는 주산主山이 무너지면서 모든 가옥이 모래에 덮여 남녀 9명, 우마 6필이 실종되고, 남녀 3명이 깔려 다쳤습니다.”】

61

포도청의 군관을 보내 장단의 도둑을 잡게 하다 1551년(명종 6) 2월 8일

포도대장捕盜大將이 아뢰기를, “장단長湍 경내境內에 도둑이 무리를 지어 횡행하면서 백성을 많이 해치

고 있는데, 심지어는 심복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탄없이 날뛰고 있어 마을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포도청捕盜廳의 좌우 군관左右軍官을 보내어 본 고을의 수령과 힘을 합해 잡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62

장단에 흠비가 내리다 1553년(명종 8) 4월 6일

경기 지평砥平에 우박이 내리고 장단長湍에 흠비가 내렸다.

63

장단에 우박과 서리가 내리다 1555년(명종 10) 3월 24일

개성부開城府에 크게 우뢰가 치면서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큰 것은 밤알만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했다. 한참만에야 그쳤는데 땅 위에 쌓이어 시간이 가도 녹지 않으므로 모맥牟麥이 더러 손상되었다. 경기 장단長湍·영평永平에도 우뢰가 쳤으며 우박이 내렸고 서리도 내렸다.

64

장단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다 1555년(명종 10) 5월 25일

밤에 곤방坤方·손방巽方·동방東方이 화기火氣 같았다. 경기京畿 양천陽川에서는 한 남자가 벽락 맞아 죽었고, 장단長湍에서는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가 콩만 했다. 강원도 인제麟蹄에는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만하고 작은 것은 개암만 했고 하루가 지나도 녹지 않았다.

65

장단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다 1555년(명종 10) 11월 11일

경기의 장단長湍 등 네 고을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다.

66

장단에 새알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리다 1556년(명종 11) 4월 5일

경기 장단長湍과 황해도 신계新溪·재령載寧·신천信川에 우박이 내렸는데 새알만한 것도 있고 개암만 한 것도 있었다.

67

장단에 지진이 일어나다 1559년(명종 14) 1월 29일

경기 장단長湍에 지진이 일어났다.

장단의 한 소민이 변장하고 칼을 차고 대궐에서 격쟁하다 1560년(명종 15) 5월 2일

양사가 아뢰기를, “요즈음 격쟁하는 사람들은 절박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함부로 궁중에 뛰어들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습니다. 인심이 사납고 거짓되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오늘은 대례가 끝나지 않아 소여小婁가 아직도 뜰에 머물러 있고 백관이 엄숙하게 국궁하고 있는 때에 장단長端의 한 소민이 군복으로 변장하고 몰래 임금이 계신 지척까지 뛰어 들어와 오랫동안 격쟁하여 천청天聽을 놀라게 하였으니, 듣는 자가 모두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본래 정하여진 율이 있을 것입니다. 병조와 도총부都總府는 오로지 꺾내를 숙청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니 비록 평상시라도 단연히 엄격하고 명백하게 금지시키고 살펴야 하는데 더구나 대례를 당하여 이런 변괴가 있게 하였고, 격쟁할 때에도 놀라고 당황하여 허겁지겁 붙잡아 내쫓았어야 할 터인데 태연히 움직이지 않고 서로 돌아보며 물러서 있었으니, 시위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입시켰던 병조·도총부의 당상과 낭청들을 모두 금부에 하옥하고 추문하여 치죄하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갑작스런 사이에 일어나면 모든 시위하는 장사將士는 마땅히 달려가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태연히 둘러서서 보고만 있었으니 죄가 없지 않습니다. 시위했던 계장諸將과 선전관宣傳官·사금司禁을 모두 추문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오늘 있었던 일은 과연 몹시 놀랍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니 병조와 도총부가 어떻게 살필 수 있었겠는가. 이미 추고하라고 하였으니 어찌 금부에 내리기까지 하겠는가. 윤택하지 않는다. 시위했던 선전관·사금 등을 추문 치죄하는 것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장단부사 이즙에게 상가를 내리는 것을 반대하다 1560년(명종 15) 5월 16일

간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재령載寧 사람이, 군수 이즙李楫이 정치를 잘 한다고 꺾정에서 격쟁하였는데 단지 한 사람이 호소할 말만을 의거하여 성급히 상가賞加를 내리라 명하셨으니, 물정物情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장단長端의 완악한 백성이 그것을 본받아 어가를 놀라게까지 하였으니 몹시 놀랍습니다. 바라건대 이즙에게 상가를 내리시는 것을 개정하소서.” 【이즙은 왕비의 외삼촌이다. 그는 변변치 않은 품관 출신이니 비록 백성에게 난폭하게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어찌 기록할 만한 어진 정치가 있었겠는가. 군민이 격쟁하여 유임을 청하기까지 한 것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당상관堂上官에 승품陞品하도록 명하였으니 물론物論은 모두 괴이하게 여기고 비웃었다. 당시에 상은 왕비의 친가에 특별히 후히 하였다. 그리고 항상 이즙의 아우 이양李樛을 돌봐주고 의지하여 그가 친히 하고 후히 하는 사람

은 항상 특별한 제수를 입었으니 서로 내통하여 오로지 제 마음대로 한 행적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원형이 화근禍根을 만들어 참혹하게 된 것을 보고 대간과 시종이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지가 오래였다. 그후 장단부사長湍府使 박계현朴啓賢이 만포 침사로 체임되자 배표拜表하는 날 장단의 백성이 시위하는 군사처럼 복색을 갈아입고 갈까지 차고서 격쟁하여 유임을 청한 것이 어전 가까이에서 있었으므로 상이 놀랐다. 이는 특히 우매한 백성으로 지난날 재령 백성이 한 것을 본받아 무심코 한 것인데 사체事體가 중대하다 하여 병조와 도총부 당상관을 체직시키고 장단 백성에게 큰 죄를 더하려 하였다. 12일에 좌의정 이준경과 홍섬 등이 나란히 아뢰기를 '재령의 백성이 죄를 받지 않고 소원을 이루었으므로 장단 백성이 이것을 본받아서 한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요즈음은 직언하는 풍토가 없다' 하고, 옛날의 치란과 선유의 의논을 논함으로 인하여 '직언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임금의 위에서 고립되어 위망의 화가 생길지라도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이즘의 외람된 승품을 지적한 것이나 대간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은 폐단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대략을 개괄적으로 논한 것이다. 그런데 상이 자책한다고 말은 하였으나 기뻐하지 않는 뜻이 얼굴빛에 역력히 나타났고 간원이 사피한 데 대하여 답할 말도 역시 그러했다. 다음날 이준경이 입궐하여 엎드려 대죄하니, 답하기를, '내가 겸손함을 보인 것은 퇴미한 풍습을 진작시키고자 하여서일 뿐이다. 조정에는 마땅히 직언이 있어야 하나 순후한 기상도 있어야 한다. 홍찬성洪贊成의 말은 과연 충직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순후한 점이 부족하다' 하였다. 그러나 어제 말을 꺼낸 것은 홍섬인데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고, 이준경의 말은 도리어 홍섬보다 더 어물어물했는데도 진작하라고 질책하였으니 이는 곧 이준경을 책망한 것이다. 더구나 조정이 순후하기를 바란 것이 과연 퇴미한 풍속을 진작시키고자 한 것인가. 이것은 곧 나라를 망하게 할 말이다. 이준경은 대신이 되어 임금의 허물을 보았고 이미 꼬투리를 꺼내주었는데도 감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고 이미 좋아하지 않는 기색이 있자 또 엎드려 대죄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대신이 취할 도리인가. 그러나 이준경은 풍채가 준엄하고 단정하며 일찍이 당시의 명망을 짊어졌으나 성품은 실상 겁이 많았으며 편견을 고집하여 자기 주장대로 하고 남의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니 무엇을 책망하겠는가.】 하니, 답하기를, "이즘이 백성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푸는 것은 명실상부하다. 어찌 격쟁한 일만 가지고 상을 주었겠는가. 참으로 개정할 수 없으니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후에 양사가 오랫동안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70

장단에 천둥과 지진이 일어난다 1565년(명종 20) 11월 23일

미시에 태백이 사지에 나타났다. 경기 장단長湍·풍덕豐德과 평안도 순안順安·함중咸從에 천둥이 쳤고,

평양平壤·강서江西에 지진이 일어났다. 상원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

71

장단의 의병이 장수의 절제를 받도록 하다 1592년(선조 25) 9월 21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제 심대沈岱의 장계를 보건대, 장단長湍과 삭령朔寧의 의병은 이정암李廷龜의 절제節制를 받게 하고, 이천利川·여주驪州·음죽陰竹·죽산竹山의 의병은 성영成泳의 절제를 받게 하고, 통진通津·양천陽川의 의병은 김천일金千鎰의 절제를 받게 하고, 파주坡州·양주楊州·광주廣州의 의병은 심대의 절제를 받게 하여 동서東西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계획이 온편하고 유익하며 일의 계획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내용으로 제장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72

왜군을 토벌하는 데 공이 있는 장단의 백성을 시상하다 1593년(선조 26) 12월 1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경기감사 이정형李廷馨의 장계를 보건대 ‘안성군安城郡의 사민士民이 제일 먼저 창의倡義하여 향병鄉兵을 결집, 강한 적병을 막았는데 그들의 흉봉凶鋒을 크게 좌절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끝내 이사里社를 보전하였으며, 장단長湍·양주楊州·과천果川·금천衿川·광주廣州 등 고을의 인민들도 모두 대적大賊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병을 규합하기도 하고 읍재邑宰들을 따라 북병술伏兵術로 공격하기도 하여 참획한 수급이 또한 많았으니’ 매우 가상스러웠으나, … 적을 토벌함으로써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은 수급을 참획한 공이 없더라도 감사로 하여금 사실대로 조사하게 하고 그 사실이 현저하여 의심이 없는 사람은 계문하여 포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73

전제안과 윤지상에게 관직을 주어 장단에서 둔전케 하다 1599년(선조 32) 6월 6일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후사後司 전초관前哨官 전제안田齊安과 좌초관左哨官 윤지상尹之商 등이 영솔한 군사는 모두 중국군의 방자幫子로 모집한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봄에 계청하여 뽑아내어 제안 등으로 하여금 장단長湍 땅 호곶壘串으로 인솔해 가 둔전屯田케 하고 나머지 군사는 도감에 머물러 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초관이 모두 해이해지기에 지난번 부득이 그 대임代任을 계청하여 냈습니다. 그러나 제안 등이 이미 초관이라는 명호名號에서 벗어났으므로 아랫사람들을 검속할 방법이 없으니, 원방遠方의 오합지졸들이 흩어져버릴 염려가 있을 뿐더러 농사일마저 허술해질까 매우 걱정됩니다. 전제안과 윤지상 등에게 좌·우별초관左右別哨官이라는 칭호를 주어 그대로 거느린 군사를 영솔하여 농사일을 잘 마무리 짓도록 책임지우는 것이 온당할 듯하기에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74

최원 · 김천일 등이 장단의 적을 공격했으나 패배하다 1592년(선조 25) 8월 1일

최원崔遠 · 김천일金千鎰이 군사를 내어 장단長湍의 적을 공격하였는데, 주둔하고 있던 적이 물으로 오르도록 유인하고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습격하였으므로 관군이 크게 패하였다. 김천일 등이 겨우 몸만 빠져나와 단가軍衙로 돌아온 뒤 몰래 전소戰所로 사람을 보내 도망한 군사 1천여 명을 불러 모았는데, 이로부터 감히 물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75

친제를 지내는 날 한밤중에 장단에 큰 비가 오고 벼락이 치다 1615년(광해 7) 8월 27일

자시에 【공성왕후恭聖王后의】 신주神主를 고쳐 썼다. 축시에 친제를 행한 후 환궁하였다. 이날 한밤중에 장단長湍에 큰 비가 오고 벼락이 쳤다. 하서면下西面에 사는 충의위 유광정柳光庭의 집에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마굿간을 불태웠는데 말 1마리와 소 2마리, 닭 10여 마리가 모두 불타 죽었다. 【이때에 재변이 이루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것은 이번 가운데 큰 것이다. 마침 친제를 지내는 날 일어났으니 하늘이 아무 뜻도 없이 한 것이겠는가.】

76

장단의 천재와 민원을 돌아보다 1624년(인조 2) 9월 13일

상이 능성군綾城君 구굉具宏과 낙흥군洛興君 김자점金自點을 흥정당興政堂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뇌성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린 변이 지극히 참혹하였는데, 장단長湍에 내린 우박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요즘 서울에서 민정民情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니, 구굉이 아뢰기를, “현재 대단한 민원民怨은 없습니다만, 낙후落後된 군사 9백여 명에게 솥을 징수하는 일 때문에 매우 원망하며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 군사들에게 별로 방수防戍하게 하는 것은 옳지만 솥을 굽게 하는 것은 자못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일처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구차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 하였다.

77

총용사 이서가 장단 등지의 군사를 점열한 뒤에 복명하다 1624년(인조 2) 11월 9일

총용사摠戎使 이서李曙가 경기 군사를 점열點閱한 뒤에 복명하였다. “장단長湍에 소속된 6개 고을은 정군正軍이 5백 65명, 속오束伍가 1천 5백 41명, 별대 마군別隊馬軍이 3백 15명이고, 양주楊州에 소속된 7개 고을은 정군이 3백 8명, 속오가 1천 2백 92명, 별대 마군이 1백 84명인데, 나누어 4부部로 만든 뒤 각부

의 천총千摠·파총把摠 이하에게 대기수大旗手와 취고수吹鼓手를 일일이 차출하여 보충시켰습니다. 수원水原에 소속된 각 고을은 아직 점열하지 못했는데 상변上變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종사관 이경용李景容으로 하여금 점열하게 하고 감히 이렇게 복명합니다. 가까운 날에 다시 내려가 온 도도를 대오隊伍로 나눠 편성한 뒤 그림으로 그려 아뢰겠습니다.”

78

거의에 동참한 장단 군인들이 10년 동안 복호하는 은전을 받다 1625년(인조 3) 2월 27일

거의擧義한 무사武士와 홍제원弘濟院에 와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연한을 정해 급복給復하도록 명하였다. 당초 반정反正 때 거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공로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해 상당히 원망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녹훈도감錄勳都監이 아뢰기를, “거의에 동참한 사람들이 멸족당할 화를 돌아보지 않고 난을 평정한 공훈을 세웠는데 끝내 일명一命의 벼슬도 얻지 못했습니다. 녹용錄用하는 한 가지 일로 전후에 전교하신 것이 정령하셨을 뿐만이 아닌데도, 도무지 수용收用할 기약이 없는 형편입니다. 당초 장단長湍 군인들은 모두 10년 동안 복호復戶하는 은전을 입었으니, 거의한 무사 박응옥朴應昱 등과 홍제원에 나와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두 연한을 정하여 급복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자, 상이 따른 것이다.

79

장단과 개성부의 군병으로 파주산성을 수비하다 1627년(인조 5) 1월 17일

장만이 아뢰기를, “적이 만일 대로大路를 따라 곧장 나온다면 형세 상 반드시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될 터인데 단지 군관만을 대동하고 간다면 형세가 매우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어영군御營軍 가운데서 정포精砲 1백 명을 선발하고 개성부開城府와 장단長湍의 군병을 모조리 조발하여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주산성坡州山城이 비록 보수가 완전하지는 못하나 그런대로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 수비할 수는 있습니다. 장단·교하交河·적성積城 등 관청의 올 봄 작미作米를 조속히 수봉하도록 하고 별장 한 사람을 정하여 파주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들어가 수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뢰 대로 하라. 어영군은 아직 데리고 가지 말라” 하였다.

80

장만·조기 등으로 하여금 임진강을 지키게 하다 1627년(인조 5) 2월 7일

합계하기를, “삼가 장만張晩의 장계를 보건대 ‘적이 이미 검수劍水에 도달하였으니, 신은 장차 옛 장단長湍으로 향하여 연천漣川·삭녕朔寧으로 옮겨 들어가겠다’ 고 하였습니다. 조기趙琦의 3천 군사를 또 장만

으로 하여금 영술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임진강으로 급히 가 강여울을 파수하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눈이 녹은 물이 바야흐로 창일하여 얇은 여울도 모두 깊어졌으니, 오랑개의 기병이 아무리 빠른들 어찌 날아서 건널 수야 있겠습니까. 13성聖의 능침과 2백 년 기업이 모두 임진강 이남에 있으니, 보호되느냐 침몰되느냐가 오로지 이 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도모하십니까. 이 뜻으로 급속히 장만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81

군량을 희사한 장단 백성을 포상하다 1627년(인조 5) 9월 4일

이에 앞서 장단長湍 사람 성복흥成復興이 큰 소 2마리, 술 1백동이, 간장 1항아리, 콩 몇 섬을 군영에 바쳤으며, 장단과 적성積城 등에 사는 사대부 10여 명이 곡식과 소 등으로 군졸들을 먹였다. 이때에 이르러 승지 윤지경尹知敬이 포상의 명이 너무 지연되었다고 아뢰자, 병조가 복계覆啓하기를, “가설직加設職에 대한 하비下批는 벌써 진중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성복흥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속당상納粟堂上의 체문帖文을 받은 적이 있으니 다시 당상관의 실직實職을 주면 과중하게 될 것 같고 당하관의 직을 주면 사체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이 주어야 한다면 갑자년에 호종 공신에게 내렸던 관례에 따라 당상관의 실직을 주도록 하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성복흥은 당상관 실직에 제수하라. 미처 포상하지 못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도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82

장단에 둔전을 시행할 것을 청하다 1627년(인조 5) 11월 17일

김류金瑬가 아뢰기를, “옛날 둔전屯田의 법을 모두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쉬운 것만 시험삼아 해보면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그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백규白圭가 지력地力을 잘 이용하여 마침내 부강富強에 이른 것도 이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양서兩西 지방의 둔전은 이미 감사監司로 하여금 형편을 살피게 하여 현재 요리하고 있습니다. 경기京畿와 양호兩湖 지방도 둔전을 널리 개척하여야 하는데 기름진 원전原田은 모조리 주인主人이 있는 곳이므로 실행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강도江都의 덕물도德物島와 장단長湍의 무지곳無知串 같은 곳은 땅이 비옥肥沃하고 또 강도의 앞뒤를 호위하는 곳으로서 실로 개간하기에 합당합니다 … 만약 이런 지역의 곳곳에 둔전을 두면 그 비용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수확이 많을 것이며, 또 이는 연변沿邊의 섬이므로 운송할 때의 고충을 줄일 수 있으니, 곡식을 얻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둔장屯將을 보내고, 3도의 감사에게 알려져 속히 조치하도록 하

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말은 옳다. 다만 내지內地의 둔전은 전부터 이익됨은 적고 끼친 폐단만 많았으니, 충분히 헤아려서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83

두역을 앓는 장단 사람들을 옮겨주도록 하다 1628년(인조 6) 12월 5일

구관소勾管所가 아뢰기를, “... 용호龍胡가 ‘장단長湍과 개성부開城府에 두역痘疫을 앓는 자가 많기 때문에 멀리 피해서 돌아왔으니, 두역을 앓는 자들을 옮겨주기 바란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84

송경과 장단 사이에 질병이 돌아 여제를 지내다 1653년(효종 4) 2월 12일

간원이【대사간 김익희金益熙, 헌납 조복양趙復陽.】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듣건대 서로西路에 여기瘴氣가 크게 치성하여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며칠이 못 되어 곧 죽는다고 하는데, 기전畿甸의 가까운 곳까지 마치 불꽃처럼 마구 번지고 있어 장차 퍼지지 않는 곳이 없게 될 상황입니다. 송경松京·장단長湍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더욱 많아 서로에서 온 사람은 모두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도 수토신守土臣은 아직껏 계문啓聞도 하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급히 해부該府에 하문하여 과연 지체시키고 즉시 계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모두 추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근시近侍를 파견하여 여제喪祭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85

장단현의 양전을 다시 하다 1668년(현종 9) 12월 13일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삼차 심리를 하였다. 호조판서 민정중이 장단현長湍縣의 양전量田을 다시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86

장단 유생 김광적이 안유·이색·김안국·김정국의 서원에 사액을 청하다 1670년(현종 11) 4월 12일

장단長湍의 유생 김광적金光績 등이 상소하여,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 문경공文敬公 김안국金安國, 고 참판 김정국金正國 등을 함께 향사하는 서원의 액호額號를 청하였는데, 상이 그 일을 해조에 내렸다.

87

장단 관원의 죄를 나문하는 것을 불허하다 1671년(현종 12) 11월 18일

사간 이합李裨이 아뢰기를, “암행어사의 사찰은 사체가 막대하므로, 수령의 범죄가 뚜렷하여 이미 장

계에 실렸으면 추생抽姓된 곳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일체로 엄히 살펴서 징계할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사의 장계를 보면 장단長湍·양천陽川·연서延曙 등의 관원이 혹 불법을 자행하거나 진흙을 게을리하였는데도 추생된 곳이 아니라고 하여 유사有司의 품처稟處를 윤택하지 않고 먼저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공초를 받지 않고 지레 조사한 것은 이미 법례를 어긴 것이고 관차官次에 그대로 있으면서 한편으로 조사하는 것도 반드시 방해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모두 나문하소서” 하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88

지아비를 죽인 명례를 사형에 처하다 1678년(숙종 4) 10월 2일

장단長湍의 지아비를 죽인 명례明禮의 자백을 받아 복주伏誅하였다.

89

장단 읍거에서의 매장을 금하고자 청하는 남구만의 상소 1684년(숙종 10) 8월 12일

우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 장단長湍의 읍거邑居 20여 보步 안에 사람의 매장埋葬을 허락한 것은 또 이전에는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인가人家 백 보의 한도는 비록 하민下民의 소호小戶라 하더라도 그러하며, 관문官門에 있어서는 5리里 안에 비록 세가 호족勢家豪族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산을 점령한 자가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이미 매장을 허락하는 명령이 있었으니, 관문 백 보 밖은 모두 장차 무덤의 땅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금하면 또 고르지 못하다는 분쟁의 사단이 있을 것이고, 만약 모두 허락하고자 하면 반드시 관부官府를 헐어서 옮겨야 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의친懿親에게 진실로 우홀優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 관청이 있는 곳을 침범侵逼하여 사사私事로써 공사公事를 해치는 것이 어찌 크게 지나치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별罰은 반드시 죄에 합당하게 하여 요행으로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금하는 것은 반드시 법이 있으니, 세력으로 점령하지 못하게 하셔서 만백성을 표출表率하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 읍내邑內의 주산主山이 아니고 관거官居와 마주 보이는 거리가 거의 수백 보步에 이르기 때문에, 매장하도록 허락한 것인데, 차사箚辭가 자상하고 극진하니, 매장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90

장단에 우역이 돌다 1684년(숙종 10) 8월 25일

경기京畿 장단長湍 등 일곱 고을에 우역牛疫으로 7백여 마리가 죽었다.

본청에 남은 군사를 수원·장단에 나누어 배치하다 1684년(숙종 10) 12월 3일

총융사提戎使 김석익金錫翼이 장계狀啓하기를, “본청本廳에 소속된 통진通津 등 12고을의 군병軍兵은 이미 강화江華에 갈라준 것 이외에 아직 남은 군사가 2천 4백여 명이 있는데, 만약 그대로 본청에 소속시키면 두 곳을 구관句管하는 데 폐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청컨대 그 남은 군사를 수원水原·장단長湍 두 방영防營에 분속分屬시키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당초 강도江都에 군병軍兵을 갈라 소속시키도록 마련하여 계하啓下할 때에 단지 그 원군元軍의 실수實數만 상고하여 분배해 이속移屬하고, 표하군標下軍·잡색군雜色軍은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은 군사가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고을의 군병을 두 곳에 분속分屬하면 진실로 불편하니, 청컨대 다시 군안軍案을 상고하여 12고을의 원군元軍과 잡색군雜色軍의 총수都數를 참작하여 마련해서 계하啓下하여 반포頒布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무고한 죄인 김영하를 처형하다 1691년(숙종 17) 11월 25일

무고誣告한 죄인 김영하金永河를 처형하였다. 김영하는 장단長湍 사람으로, 스스로 의술醫術을 안다고 일컬어 요망하고 무뢰하였다. 조정朝廷의 의논이 늘 한편 사람을 무함하여 죽이려는 것을 보고, 망령되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는 마음을 품어 무변武弁인 서임徐琳·송덕송宋德崇과 서로 왕래하며 늘, ‘밭바닥에 검은 사마귀가 있으니 귀하가가 1품品에 이를 것이다’ 라고 뽐내어 말하였다. 또 ‘시기를 놓친 재상宰相이 은銀을 모아 장사壯士를 몰래 길러서 불괘不軌를 꾀한다’ 하고, 김수항金壽恒이 죽지 않고 그 아들·조카가 김만중金萬重과 함께 그 모의를 주장하는데, 이입신李立身의 아들 이경선李景先과 박빈朴斌·이광한李光漢 등의 아들이 그 일에 참여하였고, 남구만南九萬·서문중徐文重이 서빙고西氷庫에서 죽산 부사竹山府使 최숙崔楮 및 칠원 부사鐵原府使와 만나 외응外應하기로 약속하였다고까지 하였다. 또 ‘산승山僧 보인寶印에게서 들었다’ 고도 하고, ‘풍덕豐德의 상한常漢인 차가車加·오금五金은 장사이며, 조사석趙師錫·남용익南龍翼도 의심스러운 꼬투리가 있다’ 고도 하였다. 서임·송덕송이 포도 대장捕盜大將 장희재張希載에게 고하였는데, 장희재가 듣고 기뻐서 곧 임금에게 들어가 고하니, 드디어 국청鞠廳을 설치하였다. 김영하의 공초共招는 변환變幻이 많아서 말이 되지 않았으나,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나직羅織하고자 하여 끌어 들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차가·오금·보인·이경선 등을 잡아들이기를 먼저 청하였으나, 그런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런 이름이 아니기도 하므로, 임금이 매우 허망하다고 생각하여 파기하려는 뜻을 여러 번

보였다. 국청에서 마지 못하여 김영하를 신문하여 무고죄誣告罪를 승복시켜 참형斬刑에 처하고, 법대로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였으며, 서임·송덕승은 망언妄言을 경솔히 믿은 죄로 도배徒配하였으나, 장희재에게는 문책이 없었다.

93

장단의 속오군을 징발하여 능상의 호위군으로 쓰다 1693년(숙종 19) 8월 3일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은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의 후릉厚陵에 전알展講할 때에 영상額相과 좌상左相은 모두가 대질大憲의 나이이니, 배종陪從하지 말게 하고, 대가大駕를 따르는 백관百官과 군병軍兵들도 또한 모두 간략한 예식에 따라 수효를 줄이되, 어영군御營軍은 도성都城에 머물도록 하고, 능상陵上의 호위군扈衛軍은 장단長湍의 속오군束伍軍을 징발해 쓰도록 하며, 대가를 따르는 왕자王子·대신 및 승지承旨·사관史官·옥당玉堂의 관원들에게는 특별히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인하여 후세에 전례前例로 삼지 말도록 하고 대궐로 돌아올 때에는 만월대滿月臺에서 과거科擧를 설치하여 다만 송도松都 사람만을 뽑도록 하되 대제학大提學을 문과 시험장의 시관試官으로, 또 중신重臣을 무과 시험장의 시관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94

유격 등이 안향·이색·김안국·김정국의 서원에 사액을 청하다 1694년(숙종 20) 8월 6일

장단長湍 유학幼學 유격柳格 등이 본부本府에 있는 고려 때의 안향安珦·이색李穡과 본조本朝의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의 서원書院에 사액賜額을 청하고, 충청도 유학 윤채尹奭 등이 송시열宋時烈을 회덕懷德의 송현 서원崇賢書院, 옥천沃川의 창주 서원滄洲書院, 보은報恩의 상현 서원象賢書院 등에 배향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다 품처稟處하도록 명했다.

95

유학 박상초가 남구만과 유상운을 벌할 것을 청하다 1705년(숙종 31) 6월 23일

장단長湍의 유학幼學 박상초朴尙初가 상소上疏하여 남구만南九萬·유상운柳尙運을 죄주지 않을 수 없다고 논하고, 이어서 민진원閔鎭遠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대의는 성규현成揆憲과 마찬가지로였다. 정원政院에서 계품啓稟하고 봉입俸入하였는데, 도로 내어주라고 명하였다.

96

어머니의 병 때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끊은 유재원 1706년(숙종 32) 11월 9일

양성陽城의 사노私奴 천이千伊와 장단長湍의 사인士人 유재원柳載元이 어머니의 병 때문에 손가락을 끊어

효행孝行이 드러났으므로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고, 또 광주廣州 살던 고故 참판參判 임유후任有後의 효행을 장문하였다.

97

경기도사 심상운의 불법 행위 1707년(숙종 33) 11월 10일

사간司諫 이하원李夏源이, '경기 도사京畿都事 심상운沈尙尹이 순행巡行하다가 장단長湍에 이르러 여러 무덤이 있는 곳에다 치표置標를 하여 빼앗으려는 계책을 꾸몄고, 풍수風水에게 역마驛馬를 빌려 태우고 관官에서 제공하도록 책임지었으니, 죄가 불법不法에 관계되므로, 나문拿問을 청하여 죄를 정할 일로써 발론發論하였으나, 헌납獻納 권침權詹과 정언正言 김시환金始煥이 따르지 않고 각자 인피引避하였다. 옥당玉堂에서 처치處置하여 이하원을 출사出仕시키고 권침과 김시환을 체차遞差하였는데, 이하원이 출사하자 곧 그 계사啓辭를 발론하니, 임금이 윤휴하였다.

98

효자 남덕일에게 관작을 추증하다 1711년(숙종 37) 5월 20일

효자孝子 남덕일南德一에게 관작官爵을 추증追贈하였다. 남덕일은 장단長湍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지극히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서, 15세 때에는 아버지와 더불어 깊고 험한 산골에서 병란兵亂을 피하면서 밤낮으로 부호扶護하기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밥을 갖추어 땅을 소제하고 제사祭祀하기도 하였다. 가업家業이 방락旁落하여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였는데도 온청溫淸과 수수滌滌의 절차를 심히 갖추었다. 그의 아버지가 사나운 말에 물려서 죽자 남덕일이 칼을 잡고 통곡痛哭하고는 곧바로 말 앞으로 돌입하니, 말이 크게 성내어 달려와 충돌하려다가 남덕일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물러서므로, 바로 찢러 죽이고 그 머리를 취取하여서 제사를 올렸다. 하루 세 번을 성묘省墓하고 곡읍哭泣하였으며, 몸소 흙을 저다가 무덤 앞의 빈 곳을 보토補土하니, 박장원林長遠이 그의 여막廬幕을 만들어 주고 시詩를 지어 가상嘉尙하게 여기었다. 향린鄉隣에서는 그의 거처하던 곳을 이름하여 '시묘동侍墓洞'이라고 하기까지 하였고, 그밖의 행의行誼도 남들이 미치지 못할 것이 많았다. 일찍이 방백方伯의 천거薦舉로 재량齋郎에 임명되었고, 나이 80여 세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진하였다가 죽었는데, 이에 이르러 곧이어 증직贈職하였다.

99

장단에 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1712년(숙종 38) 4월 17일

주강畫講에 나아갔다. 무신武臣 최진한崔鎭漢이 말하기를, "수원水原과 장단長湍은 기보畿輔의 좌우 방영

防營이 되는데, 장단은 더욱 요해처要害處가 되니, 마땅히 수원을 본떠 독진獨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100

장단부사와 포도대장의 실책을 따져 묻다 1718년(숙종 44) 3월 25일

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 “... 장단부長湍府에서 잡은 사주인私鑄人을 포도청에 이송하였는데도 포도청에서 철저히 문초하지 않고 곧바로 먼저 석방하여 보낸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장단부사의 직임은 토포사討捕使의 직임을 겸하고 있는데, 스스로 추문하여 다스리지 않고 바로 포도청으로 보낸 것도 일을 허술하게 처리한 실책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해당 포도대장捕盜大將과 장단부사를 아울러 추고推考하여 무겁게 다스리고, 사주인을 다시 잡아 가두고 각별히 추핵推覈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다만 내승과 제향의 물품에 대한 일만을 그대로 따랐다.

101

송도에서 장단의 송서면을 떼어주기를 청하다 1719년(숙종 45) 11월 23일

헌부憲府에서 진달陳達하기를, “장단長湍은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이고 또 방영防營인데, 큰길에 위치해 있으면서 조잔凋殘하고 피폐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송도松都에서 장단長湍의 송서면松西面을 떼어주기를 청하였으나,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대개 그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전前 유수留守의 신청申請으로 인하여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장단에서 믿고 의뢰하는 고을은 단지 이 한 면面뿐이고, 송도는 원래 호조戶曹에 납세納稅하는 규례가 없고, 또 백성들이 부역賦役하는 일도 없는데, 이제 장단의 세금을 바치는 땅을 송도松都의 세금이 없는 전지田地로 만드니, 이미 조정의 실책입니다. 한 면에서 담당하던 부역을 다른 면에 첨가시킨다면 장단은 더욱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가 있으니, 청컨대 송서면을 송도에 이속移屬시키도록 한 명령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대개 송서면은 곧 장단의 땅이었는데, 송도와 근접近接해 있으므로, 송도에서 번번이 이를 얻고자 하여 여러 번 조정에 청할 적마다 장단에서 문득 이를 다투어 수십 년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전前 개성 유수開城留守 유명웅俞命雄이 또한 장계狀啓에 연명連名하여 이속시키기를 원하자, 묘당廟堂에서 앞질러 그 청을 허락하였으므로, 대관臺官이 쟁론爭論한 것이었다.

102

장단 송서면의 송도 이속을 중지하길 청하다 1719년(숙종 45) 11월 23일

헌부憲府에서 장단長湍 송서면松西面을 송도松都에 떼어 붙이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다. 【원계原啓는 위에 보인다.】 송도에서 송서면을 얻고자 한 것은 부민富民의 분산墳山과 토전土田이 모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이를 송도에 붙이면 부역賦役이 가볍고 적어지게 되므로, 이를 다툼 지 수십 년이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끝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수상首相 김창집金昌集이 건의建議하여 떼어 붙였다. 김창집은 일찍이 송도 유수松都留守를 지내었는데, 상서象胥들이 그 문문에 모여들었으며, 이때에 이르러 다투어 금전金錢을 내어 당로當路에 뇌물賂物을 보내었는데, 김창집의 문에 들어간 것이 많았다. 그 아들 김제겸金濟謙이 등과登科하자, 김창집이 휴가休暇를 얻어 장단長湍에 가서 영분榮墳하였는데, 온 송도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임진臨津에 와서 영접迎接하였으며, 보내온 전백錢帛과 재인 광대가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김창집이 매우 기뻐하였다. 이때 장단의 백성들이 일제히 호소하며 땅을 다투니, 김창집이 노怒하여 꾸짖어 물리치고는 돌아오자마자 곧 떼어 붙이도록 허락하였는데, 곧 언관言官의 말로 인하여 정침停寢되었고, 장단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침을 뱉고 욕하고 있다.

103

장단 송서면의 송도 이속에 관해 논하다 1720년(숙종 46) 1월 25일

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지평持平 홍용조洪龍祚가 장단長湍 송서면松西面의 일을 언급하였는데, 세자가 미처 답하기 전에 김유경金有慶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 일은 신이 서관西關에서 올라올 때에 그 형세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송도松都는 만월대滿月臺로부터 그 이하가 죄다 텅텅 비어 조련揀鍊의 장소로서 어느 곳도 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진장陣場이 되는 것이 비록 혹시 아깝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으로 인하여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공연히 떼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대간臺諫의 진달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104

장단의 송서면을 떼어 송도로 이속시켜 줄 것을 청하다 1721년(경종 1) 윤6월 5일

개성유수開城留守 김운택金雲澤이 상소하여 장단長湍의 송서면松西面을 떼어 본부本府로 이속移屬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 신묘년에 본부의 수신守臣이 장단長湍의 황폐荒廢한 한 면을 본부로 떼어줄 것을 청하고, 조사한 도형圖形까지 올린 뒤에 묘의廟議에서 구정현口井峴까지 떼어줄 일을 복계覆啓하여 결정을 보았었는데, 대계臺啓가 갑자기 일어나자 성명成命을 도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본부

에서는 이미 겸하여 관리管理해 오고 있는 처지임에도 장단의 경내境內를 빌어 조련장操鍊場을 설치하고 있으니 구간苟間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단에서 한 면의 반절을 잃은 것은 원래 큰 영향이 없는 바이니, 전일의 성명成命대로 이속移屬을 특별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 하니, 비국備局에서 그 윤희해야 할 상황을 다시 아뢰고 도신道臣과 송도松都의 수신으로 하여금 피차의 형세形勢를 살피고 넓고 좁은 것을 참작하여 다시 장문狀開啓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송도松都에 관리 독영管理獨營을 설치한 것은 한갓 열읍列邑의 폐단만 될 뿐 조금도 관방關防에는 도움됨이 없는데도, 송도 백성들의 분묘나 전답이 장단 경내에 많이 있으므로 조련장을 핑계 삼아 기필코 이속시키려 한 것이다. 송도 사람들은 본래부터 돈이 많았는데 김창집金昌集이 그들의 부탁을 받고 뒤따라 찬성하였으나 마침 대의臺議가 있어 중지된 것인데, 김운택이 또 부민府民들의 부탁을 받고 번거롭게 장청狀請하니,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겼다.

105

궁가에서 태복시의 목장 절수를 방지하도록 요청하다 1729년(영조 5) 8월 6일

사복시司僕寺에서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에서 옹주방翁主房의 수본手本으로 인하여 건지산乾止山의 절수折受를 도로 정지하고 대신 본시本寺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단長湍의 낙하洛河·호곶壺串의 둔전屯田을 절수하라는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찍이 신묘년에 고故 상신相臣 서종태徐宗泰의 차자와 제도諸道 순무사巡撫使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목장牧場과 전답 가운데 병인년 이후 궁가宮家에서 절수한 둔전 6곳을 특별히 도로 본시本寺에 소속하도록 명했었습니다. 청컨대, 낙하·호곶을 그전대로 본시에 소속시키고, 뒷날에도 제궁家에서 태복시의 목장을 절수하는 것을 일체 방지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106

장단 사람이 상언하여 윤순 형제를 무함한 일을 논하다 1731년(영조 7) 12월 15일

약원藥院에서 입진人診하였다. 부제조 조석명趙錫命이 말하기를, “장단長湍 사람으로 상언上言한 자는 누구인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익명匿名으로써 감히 경제卿宰를 무함한다는 것은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는 바가 큼니다. 그리고 또 윤유尹游 형제는 용렬하고 잔단 무리가 아니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에 있는 자가 지극히 명철하고 지극히 공정하며 조정이 화합한다면, 비록 이런 무리가 천백 명이 있더라도 어찌 감히 그 흉계를 실현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장단의 백성 가운데 그 이름을 숨기고 상언하여, ‘윤순尹淳 형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불법

한 일이 많다'고 무함한 이가 있어, 임금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장단 백성임을 가탁하여 악의惡意를 가지고 죄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기 감영에 명하여 그 사람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또 한 상언으로 절반은 한문漢文이고 절반은 언문諺文인 글로써 백성의 일을 논한 것이 있었다. 여러 신하들이, 혹시 정신정신(鄭愼)들을 포함하기를 장단 백성과 같이 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며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을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런 일은 없으며, 그 상언은 내가 이미 불에 태워버렸다" 하였다. 이 당시 상언의 분잡함과 민습의 해괴함을 통해서 또한 기강을 볼 수 있었다.

107

탐오한 장단부사 이오와 아들 이도섭의 죄상을 아뢰는 정언 이주진의 상소 1732년(영조 8) 9월 16일

정언 이주진李周鎭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장단長湍의 전 부사府使 이오李梧의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불법을 저지른 죄에 대해 신이 안핵按覈하여 논계論啓한 적이 있었는데, 사안查案에서 감죄勘罪한 것을 보니, 일체 모두 탕척蕩滌해 버렸습니다. 좌죄된 것은 단지 여결餘結뿐이고 올명律名은 도배徒配에 그쳤으니, 신은 삼가 놀랍고 통분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고, 이어 저치미儲置米의 작전作錢을 마음대로 써버린 죄와 요망한 첩妾이 뇌물을 받고 백성을 침학한 정상을 진달하였다. 또 그의 아들 이도섭李道燮이 관전官錢을 마음대로 쓰고, 아전의 딸을 강간強奸한 죄를 논하여 먼 곳에 정배定配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오의 일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이도섭의 일은 부자父子를 아울러 율律法에 처하는 것이니, 어찌 왕정王政에 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정에서 엄히 징계해야 하는 것은 수령에게 있는 것이지 아객衙客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108

송도가 장단 송서면의 편입을 거듭 요구하다 1740년(영조 16) 9월 2일

여기가 다시 송도에 주차하였다. 임금이 남문南門의 누대樓臺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이곳은 다섯 성조聖祖께서 주필駐蹕하셨던 곳이다" 하고, 부모父老들을 불러 위유慰諭하고 또 폐막弊瘼에 대해 하문하니, 목소리를 함께 하여 청하기를, "본부는 지방이 매우 협소하여 사문四門 밖은 모두 다른 경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탱할 수가 없으니, 장단長湍의 송서면松西面을 편입시켜 주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또 오래된 환곡還穀과 청채淸債를 탕감시켜 줄 것을 청하니, 모두 허락하였다. 또 오래 전에 대여한 쌀·좁쌀 7천여 석石과 목면木綿 5천 필疋을 탕감시키게 하였다.

109

장단부사 이적을 잡아 추문하다 1757년(영조 33) 4월 29일

왕세자가 옥화당玉華堂의 여차廬次에 좌기하여 차대를 행하였다. 개성 유수 오수채吳遂采가 장달狀達하기를, “장단長湍에서 군항軍餉을 가장 많이 바치지 않았으니, 청컨대 부사 이적李楸을 잡아다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10

장단의 임진강 상류에 성을 쌓아 방어하기를 청하다 1764년(영조 40) 5월 2일

총융사總戎使 구선복具善復이 장단長湍의 임진강 상류에 적벽赤壁이 깎아지른 듯한 형세를 이용하여 그 위에 성을 쌓고 서쪽에서 오는 적을 막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111

장단에 다시 방영을 설치하다 1781년(정조 5) 12월 15일

상참常參하였는데, 차대次對도 겸하여 행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 이형규李亨遂가 상소하여 교동喬桐에 다시 수근水閘을 설치한 것과 장단長湍에 다시 방영防營을 설치한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전도되게 소각銷刻한다는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일이 있게 되니, 아울러 우선 버려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12

장단의 송서와 송남을 백성에게 돌릴 것을 청하다 1784년(정조 8) 12월 17일

개성부 유수 정창성鄭昌聖이 상소하기를, “본부本府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은데 토지는 메말라서 갈아 먹을 만한 곳이 없고 저자의 가게는 형편없습니다. 도적이 함부로 날뛰는 것은 모두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단長湍의 송서松西와 송남松南은 본래 송도松都에 속한 옛 땅이었는데 최초로 장단에 떼준 것은 연대가 오래되어 자세히 모르겠으나, 대개 듣자니, 새 왕조를 개창開創할 초기에 상商나라의 완악한 습성이 종주宗周를 받드는 뜻에 우매하였으므로 특별히 두 면을 떼어서 이웃 고을에 넘겨주었는데, 명나라 태조 황제가 소주蘇州와 항주杭州에 무겁게 조세를 매겼던 뜻과 같습니다. 비록 명확한 문적文蹟은 없으나, 그 송서, 송남의 마을 이름과 전해오는 전설에 의거하여도 또한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물며 송서의 한쪽 모서리가 영문靈門과의 거리가 1백여 보步 안에 있으므로,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리고 연화煙火가 직접 잇닿아 있습니다. 장단은 바로 한 부府의 치소治所인데, 사방 3백리이니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본부本府는 영문營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8십 여리 밖에 안 되나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장단부에서는 한개 면을 떼어주더라도 그다지 관계가 없지만, 본영本營에는 한 면面만 보태더라도 큰 이익이 있게 됩니다.

지난 속종[肅廟] 신묘년에 죽은 고 유수留守 김만채金萬琛가 일일이 들어 장계狀啓를 올리자, 묘당廟堂에서 의논하라고 명하였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정짓지 못했고, 그뒤에 유수 송정명宋正明과 김운택金雲澤이 상소하여 다시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일이 많아서 미처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선왕조先王朝 경신년에 송도로 행차했을 때 본부의 선비들과 백성들이 하나같은 목소리로 호소하자 특별히 유수에게 명하여 사리를 따져 장문狀聞하도록 하였는데 때마침 장단에다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시의時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대저 장단은 면적이 넓고 백성들이 적으므로 본영에서 이 넓고 있는 넓은 들판을 얻어서 이처럼 농사짓기 원하는 백성들을 옮겨놓으면 피차 어느 쪽이 더 필요하고 필요치 않은 것과 조정에서의 이해득실은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니 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첫째 조건입니다. 중요한 진을 관할하지만 겨우 영문을 나서면 다른 고을에 속하기 때문에 매양 군사 훈련이 있을 때마다 곧 소속된 고을의 빈 땅을 빌리게 되니 돌려주지 않을 수 없는 둘째 조건입니다. 대흥산성大興山城은 바로 송도의 중영中營인데 반대로 장단의 경계에 설치하고 오가는 군사들이 남의 경계를 넘어다니게 되니 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셋째 조건입니다. 문강공文康公 서경덕徐敬德은 송도 사람인데 원우院宇를 다른 고을에서 땅을 빌려서 지어놓고, 제사를 지낼 때에 남의 고을의 경계에 넘어가서 재물을 마련하니 돌려주지 않을 수 없는 넷째 조건입니다. 신은 감히 기해년에 경계를 나눈 옛 지도地圖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을 아울러 올립니다” 하니, 묘당에 내려보내어 품신稟申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113

개성부 유수가 장단 송서면 분지천 서쪽을 도로 개성부로 넘겨주기를 청하다 1790년(정조 14) 9월 25일 앞서 개성부 유수 구상具瑿이 장계하기를, “본 개성부는 지역이 좁아서 교장敎場을 장단長湍 송서면松西面에 설치하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땅은 본디 개성부의 땅이었으니 송서면 분지천分地川 서쪽을 도로 개성부로 넘겨주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좌의정 체제공이 복주하기를, “송도의 병영은 근래에 몹시 피폐해졌는데, 지금 이 장계의 내용도 아마 손쓸 곳이 없으므로 인하여 한 번 호소하고 두 번 호소하면서 그칠 줄 모르는 것으로 생각되니, 범연하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본부의 교장이 다른 고을에 있는 것은 형편상 구차할 뿐 아니라 송도 백성들의 지극한 소원도 전적으로 송서면을 떼어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에 관계되는 일이니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호조판서 정민시는 아뢰기를, “이 땅을 떼어 받음으로써 송도가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사소한 문제까지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성 유수가 아뢴 것을 들어 보면 비록 이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개성부에는 이익이 없는데 백성들의 심정이 그 땅을 얻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개면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전결田結도 있고 군액軍額도 있는 만큼 호조에서는 전결이 감축되는 손해가 있게 되고 장단에서는 군액을 까닭 없이 잃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송도 백성들의 분묘를 쓸 고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이미 경계가 정해져 있고 또 아무 이익도 없는 다른 고을의 경계를 떼어 붙이는 것이 어찌 사리에 맞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이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구상具庠은 아뢰기를, “송도 군영의 폐단을 바로잡는 제일의 계책은 바로 크고 작은 남쪽의 면에 있는데 이는 전에 이미 누차 진술한 것입니다. 송서면은 개성 백성들의 소원일 뿐 아니라 곧 교장을 만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채제공은 아뢰기를, “송도의 일이 비록 염려되기는 하나 호조판서가 아뢴 말이 사리에 맞습니다. 신 역시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개성 유수가 장계로 요청한 내용을 보류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호인鄭好仁이 아뢰기를, “개성부에서 빛을 놓을 때 군교와 아전에게 위임하였다가 결국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면 모두 탕감해 주곤 하였는데, 지금 만약 다시 빛을 놓게 되면 군교와 아전이 또 손을 댈 것입니다. 그러니 개성부를 반드시 소생시키려면 금천金川의 크고 작은 남쪽의 면을 떼어 붙여 그 세를 거두어 보태는 것이 실로 막대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개성부는 옛날의 수도이고 금천은 일개 현에 지나지 않으니 하찮은 이해관계야 무슨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정민시는 아뢰기를, “에당초 빛을 탕감해준 것은 오로지 명예를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이고 처음부터 묘당의 공문을 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정에 요청할 것인데, 조정에선들 이에 대하여 어찌 보고하는 대로 억지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채제공은 아뢰기를, “이것은 모두 묘당의 책임입니다. 개성부 유수를 만약 신중히 선발하였다면 어찌 이와 같은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114

묘지 분쟁으로 옥에서 죽은 권진성의 처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1794년(정조 18) 8월 26일

이보다 앞서 비변사가 집의 이우제李遇濟의 상소로 인하여 복계하기를, “올부짓으며 원통해하는 아낙에게서 받은 원정原情에 ‘저는 장단長湍에 살고 있는 권진성權鎭星의 처 송씨인데 시아버지 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려 하자 같은 고을의 정순鄭純과 정식鄭式 등이 자기들의 선산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리를 모아 장례식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본관本官에 아뢰니 향색鄉色을 보내어 간사함을 적발한 뒤에 송

사 심리에서는 정가가 졌다고 하면서도 즉시 판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은 읍하(邑下)에 남아 기다리면서 이미 정해놓은 장례 날짜를 놓칠까 두려워 서제(庶弟)를 시켜 임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본관은 관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멋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로 칼을 씌워 엄히 가두고는 무함하여 감영에 보고하자, 감영에서는 한 차례 형추(刑推)하라고 제송(題送)하였습니다. 정식은 본관의 자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본관에서는 세모 몽둥이로 제 남편을 39대 때리는 것으로 한 차례의 형장으로 삼았고, 이어 칼을 씌워 가두고는 파서 옮기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독(杖毒)이 온 몸에 퍼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흔 노모와 아흔 조모가 보방(保放)하여 구제해줄 것을 애걸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뒤 옥졸이 고한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풀려나긴 했으나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시어미와 함께 대궐 밖에 와서 엎드렸는데 본관은 또 10여 명의 하인을 보내어 무수하게 구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가가 관가와 싸고 죽이려한 결과입니다. 법대로 목숨을 보상받게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이 원정대로라면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흠휼전칙(欽恤典則)』이 반포되어 시행된 뒤에 그 누가 죄인을 신중히 심의하라는 덕음을 우러러 체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모 몽둥이로 때린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데, 한 차례 형벌을 39대로써 기준으로 삼은 것은 또 법 밖의 일이고, 그의 병든 상태를 알고서도 즉시 보방하지 않았으니, 모두가 형벌을 함부로 하고 법을 어긴 것과 관계됩니다. 즉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장계로 아뢰게 하고, 과연 송 여인의 하소연대로라면 지방관을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경기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조사하여 아뢰기를, "권진성(權鎭星)이 옥중에서 전염병을 만난 것이 비록 공형(公兇)의 공초에서 나왔더라도 제 마음대로 장례 치른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할 죄는 아닙니다. 옥을 돌보는 것은 응당 행해야 할 일과 관계되는데, 병세도 돌아보지 않고 호소도 돌보지 않다가 닷새씩이나 앓게 한 뒤에야 석방을 허락하여 이내 죽게 한 것은 정리로 보아 매우 절통하고 참담합니다. 전 부사 서유화(徐有和)에 대해 비변사가 이미 잡아들이자고 청계하였으므로 감히 이렇게 눈멀하며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사하여 심문하라고 한 명령은 한편으로는 화기(和氣)를 범하는 데 관계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품고 있는 원망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는데, 이 장본(狀本)을 보고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더욱 깨달았다. 대체로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감영의 지시에 의거하여 한 차례 신문하고 추고하는 것은 원래 항상 있는 일이다. 설령 우연히 죽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송사를 담당한 관리에서 죄를 더한다면 지금과 같은 원악하고 야박한 풍습에서 그 누가 송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본 사건은 이와는 반대되는 점이 있다. 권진성(權鎭星)의

송사에 대한 처리는 죽여야 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었다. 진성이 여러 대의 독자인데다가 여러 명의 과부가 있으니, 그 정경은 매우 궁하고 측은하여 사민四民중에서도 고할 데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 송사를 담당한 관리도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곤장이 모질었던 험했든 법을 어겼든 안 어겼든지 우선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또 옥중에서 전염병을 만났든 장독이든 하는 것도 막론하고, 무더운 절기에 죄수를 가둬두고 한 달 이상 있게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였는가. 권가의 노모가 죽을 듯이 혈떡거리며 기어와서 애걸하는 형상을 보고서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더러 보방保放하는 것도 즉시 시행하지 않았으며,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 집의 보증을 받고 내 줄 것을 허락해서 끝내 며칠이 지나 죽게 만든 것은 또 무슨 생각에서였는가.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지극히 중하며, 형옥은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일을 처리한 행동을 따져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우 어질지 못하다고 하겠다.

하물며 진성의 죽음이 비록 마음먹고 일부러 죽인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죽게 하고야 말았으니,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또 비록 죽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정경을 듣고 그 정상을 보면서도 형벌을 가하고 또 가두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로 인하여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게 하고 말았으니, 어질지 못한 것이 마음먹고 일부러 죽인 것보다도 심하고 죽게 한 것보다도 심하다고 하겠다. 만일 이러한 송사를 담당한 관리가 요행히 죄를 받아야 할 법률을 벗어난다면 외로운 백성들이 모두 하늘에 호소해도 어쩔 수 없는 원망을 품을 것이며 죽은 이의 맺힌 원한도 어떻게 풀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장단 전 부사 서유화徐有和를 즉시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 가두고 엄하게 심문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가 범한 어질지 못한 일에 대해서 구초口招를 받아 아뢰고 법을 살펴 엄히 다스려서 화기를 펴고 억울함을 펴는 데 일조가 되게 하라” 하였다.

115

장단부의 사천면을 개성부에 이속시키다 1796년(정조 20) 5월 29일

차대하였다. 금천군金川郡의 대남면大南面·소남면小南面·백치진白峙鎭과 장단부長湍府의 사천면沙川面을 개성부로 이속시켰다. 이전에 개성부 유수 조진관趙鎭寬이, 본부에서 대출해줄 돈이 줄어들어 영문에서 쓸 경비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금천군의 두 남면과 백치진, 장단부의 사천면을 본부로 이속시키라고 요청하면서 타당성을 논한 책자를 올리니, 묘당에 내려보냈다. 이때에 이르러 우의정 윤시동이 복주覆奏를 가지고 윤희를 청하니, 상이 진관에게 이르기를, “개성부는 순전히 돈을 대출하여 영문의 살림을 꾸리는데, 이전의 30만에서 지금에 남은 것이 몇 십만이나 되는가?” 하니, 진관이 아뢰기를, “15만이 남

아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남과 소남 두 면에 호조의 세금이 과중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자에 궁방절수(宮房折受)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헐하게 하고 부역을 견감시켰는데, 이는 장차 송경으로 부속시키는 것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었다. 궁방이란 명칭을 붙인 이후로 호구가 날로 더 증가되고 전야가 날로 더 개간되고 있으니, 지금에 만약 두 면을 부속시키도록 허락한 뒤에 이들을 모두 떼 준다면 몇 년 안으로 송경의 일 년 소득이 수천 금에 이를 것이다” 하니, 시동이 아뢰기를, “금천의 두 남면과 백치진을 환속하는 일은 의논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다만 대토(代土)가 상당한 것이 없어 매번 해영(海營)의 방계(防啓)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목대로 대토를 지급하되 가능한 한 상당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장애가 될 단서가 없게 한다면 실로 폐단을 바로잡고 구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분할하여 준 장단의 송서면(松西面)에 있어서는 혹은 이수(里數)가 조금 많고 혹은 일의 형세가 편리하기 어려웠기에 허락하였다가 누차 중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요청한 사천면(沙川面) 이서 지역은 전에 정했던 경계에 비하여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부에서 교장(敎場) 등 네 조목으로 청한 것이 모두 그 속에 있습니다. 크기는 조금 작으나 백성들의 뜻이 가장 절실하니 편리한 대로 이속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진관에게 하교하기를, “전에 분지천(分地川)을 경계로 한 것은 속묘 신묘년에 있었고, 다시 구정현(口井峴)으로 한계를 줄인 것은 기해년에 있었다. 이번에 요청한 내용은 기해년에 정한 경계에 비하여 3분의 2를 감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가서 금천의 지형과 백성들의 뜻이 편리하게 여기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진관이 아뢰기를, “금천의 경내에는 사족(士族)이 매우 많아 송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것이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두 남면에는 양반 호구가 매우 적은 데다 서민들은 송도가 세금이 가볍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남면만 떼 주면 송도의 영문은 어느 정도 소생할 수 있겠는가?” 하니, 진관이 아뢰기를, “1년의 세입을 가지고 지출과 비교하면 지금의 소득이 거의 3천을 넘을 정도이니 상당히 지탱해갈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모든 재상들에게 두루 물어 보니 다 편리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송도 백성을 위하여 이익을 일으키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도를 어찌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논의하는 자들이 금천의 두 면과 장단의 한 면을 떼어주는 일과 백치진을 환속하는 일로 분분하게 말하였지만, 항상 결정을 짓지 못한 이유는 대개 어가(御駕)가 지나갈 때 특별히 은전으로 베풀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에는 부모가 계시면 멀리까지 유람나가지 않는다는 뜻에 있어서 십여 일 동안 밖에서 묵어야 되는 능행(陵幸)을 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다.

지난번 경연석에서 말을 꺼내어 열심히 자문하여 시작을 하려는 은미한 뜻을 대략 보였었는데, 신임 수신守臣이 진술한 조목이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여 국가에는 손해가 없고 본부에는 이익이 있는 것이었다. 이는 금천군의 두 면을 떼어주는 것에 불과하면서 호조에 바치는 세금과 해서海西 감영의 용도를 마련하는 데에 편리하지 않음이 없다. 또 장단에 대신 지급할 토지도 떼어서 부속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본부로서는 소득이 적지 않다.

특별히 수신의 요청대로 송도에 이속시키라, 그리고 소원대로 정하도록 우선 허락한 궁방절수宮房折受는 백성들이 농사지어 먹도록 하고 부역을 경감해 주었다가 거동했을 때 장차 본부로 출급出給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함께 본부에 떼어줄 일로 분부하라. 앞으로 거행하는 일은 오직 도신과 수신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을 정하여 사목事目的 편부便否를 정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뜻도 아울러 수신과 양도의 도신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116

일란 때 공이 있었던 정곤수의 사손에게 벼슬을 주다 1798년(정조 22) 7월 21일

이조가 아뢰기를, “정곤수鄭寬壽의 사판祠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손祀孫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6대손 정덕빈鄭德彬이 올해 나이 73세로 장단長湍 땅에 우거寓居하고 있고 사판은 그의 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기읍畿邑에 거주하는 서천 부원군의 사손이 있다고 하나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늙은 것이 애석하다. 어떻게 벼슬길에 나설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일단 들은 이상 구전 차출口傳差出하는 형식으로 첩지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의망해 들이고 역마驛馬를 주어 출발시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117

잘 자라던 장단의 벼포기가 갑자기 하얗게 죽다 1800년(정조 24) 6월 28일

이날 유시酉時에 상이 창경궁昌慶宮의 영춘헌迎春軒에서 승하하였는데 이날 햇빛이 어른거리고 삼각산三角山이 울었다. 앞서 양주楊州와 장단長湍 등 고을에서 한창 잘 자라던 벼포기가 어느날 갑자기 하얗게 죽어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이른바 거상도居喪稻이다’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대상이 났다.

118

부안에서 표류해온 청나라 사람이 장단 땅에서 죽다 1814년(순조 14) 1월 23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의주부윤 오한원吳翰源의 장계에는, ‘부안扶安에 표류하여 온 청나라 사람 한

명이 장단長湍 땅에 이르러 죽었다'고 하였는데, 자문咨文 중에는 이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류하여 온 자를 영송領送할 때에 경기 경내에서 죽으면 승문원에서 사유를 갖추어 말을 만들어 다시 자문을 작성하여 보내고, 관서의 경내에서 죽으면 의주에서 편의에 따라 급히 통보通報하는 것이 선례입니다. 이번에는 자관管官이 즉시 급히 통고하지 않고 의주까지 가서 자문이 내려온 뒤에야 비로소 써 보낸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복명復命을 기다려 엄중히 과치科治하고, 사유를 갖추어 자문을 고쳐서 내려보내소서” 하니, 윤택하였다.

119

장단천 서반면의 부역을 개성부에 속하게 하다 1820년(순조 20) 6월 21일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개성유수 이문희李文晷의 상소에 말하기를, ‘금천金川의 대남大南·소남小南 두 면과 장단천長湍川의 서반면西半面은 전에 이미 개성부에 이속移屬되었으니, 부역賦役도 마땅히 개성부에 속해야 할 것인데, 그대로 놔둔 채 미처 손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세 면에서 서울에 바치는 각종 건의 수량이 2천이 조금 넘으니, 개성부에 떼어 주어 힘을 펴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텅 빈 일개 몇 리의 땅만 얻고 농산물은 관계가 없으니, 이는 땅을 얻었다는 이름만 있지 땅을 얻은 실속은 없습니다. 지금 만약 떼어 준다면 경사京司에서 잃은 것은 지극히 적은 반면 개성부에 도움 되는 바는 지극히 긴요할 것입니다. 그 의 말한 바에 의하여 떼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20

장단 백성 서맹순의 송사와 총융사의 잘못된 처사 1820년(순조 20) 10월 16일

비국에서 아뢰기를, “요즈음 법의 기강이 무너져서 별별 변고가 다 생기는데, 장단長湍의 송사한 백성 서맹순徐孟淳의 일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습니다. 토착민의 신분으로 송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고을 수령에게 화를 내어 곧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수령의 아버지를 구타하였으니, 이는 전고에 없는 변괴입니다. 형조의 의율 초기擬律草記를 보건대, 이러한 난민亂民을 단지 장형杖刑 1백, 도형徒刑 3년으로 마련하여 보통 죄수처럼 전례에 따라 가볍게 죄를 감정하였으니, 법을 맡은 곳에서 구차하고 유약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법관이 율서律書를 읽지 않아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 부당한 조문條文을 이리저리 인용 참조하는데, 그릇된 버릇이 고질이 되어 후일의 폐단을 말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것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조판서 홍희신洪羲臣에게 빨리 파직의 법을 시행하고 서맹순은 다시 형조로 하여금 형신刑訊을 엄하게 한 다음 멀고 험악한 섬으로 귀양지를 고쳐 정하여 사면이 있기 전에는 용서하

지 마소서. 서형보徐衡輔가 관청을 능욕凌辱하고 칼로 읍교邑校를 찢은 것도 난민亂民입니다. 이는 본도로 하여금 즉시 체포하여 법대로 엄하게 죄를 정한 뒤에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이미 본도에서 발생했으니, 법으로서는 마땅히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어 잡아다 엄하게 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法司로 하여금 본률本律에 따라서 처리하게 하였으니, 불찰에 가깝습니다. 경기감사 한공리韓兢履도 중하게 추고하소서. 요즘 또 듣건대, 총용사가 그 친족을 위하여 장단부長湍府의 서리胥吏와 향임鄉任을 잡아다 지나치게 곤장을 쳤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약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장신將臣의 처사가 매우 마땅치 못합니다. 마땅히 한번 신문하여 여러 사람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니, 총용사 서춘보徐春輔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추문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21

예조에서 장단의 열녀와 효자를 보고하다 1832년(순조 32) 4월 13일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에 서울과 외방에서 충忠·효孝·열烈에 대해 장계狀啓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분등分等하여 초계抄啓하였다. … 열녀 정려질녀旌閭秩 … 장단長湍의 고 사인 박수홍朴壽泓의 처 황씨, 효자 정려질孝子旌閭秩 … 장단長湍의 고 사인 이덕윤李德潤 …

122

아비를 죽인 장단부의 이창석을 능지처사하다 1840년(헌종 6) 12월 15일

이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장단부長湍府의 아비를 죽인 죄인 이창석李昌錫을 이제 이미 잡아 가두었으니, 법례法例에 따라 삼성 추국三省推鞠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결안結案을 받고 부대시 능지처사不待時凌遲處死하였다.

123

장단의 색리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흑산도에 정배된 장흥주부 홍약필 1842년(헌종 8) 7월 7일

명하여 장흥주부長興主簿 홍약필洪若弼을 엄형嚴刑한 뒤에 흑산도黑山島에 정배定配하게 하였다. 홍약필은 고관庫官으로서 장단長湍의 상납 색리上納色吏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색리가 자문自勿해 죽는 데까지 이르렀으므로 영의정의 주청奏請으로 인하여 이 명숨이 있었다.

124

장단에 흘전을 내리다 1863년(철종 14) 7월 9일

장단長湍 등 고을의 표퇴한 가호에 흘전을 베풀었다.

125

장단부의 조세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1864년(고종 1) 12월 12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감사京畿監司 조재응趙在應의 보고를 보니, ‘장단부長湍府는 조세를 낼 실결實結이 1천 8, 9백 결結로서 대동미大同米와 전세田稅가 2천 3, 4백 석石인데 그것을 상납上納할 적에 두 가지 세에 따르는 정비精費가 1천 8, 9백 냥兩이나 됩니다. 이것을 결호結戶에다 더 배분하여 거두어들이면 백성과 고을의 형편이 갈수록 더욱 피폐해질 것이니 위의 두 가지 세는 풍년과 흉년을 참작하여 돈으로 대납代納시키고 정비도 또한 돈으로 대납하게 해주면 피폐한 국면이 소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참작해서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백성들의 편의를 보아 주는 한 가지 일이니, 그렇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6

남편을 죽인 죄인이 거주한 장단부를 현으로 낮추도록 아뢰다 1866년(고종 3) 6월 13일

이조에서, “장단부長湍府를 현縣으로 강등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남편을 죽인 죄인 복섬卜蟾이 거주한 곳이기 때문이다.

127

장단 학생 홍재관의 아내 심씨의 열행 1867년(고종 4) 12월 28일

경기어사京畿御使 박재관朴齊寬, 영남어사嶺南御使 박선수朴瑄壽가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하여 별단別單을 올리니, 벼슬을 추증하거나 표창하는 문을 세워줄 것을 명하였다. 【…장단長湍의 고 학생 홍재관洪在寬의 아내 심씨沈氏는 열행으로 모두 마을에 표창하는 문을 세워주었다.】

128

장단의 정공을 다시 현물로 상납하도록 하다 1868년(고종 5) 6월 1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보고를 보니, ‘장단長湍은 궁방宮房의 결세結稅가 많기 때문에 원래 조세를 내야 할 토지는 1천 1백여 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官에서 상정詳定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그에 따라 줄어드니 각 항목의 수용需用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갑자년에 대동세大同稅를 영원히 대전代錢하도록 정하고 그것을 도결都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세전免稅田 500여 결을 타읍他邑으로 이송移送하고 또 조사하여 찾아낸 결도 있고 해서 정공正供을 넉넉히 본색本色으로 마련하여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공을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법이 아니며 또한 해읍該邑의 결총結總이 이제 넉넉해졌으니 이전대로 본색으로 상납하도

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129

각도 5영 중 장단을 우영장에 삼다 1870년(고종 7) 윤10월 10일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 및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각도各道에 5개 진영鎭營을 두는 것이 바로 1영營 5사司의 제도입니다. 경기京畿에서는 이천利川을 전영장前營將으로, 남양南陽을 좌영장左營將으로, 양주楊州를 중영장中營將으로, 장단長湍을 우영장右營將으로, 죽산竹山을 후영장後營將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5영입니다. 그후에 이천, 양주, 죽산은 수어청守禦廳에 이속移屬하고, 남양과 장단은 총융청總戎廳에 이속하였으니 기영畿營에서는 관장하는 직책이 없이 빈 명칭만 띠고 있으니, 실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상 5개 고을에서 경기 영장京畿營將의 직함을 모두 감하減下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희하였다.

130

장단부에 별포무사 200명을 두다 1871년(고종 8) 4월 17일

삼군부三軍府에서, “남양부南陽府에 별포군別砲軍 100명名, 장단부長湍府에 별포무사別砲武士 200명, 고양군高陽郡에 포수砲手 70명, 가평군加平郡에 포군砲軍 20명, 양천현陽川縣에 포수砲手 43명, 문경현聞慶縣에 포군 50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131

도적 이수천을 장단에서 압송해오다 1879년(고종 16) 3월 2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우 포청左右捕廳의 보고를 보니, ‘윤리와 강상綱常을 어그러뜨린 도적 이수천李守千을 장단長湍에서 압송해 와서 자세히 심문하였더니 전후로 행한 흉악한 범행에 대해 모조리 실토하였으며, 김준여金俊汝는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하나 완전히 용서해 주기는 곤란하므로 모두 본 청에 단단히 가두어 놓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놈들의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한 정절情節은 바로 만고에 없었던 변고로서 만 번 살점을 발라내는 것으로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귀신과 사람이 함께 통분해하고 왕장王章이 매우 엄한 만큼 간혀 있는 죄인 이수천은 추조秋曹로 이송하여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고, 김준여는 비록 어리석고 미련한 부류긴 하나 이미 추중한 자취가 있으니 역시 추조로 하여금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배遠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132

도적을 체포한 장단의 기찰 포고를 포상하다 1879년(고종 16) 3월 29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윤리와 강상綱常을 어그러뜨린 도적놈을 지금 막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일반 도적을 체포한 것과 다르니 그때 체포한 장단長湍의 기찰 포고讞察捕校에게 격려하는 뜻으로 상전賞典을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 좋은 지방의 변장邊將 자리를 비워 차송差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33

세금 거두는 곳을 줄여달리는 장단 고랑포 백성들 1903년(고종 40) 12월 10일

서경西京에서 돌아온 대신大臣 이근명李根命을 소견召見하였다. 이근명이 아뢰기를, “신이 장단長湍 고랑포高浪浦를 지나는데 수백 명의 백성들이 도로에 몰려와서 호소하기를, ‘잡세雜稅가 번다하여 본 포구로부터 강화江華까지 1백 리도 안 되는데 세금을 거두는 곳은 열여덟 곳이나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사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물가도 이 때문에 뛰어 오르고 있으니,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엄격히 신칙하여 혁파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목 없는 잡세를 혁파하라는 명이 거듭 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여전히 이렇단 말인가? 그 중에는 또한 반드시 정세正稅도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근명이 아뢰기를, “균역세均役稅 외에는 모두 잡세입니다” 하였다.

『일성록日省錄』

1

장단 등 경기지역의 재해 피해 처결에 관한 경기감사의 장계 1776년(정조 즉위년) 9월 29일

○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이것은 경기감사 정광한鄭光漢의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가평加平과 포천抱川은 우심에 두고, 장단長湍 등 7개 고을은 지차에 두고, 광주廣州 등 28개 고을은 초실에 둔 분등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소서. 포천은 가장 재해를 입은 고을이므로 북한北漢에서 이 전移轉한 것은 우선 본현에서 받아서 보관할 것을 허락하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구환舊還 5천 섬 가운데 절반을 감할 것을 허락하라고 청한 것은 모두 허락하소서” 하여, 모두 따랐다.

2

대동미를 장단 고랑포로 운반하지 말고 돈으로 상납하도록 청하다 1777년(정조 원년) 4월 5일

○ 좌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강원감사 김이소金履素가 장계를 올려, ‘이천과 안협의 대동세米大同稅米를 장단長湍의 고랑포阜浪浦 어구로 운반하는 것은, 멀리 수송하는 수고로움이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두 해 돈으로 상납한 예가 있었으니,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품쳐해 주소서’ 하였 습니다. 일찍이 백성의 고통으로 인하여 비록 가끔 특별한 은전恩典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그대로 상 법常法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 그대로 두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작년에 본도本道の 농사가 흉년이 들었 으니, 대동미는 금년에 한하여 청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3

장단 등 여러 지역의 봄 윤조를 중지하다 1779년(정조 3) 1월 9일

○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수어사守禦使 홍낙성洪樂性이 장계하였는데, 본청 소속 삼영三營의 속오 군과 좌우부左右部 아병牙兵들의 금년 봄 합조合操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용사總戎使 김효대金孝大가 장계하였는데, 파주坡州와 장단長湍의 금년 봄 윤조輪操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 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유언호俞彦鎬가 장계하였는데, 본영 군병의 금년 봄 습조 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화유수江華留守 이복원李福源이 장계하였는데, 본 영의 군병과 본영에 소속된 네 영 군병의 금년 봄 합조를 설행할 것인지 여부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 여 분부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내 여러 고을이 진흥을 설행하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때에 조련을 행한다면 백성의 사정이 염려스러우니, 수어청의 합조와 총용청의 윤조와 개성 및 강화의 춘조 를 설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모두 우선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4

장단의 죄인 이복흥을 풀어주다 1786년(정조 10) 8월 9일

○ 경기감사의 장계에, “형조가 장단의 유학 이익흥李益興이 격쟁擊錘하여 원정原情한 일로 인하여 도신 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라고 청하였습니다. 신문訊問할 사람들을 모두 감영에 올리고 별 정 강명관別定剛明官인 이천 부사利川府使 심규沈錕, 가평군수加平郡守 조광규趙光遠, 교하군수交河郡守 이의강李義綱을 본영에 모이게 하여 직접 죄안을 가지고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작년 겨울에 시작되어 옥안 獄案이 신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복흥 부자의 경우 아들이 원범元犯이 되고 아버지가 간권 인干連人이 되었으며, 이석춘李石春 부자의 경우 아버지가 피살되고 아들이 간증인看證人이 되었으니, 살육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일이고 정황과 자취가 불분명하여, 신이 올린 검장檢狀에서 서두에 먼저 7, 8할은 의심스럽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익홍이 원통함을 호소한 일로 인하여 특별히 조사하여 계문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신이 문안文案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참고해 보니, 애당초 의심했던 것이 지금 과연 모두 드러났습니다. 실인實因과 사증詞證이 모두 증빙할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옥안이 이미 신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서 어리석은 견해를 고집하여 스스로 자신의 과실을 꾸며대는 잘못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익홍의 원정 내용은 완전히 날조한 것입니다. 형을 위해 호소한 것이 비록 지극한 인정人情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용서하기 어려우니, 본영에서 엄하게 감처勘處하겠습니다” 하였고, 해조의 회계回啓에, “이 옥사의 실인과 사증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석춘이 원래 병약한 사람인데 눈길에서 붙잡혀 추운 뜰에서 곤장을 맞았고 또 돌림병까지 겹하였으니, 요컨대 그가 죽은 것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밧길에 차였기 때문이 아니라 도신의 말이 사실일 듯합니다. 그러나 옥사의 체통이 지극히 중하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죽은 것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밧길에 차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시장屍帳이 격식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고, 참고하여 증거할 만한 이웃이 하나도 없으므로 사안詞案을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게다가 또 부자가 공범인데 그 아들을 원범으로 정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무슨 법례法例인가. 세 가지의 어긋난 단서가 잘못 아님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그가 원통함을 호소한 일로 인하여 특교로 조사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애당초 검장에서부터 이미 7, 8할이 의심스러웠다는 말을 했다고 사계查啓의 발사跋辭에 장황하고 번다하게 늘어놓았다. 성옥成獄한 옥안을 이처럼 거리낌 없이 뒤집고 있으니, 옥사의 체통을 엄히 하고 인명을 중시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전의 견해를 고집하고 굳게 바꾸지 않아서 허물을 꾸며대고 법을 농락하는 죄를 더하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참작하여 용서할 만한 단서가 있으니, 해당 도신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고, 본조에서 함사緘辭를 보내 공초를 받아 아뢰라. 정범正犯 이복홍은 참작하여 풀어주고, 격쟁한 이익홍은 말이 실정에 지나친 점은 많으나 일이 사실에 어긋난 것이 없으니, 해도로 하여금 참작하여 징계하고 풀어주게 하라” 하였다.

5

장단과 회양의 화재를 당한 민가를 규례를 초월하여 구제하라고 명하다 1787년(정조 11) 2월 14일

○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장단부長湍府의 민가 31호가 화재를 당해 연달아 불타다고 아뢴 데 대해, 하교하기를, “이러한 흉년에다 춘궁기를 만난 상황에서 불탄 민호가 이처럼 많으니, 살 곳을 잃은 형상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참혹하다. 도백에게 신칙하여 규례를 초월하여 구제해서 기어이 속히 거처

를 정하게 하라. 5일에 화재를 당한 상황을 오늘에서야 등문登聞하니, 이런 수령에게 수령의 직임을 책임 지우기는 어렵다. 해당 수령을 엄중히 감죄勘罪해야 하지만 영송迎送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지금 우선 참작하겠다. 신칙하지 않은 도백을 우선 추고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

장단부사 어재연이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할 것을 요청하다 1864년(고종 1) 12월12일

○ 의정부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조재응趙在應의 보고를 보건대, 장단부사 어재연魚在淵의 청정縣 稔을 낱알이 들어가면서 ‘본읍의 전결田結 총수 중에서 잡탈雜額을 제외한 전세田稅를 내는 실결實結이 매년 1천 8, 9백 결이고 보면 대동세大同稅가 1천 5, 6백 석이고, 전세가 6, 7백 석인데, 이 두 세稅를 상납上納할 때의 잡비 도합 1천 8, 9백 냥兩을 결호結戶에게 더 걷습니다. 근래 영읍營邑의 구폐조救弊條를 면세免稅로 이획移劃한 것이 1천 1백 70여 결이고 보면 세를 내는 실결이 5, 6백 결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영읍의 관수官需와 저치儲置를 빼고 나면 실지로 상납하는 대동세가 1백 석 미만이며, 전세도 2백여 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천 냥에 가까운 잡비를 세를 내는 5, 6백 결에 배정해 걷다 보니, 매년 결가結價가 거의 20여 냥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민民이나 관官의 형편이 갈수록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니, 상항上項의 대동세로 받는 미태米太를 풍흉豐凶을 참작하여 돈으로 대납代納하고, 잡비도 돈으로 대납할 것으로 마련한다면 상정법詳定法의 대봉代奉과는 다름이 있어서 피폐한 국면의 소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말하였습니다. 강창江倉에서 방납防納할 때에 정비情費를 지금도 여전히 읍납자邑納者에게 징수하는 것은 이미 사리가 아닌데, 하물며 3백여 석의 대동세를 받아들이는데 어찌서 정비가 2천 냥 가까이 되도록 많다는 말입니까. 이 한 건을 호조와 선혜청으로 하여금 각별히 재정해서 해마다 갈등하는 우환이 없게 하시고, 세액稅額도 그리 많지 않으니, 풍흉을 참작해서 돈으로 대납할 것을 허락하는 것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이런 뜻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2

장단부사 어재연에게 표리 한 벌을 내려 포장하다 1864년(고종 1) 12월 17일

○ 장단부사 어재연魚在淵에게 유서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전죄殿最는 큰 정사이다. 해마다 두 차례 석 고적考績하는 법의 뜻이 매우 엄중한 것은 민생의 고락苦樂이 오로지 장리長吏가 잘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루도 백성들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금년 추동등(秋冬等)의 포핼 계본을 보건대 도신이 그대를 고과(考課)한 대목에 간성(干城)·순량(循良)으로 지목하기까지 하였다.

돌아보건대 이 장단은 장부(帳簿)가 문란하여 논밭의 구분도 없고, 세금이 번다하여 이포(里布) 길쌈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과금으로 물리는 벼·옥속(屋粟)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 벌과금으로 물리는 곡식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데다가 덧붙여 사신의 행차마저 잇따르므로 관방(關防)이 점점 소홀해져서 조정의 근심이 되고 있는 지가 오래이다. 그런데 그대가 씩씩한 자질로서 관대한 정치를 하여 곤임(困任)으로서의 실적을 스스로 기약한 것을 이미 오늘에 징험할 수 있다. 내 가상하게 여겨 자전의 분부를 받들어 특별히 그대에게 표리 한 벌을 내리니, 그대는 받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는 좌부승지 이경호가 지어 올린 것이다.

3

경비를 빼돌린 장단부사 이교헌을 파면시킬 것을 청하다 1866년(고종 3) 6월 10일

○ 경기감사 유치선(俞致善)이 장계에, “내탕고의 재화를 특별히 하사한다는 자상한 윤음에 백성들을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 무릇 지방관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군명을 천하에 펼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여 곡식을 나누어줄 때 발생하는 구전(口錢) 등 난잡한 명목에 대하여 그 잘못된 폐단을 강력하게 혁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 혜택을 널리 입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묘당에서 거듭 신칙하였고, 신도 또한 감영의 이속(吏屬)을 파견하여 조사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단부사 이교헌(李教獻)이 고을의 관례가 있다 하며 경비를 제멋대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것이요 명령을 위반한 죄를 범한 것이니 그대로 둔 채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그를 파면시키고 그 죄상을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답하라. 비단 이 일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매번 돈과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때마다 감영과 고을에서 농간 부리는 것에 대하여 항상 한탄해 오던 바였다. 이번의 일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내탕금과 곡식은 본시 조정에서 고심하여 만들어낸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신칙까지 하였다. 만약 수령 된 자로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로 정성을 다해 받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거늘, 농간에 대해 하리들을 조사하지 않아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돌아갔으니 징계의 원칙에서 볼 때 결단코 엄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람에게 병든 아버지가 있다 하니 특별히 관대한 뜻을 보여 의금부에 잡아와서 한 차례 엄형을 가한 후 풀어주라” 하였다.

4

임소에 있는 장단부사 이교헌을 서리를 보내 잡아오게 하다 1866년(고종 3) 6월 11일

○ 의금부가 아뢰기를, “경기감사 유치선이 장계를 올려 장단부사 이교헌이 특별히 비축한 물자를 나누어줄 때 고을의 관계가 있다 하며 제멋대로 경비를 빼돌린 것에 대해 우선 파면하고 그 죄상을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품처할 것을 아뢰니, 그에 대한 재가에서 특별히 관대한 뜻을 보여 의금부에 잡아와서 한 차례 엄형을 가한 뒤에 풀어주라고 하명하셨습니다. 이교헌이 지금 임소에 있으니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書吏를 파견하고 검입할 이웃 수령을 임시로 차임한 뒤 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나수하라” 하였다.

5

장단부사 이교헌을 신장 30대를 치고 풀어주다 1866년(고종 3) 6월 12일

○ 의금부가 아뢰기를, “장단부사 이교헌이 지금 명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수한 뒤 한 차례 엄형에 신장訊杖 30대를 친 뒤 풀어주겠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6

남편을 살해한 죄인 복섬이 살았던 장단의 도호부사를 현감으로 강등시키다 1866년(고종 3) 6월 13일

○ 이조가 아뢰기를, “의금부 초기에 따라 남편을 살해한 죄인 복섬과 계획적으로 본 남편을 살해한 죄인 옥섬 등이 이미 사형을 받았으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그 자녀를 노비로 삼고 집을 부수어 못을 만들며 음호邑號를 강등시키는 일에 대하여 각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받들어 거행할 것을 윤허하셨습니다. 음호의 강등은 바로 본조에서 거행하여야 할 일이므로 의금부에 물어 보았더니 남편을 살해한 죄인 복섬은 경기 장단長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단 도호부사를 현감으로 강등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7

장단은 결복의 총수가 충분해졌으므로 정공을 예전대로 상납하게 하다 1868년(고종 5) 6월 16일

○ 의정부 아뢰기를, “방금 호조와 선혜청의 보고를 보니, ‘장단長湍은 궁결宮結이 과다한 소치로 원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이 1100여 결에 지나지 않으므로 관청에서 상정하여 거두어들이는 것도 따라서 감소하여 각 향의 수용需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갑자년에 조세와 대동미는 영구히 돈으로 대납하도록 정하여 도결糶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금이 면제된 500여 결을 다른 고을로 이송하였고 또 조사하여 얻은 결복이 있으므로 정공正供은 본색으로 갖추어 납부하기에 충분함

니다' 하였습니다. 정공을 상정하여 대납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 떳떳한 법이 아니고 해당 읍도 이제는 결복의 총수가 이미 충분해졌으니, 예전대로 본색으로 상납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8

장단부 향교의 대성전을 개수할 때 고유제 등에 쓸 향축을 내려보내다 1871년(고종 8) 9월 19일

○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박영보朴永輔의 이문移文을 보니, ‘장단부長湍府 향교의 대성전이 지은 지 오래되어 비가 새므로 지금 개수하려 하니, 고유제告由祭, 이안제移安祭, 환안제還安祭를 지내는 데 쓸 향과 축문을 본조에서 계품하여 내려보내 달라’ 하였습니다. 장단부 향교의 대성전을 개수할 때 먼저 사유를 고하고 이안제와 환안제를 지내는 데 쓸 향과 축문을 즉시 해사로 하여금 규례에 비추어 마련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고, 편리한 대로 날을 정해 설행하도록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9

장단의 유생은 개성부의 정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다 1872년(고종 9) 1월 11일

○ 또 아뢰기를, “이번에 개성부에서 설행하는 정시에 대한 사목事目을 마련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삼가 경신년의 등록을 상고해 보니, 본 개성부의 유생 이외에 장단長湍이나 풍덕豐德 고을의 유생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계품하여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에 의거해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10

죄인을 체포한 장단의 기찰 포교에게 상을 내리다 1879년(고종 16) 3월 29일

○ 의정부가 아뢰기를,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법도를 어긴 도적놈을 지금 막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는 일반 도적을 체포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그때 체포한 장단長湍의 기찰 포교에게 격려하는 상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 보아 좋은 지방의 변장邊將 자리를 내어 차임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11

세곡의 납부 기한을 넘긴 장단의 수령을 잡아서 처벌하게 할 것을 청하다 1881년(고종 18) 3월 17일

○ 이승우가 주교사舟橋司의 말로 아뢰기를,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법의가 본래 엄중합니다. 경기도 고을의 배로 운반하는 세곡稅穀은 3월 보름 전에 다 납부하여 이미 이정 사목釐正事目에 실려 있는데, 장

단長湍과 양지陽智, 양성陽城 등의 고을은 이미 해당 기한을 넘긴 데다가 진성陝省도 와서 올리지 않았습니
다. 정식에 관계되는 것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의 세 고을 수령을 모두 해부로 하여금 나쳐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

장단 동파참의 발막이 파괴되었다고 보고하다 1638년(인조 16) 9월 16일

아뢰기를 “본사 낭청 홍근洪瑾을 파견하여 서로西路의 각 역참의 파발을 조사하게 하였더니 … 장단長
湍 동파참東坡站의 발막이 파괴되어 있고 … 각 지방관이 신중히 돌보지 않고 신척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
으니 자못 편리하지 못한 일입니다. 탈이 있는 각관各官을 추고하고 아뢰라는 뜻으로 경기·황해 평안도
등의 감사에게 공문을 보냄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2

교초를 장단 사목도의 철폐한 목장에서 베어 사용한다는 사복시의 보고 1641년(인조 19) 10월 21일

아뢰기를 “경기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올린 본사의 점목粘目에 대하여 전교하시기를 ‘여기 표를 붙인
내용에 아문衙門에 들어가는 시초柴草가 이처럼 많은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물어 아뢰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아문에 물어 보았더니, 사복시司僕寺에서는 말하기를 ‘교초郊草는 장단長湍 사목도沙牧島에 있는
본사本寺의 철폐한 목장에서 둔민屯民들에게 품삯을 주고 베게 하여 내사복과 외사복의 마굿간 앞뒤에다
가 넣어놓은 다음, 살곶(篙串)에 방목하고 있는 말을 잡아다 나눠주어 기르게 하기 전까지는 호조에서 원
립마元立馬 외에는 말 먹이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초로 기르고 있다 …’”

3

장단의 글씨를 잘못 써서 벌을 받은 서사 1642년(인조 20) 3월 19일

아뢰기를 “수어사守禦使 장계의 점목粘目에 대하여 전교하시기를 ‘이 일은 수어사에게 물어서 회계回
帳한 것인가를 물어 아뢰라’ 하셨습니다. 어제 본사의 합좌合坐에는 수어사 심기원沈器遠도 와서 참여
하여 신 등과 더불어 상의하여 회계하였습니다. 또 장단長湍의 단湍자를 정서할 때에 체滯자로 잘못 썼
기에 서사書寫의 허물을 다스려 벌을 주고 표를 붙여 고쳐 올림을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
였다.

4

장단에 방출한 곡물을 전액 거두어 들이다 1675년(숙종 1) 9월 24일

영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현재 남한南漢·강도江都에서 옮겨진 곡물은 비록 그 수에 따라 거두지 않을 수 없는 일이나 이러한 흉년을 맞이하여 반드시 수에 따라 본소本所에 내게 하려면 수송에 소모되는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봄에는 마땅히 구호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바친 것을 다시 가져오려면 더욱 그 폐단이 있으니 그 반은 본읍에 거두어 유치留置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개성부·장단長湍에 방출한 곡물은 전액을 거두어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5

장단부를 현으로 강등시키다 1676년(숙종 2) 8월 9일

이비吏批로 아뢰기를 “죄인 장득선張得善·장무신張戊申·이인립李仁立 등은 이미 형률을 정하였으니 법례法例에 의해 그 수령을 파직하고 그 읍호邑號를 낮추라는 일로 재가하였습니다. 방금 의금부의 공문을 접했는데 장득선·장무신은 당시에 장단부長湍府에 살고 이인립李仁立은 당시 풍덕부豐德府에 살았으니, 장단부사 이지원李枝遠과 풍덕부사 이목李穆을 아울러 파직해야 합니다. 풍덕부는 능침陵寢이 있는 곳이어서 읍호를 낮추지 못하지만 장단부는 마땅히 현縣으로 강등시켜야 하는데, 본부의 당시 겸방어사兼防禦使는 적당히 헤아려 변통하는 거조가 있어야 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하였다.

6

장단부의 많은 백성이 굶어 죽다 1683년(숙종 9) 5월 14일

전교하기를 “지금 이조참의의 상소를 보고 굶어 죽은 장단부長湍府 백성이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알게 되니, 놀랍고 비참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당해 청으로 하여금 본도에 분부, 부안扶安선비의 예에 의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게 하라” 하였다.

7

능역에 동원된 장단 백성들의 대동미를 감해준다 1685년(숙종 11) 10월 15일

아뢰기를 “이번 10월 14일 약방도제조 김수홍과 영의정 김수항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금년에 장단長湍·풍덕豐德 등의 고을이 가장 재해가 심한데 후릉厚陵(정종능)·순릉順陸(성종비 한씨韓氏능)의 사초莎草와 공릉恭陵(예종비 한씨능)의 정자각丁字閣을 증진하는 일과 궁가의 예

장을 천장遷葬하는 일들이 일시에 답지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고을의 주민들이 아직도 추수를 못하고 있다 하니 백성의 일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상계서도 이미 이러한 폐단을 하념下念하고 계시지만 대체로 근래에 풍수설이 크게 유행하여 세가 있는 집안은 선뜻 이장을 피함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니 이는 실로 경기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예장을 했던 묘소라도 천장할 때에는 모든 일을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였고, 약방도제조 김수흥이 아뢰기를 '이번 여러 능침의 역사와 예장의 일은 비단 장단과 풍덕 백성들의 고역만이 아니라, 입역立役한 3참站도 다름이 없으니 민역의 건디기 어려움이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금년의 대동수미大同收米를 특별히 참작하여 감해주어 진휼하는 뜻을 보이시면 아마 조금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니, 상계서 이르시기를 '천장의 번거로움이 요사이처럼 심할 때는 없었다. 이 뒤로는 천장할 때에는 모든 일을 참작하여야 하겠으나 3참과 풍덕 백성의 고역을 건디기 어려움을 나도 생각하고 특별히 진휼을 베풀려고 하였다. 풍덕의 수미收米를 감해주는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셨습니다.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 3참과 풍덕의 수미를 감해주는 일은 수조안收租案이 마감된 뒤에 참작해서 의논하여 결정하려 하였는데 수조안이 지금 겨우 올라왔으니 내 고을 봄철 수미는 응당 내야 할 매결每結 6두 내에서 각각 2두씩을 감해준다는 뜻을 선혜청과 본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8

장단, 고양, 파주의 3참과 풍덕의 세수미를 감해주다 1686년(숙종 12) 1월 3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을축년乙丑年 10월 14일에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 김수흥金壽興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올해 장단長湍·풍덕豐德 고을의 재해가 가장 심한 데 후릉厚陵과 순릉順陵의 풀을 뜯고, 공릉恭陵의 정자각T字閣을 중건重建하는 역사 및 궁가宮家의 예장禮葬·천장遷葬하는 일이 한꺼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곳 가까운 고을에 사는 백성들이 아직껏 추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 백성들의 일이 참으로 염려되는데 상계서도 이미 이런 폐단에 대해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대개 근래에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여 권세가 있는 집이면 문득 이장移葬을 하는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있어 이것이 경기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입니다. 이후에는 비록 예장해야 할 상喪이 있거나 이장할 때 모든 일을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고, 약방도제조 김수흥은 아뢰기를, ‘지금 여러 능陵의 역사 및 예장하는 일은 비단 장단과 풍덕이 민역民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로直路의 3참站 역시 다름이 없어 그곳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올

해 받아들일 쌀을 특별히 헤아려 말과 수를 감해주어 진흙하는 뜻을 보인다면 거의 약간의 혜택이라도 될 것입니다’ 하니, 상께서 ‘묘소 이장의 번거로움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다. 이후에는 이장할 때 모든 일을 참작해서 해야 마땅하며, 3참站 및 풍덕의 민역民役이 지탱하기 어려움을 나 역시 생각하고 있어 장차 위로하여 진흙하고자 하였는데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3참 및 풍덕의 수미收米를 헤아려 감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일로 분부하셨습니다.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 3참 및 풍덕의 거두어들이는 쌀의 말수를 헤아려 감하는 일은 수조안收租案을 마감하기를 기다린 후 참작해 의논하여 정하고자 하였었는데, 수조안이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4고을의 봄철분 쌀 징수는 응당 바쳐야 할 6두斗 가운데서 각기 2두를 감하라는 뜻으로 해당 청廳 및 본도本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9

강화에 귀속되었던 장단의 군병을 되돌려주다 1687년(숙종 13) 2월 15일

이번 2월 1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김수항이 아뢰기를 “충용청의 군병을 남한산성과 강화에 떼어 주고 남은 숫자가 매우 적어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일具鎰이 충용사가 된 뒤에 변동시킬 대책을 신에게 개인적으로 의논하였고 그대로 장계로서 아뢰었습니다. 당초 신의 생각으로는 미곡을 거두고 번을 서게 하는 것이 대단한 방해는 안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허락하여 시행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묘당에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의논이 많고, 또한 수원은 독립된 진영鎭營이므로 그 군병을 요동시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곡을 거두는 법은 다른 고을에만 시행되어 한 군문에 소속된 군병으로서 규제는 각기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의 의논이 그르게 여겼으니 이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이같이 논의가 일정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이로움과 병폐도 알 수가 없으니 억지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이밖에 변동시키려 해도 달리 좋은 대책이 없습니다. 만약 장단長湍에 군병을 더 주어 수원과 두 영이 되도록 하면 가장 편리하겠는데 이는 좌의정의 뜻이 같을 뿐만 아니라 원임 대신의 차자箚子 내용도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다만 고양高陽과 교하交河 두 고을의 군병을 충용청에 다시 귀속시킨다면 강화에 떼어 주었던 군병의 숫자가 감소될 것이니 이것이 염려스럽고, 또한 강화에서 방어하는 군병은 산성에서 성첩城堞을 지키며 늘어서 있는 군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풍덕豐德은 강화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으나 고양과 교하는 두 고을의 군병을 통계하더라도 5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강화에 있어서는 크게 손익 될 것이 없으나 장단에 있어서는 도움이 적지 않으니 지금 마땅히 장단에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장단은 이미 방어사의 경내이고 또한 무사들이 많아 계해癸亥

(인조 1년, 1623) 반정反政 때에는 오로지 이들의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만약 경내 무사들의 군오軍伍를 모두 본 고을에 소속시키기를 수원의 규례와 같이 한다면 비록 수원과 같을 수는 없더라도 큰 진鍊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충용사가 군제의 변통을 요청한 것이 당초에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으나 마침내 형편상 곤란한 바가 있었으니 강화에 귀속된 고양과 교하 두 고을의 군병을 되돌려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겠다” 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두 고을 군병을 되돌려 주는 일이 지금 결정되었으나 그 사이에는 마땅히 절목을 강론하여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좌의정과 우의정 및 여러 당상들과 함께 절목을 마련한 뒤에 여쭙고 결정해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0

장단의 송서면을 되돌려달라고 청하다 1693년(숙종 19) 10월 14일

이번 10월 1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송도松都 백성들의 상언上言을 품의 처리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상언에서 청한 바의 항목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칙사 비용의 절반을 강원도에 배정하거나 혹은 호조로 하여금 칙사 행차가 있을 때마다 은화 1천냥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일이고, 하나는 개시開市 때의 물품을 해서의 예대로 경기 전도에 나눠서 책정해달라는 일이며, 하나는 본부 속오군束伍軍의 수미收米를 내수사 노비의 예대로 10두씩만 받게 해달라는 일이고, 하나는 금천金川의 옛 읍터와 장단長湍의 송서면松西面 풍덕豐德의 수면水面을 본부에 환속하여 달라는 일입니다. 칙사 비용과 개시의 물품을 본부에서 독당獨當하고 있으니 호원呼冤할 만하기는 하나 본부는 백성이 근 1만 호가 되는데 모두 행사行商으로 생업을 삼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한 청廳씩을 나눠서 맡아 집집마다 은화를 내고 해마다 이식을 늘려 그 이자로 칙사 비용도 쓰고 혹은 개시에 보내기도 하니 어떤 것이고 크게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강원도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물력이 형편없는데 지금 어떻게 칙사 비용을 더 배정할 것이며 호조에서는 어디에서 판출辦出하여 해마다 1천금을 지급하겠습니까? 또 경기 백성의 신역은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고되고 매년 춘추로 능행을 뒷바라지하는 비용도 다른 도에는 없는 바여서 지금 견역緡役하는 일을 의논하고 있으나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터인데 어떻게 더 부과하겠습니까? 충용청에는 다른 세입은 없고 송도의 속오군 1명당 쌀 한 섬씩을 받아 1년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으니 고되다고는 하겠지만 변통하기에는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장단의 송서면과 풍덕의 수면은 무단히 할속割屬할 수 없을 듯하며 금천군에서 당초에 읍을 설치한 곳은 본래 본부의 땅이었고 금천에서 이미 읍을 옮겼으니 의당 본부에 환속하여야 하겠으나 그곳이 금천에

말린 지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역에 편입된 자가 많은데 지금 송도에 환속되면 금천에서는 제반 결액(額)을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또 송도에서는 오로지 부내의 민호에서 역이 나오고 토지에서는 전세만 받아 용도에 보태 쓰고 있으니 토지의 넓고 좁음은 본래 큰 관계가 없으니 역시 환속하기 어렵겠습니다” 하고, 행호조판서 오시복(吳始復)은 아뢰기를 “칙사 행차 때에는 강원도에서도 으레 약간 실어 보내는 물건이 있었으나 각 읍에서 제때에 실어 보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뒤로는 각별히 신칙하여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네 가지 일은 변통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나 강원도에서 실어 보내는 칙사의 수용(需用)은 제때에 실어 보내라고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1

잔폐한 고을이 되어버린 장단 1694년(숙종 20) 11월 29일

이달 28일 삼복(三覆)에 관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총용사 이기하(李基夏)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순행(巡行)하여 수원(水原)에 도착하니 수원은 곧 무향(武鄉)입니다. 장교는 약간 군법(軍法)을 익혔고 부사도 군무에 뜻을 두어 착실히 거행한 일이 많았으나 오히려 허술한 곳도 없지 않았습니다. 남양(南陽)은 본래 음관(陰官)으로서 군무(軍務)에 숙달(熟達)하지 아니하여 비록 진흥시키려 하나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 하니 이는 사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장단(長湍)의 경우는 본래 문·무관을 교대로 차출하는 읍으로서 지금 잔폐한 고을이 되어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신이 직접 본 바로서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신이 돌아와 대신을 뵈고 이 문제를 말하니 대신도 생각한 바가 있으면 아뢰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3개 영을 모두 무관으로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마침 하문을 받들어 감히 이를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는 의견이 없지 않으니 해사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2

장단 현화창의 곡식을 인근 고을이 나누어주지 않은 개성유수를 벌하다 1706년(숙종 32) 11월 8일

승지 이징귀(李徵龜)가 아뢰기를 “신이 장단(長湍)에 재직하고 있을 때 이 일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현화창(玄化倉)이 장단(長湍) 경내에 있는데, 부근 각 고을에서 모두 나누어 받아갈 곡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 풍덕부사(豐德府使) 박창한(朴昌漢)이 본읍에서 나누어 받을 곡식을 받아가지고 가겠다는 뜻을 개성부에 보고하였는데, 그때 유수(留守) 엄즙(嚴緝)은 서목(書目)이 없다고 핑계하면서 사체에 부당하다 하여 그 보장(報狀)을 퇴각(退却)하였습니다. 박창한이 말하기를 ‘관하(管下)가 아니니, 서목으로 첩정(牒呈)하는 규정이 없다’ 하고서 인

하여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금년 봄에는 흉황凶荒이 특히 심하여 받아먹기를 바라는 백성들이 반드시 받아먹고자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서목을 갖추어 첩정했더니, 유수 한성우韓聖佑는 때가 늦었다고 하면서 이전移轉을 허락하지 않아 풍덕 백성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임의대로 받아가지 않은 것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하였고, 민진후가 아뢰기를 “체례體例를 서로 다투다가 쌀을 받아가 백성을 구제하지 않았으니, 이미 놀라우며, 수령은 유수에 대하여 사체가 자별한데 서목을 갖추어 첩정하는 것이 무슨 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부당합니다. 승지가 이미 실상을 자세히 진달하였으니, 장계의 말이 몽롱하다 하여 다시 본부와 본도에 사문査問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에 이르기를 “승지가 장단에 있을 때 곡절을 자세히 알았으니 별로 다시 물을 일이 없다”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명년부터 사목에 의해 받아가라는 일을 풍덕부에 신칙하고, 서목을 갖추어 첩정하라는 일 역시 정식定式하여 분부해야 하며, 한성우는 몽롱하게 치계하여 역시 잘못이 있으니,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된 대로 하라” 하였다.

13

장단 송서면을 송도에 붙이는 것을 논하다 1710년(숙종 36) 4월 21일

이번 2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판돈령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본부는 비록 옛 도읍都邑이지만은 지역이 매우 좁아 한 자그만한 고을에도 미치지 못하니, 인구는 많고 땅은 좁아 경작할 수 없습니다. 상인으로서 장사를 하는 이외에는 사방으로 떠도는 자가 대부분이며, 십수년 내려오면서 민호民戶는 전에 비하여 반으로 줄었습니다. 대흥산성大興山城이 본부에 소속되었으니 곧 관방關防의 중요한 곳입니다. 진실로 본부에 편리한 점이 있다면 조정에서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송도의 옛 동대문 밖은 곧 장단長湍 고을의 송서면松西面입니다. 길이는 불과 20리요, 넓이는 7~8리 또는 4~5리로서 땅은 메마르고 부역은 번거로워 곳곳이 황폐되었으니, 장단에 있어는 그다지 긴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송도에 베어 붙인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그 세稅가 없음을 좋아하여 서로 잇달아 옮겨 살 것입니다. 화장산華藏山의 남쪽 기슭에서 분지천分地川을 한계로 송도에 베어 붙이면 진전陳田을 개간하고 관방도 겸하여 충실해질 것이니, 이는 실로 양쪽으로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비록 경계를 베어 옮기는 일이 불편하나 근래 대구大丘 하동河東에도 땅을 베어 이속移屬시킨 예가 있습니다. 더구나 본부의 관방의 중대함은 두 고을에 비길 수 없습니다. 대신 및 여러 재신宰臣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계를 베어 옮기면 장단에서 좋아 하겠는가?” 하였다.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송도는 과거 주민이 부요富饒하므로 관가에서 오로지 이로 인하여 힘을 입었으나

근래 잔폐殘弊함이 매우 심하고 지역도 작아 비록 경작하려 하나 개간할 땅이 없습니다. 경계를 베어 붙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래 다른 읍에 비록 경계를 베어 붙인 예는 있으나 역시 잇달아 변통할 수 없습니다. 장단은 비록 땅은 메마르고 부역은 무겁다 하나 베어서 송도에 붙이게 한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조태로趙泰老가 아뢰기를 “장단에서는 비록 잃더라도 손 되는 바는 많지 않고, 송도에서 얻는 경우 이익이 되는 바는 역시 큼니다. 지역이 곧 대흥산성 아래이니, 힘이 될 수 있음은 더욱 많습니다” 하였으며, 판윤 이언강李彦綱이 아뢰기를 “도신에게 물어 그 편의여부를 살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니, 임금 이 이르기를 “경계를 베어 붙이는 일은 갑자기 하기 어렵다. 묘당으로 하여금 도신에게 물어서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14

장단 송서면을 하천을 경계로 한쪽을 송도에 붙이다 1711년(숙종 37) 1월 23일

이번 정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개성유수 김만채金萬琛가 아뢰기를 “본부의 동문 밖 장단長湍의 한 면을 본부에 이속移屬하는 일을 전 유수 조태로趙泰老가 일찍이 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분이 없었습니다. 본부는 둘레가 아주 좁고 궁문宮門에서 5리 이내에는 조련장이 될 만한 평야가 없어 대오隊伍를 지어 정렬하거나 달리고 열병閱兵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의 접경인 장단의 이른바 송서면松西面은 황무지가 대부분인 땅입니다. 이곳을 본부에 떼어 주면 조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송도松都 백성들이 모두 개간도 할 수 있겠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송도는 둘레가 매우 좁아 장단의 송서면을 이속하는 일을 신과 유수가 밖에 있을 때에 상의한 것입니다. 이른바 판문교板門橋 근처를 본부에 떼어 붙이면 개간도 하고 조련장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하고, 좌의정 서종태徐宗泰도 아뢰기를 “경계를 분할하는 것은 사실 중난한 일입니다. 장단 역시 사보四輔註의 중지이나 송도는 지방이 몹시 좁아 동으로 5리쯤만 나가면 바로 탄 경내이므로 사민士民이 몹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송서 한 면에서 혹 절반이든지 혹 3분의 1이든지 하천으로 경계를 하여 송도에 이속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 이르기를 “송도는 땅이 매우 좁으니 장단의 한 면을 이속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분지천汾池川을 따라 동서로 경계를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15

장단에 독진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1712년(숙종 38) 4월 19일

이달 17일 주장에 입시하였을 때에 무신武臣 최진한崔鎭漢이 아뢰기를 “소신이 앞뒤 입시에서 곧 번거

몹게 아뢰어 매우 외람됨을 아오나 무신이 경연經筵 자리에 입시하는 것은 뜻하는 바가 본래 있었습니다. 감히 시딴생 생각이 있어 다시 이를 아뢰입니다. 근년에 소신이 외람되어 장단부長湍府에 있을 때에 그곳의 형편 및 물정에 듣고 본 바가 있습니다. 장단과 수원水原은 모두 도성에 가까운 곳으로서 좌우방영左右防營은 군제軍制의 배치가 마땅히 다름이 없어야 함에도 수원은 독진獨鎭을 설치하여 엄연히 군문의 모양이 있습니다. 병자년의 난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호위扈衛에 있어 수원이 앞장섰으니 독진의 효과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단의 경우 독진이 설치되지 않았으니, 신은 사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장단은 서쪽에 천마산天磨山이 있고, 동쪽에 임진臨津이 있습니다. 지리地利가 이러하고, 또 서쪽에서 오는 큰길에 자리하였으니, 그 요해要害인 점은 거의 수원보다 더하나 소속한 군병은 7개 고을에 흩어져 있어 마치 지방의 영장營將제도와 같으니, 설령 생각지 못한 급박한 사태가 있을 때에 아침에 명령을 발하여 저녁에 모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도성의 아주 가까운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사태에 믿을만한 관방關防이 될 수 없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원의 규례에 의하여 독진을 설치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논의하는 자는 비록 말하기를 ‘관계가 지극히 무거워 갑자기 변통함은 옳지 않다’ 고도 하나, 이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장단부 소속의 장사將士 및 경내의 논의는 모두 속히 변통하기를 원하여서 결코 민정民情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또 군정軍政으로 논하더라도 부민府民의 인구 1만 3천인 가운데 각각 소속된 명목은 비록 다르나 바꾸어 정하거나擘定) 획급하면 불과 한 번 조치하는 사이에 2~3천의 군정軍丁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니, 장정壯丁을 선발하는 새로운 일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본부의 무사武士로서 통속統屬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모아서 막속幕屬으로 삼으면 역시 2~3백의 친병親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원의 규례에 의하여 수시로 재예才藝를 시험하여 고무하고 격려하면, 궁마弓馬의 숙련은 반드시 수원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비록 갑작스런 사태가 생기더라도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품처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16

송도와 장단부의 경계를 수정하는 문제를 논하다 1712년(숙종 38) 4월 23일

이달 21일 개성유수開城留守 이아李堦가 청대請對하여 인견, 입시하였을 때에 이야기가 아뢰기를 “본부는 비록 고도故都라고 하나 지역이 매우 좁아 동교東郊 외에는 1보步도 남의 땅이 없고, 모두가 장단長湍 소속의 송서松西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성山城에 이르러서도 역시 송서 밖에 있으므로 산성과 영문營門이 멀어 맥락脈絡이 통하지 않아 일에 구애되는 폐단이 많습니다. 송서면松西面의 편입을 요청하는 논의는 곧 앞

뒤 수신(守臣)으로부터 나왔으며, 작년에 유수 신 김만채(金萬琛)가 경연(經筵)에서 여쭙 때에 대신 및 비변사의 여러 재신(宰臣)이 분지천(分地川)을 경계로 삼아 송도(松都)에 베어 붙일 것을 상의하여 탑전에서 결정하고 곧 송도 및 장단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장단 백성들이 경기감영(京畿監營)에 거짓 꾸며 호소하고, 비변사에 보고토록 함으로 하여 다시 경계를 감축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도 지연되어 처분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경계를 분지천으로 하면 송서면이 전체 소속이 되는 외에 또 송남면(松南面)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단에서 이를 중난(重難)하게 여겨 베어주지 않으려고 하니, 그 형편이 사실 이러해서입니다. 지금 참작하여 그 경계를 정하되 동북(東北)은 화장산(華藏山)의 중록(中麓)에서 서남(西南)으로 구정현(口井峴)과 가현(加峴)까지를 베어 붙이면, 당초 분지천을 경계로 하였던 것에 비하여 4분(分)이 감할 뿐만 아니라 장단부에서 잃는 것은 두메 척박(瘠薄)한 곳에 지나지 않으니, 별로 손해가 없으며, 송도에서는 비록 이곳을 얻더라도 역시 대단한 이익은 없으나, 지역이 산성으로 연결되어 중간에 장애가 없이 형세가 순탄하므로 비단 조련장(操鍊場)이 제자리를 잡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이 감히 그 지형을 그러왔습시다. 특별히 예람(睿覽)하신 뒤에 묘당에 하문하여 곧 경계를 정하여 베어줄 것을 경기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도본(圖本)을 보니 지금 요청한 경계가 분지천 범위에 비해서 감축된 것 같다” 하였다. 이아가 아뢰기를 “당초 베어주기를 요청한 경계에 비하면 과연 감축이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17

재해가 심한 장단의 신포를 감하다 1715년(숙종 41) 10월 29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최석항(崔錫恒)이 올린 경기 각 고을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눈 장계에, 장단(長湍) 등 11고을을 재해가 우심(尤甚)한 중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심한 고을의 각종 신포(身布)를 잘 헤아려 견감시키는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 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이를 복계할 때 특별히 경기의 민력을 위해, 각종 신포는 재해 입고 안 입은 고을을 막론하고 당년도 분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오래된 미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정지토록 아울러 요청해야 하는데 견감에 관한 일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우심한 고을의 신포는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근래 흉년에 시행한 전례였습니다. 또한 금년 모든 도에서 요청한 장계를 복계할 때에도 이 전례를 응용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의 장계를 복계할 때에만 잘 살피지 못하고 수량대로 받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소홀한 실수가 있는 것이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혜택에는 다름이 있을 수 없으니 경기도 마땅히 구휼하는 중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피해가 우심한 11고을의 당년도 각종 신포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감해야 마

땅하겠습니다. 이 일은 원래 장계의 회계 중에 내용을 고쳐 표시를 붙여 여쭙고 재가가 내린 뒤에, 다시 이를 분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18

종곡이 떨어진 장단지역에 진흙청의 벼를 지급하다 1717년(숙종 43) 4월 11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유집일俞集이 도내의 폐막弊廢으로 장계하여 본사에 내리셨는데 장계 중에서 기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전곡을 얻는 일이 하루가 급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품처하게 하기를 청하였고 장단長湍 등 16읍은 종곡種穀이 모두 떨어져 경작할 희망마저 끊겼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시급히 구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흙청의 벼 1천 5백 석을 종자에 적합한 것으로 각별히 정선하고 북한산성에 있는 진흙청의 상환미相換米 5백 석도 아울러 떼어주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진흙청에 그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19

재해를 입은 장단지역 논밭의 세를 면제하다 1719년(숙종 45) 9월 3일

지난 달 29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접견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진달하기를 “소신이 이번에 후릉厚陵을 살피고 오는 길에 장단長湍·파주坡州·풍덕豐德 등지를 거쳐왔는데 연변에는 수침과 해일의 재해가 특히 심하였습니다. 논에는 벼의 앞과 줄기가 있고 간혹 이삭이 패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있고 미처 이삭이 패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급재給災(재해 입은 논·밭의 세稅를 면제하여 줌)하지 않는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재分災는 실효가 없으니 내재內災를 허락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영하였다.

20

장단의 송서면이 송도에 이속되지 않도록 하다 1720년(숙종 46) 1월 26일

오늘 26일의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접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지평 홍용조洪龍祚가 아뢰기를 “장단長湍은 곧 경기의 중진重鎭이요, 또 방영防營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길에 자리하고 있어 잔폐함이 날로 심하니 특별히 돌보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송도松都에서 장단의 송서면松西面을 획득해 달라는 청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허용치 않은 것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전 유수前留守의 신청으로 인하여 묘당에서 실시토록 복주覆奏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신은 불가하다고 여겨집니다. 송도에서 이유로 내세우는 말은 조련장操鍊場이 산성에 가로막혀 불편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잠시의 조련은 어느 곳이나 불가할 것이 없고 다른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무어 해로울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이속移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대단한 폐단은 없습니다. 장단에서 의지할 만한 고을이 되는 것은 다만 이 한 면 뿐이니 떼어주어서는 타당치 못한 이유가 한둘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면 송도에는 본래 호조에 세를 바치는 규례가 없고 또 백성에게 역을 부과하는 일이 없었으니 특히 구도舊都인 때문에 따로 유수를 두어 보장保障의 계획을 삼았을 뿐입니다. 지금 장단의 세를 내는 땅을 송도의 세 없는 땅으로 만드는 것은 곧 조정의 잘못된 계획이며, 한 면에서 응하는 역을 다른 면에 덧붙이면 장단에 있어서는 더욱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땅은 송도에 돌아가고 군병은 계속 장단에 소속된다 함은 매우 구차스런 일이요, 반드시 모순됨이 많아 시행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에 불편한 점이 많으니 지난번에 영음嶺邑을 이속한 일을 끌어들여 예로 삼아 갑자기 획급해준은 옳지 않습니다. 장단 의 송서면을 송도에 이속시키라는 영을 중지하소서” 하니, 말한 대로 하라고 영하였다.

21

장단에 독진을 설치한 이후 폐단이 생기다 1720년(숙종 46) 3월 15일

거행 조건舉行條件을 간략하게 추려서 복달覆達하는 별단

【임진 4월 17일 주장 입시 때에 무신 최진한崔鎭漢의 아됨.】 장단長湍과 수원水原은 모두 경기의 좌우 방영左右防營이므로 군제의 배치에 다름이 없어야 마땅하니, 수원의 예에 의하여 독진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장단과 수원은 사실 경기의 방영이나 전부터 조정에서 수원 보기를 다른 데에 견주어 특별히 하여 독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진을 설치한 뒤에 각종 군보軍保를 본부에 전속시켰으므로 그 대신을 각 고을에 배정할 즈음에 실로 난처한 폐단이 있으니, 장단을 독진으로 하는 문제는 가뭇이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2

장단부 심복사의 승려를 남한산성에 환속시키다 1727년(영조 3) 5월 22일

이달 21일 우의정 이의현李宜顯을 유대留待시키고 인견引見하여 개성유수開城留守 조영복趙榮福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개성유수 조영복이 아뢰기를 “장단부長湍府의 심복사心腹寺의 의승義僧 1명은 본래 남한산성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병진년(숙종 2년, 1676)에 대홍산성을 창설한 뒤에 조정에서 대홍산성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인년(경종 2년, 1722) 연간에 기로소耆老所의 당상堂上이 본사本寺의 뒤편 산기슭에 산지山池를 쓰고 이내 본사를 기로소의 원당願堂으로 만들고 의승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로소에서 원당을 두는 일은 고금에 없었던 일입니다. 을사년(영조 1년, 1725) 봄에 본부의 유수 이집李士集이 환속還屬해 주기를 장청狀請하여 해조該曹에서 복계覆啓하여 운허를 받았으나, 작년 겨울에 본사의 승도僧

徒가 거짓으로 상언^{上言}하여 기로소에 내리니 기로소의 당상이 무슨 까닭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원당으로 지정한다는 뜻으로 회계^{回啓}하였습니다. 대흥산성의 의승은 겨우 두 사람 뿐인데 이제 그 하나를 잃었으니 산성의 형편이 염려될 뿐더러 기로소에서 원당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의^{意義}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심복사를 산성에 환속시키고 종전처럼 의승을 정송^{定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23

장단의 군사를 농사 짓도록 내려보내다 1728년(영조 4) 3월 28일

○ 어영청에서 아뢰기를 “...고양^{高陽}·과주^{坡州}·장단^{長湍} 등 고을의 치중복마군^{輜重ト馬軍}(말에 군수품을 싣고 운반하는 군대) 149명을 재결에 따라 모두 내려보내 농사를 짓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24

장단의 대동미를 예전대로 상납하게 하다 1730년(영조 6) 6월 14일

선혜청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조상경^{趙尙綱}의 장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단^{長湍}길은 10면으로 골짜기 마을과 경계선을 이루어 받은 많으나 논은 적습니다. 봄가을 대동미에 받은 좁쌀로, 논은 쌀로 상납하니 변통할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동절목^{大同節目}은 매우 중요하며 또 선혜청에서 담당합니다. 선혜청에 분부하여 종을 대로 변통하라고 하시었으며 비국에서 다시 아뢰어라고 분부 하시었습니다.’ 대동미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공물이라 일의 성격상 매우 중요합니다. 당초 대동미를 설립할 때 해변 마을은 쌀로 받고, 산간 마을은 혹 잡곡이 있어 바치기를 원하면 원래 수량의 3분의 1은 다른 물건으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평야가 있는 고을은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절목을 준수하여 행해온 지가 100여 년이 되니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장단은 해변가의 큰 고을입니다. 가령 골짜기 마을과 경계를 이룬다 하더라도 100여 년 옛 규칙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도의 각 고을을 말하더라도 역시 받은 많고 논은 적은 고을이 있습니다. 이런 길이 일단 열리면 다른 고을 역시 시골벽적으로 흉내낸다는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백성의 부담이며 후일의 폐단과 관계되는지라 결코 계속해서 변통할 수 없습니다. 예전대로 거행하라는 뜻을 관찰사에게 분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25

장단과 죽산의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폐단을 논하다 1730년(영조 6) 12월 30일

참찬관參贊官 박문수朴文秀가 또 아뢰기를 “장단長湍과 죽산竹山은 한편으로는 서해의 요해처要害處요 한편으로는 남로南路의 요해처인데 장단은 방어사요 죽산은 겸영장兼營將입니다. 무신들이 방어가 된 연 후에 병사兵使·수사水使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고자 하지만 영장은 일이 힘들어서 이른바 이름 있는 무신들은 영장이 되려 하지 않고 반드시 겸영장이 되어 이력履歷의 바탕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력 있는 무신들이 차지하여 이력만 만들고는 곧 체직하기를 도모해서 장단과 죽산은 마치 거처가는 여관旅館과 같아 지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경기의 중요한 땅인데도 조정에서 마음을 쓰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또 듣건대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해유解由를 내기가 어려워 임명된 자가 문서를 인계받는 기한이 이르면 갖가지로 체직을 도모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고을의 폐단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26

대신의 봉심행차로 어려움이 많은 장단에 저치미를 지급하다 1731년(영조 7) 4월 12일

이번 4월 10일 대신 이하의 인견 입시 때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아뢰기를 “파주坡州·고양高陽·장단長湍·풍덕豐德 네 고을은 길가의 잔폐한 고을로 거둬 대신의 봉심奉審하는 행차를 겪느라 고을의 힘이 이미 다하여 앞으로 책응責應할 비용이 달리 나올 곳이 없어 장차 지탱해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감사가 이 일로써 아뢰어 추수할 때까지를 한정해 저치미儲置米 6십 석을 더 주자고 하였으나 6십 석 가지고는 힘을 얻기에 부족하니, 해청에 분부하여 읍마다 저치미 1백 석씩을 더주어 지탱해 가는 바탕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 대로 하라고 일렀다.

27

쇠마를 민간에서 책임지게 하여 민폐가 되므로 마세를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논하다 1731년(영조 7) 4월 14일

이번 4월 11일 친림 전경문신 전강 입시 때 영의정 홍치중이 아뢰기를 “이번 왕래 때 연로에서 들은 바를 감히 아뢰겠습니다.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 세 고을의 쇠마刷馬가 아주 폐단이 있어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서로西路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상과 칙행勅行 때의 쇠마는 모두 민간에 책임지워 내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필의 값이 쌀 세 말이었는데 그후 차차 삭감하여 세 말에서 두 말로 감하고 두 말에서 한 말 닷 되가 되었고 지금은 한 말 두 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값이 적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이 있는 자들은 모두 팔아버립니다. 읍내에 사는 사람은 전혀 우
 마(牛馬)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책임 지워 내게 해 점차 먼 마을까지 미쳐 한 경내가 떠들썩합니다. 그 폐단
 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도처에서 호소하였는데 모두 옛 제도를 복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변통
 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세 고을이 다 그렇던가?” 하니, 홍치중이 아뢰기를
 “다 그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조참판이 새로 기영(畿營)에서 들어왔으니 그 폐단을 반드
 시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이조참판 조상경(趙尙綱)이 아뢰기를 “이 일은 크게 민폐(民弊)가 되기 때문에 신
 이 전에 세 고을의 마세(馬稅)를 복구하자는 일을 장계로 보고하였는데, 묘당이 회계(回啓)에서 막아 매우 개
 탄스러웠습니다. 이는 비단 민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진상이 지체되는 것도 역시 이에서 말미암은 것
 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상이 지체되는 것이 과연 이에서 말미암은 것인가?” 하니, 조상경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마세가 아주 적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양
 진상이 도착하면 경내에서 마필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럴 즈음에 민간에 끼치는 폐단이 매우 심하여 진
 상이 혹 반일 혹은 하루 동안이나 지체되는 것은 사세가 본디 그렇습니다. 기내(畿內)는 대체로 함께 통하
 지만 세 고을은 양서지방(兩西地方)의 한 길이고 또 나누어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폐단이 삼남의 길이 나뉘
 는 곳보다 더욱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삼남 역시 이런 폐단이 있으면 왕자(王者)의 하나로 보
 는 도리에 있어 유독 세 고을만 복구해서야 되겠는가?” 하니, 호조판서 김동필(金東弼)이 아뢰기를 “대신이
 마침 세 고을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진달이 있게 된 것인데 삼남은 비록 세 갈래로 나누어지지만 백성들
 에게 폐가 되는 것은 같습니다. 근래에는 쌀이 흔하고 돈이 귀해서 한 말 남짓은 몇 전(錢)의 값에 불과하
 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원하지 않아 특별히 위력으로 백성들을 독려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적지 않
 습니다. 하나로 보는 뜻으로는 다르게 해서 안 될 듯합니다” 하고, 홍치중은 아뢰기를 “남쪽에는 세 길
 이 있지만 서로에는 한 길밖에 없어 한 길로 하루에 여러 바리를 실어 날라야 해서 그 괴롭고 험한 것이
 다릅니다. 하나로 보는 도리로는 본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삼남은 본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먼
 저 이 세 고을부터 적당히 헤아려 복구한 후 추후 일에 따라 변통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차이를 두는 것 같지만 먼저 세 고을부터 행해야 한다” 하니, 홍치중이 아뢰기를 “한 말
 다섯 되의 예로 복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복구하면서 복구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제신들의 뜻은 어떤가?” 하니, 형조참판 홍현보(洪鉉輔)가 아뢰기를 “신 역시 이 세 고
 을에 왕래해 보아 그 지탱하지 못하는 폐단을 자세히 압니다. 이제 만약 석 되를 더 지급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아니하니, 두 말로 복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행도승지 송성명(宋成明)은 아뢰기를 “지금

세 고을 백성들의 바람은 두 말의 숫자로 복구해 주기를 바라는 데 불과하니 먼저 이곳부터 시작하고 다른 여러 도는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세 고을은 장차 능陵을 옮길 때 역에 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구하되 아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의견으로 복구하라” 하였다.

28

장단의 대동미와 신포를 절반으로 감해 주다 1731년(영조 7) 8월 22일

아뢰기를 “일전 성교 가운데 파주와 고양, 양주 세 고을의 금년 추수 대동 및 제반 신포와 신포를 특별히 반으로 감하라고 하실 때 그밖의 응당 들어야 할 곳과 들지 않아야 할 고을은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장단長湍·풍덕豐德 두 고을은 후릉厚陵을 간심看審할 때부터 그 책응함이 고양이나 파주에 비해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며 또 새릉·구릉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모든 차역差役이 다른 경기 고을에 비해 치우치게 무거웠습니다. 이번의 특별한 은혜를 예사 백성에게도 내렸는데 유독 누락되면 부당하니, 파주 등 세 고을의 예에 의하여 일체로 절반을 감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